

제3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2025. 5.



〈 목 차 〉

제1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3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3
1.1 법적근거	3
1.2 계획의 수립배경	3
1.3 계획의 목적	3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4
2.1 계획의 범위	4
2.2 추진경위	5
제2장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9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9
1.1 일반현황	9
1.2 교통약자 정의	14
1.3 교통약자 현황	15
1.4 교통약자 교통사고	39
2. 관련법규 검토	60
2.1. 관련법규 총괄	60
2.2. 관련법규 내용	61
3. 관련계획 검토	71
3.1 제4차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71
3.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4
3.3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77
3.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80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87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요	87
1.1 조사개요	87
1.2 조사방법	87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88
2.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 현황	88
2.2 교통수단	89

목 차

2.3	여객시설	93
2.4	보행환경	99
2.5	전년도 설치율 비교	101
3.	교통약자 이동실태	102
3.1	조사 목적 및 범위	102
3.2	기초지역내 이동 실태	103
3.3	광역지역내 이동실태	108
3.4	지역간 이동실태	113
4.	만족도 조사 결과	118
4.1	종합만족도	118
4.2	보행환경	120
4.3	여객시설	123
4.4	교통수단	127
4.5	시·군별 만족도 조사	129
5.	저상버스 현황	131
5.1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	131
5.2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율	132
6.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133
6.1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133
6.2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현황	135
6.3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137
6.4	특별교통수단 관련 민원	145
6.5	특별교통수단 해외운영 사례	149
7.	이동지원센터	157
7.1	전국 이동지원센터 현황	157
7.2	경기도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158
8.	경기도 광역지원센터	160
8.1	개요	160
9.	타지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173
9.1	전라북도	173
9.2	강원도	173
9.3	전라남도	174

제4장 제2차 지원계획 성과분석	177
1. 제2차 지원계획 개요	177
1.1. 계획의 목적	177
1.2.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177
2. 주요 추진과제 분석 및 평가	178
2.1 특별교통수단 확충	178
2.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80
2.3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선	181
2.4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화	182
2.5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 및 바우처택시 등) 확대	183
2.6 저상버스	185
2.7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고도화	186
3. 성과분석 종합	187
 제5장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191
1. 추진 방향	191
2. 목표 설정	192
3. 세부 정책과제	193
3.1 교통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193
3.2 효율적이고 편안한 이동수단 제공	200
3.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고도화	208
3.4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	214
 제6장 예산 및 투자계획	 219
1. 투자 우선 순위 선정	219
2. 비용 산출	220
3. 연차별 투자계획	221
4. 재원조달 방안	222

목 차

〈 표 차례 〉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 근거	5
〈표 2-1〉 경기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9
〈표 2-2〉 경기도 시·군별 인구 등록 추이	10
〈표 2-3〉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12
〈표 2-4〉 교통약자의 정의	14
〈표 2-5〉 전국 교통약자 비율	14
〈표 2-6〉 경기도 장애인 인구 추이	15
〈표 2-7〉 시·군별 장애인 인구	15
〈표 2-8〉 중증보행장애인 현황	16
〈표 2-9〉 경기도 고령자 추이	17
〈표 2-10〉 시·군별 고령자 인구	17
〈표 2-11〉 경기도 임산부 인구 추이	18
〈표 2-12〉 시·군별 임산부 인구	18
〈표 2-13〉 경기도 어린이 인구 추이	19
〈표 2-14〉 시·군별 어린이 인구	19
〈표 2-15〉 경기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추이	20
〈표 2-16〉 시·군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현황	20
〈표 2-17〉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1
〈표 2-18〉 수원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2
〈표 2-19〉 용인시 연도별 추이	23
〈표 2-20〉 고양시 연도별 추이	23
〈표 2-21〉 화성시 연도별 추이	24
〈표 2-22〉 성남시 연도별 추이	24
〈표 2-23〉 부천시 연도별 추이	25
〈표 2-24〉 남양주시 연도별 추이	25
〈표 2-25〉 안산시 연도별 추이	26
〈표 2-26〉 평택시 연도별 추이	26
〈표 2-27〉 안양시 연도별 추이	27
〈표 2-28〉 시흥시 연도별 추이	27
〈표 2-29〉 파주시 연도별 추이	28

〈표 2-30〉 김포시 연도별 추이	28
〈표 2-31〉 의정부시 연도별 추이	29
〈표 2-32〉 광주시 연도별 추이	29
〈표 2-33〉 하남시 연도별 추이	30
〈표 2-34〉 광명시 연도별 추이	30
〈표 2-35〉 군포시 연도별 추이	31
〈표 2-36〉 양주시 연도별 추이	31
〈표 2-37〉 오산시 연도별 추이	32
〈표 2-38〉 이천시 연도별 추이	32
〈표 2-39〉 안성시 연도별 추이	33
〈표 2-40〉 구리시 연도별 추이	33
〈표 2-41〉 의왕시 연도별 추이	34
〈표 2-42〉 포천시 연도별 추이	34
〈표 2-43〉 양평군 연도별 추이	35
〈표 2-44〉 여주시 연도별 추이	35
〈표 2-45〉 동두천시 연도별 추이	36
〈표 2-46〉 과천시 연도별 추이	36
〈표 2-47〉 가평군 연도별 추이	37
〈표 2-48〉 연천군 연도별 추이	37
〈표 2-49〉 경기도 유형별 교통사고	39
〈표 2-50〉 수원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0
〈표 2-51〉 용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1
〈표 2-52〉 고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1
〈표 2-53〉 화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2
〈표 2-54〉 성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2
〈표 2-55〉 부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3
〈표 2-56〉 남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3
〈표 2-57〉 안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4
〈표 2-58〉 평택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4
〈표 2-59〉 안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5
〈표 2-60〉 시흥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5
〈표 2-61〉 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6
〈표 2-62〉 김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6

목 차

〈표 2-63〉 의정부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7
〈표 2-64〉 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7
〈표 2-65〉 하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8
〈표 2-66〉 광명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8
〈표 2-67〉 군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9
〈표 2-68〉 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9
〈표 2-69〉 오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0
〈표 2-70〉 이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0
〈표 2-71〉 안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1
〈표 2-72〉 구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1
〈표 2-73〉 의왕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2
〈표 2-74〉 포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2
〈표 2-75〉 양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3
〈표 2-76〉 여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3
〈표 2-77〉 동두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4
〈표 2-78〉 과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4
〈표 2-79〉 가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5
〈표 2-80〉 연천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5
〈표 2-81〉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 교통사고	56
〈표 2-82〉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57
〈표 2-83〉 경기도 시·군별 노인 교통사고	58
〈표 2-84〉 경기도 시·군별 노인 보행 교통사고	59
〈표 2-85〉 관련법규 총괄	60
〈표 2-8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61
〈표 2-8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64
〈표 2-8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4
〈표 2-8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66
〈표 2-9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7
〈표 2-9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8
〈표 2-9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69
〈표 3-1〉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87
〈표 3-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88
〈표 3-3〉 버스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89

〈표 3-4〉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90
〈표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1
〈표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관리주체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2
〈표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3
〈표 3-8〉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4
〈표 3-9〉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5
〈표 3-10〉 철도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6
〈표 3-11〉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	97
〈표 3-12〉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8
〈표 3-13〉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99
〈표 3-14〉 보행환경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100
〈표 3-1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101
〈표 3-16〉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비교	101
〈표 3-17〉 조사범위	102
〈표 3-18〉 만족도조사 응답자 현황	102
〈표 3-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과 비교	119
〈표 3-20〉 시·군별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자수	129
〈표 3-21〉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130
〈표 3-22〉 저상버스 도입현황	131
〈표 3-23〉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132
〈표 3-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	134
〈표 3-25〉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현황	135
〈표 3-26〉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136
〈표 3-27〉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137
〈표 3-28〉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138
〈표 3-29〉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139
〈표 3-30〉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	144
〈표 3-31〉 메트로리프트 요금표	149
〈표 3-32〉 시카고 WAN 지원 내용	151
〈표 3-33〉 Dual-a-Ride 요금표	152
〈표 3-34〉 복지택시 요금표	154
〈표 3-35〉 일본의 개호택시	155
〈표 3-36〉 UD 택시 요금표	155

목 차

〈표 3-37〉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157
〈표 3-38〉 특별교통수단 표준지침 주요 내용	160
〈표 3-39〉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유형	161
〈표 3-40〉 특별교통수단 월별 이용자수	162
〈표 3-41〉 특별교통수단 요일별 이용자수	162
〈표 3-42〉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	163
〈표 3-43〉 특별교통수단 목적별 이용자	163
〈표 3-44〉 전체 O/D	164
〈표 3-45〉 병원/재활 목적 O/D	165
〈표 3-46〉 통행목적별(전체) 특별교통수단 이용량	167
〈표 3-47〉 통행목적별(병원+재활치료) 특별교통수단 이용량	169
〈표 3-48〉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173
〈표 3-49〉 강원도 18개군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본체계	174
〈표 3-50〉 전라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현황	174
〈표 4-1〉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계획	178
〈표 4-2〉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전망	179
〈표 4-3〉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법령	180
〈표 4-4〉 추진성과	180
〈표 4-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182
〈표 4-6〉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	182
〈표 4-7〉 표준지침 주요 내용	183
〈표 4-8〉 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184
〈표 4-9〉 장래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185
〈표 4-10〉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185
〈표 4-11〉 경기도 저상버스 운행률	185
〈표 4-12〉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적	186
〈표 4-13〉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인력현황	186
〈표 4-14〉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비교	187
〈표 5-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목표치	192
〈표 5-2〉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별 관리주체	194
〈표 5-3〉 기초지역 이동 교통수단	195
〈표 5-4〉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업무현황	198
〈표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_기준적합성	199

〈표 5-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_업무대행	199
〈표 5-7〉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	200
〈표 5-8〉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 비율	200
〈표 5-9〉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및 대폐차 시기	200
〈표 5-10〉 특별교통수단 도입 소요비용	201
〈표 5-11〉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소요비용	201
〈표 5-12〉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개최 현황	203
〈표 5-13〉 버스 현황	204
〈표 5-14〉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205
〈표 5-15〉 저상버스 도입계획	207
〈표 5-16〉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 현황	207
〈표 5-17〉 저상버스 도입비 소요비용	207
〈표 5-18〉 콜센터 운영 인력	208
〈표 5-19〉 광역이동 월별 운행 실적	208
〈표 5-20〉 시·군별 광역이동 서비스 시간	209
〈표 5-21〉 특별교통수단 목적지	209
〈표 5-22〉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	210
〈표 5-23〉 수도권 이용대상 및 요금	212
〈표 5-24〉 운전자 배치 계획표	213
〈표 5-25〉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방안	214
〈표 5-26〉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	214
〈표 5-27〉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방안	215
〈표 6-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가중치	219
〈표 6-2〉 투자우선 순위	219
〈표 6-3〉 소요비용	220
〈표 6-4〉 연차별 투자계획	221
〈표 6-5〉 경기도 연도별 세입/세출	222
〈표 6-6〉 경기도 분야별 세출	223

목 차

〈 그림 차례 〉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2-1〉 경기도 인구 추이	9
〈그림 2-2〉 경기도 시·군별 인구 현황	11
〈그림 2-3〉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13
〈그림 2-4〉 교통약자 연도별 인구 추이	21
〈그림 2-5〉 수원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2
〈그림 2-6〉 용인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3
〈그림 2-7〉 고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3
〈그림 2-8〉 화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4
〈그림 2-9〉 성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4
〈그림 2-10〉 부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5
〈그림 2-11〉 남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5
〈그림 2-12〉 안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6
〈그림 2-13〉 평택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6
〈그림 2-14〉 안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7
〈그림 2-15〉 시흥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7
〈그림 2-16〉 파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8
〈그림 2-17〉 김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8
〈그림 2-18〉 의정부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9
〈그림 2-19〉 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29
〈그림 2-20〉 하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0
〈그림 2-21〉 광명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0
〈그림 2-22〉 군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1
〈그림 2-23〉 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1
〈그림 2-24〉 오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2
〈그림 2-25〉 이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2
〈그림 2-26〉 안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3
〈그림 2-27〉 구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3
〈그림 2-28〉 의왕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4
〈그림 2-29〉 포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4

〈그림 2-30〉 양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5
〈그림 2-31〉 여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5
〈그림 2-32〉 동두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6
〈그림 2-33〉 과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6
〈그림 2-34〉 가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7
〈그림 2-35〉 연천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37
〈그림 2-36〉 경기도 시·군별 교통약자 인구 현황	38
〈그림 2-37〉 경기도 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39
〈그림 2-38〉 수원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0
〈그림 2-39〉 용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1
〈그림 2-40〉 고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1
〈그림 2-41〉 화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2
〈그림 2-42〉 성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2
〈그림 2-43〉 부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3
〈그림 2-44〉 남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3
〈그림 2-45〉 안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4
〈그림 2-46〉 평택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4
〈그림 2-47〉 안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5
〈그림 2-48〉 시흥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5
〈그림 2-49〉 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6
〈그림 2-50〉 김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6
〈그림 2-51〉 의정부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7
〈그림 2-52〉 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7
〈그림 2-53〉 하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8
〈그림 2-54〉 광명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8
〈그림 2-55〉 군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9
〈그림 2-56〉 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49
〈그림 2-57〉 오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0
〈그림 2-58〉 이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0
〈그림 2-59〉 안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1
〈그림 2-60〉 구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1
〈그림 2-61〉 의왕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2
〈그림 2-62〉 포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2

목 차

〈그림 2-63〉 양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3
〈그림 2-64〉 여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3
〈그림 2-65〉 동두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4
〈그림 2-66〉 과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54
〈그림 2-67〉 가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5
〈그림 2-68〉 연천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55
〈그림 3-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88
〈그림 3-2〉 버스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89
〈그림 3-3〉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90
〈그림 3-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1
〈그림 3-5〉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3
〈그림 3-6〉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7
〈그림 3-7〉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8
〈그림 3-8〉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99
〈그림 3-9〉 보행환경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100
〈그림 3-10〉 기초지역 내 - 외출빈도	103
〈그림 3-11〉 기초지역 내 - 주 이용 교통수단	103
〈그림 3-12〉 기초지역 내 - 주 외출 목적	104
〈그림 3-13〉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104
〈그림 3-14〉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105
〈그림 3-15〉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105
〈그림 3-16〉 기초지역내 외출 빈도	106
〈그림 3-17〉 기초지역내 주 이용 교통수단	107
〈그림 3-18〉 광역지역 내 - 외출빈도	108
〈그림 3-19〉 광역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	108
〈그림 3-20〉 광역지역 내 - 주 외출 시간대	109
〈그림 3-21〉 광역지역 내 - 외출목적	109
〈그림 3-22〉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110
〈그림 3-23〉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110
〈그림 3-24〉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111
〈그림 3-25〉 광역지역내 외출 빈도	111
〈그림 3-26〉 광역지역내 주 이용 교통수단	112
〈그림 3-27〉 지역 간 - 외출빈도	113

〈그림 3-28〉 지역 간 - 주 이용 교통수단	113
〈그림 3-29〉 지역 간 - 주 외출 목적	114
〈그림 3-30〉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114
〈그림 3-31〉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115
〈그림 3-32〉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115
〈그림 3-33〉 지역간 외출 빈도	116
〈그림 3-34〉 지역간 주 이용 교통수단	117
〈그림 3-35〉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118
〈그림 3-36〉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118
〈그림 3-37〉 보도의 요소별 만족도	120
〈그림 3-38〉 보도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0
〈그림 3-39〉 횡단보도의 요소별 만족도	121
〈그림 3-40〉 횡단보도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1
〈그림 3-41〉 지하도 및 육교의 요소별 만족도	122
〈그림 3-42〉 지하도 및 육교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2
〈그림 3-43〉 버스정류장의 요소별 만족도	123
〈그림 3-44〉 버스정류장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3
〈그림 3-45〉 도시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	124
〈그림 3-46〉 도시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4
〈그림 3-47〉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	125
〈그림 3-48〉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5
〈그림 3-49〉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요소별 만족도	126
〈그림 3-50〉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6
〈그림 3-51〉 특별교통수단의 요소별 만족도	127
〈그림 3-52〉 특별교통수단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7
〈그림 3-53〉 특별교통수단 대체 수단의 요소별 만족도	128
〈그림 3-54〉 특별교통수단 대체 수단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28
〈그림 3-55〉 미국의 특별교통수단	150
〈그림 3-56〉 WAV 택시	151
〈그림 3-57〉 런던 Dual-a-Ride 택시	153
〈그림 3-58〉 일본의 UD택시	156
〈그림 3-59〉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절차	161
〈그림 3-60〉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유형	161

목 차

〈그림 3-61〉 특별교통수단 월별 이용자수	162
〈그림 3-62〉 특별교통수단 요일별 이용자수	162
〈그림 3-63〉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수	163
〈그림 3-64〉 특별교통수단 목적별 이용자수	163
〈그림 5-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추진방향	191
〈그림 5-2〉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193
〈그림 5-3〉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194
〈그림 5-4〉 이동편의시설 부적합 사례	195
〈그림 5-5〉 관련 언론보도	196
〈그림 5-6〉 이동편의시설 설치 절차	196
〈그림 5-7〉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	197
〈그림 5-8〉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기준	198
〈그림 5-9〉 저상버스	204
〈그림 5-10〉 광역이동 평균 서비스시간	208
〈그림 5-11〉 자동상담 기능	211
〈그림 5-12〉 철도 연계 서비스 개념도	212
〈그림 6-1〉 경기도 재정규모 추이	222

제 1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제1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1.1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수립하여야 함

-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 2

1.2 계획의 수립배경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 필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재정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3 계획의 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경기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 향후 5년간의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 등에 관한 개선대책 및 계획추진 방안 마련

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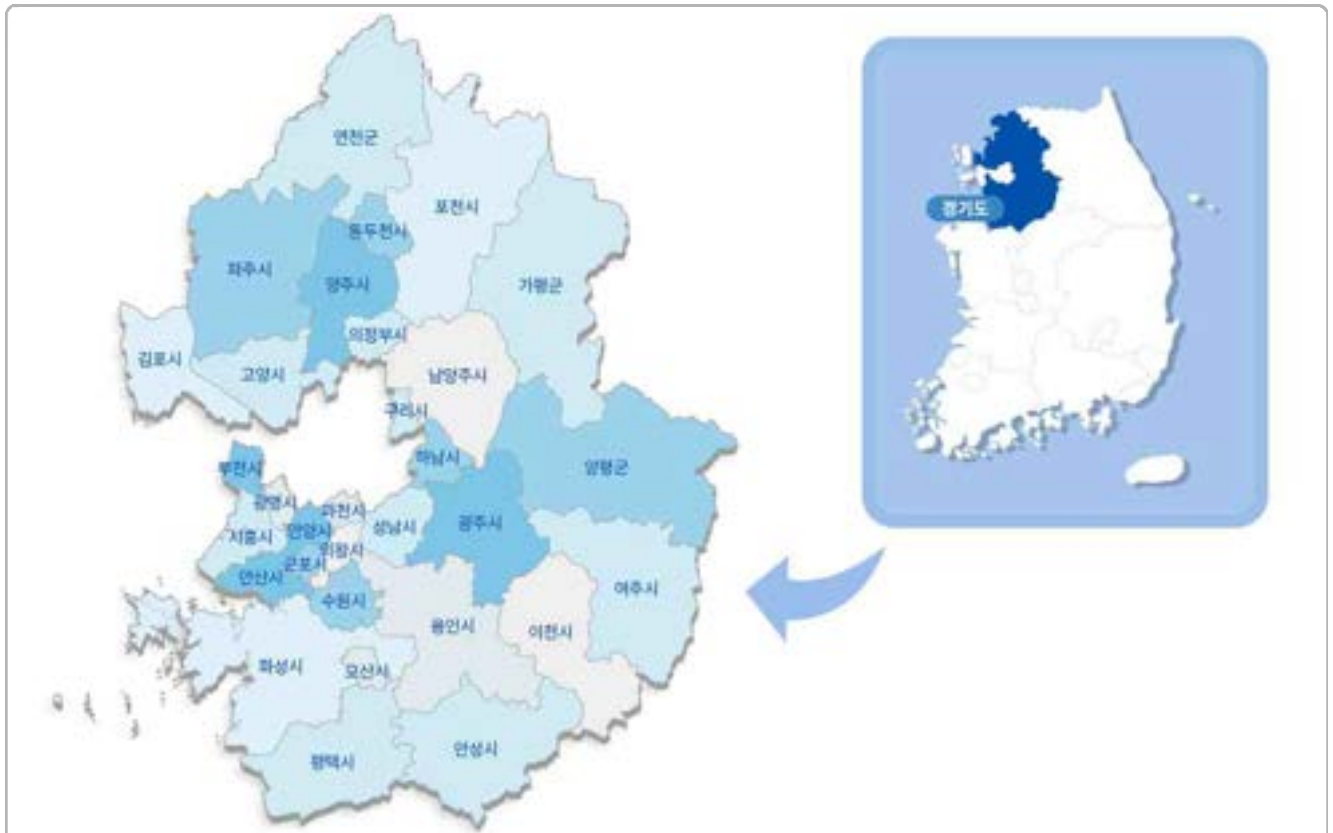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2.1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31개 시·군)으로 설정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5개년(2025년~2029년)
- 자료분석의 기준년도 : 2024년

▶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현황
-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31개 시·군을 위한 중점 지원계획
- 소요비용 및 자원조달방안 등

2.2 추진경위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신설('12. 6. 1.)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의2 신설('12. 11. 27.)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개정('13. 3. 23.)
- ▶ 「제1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3~2017) 수립
- ▶ 「제2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0~2024) 수립
-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24 7. 18.)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 근거

구 분	내 용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p>	<p>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p>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	<p>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p>

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표 계속〉

구 분	내 용
<p>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p>	<p>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방안 2.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5.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6.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하 “버스” 라 한다) 또는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8.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 노후 특별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사항 1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차량 연계 방안 1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2. 관련법규 검토
3. 관련계획 검토

제2장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1.1 일반현황

1)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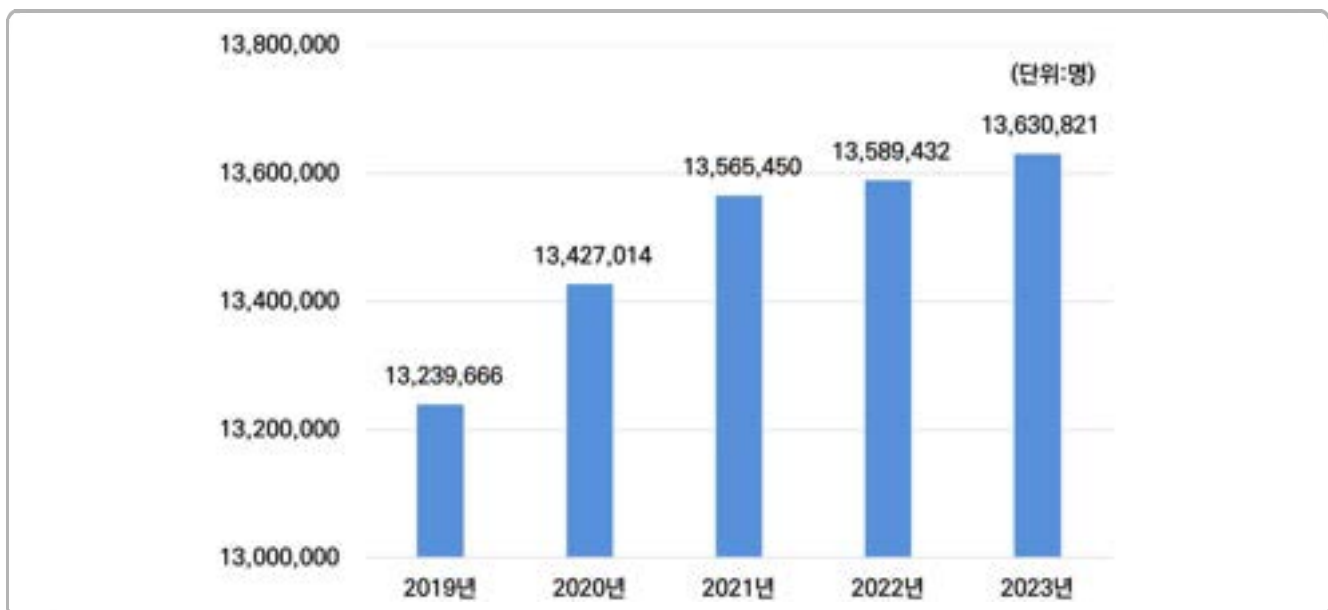
- ▶ 경기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3,239,666명에서 2023년 13,630,821명으로 연평균 0.73% 증가하고 세대수는 2019년 5,468,920세대에서 2023년 5,978,724세대로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세대당 인구는 2019년 2.42명/세대에서 2023년 2.28명/세대로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경기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구 분	인 구 (명)	세대수 (세대)	면 적 (km ²)	인구밀도 (명/km ²)	세대당 인구 (명/세대)
2019년	13,239,666	5,468,920	10,192.5	1,299.0	2.42
2020년	13,427,014	5,676,401	10,195.3	1,317.0	2.37
2021년	13,565,450	5,841,995	10,196.7	1,330.4	2.32
2022년	13,589,432	5,913,694	10,199.5	1,332.4	2.30
2023년	13,630,821	5,978,724	10,199.7	1,336.4	2.28
연평균 증가율(%)	0.73	2.25	0.02	0.71	-1.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1〉 경기도 인구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시·군별 지역별 인구 현황

과천시, 하남시, 양주시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광명시는 연평균 3%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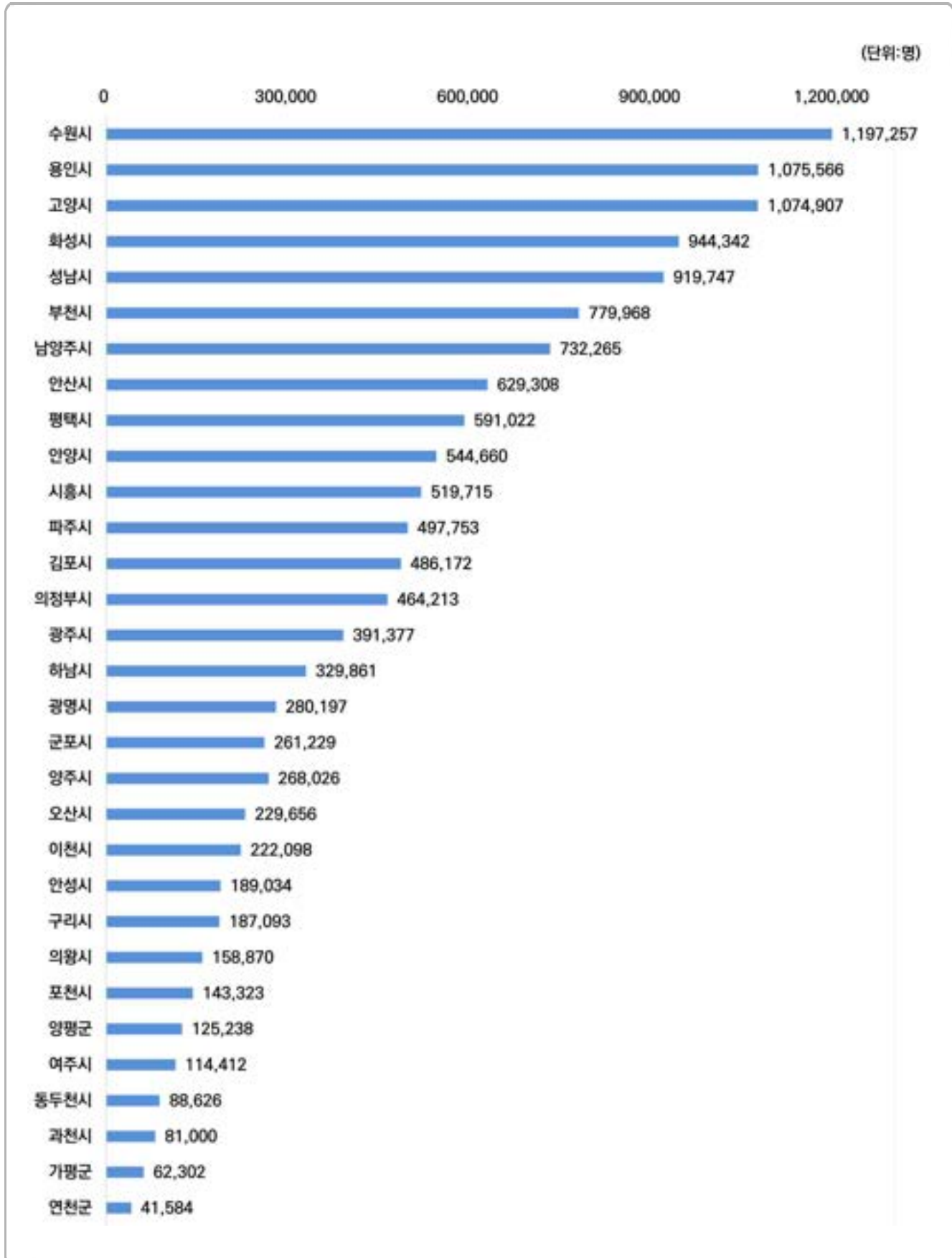
〈표 2-2〉 경기도 시·군별 인구 등록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경기도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수원시	1,194,465	1,186,078	1,183,714	1,190,964	1,197,257	0.06
용인시	1,059,609	1,074,176	1,077,508	1,074,971	1,075,566	0.37
고양시	1,066,351	1,079,216	1,079,353	1,076,535	1,074,907	0.20
화성시	815,396	855,248	887,015	910,814	944,342	3.74
성남시	942,724	940,064	930,948	922,518	919,747	-0.61
부천시	829,996	818,383	806,067	790,128	779,968	-1.54
남양주시	701,830	713,321	733,798	737,353	732,265	1.07
안산시	650,918	654,915	652,726	641,660	629,308	-0.84
평택시	513,027	537,307	564,288	578,529	591,022	3.60
안양시	567,044	550,027	547,178	548,228	544,660	-1.00
시흥시	473,682	500,895	512,030	512,912	519,715	2.35
파주시	454,040	465,617	483,245	495,315	497,753	2.32
김포시	437,221	473,970	486,508	484,267	486,172	2.69
의정부시	451,868	461,710	463,661	463,724	464,213	0.68
광주시	372,654	382,054	387,289	391,462	391,377	1.23
하남시	272,455	293,452	320,087	326,059	329,861	4.90
광명시	316,552	298,599	292,893	287,945	280,197	-3.00
군포시	275,852	273,791	268,535	266,213	261,229	-1.35
양주시	222,314	230,359	236,368	243,432	268,026	4.79
오산시	226,379	229,725	229,983	229,849	229,656	0.36
이천시	215,834	218,388	223,177	222,721	222,098	0.72
안성시	183,405	187,012	189,534	188,842	189,034	0.76
구리시	199,265	197,454	191,948	188,701	187,093	-1.56
의왕시	161,153	163,795	163,356	160,221	158,870	-0.36
포천시	148,379	147,274	148,939	146,701	143,323	-0.86
양평군	116,874	118,810	121,230	122,323	125,238	1.74
여주시	111,083	111,897	112,150	113,150	114,412	0.74
동두천시	94,768	94,353	93,592	91,546	88,626	-1.66
과천시	58,289	63,231	73,345	78,137	81,000	8.57
가평군	62,415	62,377	62,264	62,150	62,302	-0.05
연천군	43,824	43,516	42,721	42,062	41,584	-1.3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2〉 경기도 시·군별 인구 현황 (2023년)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자동차 등록대수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5,765,692대에서 2023년 6,525,098대로 꾸준히 증가 (연평균 3.14%)하고 있음

• 2023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수원시가 569,460대로 가장 많고 연천군이 30,089대로 가장 적음

시·군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는 과천시가 10.2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광명시는 유일하게 0.2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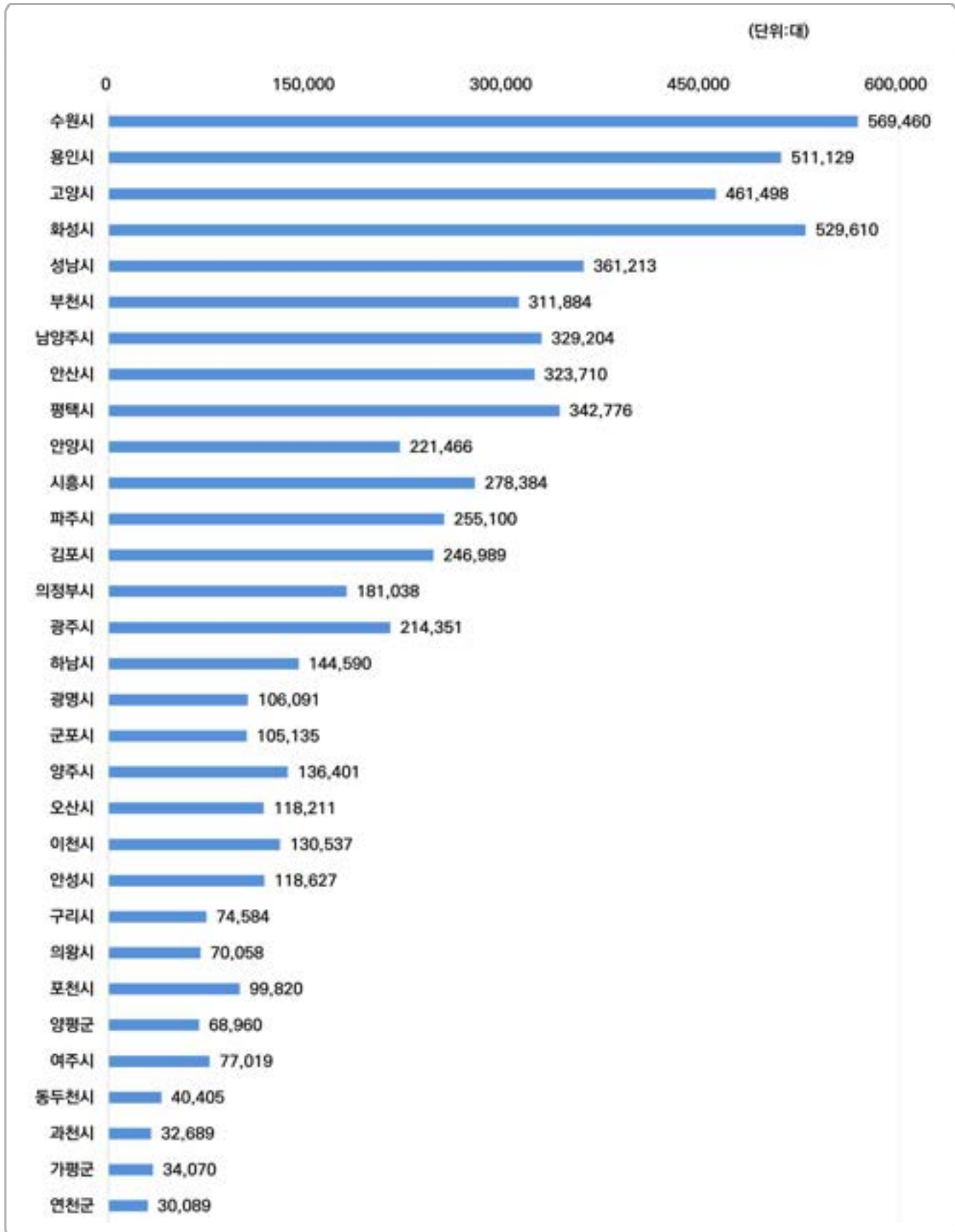
〈표 2-3〉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경기도	5,765,692	6,004,126	6,204,452	6,378,632	6,525,098	3.14
수원시	507,939	529,578	538,105	556,550	569,460	2.90
용인시	463,500	478,727	489,774	500,539	511,129	2.48
고양시	418,739	432,592	441,983	452,846	461,498	2.46
화성시	426,423	455,136	480,149	502,830	529,610	5.57
성남시	339,068	345,902	351,186	356,554	361,213	1.59
부천시	305,967	307,262	309,211	310,441	311,884	0.48
남양주시	290,806	303,129	317,895	326,650	329,204	3.15
안산시	297,771	309,505	316,309	322,022	323,710	2.11
평택시	273,124	291,735	312,995	329,305	342,776	5.84
안양시	209,800	209,297	212,917	219,025	221,466	1.36
시흥시	233,946	250,866	262,711	269,484	278,384	4.44
파주시	211,734	222,522	235,972	247,974	255,100	4.77
김포시	208,802	228,800	238,330	242,644	246,989	4.29
의정부시	159,070	167,461	172,542	177,755	181,038	3.29
광주시	191,176	198,991	205,079	211,044	214,351	2.90
하남시	113,743	124,309	136,750	141,362	144,590	6.18
광명시	106,984	104,537	105,349	106,517	106,091	-0.21
군포시	101,749	103,583	103,820	105,326	105,135	0.82
양주시	103,867	110,181	115,489	122,407	136,401	7.05
오산시	105,134	109,374	112,775	115,345	118,211	2.97
이천시	114,520	118,637	123,309	127,247	130,537	3.33
안성시	103,031	108,455	113,751	115,872	118,627	3.59
구리시	72,372	73,503	73,277	73,929	74,584	0.76
의왕시	64,879	67,604	69,201	69,439	70,058	1.94
포천시	93,099	95,439	98,345	99,270	99,820	1.76
양평군	59,992	62,134	64,365	66,574	68,960	3.54
여주시	68,490	70,352	72,111	74,584	77,019	2.98
동두천시	38,230	39,263	40,309	40,875	40,405	1.39
과천시	22,109	24,409	28,528	30,963	32,689	10.27
가평군	30,759	31,540	32,423	33,293	34,070	2.59
연천군	28,869	29,303	29,492	29,966	30,089	1.0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3〉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2023년)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2 교통약자 정의

1) 교통약자

▶ 교통약자의 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 12. 22 개정)의 제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함

〈표 2-4〉 교통약자의 정의

구 분	내 용
제2조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교통약자의 구분

- 장애인 : 경기도 등록 장애인 인구
- 고령자 : 경기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 어린이 : 경기도 인구 중 5~9세 인구
- 임산부 : 경기도 인구 중 출생아 인구
- 영·유아를 동반한 자 : 경기도 인구 중 0~4세(영·유아) 인구

▶ 전국 교통약자 현황

- 2023년 통계청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15,916,303인으로 전국 인구 51,265,238인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인구가 1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5〉 전국 교통약자 비율(2023년)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교통약자인구 (총인구)	15,916,303 (51,265,238)	2,641,000	9,730,411	230,000	1,980,304	1,334,588
총인구대비	31.0	5.2	19.0	0.4	3.9	2.6
교통약자 비율	100.0	16.6	61.1	1.4	12.4	8.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3 교통약자 현황

1)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추이

- 경기도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율 0.73%에 비해 장애인 비율은 1.86%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6〉 경기도 장애인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장애인	304,822	300,192	296,336	289,640	282,780	-1.86%
인구대비 구성비	2.3	2.2	2.2	2.1	2.1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시·군별 장애인 현황

- 경기도 지역별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가평군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천시 3.4%, 동두천시 3.1%, 연천군 3.0% 순으로 나타남

〈표 2-7〉 시·군별 장애인 인구(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장애인	22,548	17,022	19,565	16,968	16,342	18,116	15,493	18,288
구성비	1.9	1.6	1.8	1.8	1.8	2.3	2.1	2.9
구 분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장애인	13,345	9,645	12,368	10,656	8,937	10,391	8,638	5,547
구성비	2.3	1.8	2.4	2.1	1.8	2.2	2.2	1.7
구 분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장애인	5,660	5,309	6,486	5,027	5,424	5,319	4,030	2,823
구성비	2.0	2.0	2.4	2.2	2.4	2.8	2.2	1.8
구 분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장애인	4,893	3,369	3,345	2,787	1,022	2,174	1,243	282,780
구성비	3.4	2.7	2.9	3.1	1.3	3.5	3.0	2.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2-8〉 중증보행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시군	중증보행장애인 (2021년)	장애등록 현황(2024년 9월 기준)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51,686	587,317	214,219	373,098
수원시	11,786	44,532	16,475	28,057
용인시	9,786	37,643	13,820	23,823
고양시	11,615	42,094	15,675	26,419
화성시	7,226	32,422	11,514	20,908
성남시	10,107	35,673	13,255	22,418
부천시	10,090	37,446	13,747	23,699
남양주시	8,110	33,195	11,588	21,607
안산시	8,435	33,114	11,808	21,306
평택시	6,171	25,980	9,174	16,806
안양시	5,496	21,566	7,385	14,181
시흥시	5,149	22,472	7,899	14,573
파주시	5,785	22,886	8,548	14,338
김포시	4,565	18,865	6,722	12,143
의정부시	5,929	22,357	8,205	14,152
광주시	4,414	17,716	6,300	11,416
하남시	2,892	11,972	4,245	7,727
광명시	3,651	12,197	4,550	7,647
군포시	2,946	11,721	4,121	7,600
양주시	3,297	14,097	5,272	8,825
오산시	2,395	9,274	3,620	5,654
이천시	3,127	10,846	4,359	6,487
안성시	2,949	11,202	4,226	6,976
구리시	2,254	8,549	2,973	5,576
의왕시	1,591	6,353	2,176	4,177
포천시	2,687	10,228	3,720	6,508
양평군	2,287	8,272	3,122	5,150
여주시	2,101	7,508	3,023	4,485
동두천시	1,763	6,282	2,532	3,750
과천시	561	2,429	897	1,532
가평군	1,630	5,075	2,112	2,963
연천군	891	3,351	1,156	2,195

자료 : 중증보행장애인 현황은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자료 인용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세부내역 미공개 및 2023년 실태조사 연구 중

2) 고령자 현황

고령자 추이

- 경기도 고령자 인구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체 연평균 인구증가율 0.73%에 비해 6.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9〉 경기도 고령자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고령자	1,651,341	1,775,315	1,881,464	1,992,807	2,122,718	6.48
인구대비 구성비	12.5	13.2	13.9	14.7	15.6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군별 고령자 현황

- 경기도 지역별 고령자 인구를 살펴보면 연천군이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평군 30.0%, 양평군 29.4%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시·군별 고령자 인구(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고령자	157,336	165,767	173,057	97,343	152,855	134,331	121,931	87,389
구성비	13.1	15.4	16.1	10.3	16.6	17.2	16.7	13.9
구 분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고령자	77,785	90,026	59,745	78,257	71,702	82,104	64,032	47,583
구성비	13.2	16.5	11.5	15.7	14.7	17.7	16.4	14.4
구 분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고령자	46,870	43,569	46,170	26,964	36,905	38,191	31,009	26,477
구성비	16.7	16.7	17.2	11.7	16.6	20.2	16.6	16.7
구 분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고령자	34,863	36,824	28,895	21,372	11,771	18,713	12,882	2,122,718
구성비	24.3	29.4	25.3	24.1	14.5	30.0	31.0	15.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 임신부 현황

▶ 임신부 추이

- 경기도 임신부 인구는 출생아 인구를 적용하였으며, 연평균 4.63% 감소하여 전체 인구 증가율(+0.73%)과는 반대 흐름을 보임

〈표 2-11〉 경기도 임신부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임산부	83,198	77,737	76,139	75,323	68,817	-4.63
인구대비 구성비	0.7	0.6	0.6	0.6	0.5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시·군별 임신부 현황

- 경기도 지역별 임신부 인구를 살펴보면 과천시 0.7%, 화성시 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2〉 시·군별 임신부 인구(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임산부	5,940	4,941	5,017	6,714	4,372	3,339	3,243	2,986
구성비	0.5	0.5	0.5	0.7	0.5	0.4	0.4	0.5
구 분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임산부	3,628	3,093	2,863	2,428	2,765	2,106	1,937	2,021
구성비	0.6	0.6	0.6	0.5	0.6	0.5	0.5	0.6
구 분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임산부	1,452	1,398	1,389	1,056	1,160	727	815	832
구성비	0.5	0.5	0.5	0.5	0.5	0.4	0.4	0.5
구 분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임산부	506	447	417	292	599	181	153	68,817
구성비	0.4	0.4	0.4	0.3	0.7	0.3	0.4	0.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어린이 현황

▣ 어린이 추이

- 경기도 어린이(5~9세) 인구를 살펴보면 연평균 2.86%의 감소율로 감소하고 있음

〈표 2-13〉 경기도 어린이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어린이	659,810	659,216	648,343	614,627	587,502	-2.86
인구대비 구성비	5.0	4.9	4.8	4.5	4.3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시·군별 어린이 현황

- 경기도 지역별 어린이 인구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포시 5.8%, 과천시 5.6%, 하남시 5.6% 순으로 나타남

〈표 2-14〉 시·군별 어린이 인구(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어린이	48,391	50,341	41,812	55,766	35,037	26,527	33,689	20,627
구성비	4.0	4.7	3.9	5.9	3.8	3.4	4.6	3.3
구 분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어린이	27,572	20,057	25,771	24,183	28,176	17,573	17,758	18,497
구성비	4.7	3.7	5.0	4.9	5.8	3.8	4.5	5.6
구 분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어린이	11,130	9,075	12,530	11,337	9,340	6,848	7,169	6,523
구성비	4.0	3.5	4.7	4.9	4.2	3.6	3.8	4.1
구 분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어린이	3,914	3,946	3,675	2,834	4,568	1,654	1,182	587,502
구성비	2.7	3.2	3.2	3.2	5.6	2.7	2.8	4.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5) 영·유아를 동반한 자 현황

▣ 영·유아를 동반 한 자 추이

- 4세 이하(0~4세)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를 살펴보면 연평균 6.46%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15〉 경기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13,630,821	0.73
영·유아를 동반한 자	525,180	486,768	451,584	426,327	402,048	-6.46
인구대비 구성비	4.0	3.6	3.3	3.1	2.9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영·유아를 동반한 자 현황

- 경기도 지역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를 살펴보면 과천시 4.2%, 화성시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시 3.7%, 김포시 3.6% 순으로 나타남

〈표 2-16〉 시·군별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현황(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영·유아를 동반한 자	34,245	30,882	28,524	39,387	24,989	18,917	20,648	14,601
구성비	2.9	2.9	2.7	4.2	2.7	2.4	2.8	2.3
구 분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영·유아를 동반한 자	20,871	15,355	18,139	15,884	17,655	12,697	12,110	12,188
구성비	3.5	2.8	3.5	3.2	3.6	2.7	3.1	3.7
구 분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영·유아를 동반한 자	7,502	6,333	9,108	6,802	6,165	4,365	4,648	5,097
구성비	2.7	2.4	3.4	3.0	2.8	2.3	2.5	3.2
구 분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영·유아를 동반한 자	2,732	2,536	2,556	1,687	3,427	1,109	889	402,048
구성비	1.9	2.0	2.2	1.9	4.2	1.8	2.1	2.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6) 경기도 교통약자 현황 종합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경기도 교통약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224,351명에서 2023년 3,463,865명으로 1.81% 증가율을 보임
- 경기도는 고령자의 인구는 증가하지만 임산부, 어린이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7〉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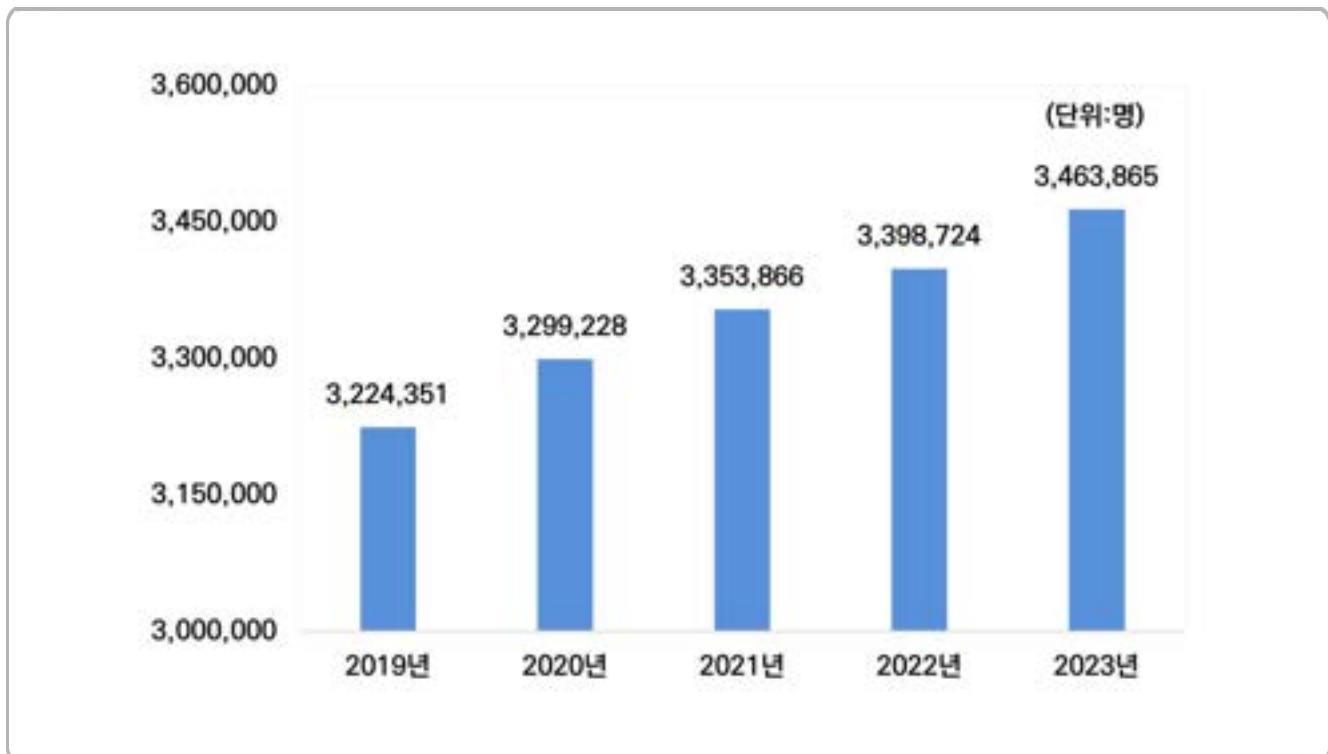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304,822	300,192	296,336	289,640	282,780	-1.86%
고령자	1,651,341	1,775,315	1,881,464	1,992,807	2,122,718	6.48%
임산부	83,198	77,737	76,139	75,323	68,817	-4.63%
어린이	659,810	659,216	648,343	614,627	587,502	-2.86%
영·유아를 동반한 자	525,180	486,768	451,584	426,327	402,048	-6.46%
합 계	3,224,351	3,299,228	3,353,866	3,398,724	3,463,865	1.8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 : 장애인수는 전체 장애인 등록인원에서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수 제외

〈그림 2-4〉 교통약자 연도별 인구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7) 경기도 시·군별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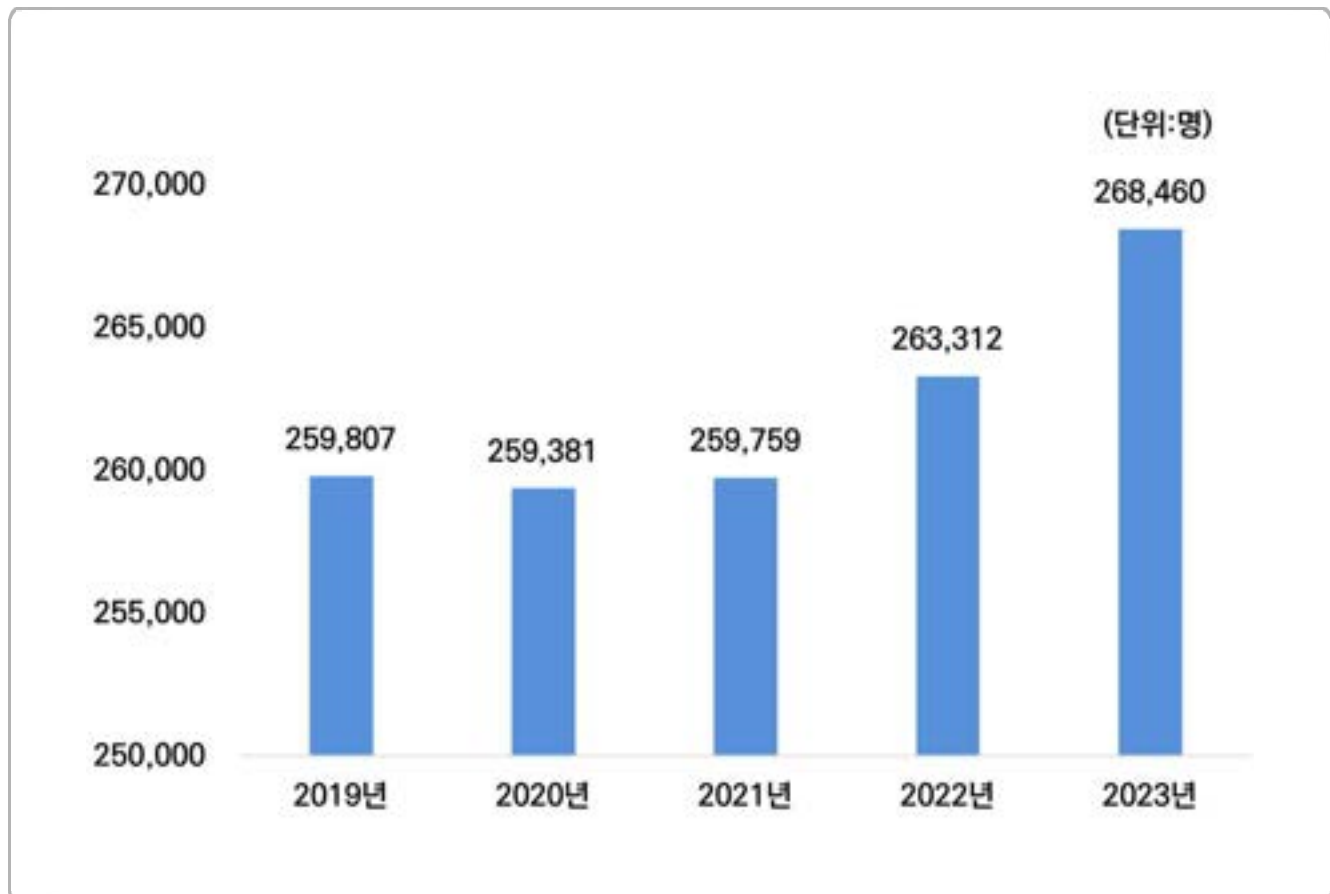
- 수원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연평균 7.48%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18〉 수원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24,064	23,517	23,139	22,853	22,548	-1.61%
고령자	123,647	131,936	139,075	147,122	157,336	6.21%
임산부	7,791	6,814	6,508	6,558	5,940	-6.56%
어린이	57,577	55,996	53,670	50,717	48,391	-4.25%
영·유아를 동반한 자	46,728	41,118	37,367	36,062	34,245	-7.48%
합 계	259,807	259,381	259,759	263,312	268,460	0.82%

〈그림 2-5〉 수원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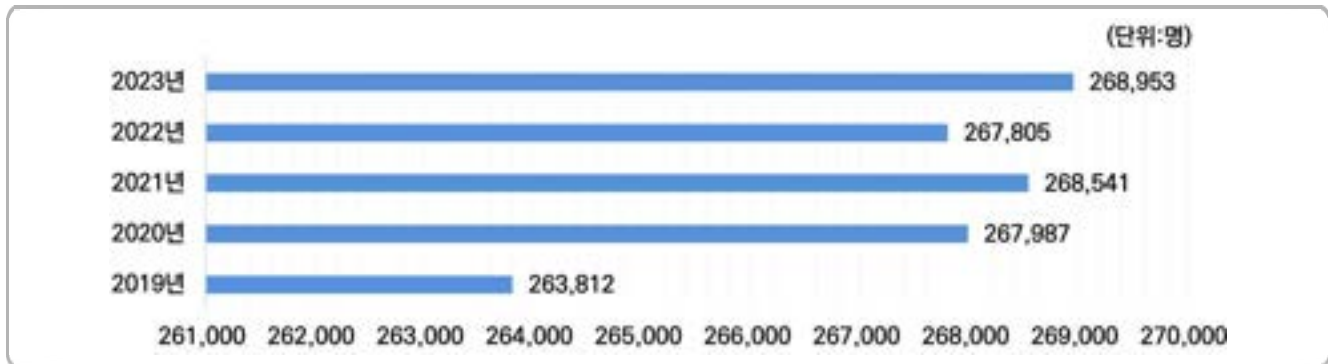
- 용인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8.89%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19〉 용인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8,077	17,868	17,681	17,372	17,022	-1.49%
고령자	133,817	143,096	150,263	157,226	165,767	5.50%
임산부	6,463	6,252	5,990	5,691	4,941	-6.49%
어린이	60,631	59,773	57,827	53,742	50,341	-4.54%
영·유아를 동반한 자	44,824	40,998	36,780	33,774	30,882	-8.89%
합 계	263,812	267,987	268,541	267,805	268,953	0.48%

〈그림 2-6〉 용인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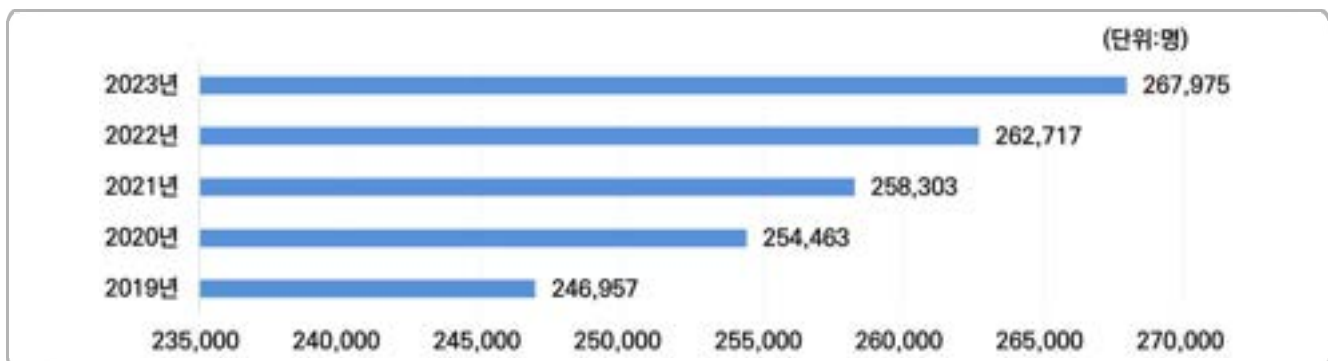
- 고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6.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0〉 고양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21,334	21,087	20,640	20,084	19,565	-2.14%
고령자	135,272	145,710	154,134	163,080	173,057	6.35%
임산부	5,538	5,544	5,591	5,626	5,017	-2.44%
어린이	47,772	47,644	46,245	43,756	41,812	-3.28%
영·유아를 동반한 자	37,041	34,478	31,693	30,171	28,524	-6.32%
합 계	246,957	254,463	258,303	262,717	267,975	2.06%

〈그림 2-7〉 고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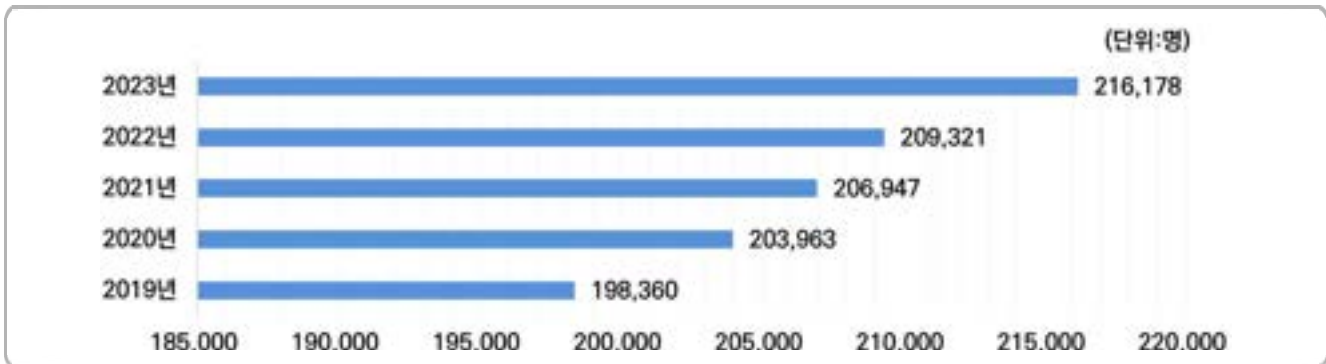
- 화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8.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1〉 화성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6,159	16,456	16,608	16,818	16,968	1.23%
고령자	69,434	76,180	82,470	89,334	97,343	8.81%
임산부	7,158	6,842	6,551	6,445	6,714	-1.59%
어린이	57,482	59,089	59,238	56,933	55,766	-0.75%
영·유아를 동반한 자	48,127	45,396	42,080	39,791	39,387	-4.89%
합 계	198,360	203,963	206,947	209,321	216,178	2.17%

〈그림 2-8〉 화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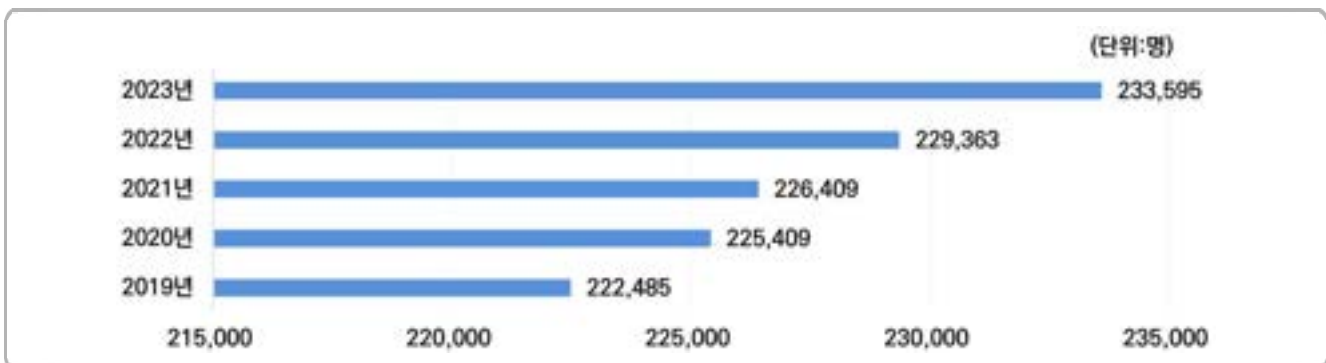
- 성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6.85%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22〉 성남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8,865	18,243	17,621	16,978	16,342	-3.53%
고령자	125,807	133,221	138,091	144,800	152,855	4.99%
임산부	5,808	5,110	5,024	4,966	4,372	-6.85%
어린이	40,454	39,944	38,598	36,542	35,037	-3.53%
영·유아를 동반한 자	31,551	28,891	27,075	26,077	24,989	-5.66%
합 계	222,485	225,409	226,409	229,363	233,595	1.23%

〈그림 2-9〉 성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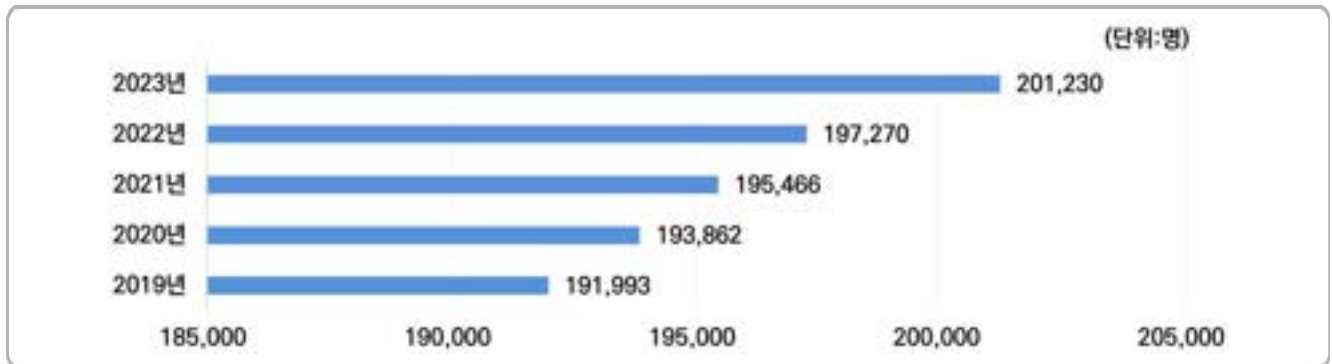
- 부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9.32%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23〉 부천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21,159	20,443	19,857	18,943	18,116	-3.81%
고령자	104,089	111,952	118,668	125,752	134,331	6.58%
임산부	4,747	4,243	3,912	3,796	3,339	-8.42%
어린이	34,016	32,387	30,718	28,292	26,527	-6.03%
영·유아를 동반한 자	27,982	24,837	22,311	20,487	18,917	-9.32%
합 계	191,993	193,862	195,466	197,270	201,230	1.18%

〈그림 2-10〉 부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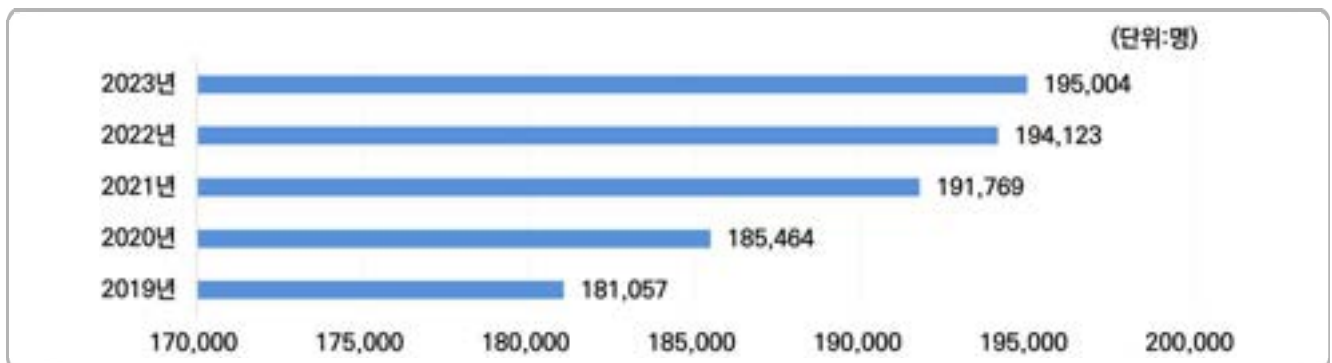
- 남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7.59%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24〉 남양주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6,618	16,318	16,361	15,979	15,493	-1.74%
고령자	93,007	100,537	108,285	115,165	121,931	7.00%
임산부	3,855	3,683	3,596	3,609	3,243	-4.23%
어린이	39,267	38,852	38,802	36,387	33,689	-3.76%
영·유아를 동반한 자	28,310	26,074	24,725	22,983	20,648	-7.59%
합 계	181,057	185,464	191,769	194,123	195,004	1.87%

〈그림 2-11〉 남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안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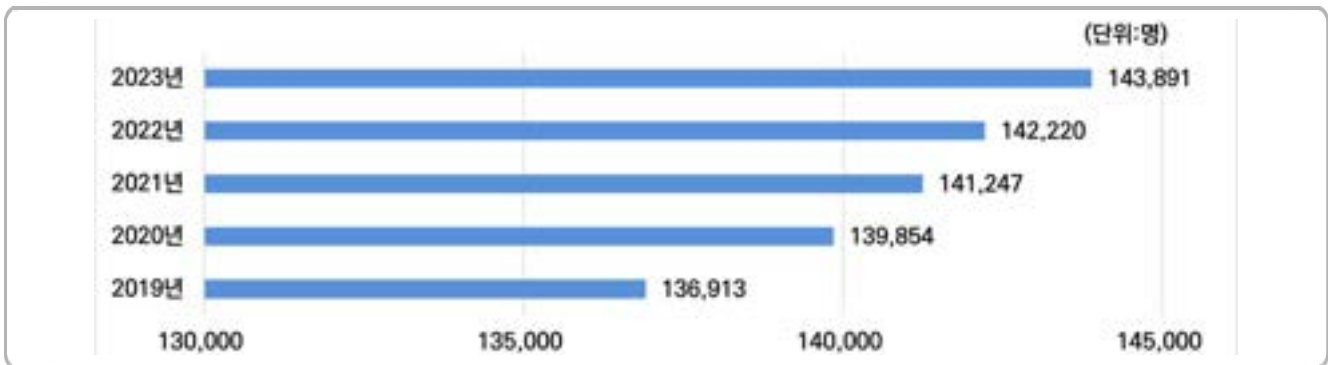
- 안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7.98%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25〉 안산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20,415	20,063	19,707	18,996	18,288	-2.71%
고령자	66,438	71,620	76,366	81,511	87,389	7.09%
임산부	3,621	3,539	3,398	3,255	2,986	-4.71%
어린이	26,078	25,568	24,331	22,387	20,627	-5.69%
영·유아를 동반한 자	20,361	19,064	17,445	16,071	14,601	-7.98%
합 계	136,913	139,854	141,247	142,220	143,891	-

〈그림 2-12〉 안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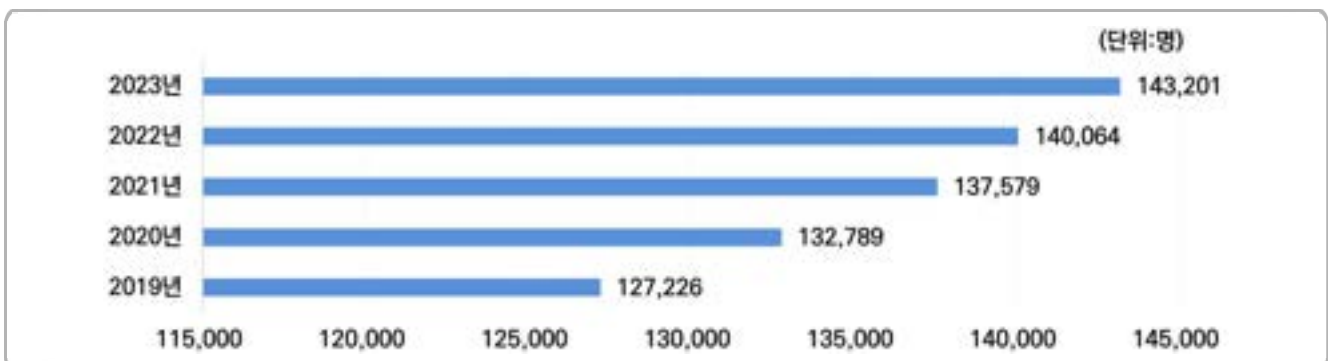
- 평택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5.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6〉 평택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3,511	13,553	13,677	13,559	13,345	-0.31%
고령자	61,910	66,486	70,123	73,372	77,785	5.87%
임산부	3,562	3,597	3,714	3,926	3,628	0.46%
어린이	26,371	27,481	28,315	27,785	27,572	1.12%
영·유아를 동반한 자	21,872	21,672	21,750	21,422	20,871	-1.16%
합 계	127,226	132,789	137,579	140,064	143,201	3.00%

〈그림 2-13〉 평택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안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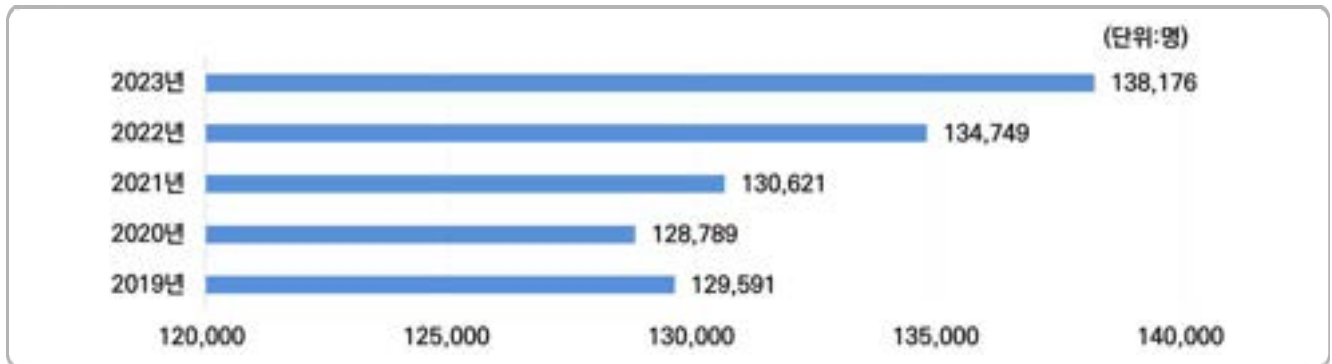
- 안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5.88%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7〉 안양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1,351	10,638	10,242	9,989	9,645	-3.99%
고령자	71,643	75,581	79,282	84,390	90,026	5.88%
임산부	3,830	3,276	3,277	3,389	3,093	-5.20%
어린이	23,290	22,295	21,648	20,776	20,057	-3.67%
영·유아를 동반한 자	19,477	16,999	16,172	16,205	15,355	-5.77%
합 계	129,591	128,789	130,621	134,749	138,176	1.62%

〈그림 2-14〉 안양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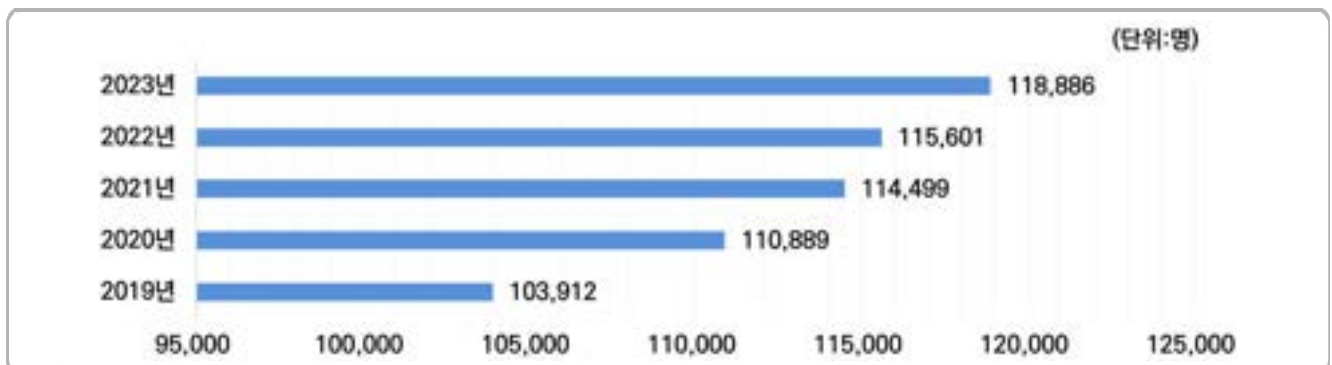
- 시흥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9.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8〉 시흥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2,400	12,579	12,666	12,523	12,368	-0.06%
고령자	41,403	46,782	50,915	54,756	59,745	9.60%
임산부	3,309	3,211	3,341	3,196	2,863	-3.55%
어린이	25,227	26,853	27,261	26,197	25,771	0.53%
영·유아를 동반한 자	21,573	21,464	20,316	18,929	18,139	-4.24%
합 계	103,912	110,889	114,499	115,601	118,886	3.42%

〈그림 2-15〉 시흥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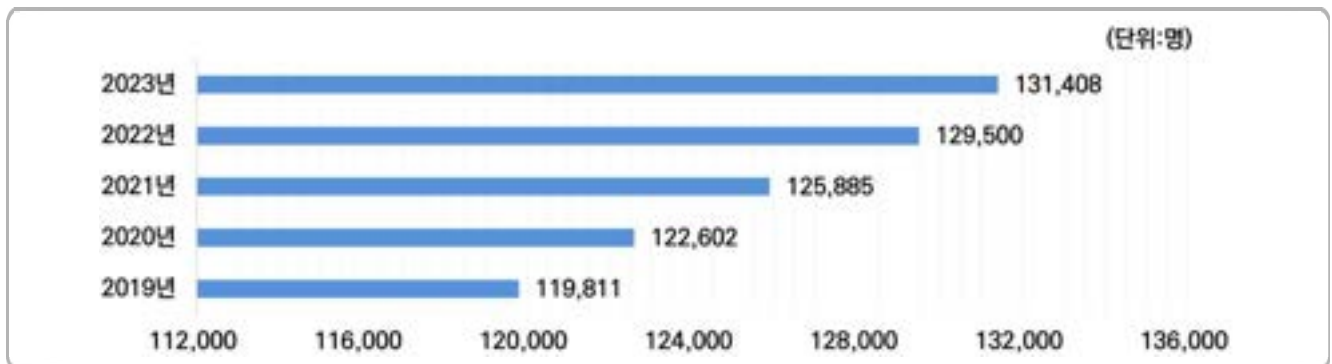
- 파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6.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29〉 파주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0,721	10,682	10,827	10,824	10,656	-0.15%
고령자	60,663	64,915	69,084	73,543	78,257	6.57%
임산부	3,077	2,691	2,542	2,730	2,428	-5.75%
어린이	25,597	25,810	25,925	25,192	24,183	-1.41%
영·유아를 동반한 자	19,753	18,504	17,507	17,211	15,884	-5.30%
합 계	119,811	122,602	125,885	129,500	131,408	2.34%

〈그림 2-16〉 파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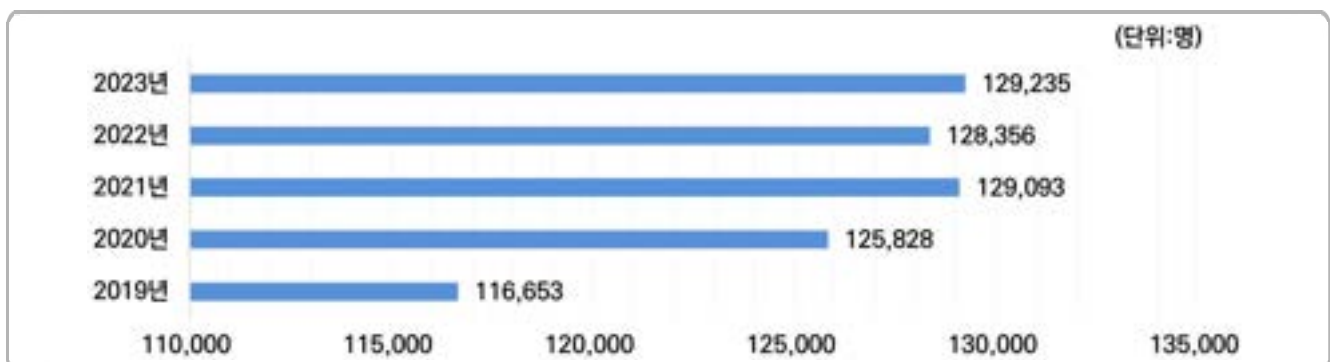
- 김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8.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0〉 김포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9,144	9,287	9,276	9,050	8,937	-0.57%
고령자	52,278	58,124	62,780	66,858	71,702	8.22%
임산부	3,160	3,164	3,360	3,209	2,765	-3.28%
어린이	28,867	31,526	31,835	29,793	28,176	-0.60%
영·유아를 동반한 자	23,204	23,727	21,842	19,446	17,655	-6.60%
합 계	116,653	125,828	129,093	128,356	129,235	2.59%

〈그림 2-17〉 김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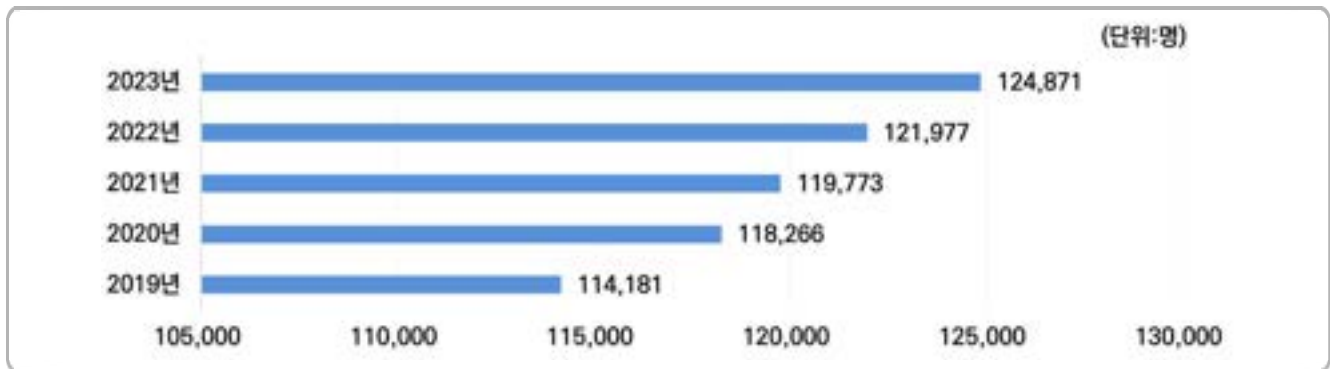
- 의정부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5.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1〉 의정부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1,218	11,142	10,964	10,683	10,391	-1.90%
고령자	65,272	70,369	73,525	77,555	82,104	5.90%
임산부	2,418	2,302	2,288	2,269	2,106	-3.39%
어린이	19,652	19,797	19,300	18,278	17,573	-2.76%
영·유아를 동반한 자	15,621	14,656	13,696	13,192	12,697	-5.05%
합 계	114,181	118,266	119,773	121,977	124,871	2.26%

〈그림 2-18〉 의정부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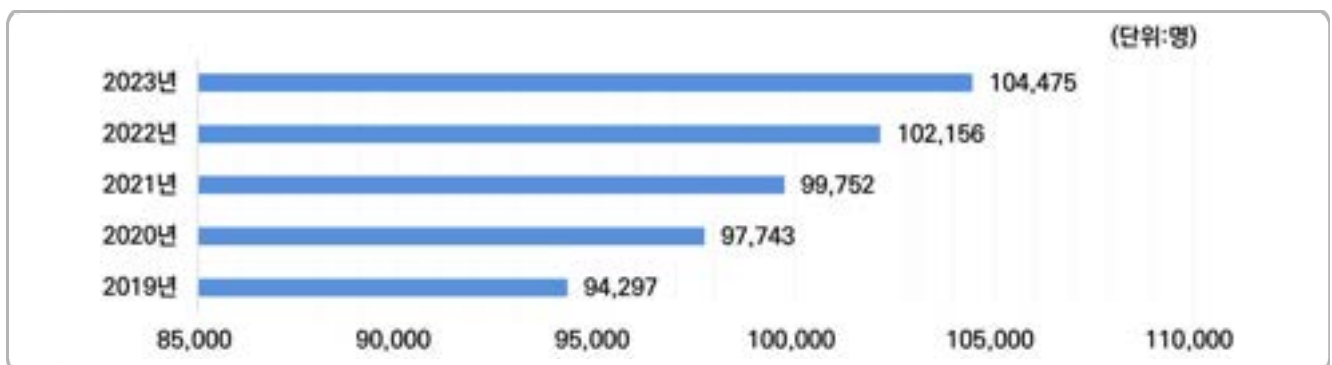
- 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8.64%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2〉 광주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9,068	9,033	8,936	8,817	8,638	-1.21%
고령자	46,344	51,079	55,328	59,448	64,032	8.42%
임산부	2,662	2,441	2,249	2,220	1,937	-7.64%
어린이	18,839	19,301	19,019	18,297	17,758	-1.47%
영·유아를 동반한 자	17,384	15,889	14,220	13,374	12,110	-8.64%
합 계	94,297	97,743	99,752	102,156	104,475	2.60%

〈그림 2-19〉 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하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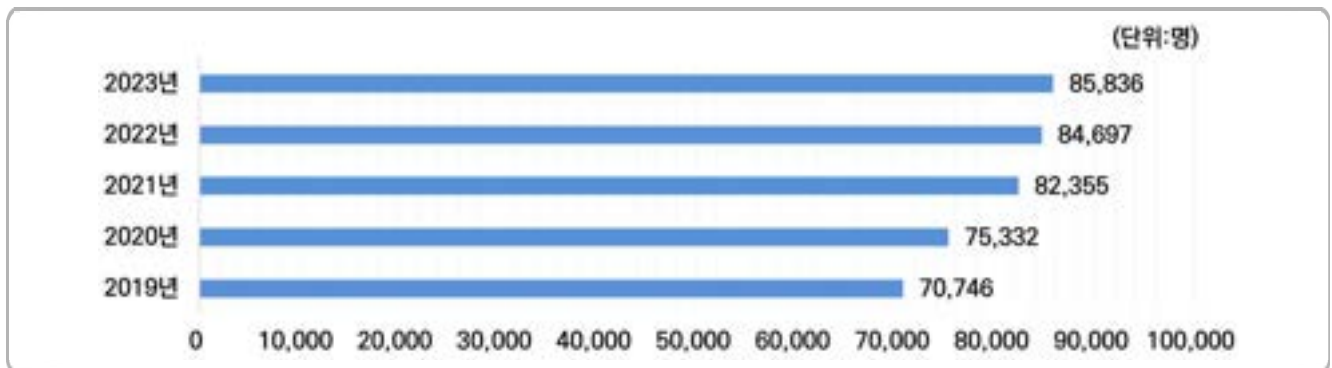
- 하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9.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3〉 하남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521	5,607	5,799	5,676	5,547	0.12%
고령자	33,597	37,573	41,540	44,618	47,583	9.09%
임산부	1,981	1,958	2,213	2,253	2,021	0.50%
어린이	15,968	16,924	18,928	18,943	18,497	3.74%
영·유아를 동반한 자	13,679	13,270	13,875	13,207	12,188	-2.84%
합 계	70,746	75,332	82,355	84,697	85,836	4.95%

〈그림 2-20〉 하남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광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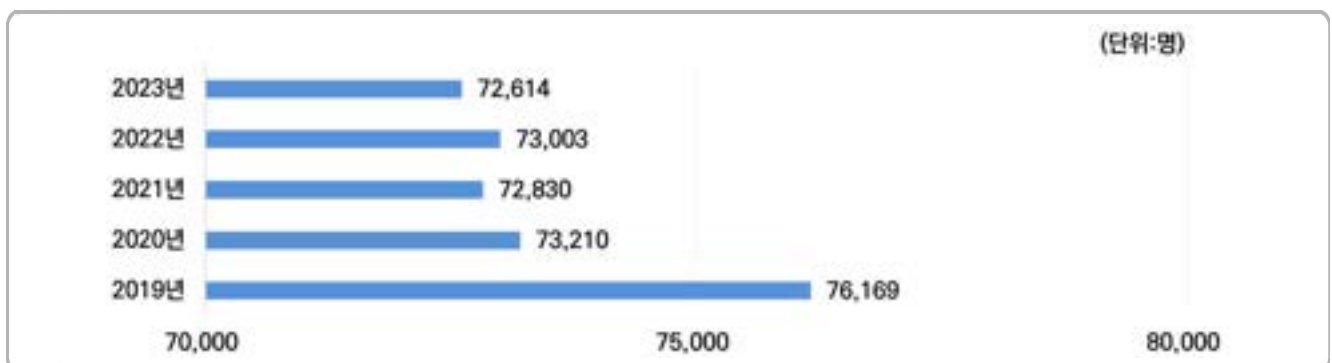
- 광명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9.31%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4〉 광명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7,221	6,577	6,302	6,027	5,660	-5.91%
고령자	41,397	41,683	43,045	45,128	46,870	3.15%
임산부	1,827	1,667	1,663	1,531	1,452	-5.58%
어린이	14,633	13,660	12,973	12,029	11,130	-6.61%
영·유아를 동반한 자	11,091	9,623	8,847	8,288	7,502	-9.31%
합 계	76,169	73,210	72,830	73,003	72,614	-1.19%

〈그림 2-21〉 광명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군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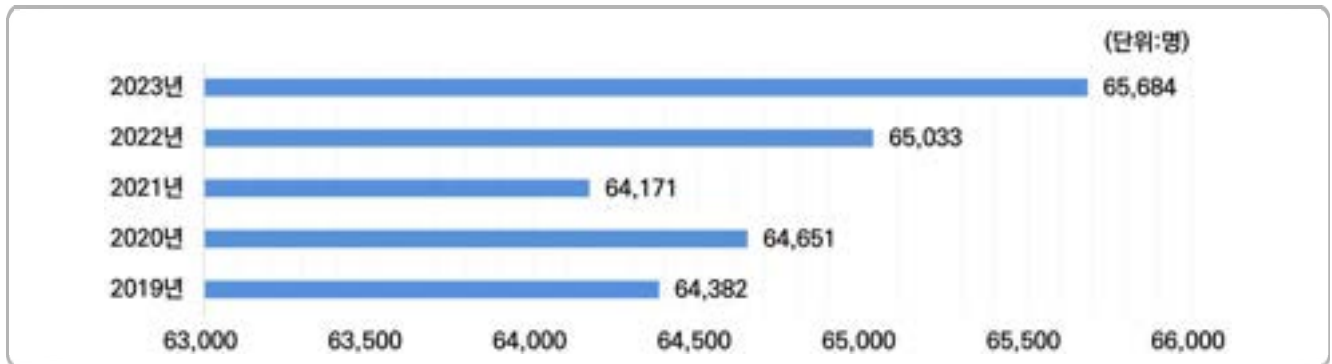
- 군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11.08%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5〉 군포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6,069	5,923	5,712	5,510	5,309	-3.29%
고령자	33,726	36,416	38,296	40,752	43,569	6.61%
임산부	1,985	1,682	1,529	1,530	1,398	-8.39%
어린이	12,472	11,731	10,968	10,116	9,075	-7.64%
영·유아를 동반한 자	10,130	8,899	7,666	7,125	6,333	-11.08%
합 계	64,382	64,651	64,171	65,033	65,684	0.50%

〈그림 2-22〉 군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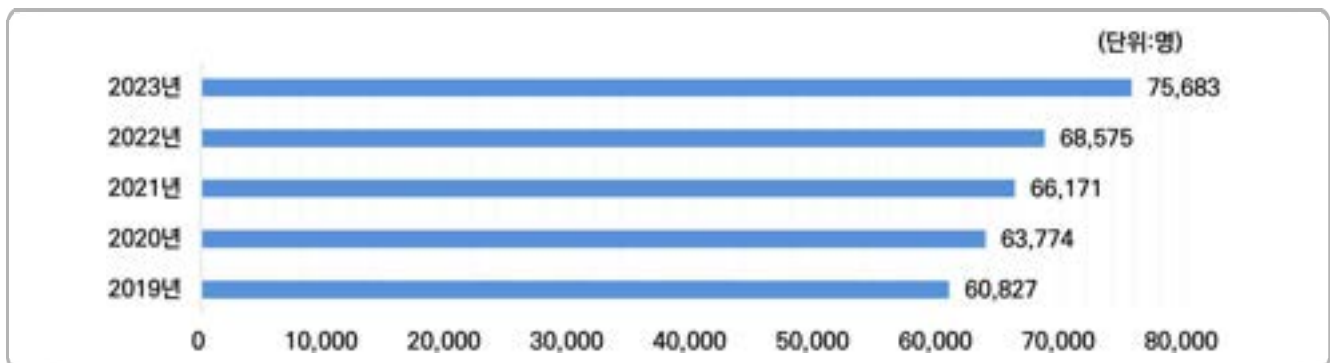
- 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8.42%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6〉 양주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6,345	6,346	6,266	6,205	6,486	0.55%
고령자	33,412	36,245	39,036	41,886	46,170	8.42%
임산부	1,256	1,243	1,218	1,203	1,389	2.55%
어린이	11,304	11,542	11,755	11,533	12,530	2.61%
영·유아를 동반한 자	8,510	8,398	7,896	7,748	9,108	1.71%
합 계	60,827	63,774	66,171	68,575	75,683	5.61%

〈그림 2-23〉 양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오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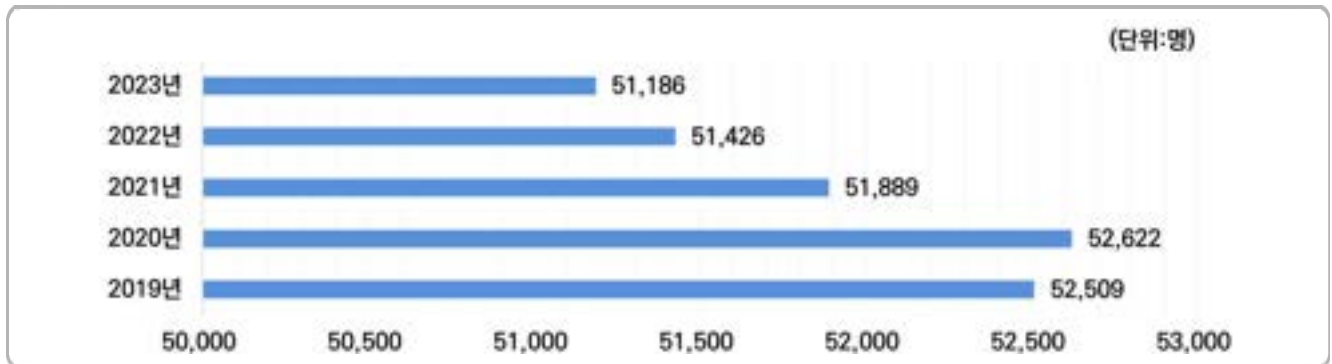
- 오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11.48%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7〉 오산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280	5,272	5,215	5,061	5,027	-1.22%
고령자	20,257	22,060	23,589	25,237	26,964	7.41%
임산부	1,709	1,506	1,403	1,304	1,056	-11.34%
어린이	14,186	13,949	13,196	12,237	11,337	-5.45%
영·유아를 동반한 자	11,077	9,835	8,486	7,587	6,802	-11.48%
합 계	52,509	52,622	51,889	51,426	51,186	-0.64%

〈그림 2-24〉 오산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이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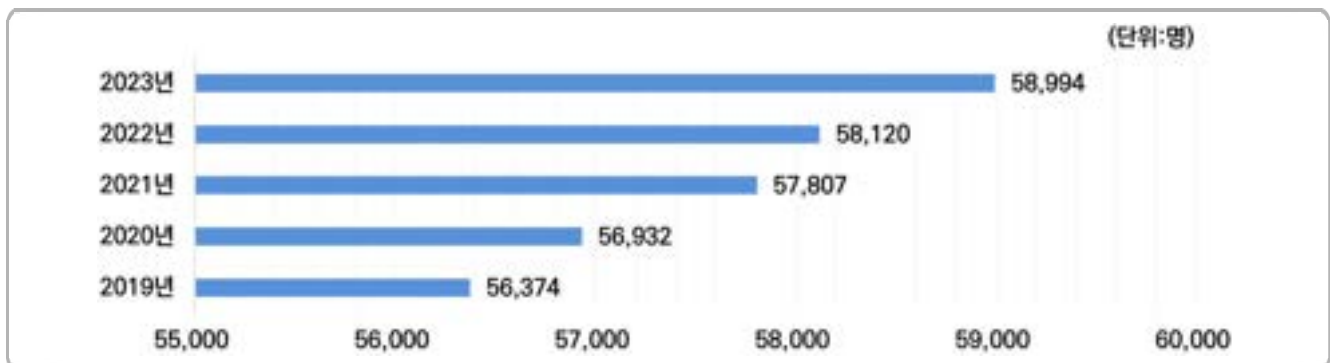
- 이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8.78%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8〉 이천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773	5,714	5,674	5,570	5,424	-1.55%
고령자	29,245	31,134	33,034	34,750	36,905	5.99%
임산부	1,359	1,261	1,216	1,190	1,160	-3.88%
어린이	11,095	10,874	10,603	9,949	9,340	-4.21%
영·유아를 동반한 자	8,902	7,949	7,280	6,661	6,165	-8.78%
합 계	56,374	56,932	57,807	58,120	58,994	1.14%

〈그림 2-25〉 이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안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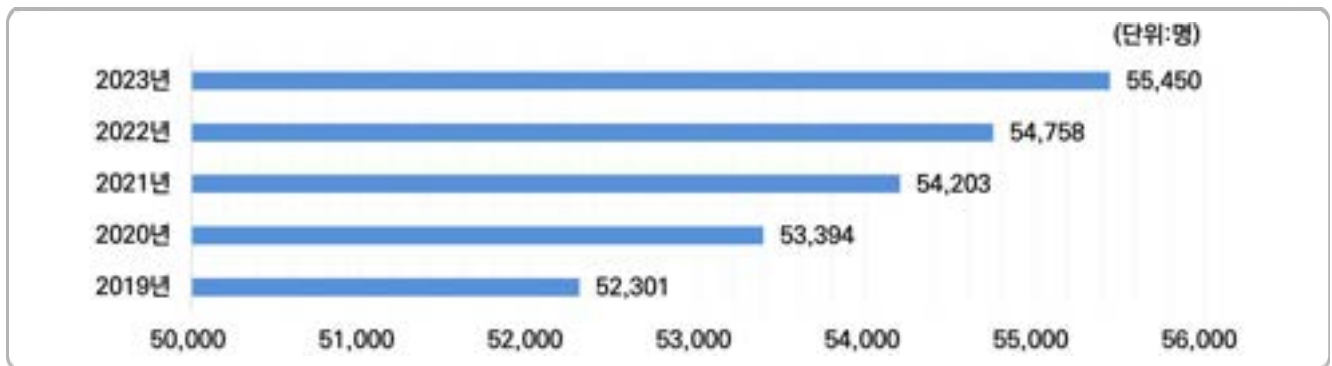
• 안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8.86%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39〉 안성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631	5,671	5,604	5,435	5,319	-1.41%
고령자	30,729	32,844	34,629	36,284	38,191	5.59%
임산부	1,001	831	847	843	727	-7.68%
어린이	8,615	8,424	7,947	7,414	6,848	-5.58%
영·유아를 동반한 자	6,325	5,624	5,176	4,782	4,365	-8.86%
합 계	52,301	53,394	54,203	54,758	55,450	1.47%

〈그림 2-26〉 안성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구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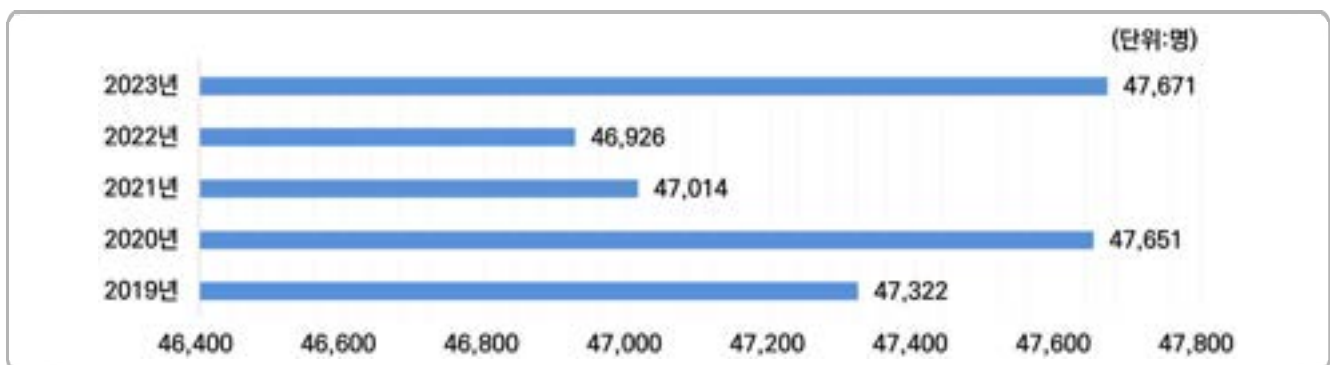
• 구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10.69%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0〉 구리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4,642	4,475	4,322	4,136	4,030	-3.47%
고령자	25,159	26,962	27,820	29,173	31,009	5.37%
임산부	1,176	1,015	926	883	815	-8.76%
어린이	9,040	8,753	8,307	7,677	7,169	-5.63%
영·유아를 동반한 자	7,305	6,446	5,639	5,057	4,648	-10.69%
합 계	47,322	47,651	47,014	46,926	47,671	0.18%

〈그림 2-27〉 구리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의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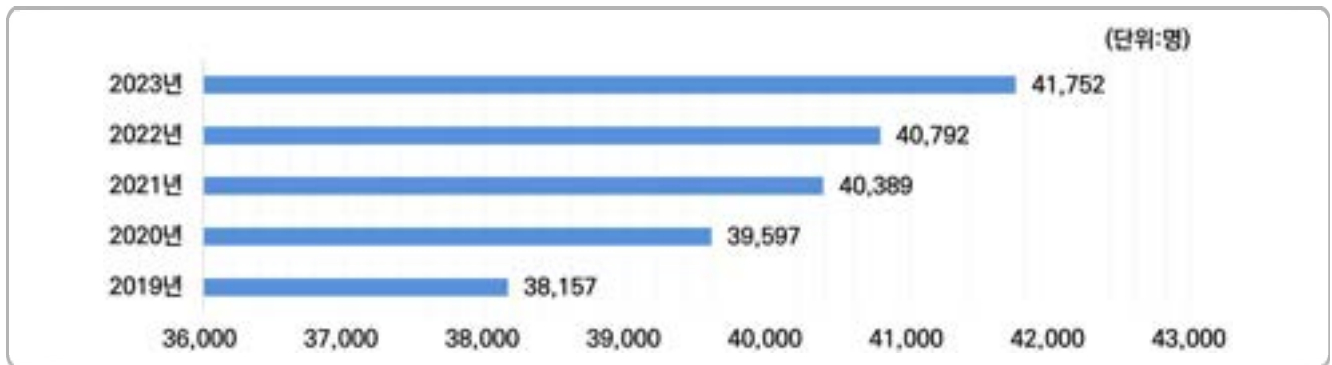
- 의왕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6.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41〉 의왕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3,310	3,213	3,106	2,967	2,823	-3.90%
고령자	20,823	22,280	23,644	24,954	26,477	6.19%
임산부	923	942	1,008	931	832	-2.56%
어린이	7,090	7,274	7,203	6,900	6,523	-2.06%
영·유아를 동반한 자	6,011	5,888	5,428	5,040	5,097	-4.04%
합 계	38,157	39,597	40,389	40,792	41,752	2.28%

〈그림 2-28〉 의왕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포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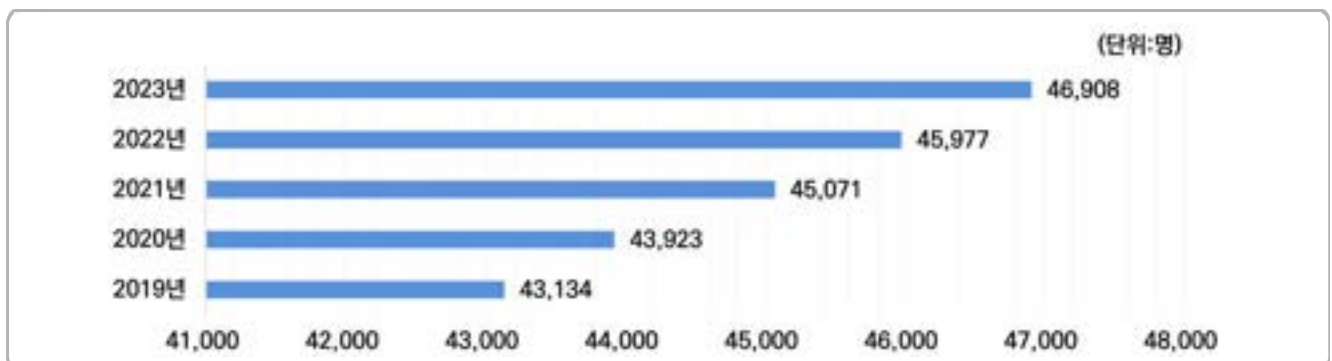
- 포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9.46%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2〉 포천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584	5,448	5,345	5,148	4,893	-3.25%
고령자	27,615	29,314	31,080	32,863	34,863	6.00%
임산부	617	582	536	552	506	-4.84%
어린이	5,252	4,955	4,722	4,325	3,914	-7.09%
영·유아를 동반한 자	4,066	3,624	3,388	3,089	2,732	-9.46%
합 계	43,134	43,923	45,071	45,977	46,908	2.12%

〈그림 2-29〉 포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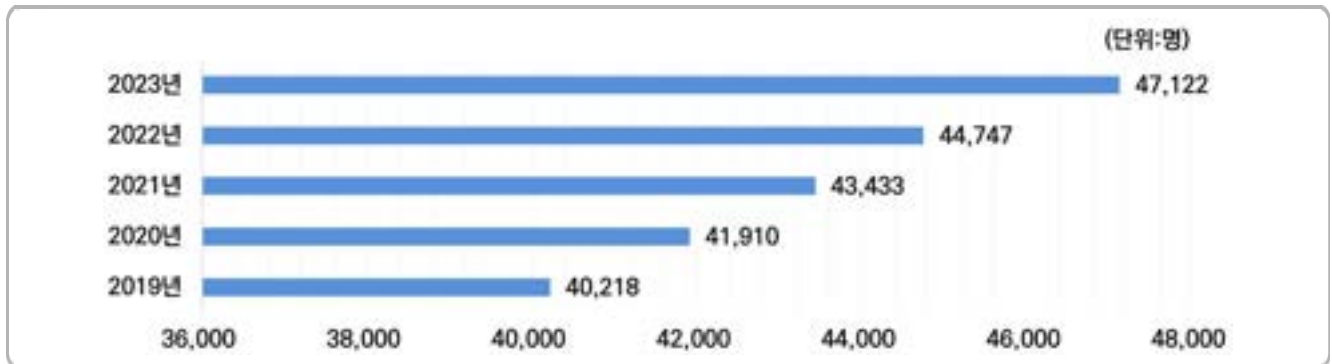
• 양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6.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43〉 양평군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3,620	3,583	3,510	3,440	3,369	-1.78%
고령자	28,448	30,536	32,375	34,217	36,824	6.66%
임산부	530	493	474	459	447	-4.17%
어린이	4,446	4,355	4,328	4,099	3,946	-2.94%
영·유아를 동반한 자	3,174	2,943	2,746	2,532	2,536	-5.46%
합 계	40,218	41,910	43,433	44,747	47,122	4.04%

〈그림 2-30〉 양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여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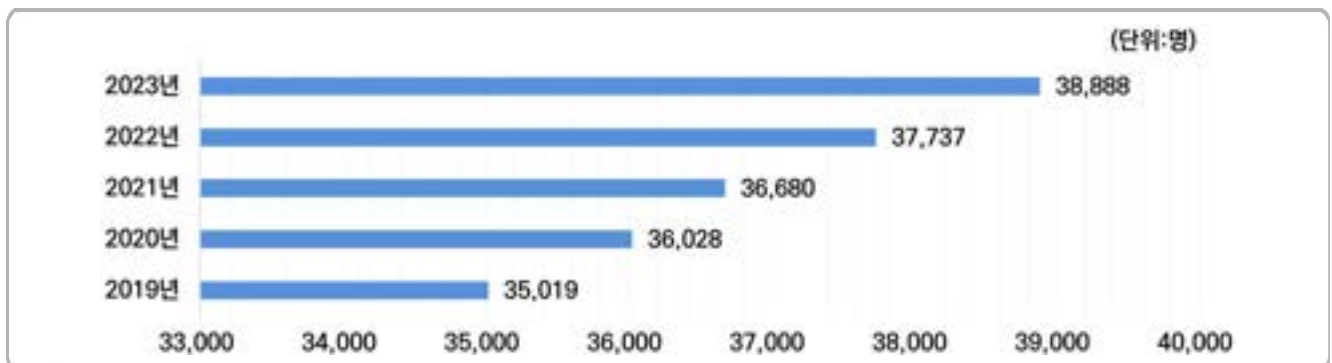
• 여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8.35%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4〉 여주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3,644	3,585	3,524	3,440	3,345	-2.12%
고령자	23,068	24,475	25,854	27,269	28,895	5.79%
임산부	591	554	457	468	417	-8.35%
어린이	4,402	4,342	4,105	3,906	3,675	-4.41%
영·유아를 동반한 자	3,314	3,072	2,740	2,654	2,556	-6.29%
합 계	35,019	36,028	36,680	37,737	38,888	2.65%

〈그림 2-31〉 여주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동두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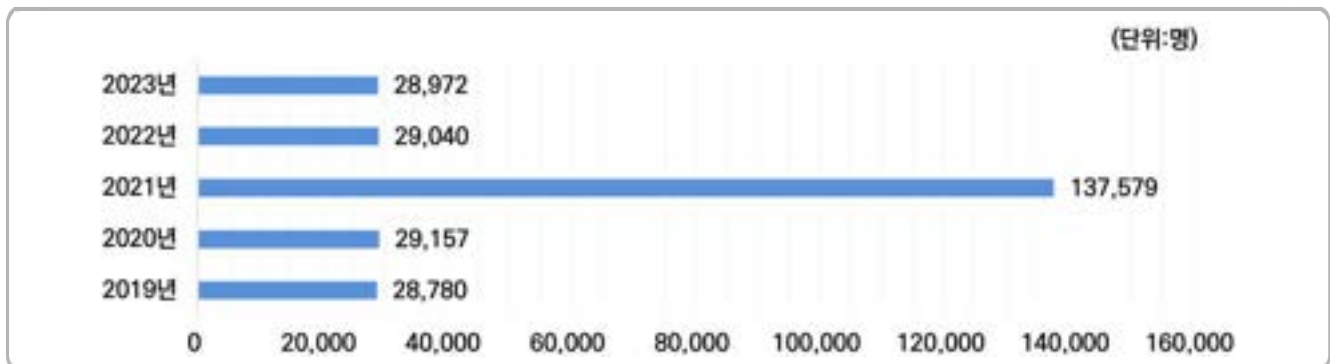
- 동두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12.11%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5〉 동두천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3,088	3,069	13,677	2,925	2,787	-2.53%
고령자	18,344	19,397	70,123	20,464	21,372	3.89%
임산부	426	393	3,714	351	292	-9.01%
어린이	4,095	3,810	28,315	3,316	2,834	-8.79%
영·유아를 동반한 자	2,827	2,488	21,750	1,984	1,687	-12.11%
합 계	28,780	29,157	137,579	29,040	28,972	0.17%

〈그림 2-32〉 동두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과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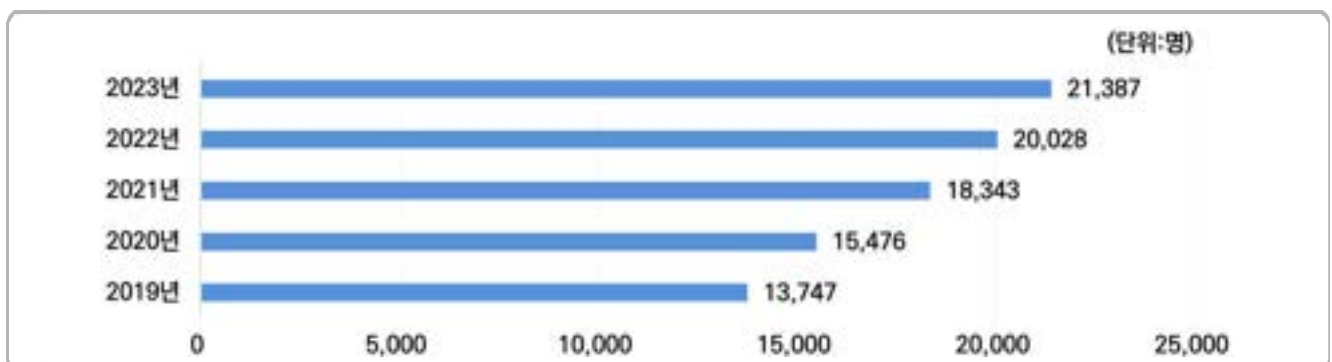
- 과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20.72%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46〉 과천시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874	914	1,000	1,023	1,022	3.99%
고령자	8,084	8,994	10,358	11,140	11,771	9.85%
임산부	282	393	497	559	599	20.72%
어린이	2,574	2,930	3,690	4,127	4,568	15.42%
영·유아를 동반한 자	1,933	2,245	2,798	3,179	3,427	15.39%
합 계	13,747	15,476	18,343	20,028	21,387	11.68%

〈그림 2-33〉 과천시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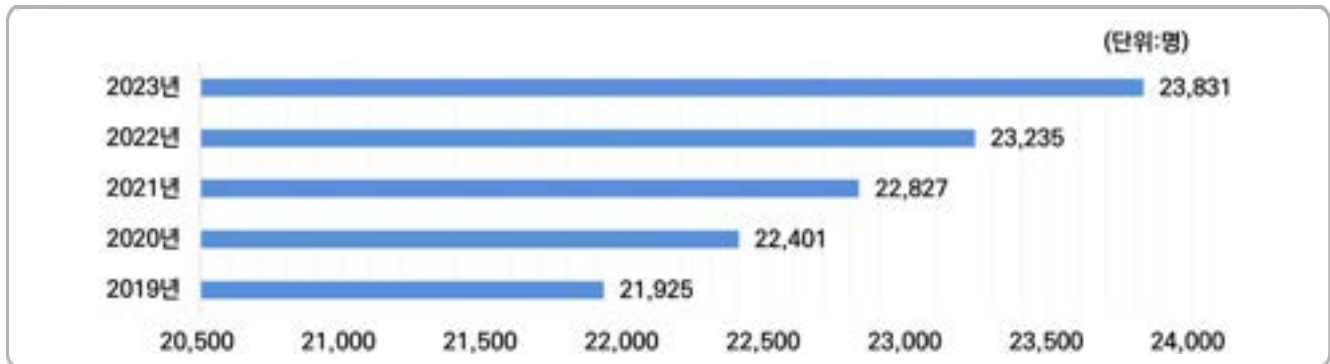
- 가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8.83%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7〉 가평군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2,634	2,468	2,395	2,294	2,174	-4.69%
고령자	15,423	16,324	17,035	17,841	18,713	4.95%
임산부	261	265	242	199	181	-8.74%
어린이	2,002	1,900	1,828	1,703	1,654	-4.66%
영·유아를 동반한 자	1,605	1,444	1,327	1,198	1,109	-8.83%
합 계	21,925	22,401	22,827	23,235	23,831	2.11%

〈그림 2-34〉 가평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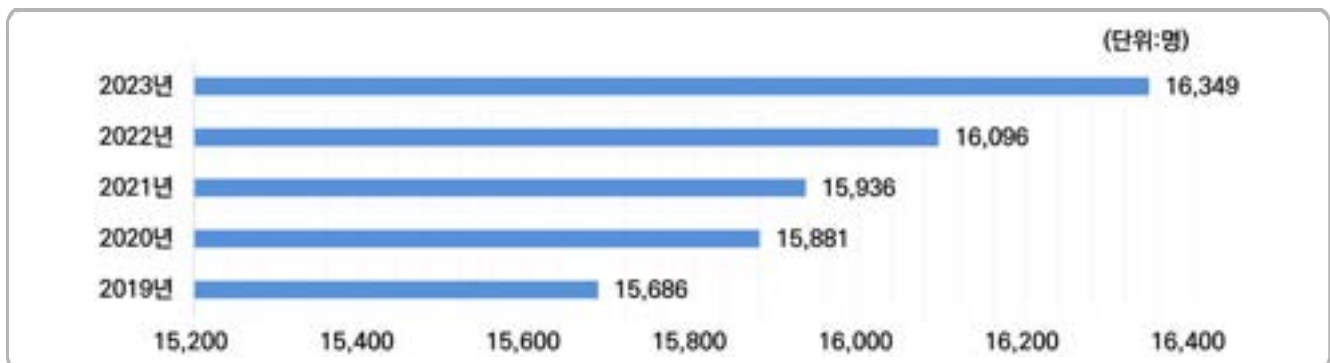
- 연천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13.63%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2-48〉 연천군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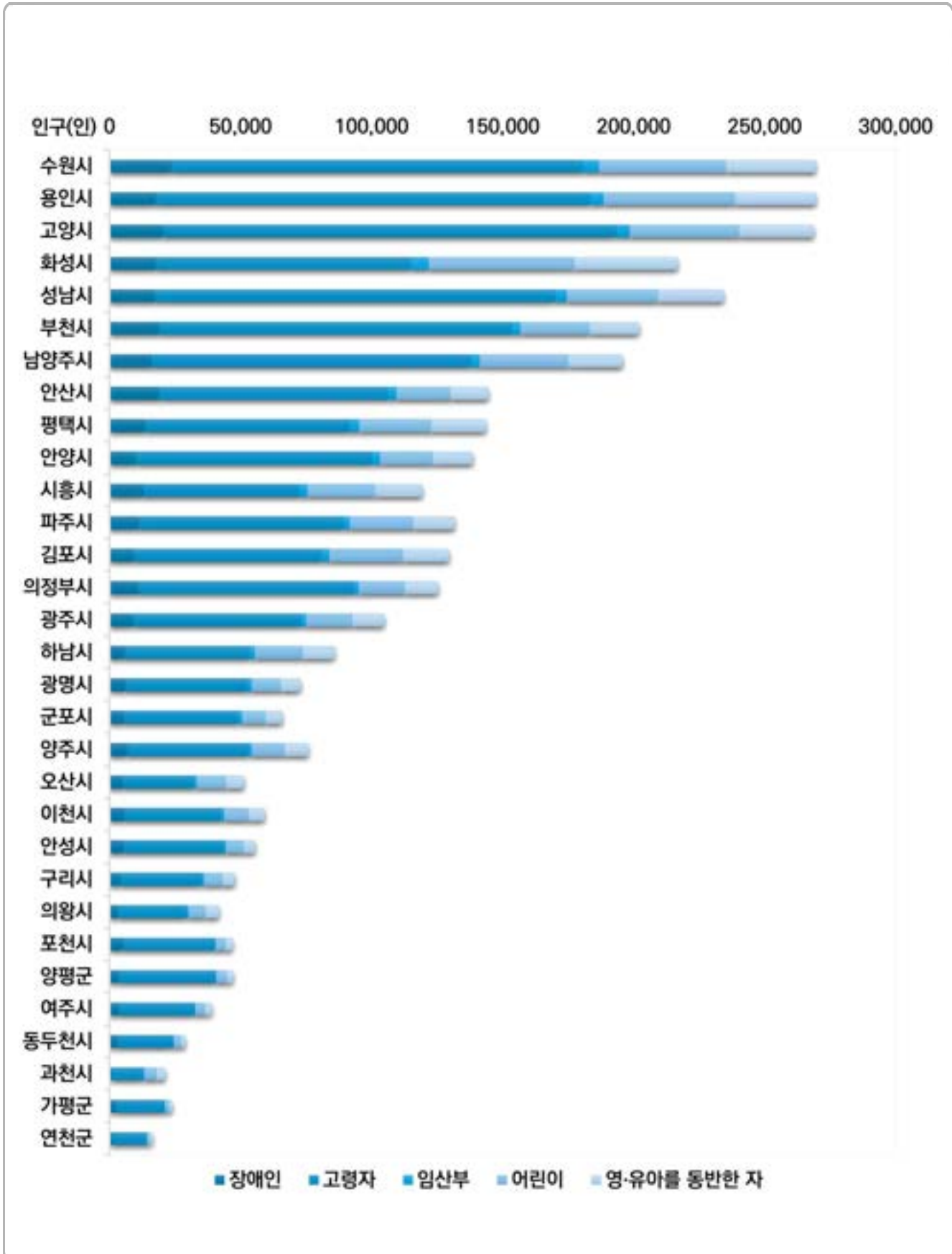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1,482	1,418	1,364	1,315	1,243	-4.30%
고령자	10,990	11,490	11,814	12,319	12,882	4.05%
임산부	275	243	217	182	153	-13.63%
어린이	1,516	1,477	1,433	1,279	1,182	-6.03%
영·유아를 동반한 자	1,423	1,253	1,108	1,001	889	-11.10%
합 계	15,686	15,881	15,936	16,096	16,349	1.04%

〈그림 2-35〉 연천군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그림 2-36〉 경기도 시·군별 교통약자 인구 현황 (2023년)



1.4 교통약자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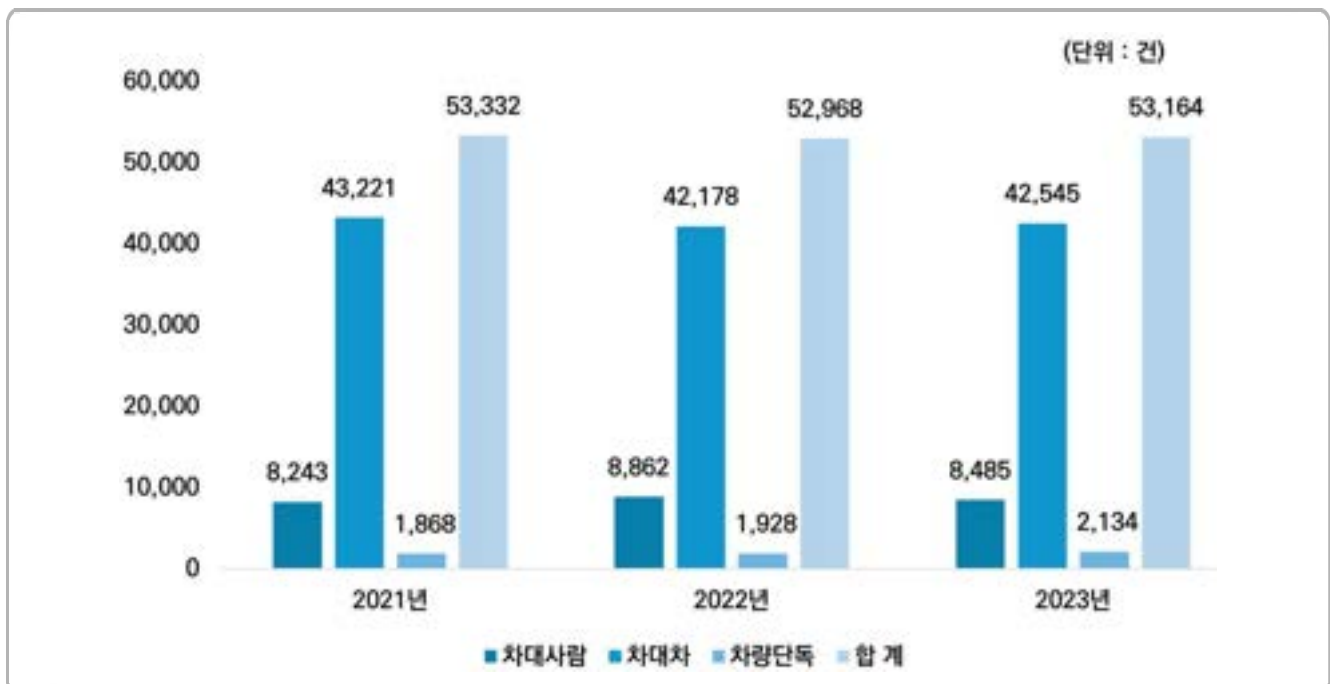
1) 경기도 교통사고

경기도 교통사고

〈표 2-49〉 경기도 유형별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합 계	53,332	537	78,225	52,968	547	77,377	53,164	502	78,234	
차 대 사 람	소 계	8,243	184	8,490	8,862	181	9,158	8,485	163	8,875
	횡단중	2,873	69	2,975	3,040	89	3,152	2,766	84	2,884
	차도통행중	721	26	734	1,008	27	1,009	822	21	838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307	5	307	383	9	388	320	2	327
	보도통행중	468	6	493	661	6	702	623	4	674
	기타	3,874	78	3,981	3,770	50	3,907	3,954	52	4,152
	소 계	43,221	259	67,563	42,178	254	66,106	42,545	214	66,980
차 대 차	충돌	19,605	98	29,692	19,164	102	29,271	18,886	66	28,508
	추돌	9,105	86	16,542	8,833	86	16,049	8,877	76	16,560
	기타	14,511	75	21,329	14,181	66	20,786	14,782	72	21,912
차 량 단 독	소 계	1,868	94	2,172	1,928	112	2,113	2,134	125	2,379
	충돌	612	50	760	602	57	712	646	77	791
	도로이탈	42	3	60	58	10	63	43	8	44
	전도전복	204	10	246	209	18	220	184	15	184
	기타	1,010	31	1,106	1,059	27	1,118	1,261	25	1,360

〈그림 2-37〉 경기도 유형별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2) 경기도 시·군별 교통약자 교통사고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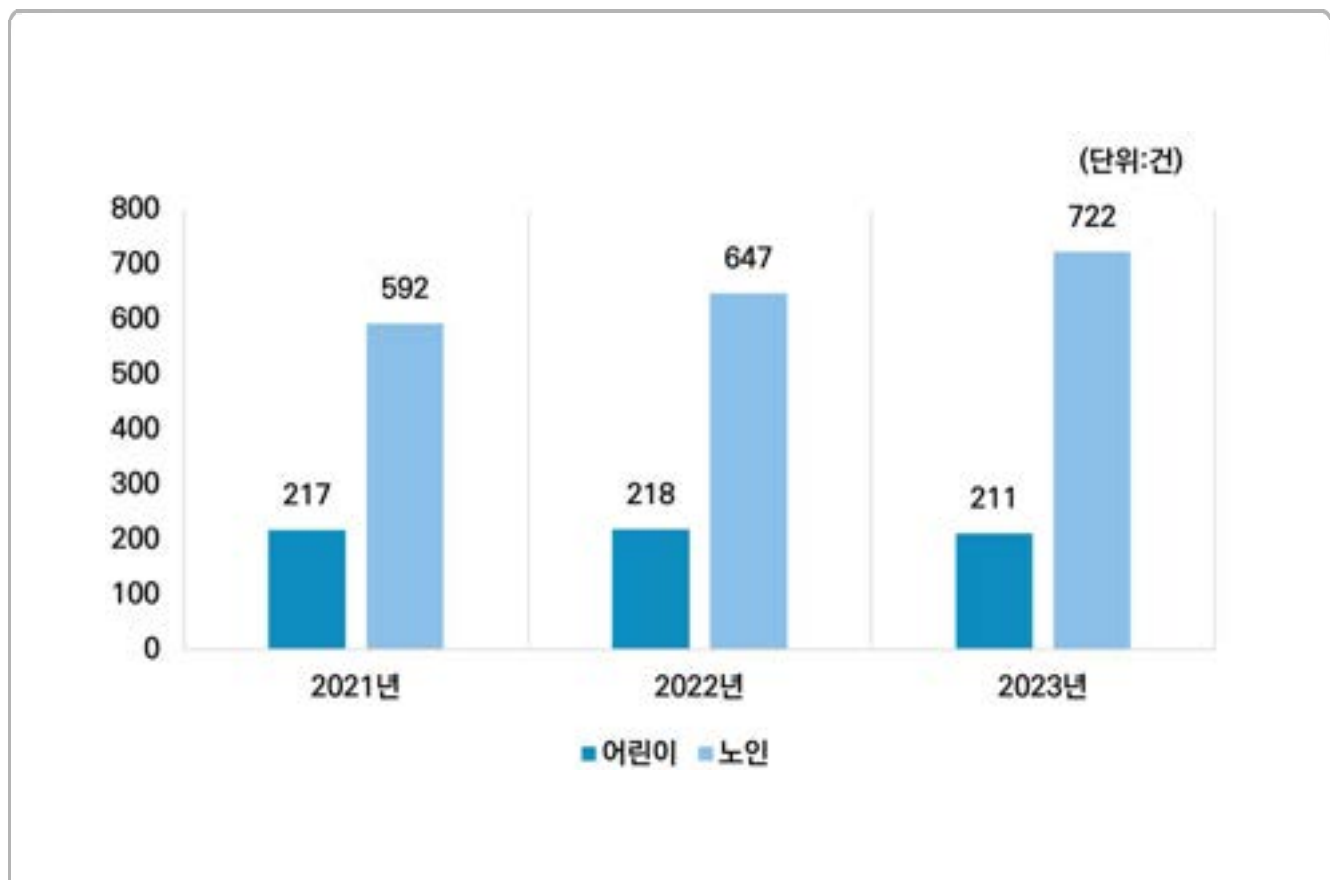
- 수원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1%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 증가율을 보임

〈표 2-50〉 수원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217	218	211	-0.01
	사망자수	0	0	2	-
	부상자수	253	264	257	0.01
노인	사고건수	592	647	722	0.10
	사망자수	8	11	13	0.27
	부상자수	641	693	791	0.11

〈그림 2-38〉 수원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용인시

- 용인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8%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6% 증가율을 보임

〈표 2-51〉 용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219	193	187	-0.08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266	255	231	-0.07
노인	사고건수	471	470	532	0.06
	사망자수	9	12	10	0.05
	부상자수	511	532	645	0.12

〈그림 2-39〉 용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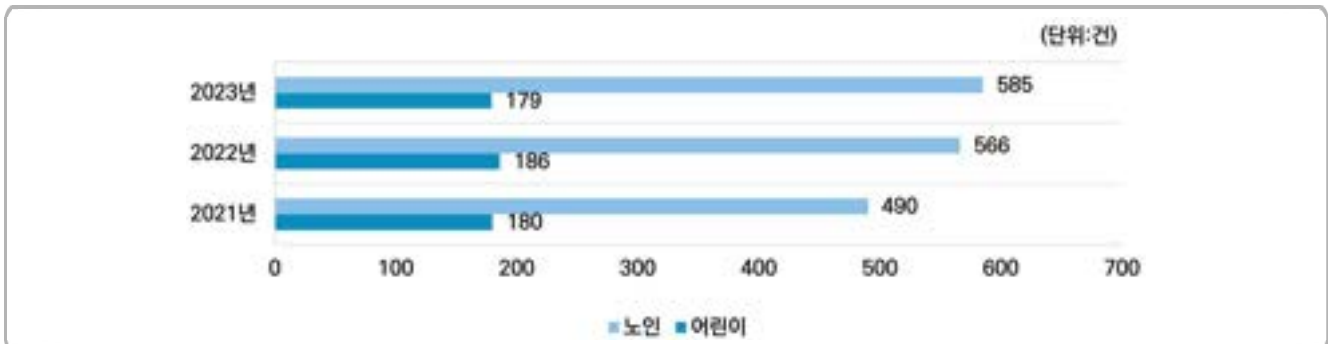
- 고양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1%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9% 증가율을 보임

〈표 2-52〉 고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80	186	179	-0.01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211	216	215	0.01
노인	사고건수	490	566	585	0.09
	사망자수	17	16	15	-0.06
	부상자수	520	605	640	0.11

〈그림 2-40〉 고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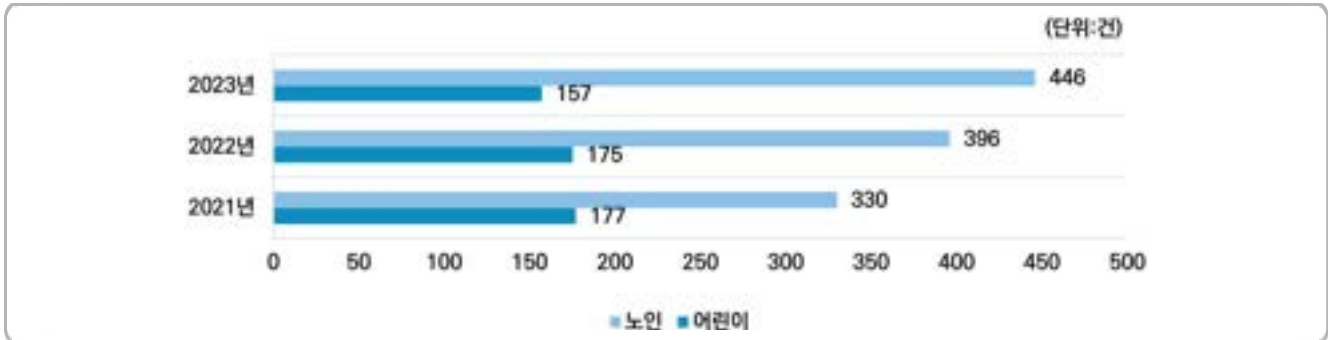
화성시

-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6%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6% 증가율을 보임

〈표 2-53〉 화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77	175	157	-0.0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222	206	205	-0.04
노인	사고건수	330	396	446	0.16
	사망자수	7	12	10	0.20
	부상자수	382	433	503	0.15

〈그림 2-41〉 화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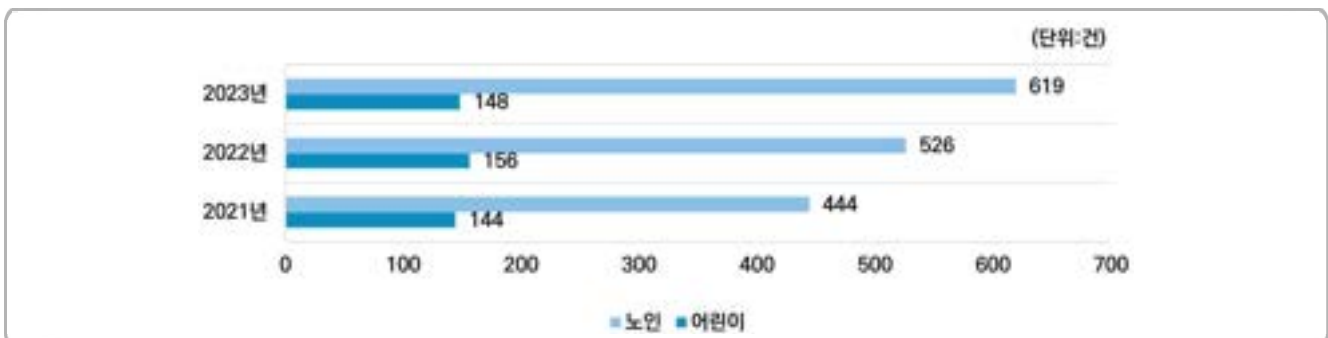
- 성남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1%,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8% 증가율을 보임

〈표 2-54〉 성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44	156	148	0.01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76	192	181	0.01
노인	사고건수	444	526	619	0.18
	사망자수	5	6	4	-0.11
	부상자수	482	562	742	0.24

〈그림 2-42〉 성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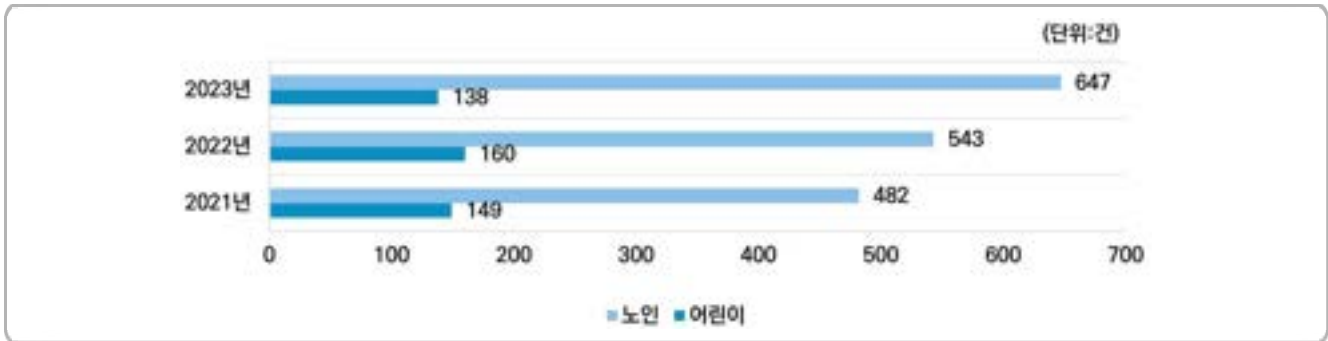
- 부천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4%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6% 증가율을 보임

〈표 2-55〉 부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49	160	138	-0.04
	사망자수	0	0	1	-
	부상자수	168	186	157	-0.03
노인	사고건수	482	543	647	0.16
	사망자수	7	7	8	0.07
	부상자수	509	567	676	0.15

〈그림 2-43〉 부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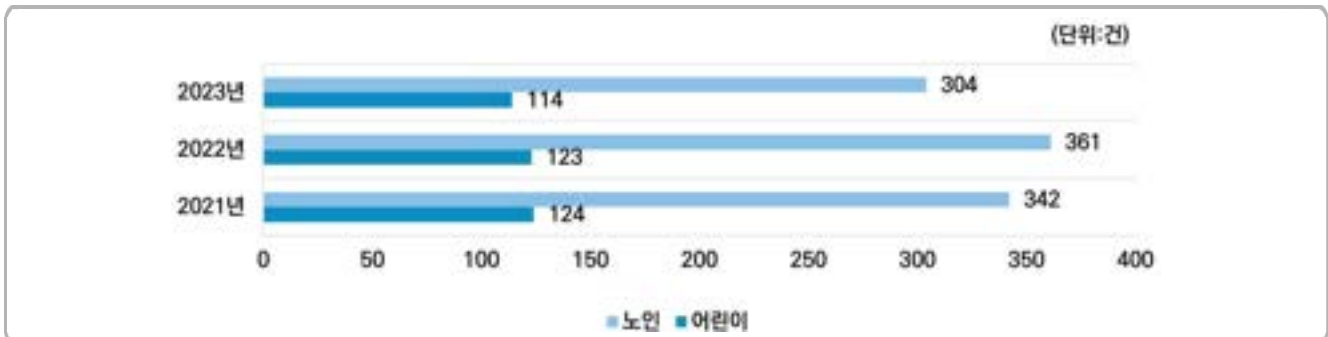
- 남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4%,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6% 감소율을 보임

〈표 2-56〉 남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24	123	114	-0.04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47	153	145	-0.01
노인	사고건수	342	361	304	-0.06
	사망자수	7	11	9	0.13
	부상자수	378	391	337	-0.06

〈그림 2-44〉 남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안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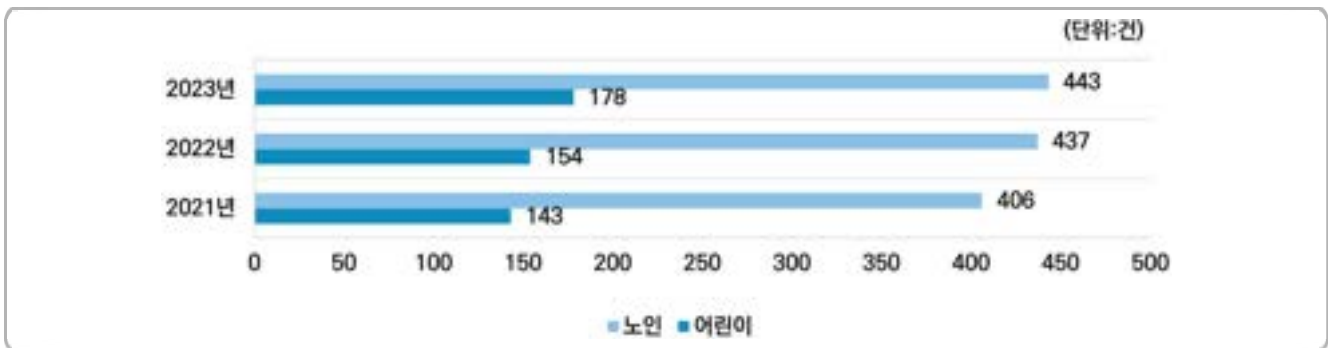
- 안산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2%,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4% 증가율을 보임

〈표 2-57〉 안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43	154	178	0.12
	사망자수	0	0	1	-
	부상자수	177	193	226	0.13
노인	사고건수	406	437	443	0.04
	사망자수	8	10	6	-0.13
	부상자수	426	470	486	0.07

〈그림 2-45〉 안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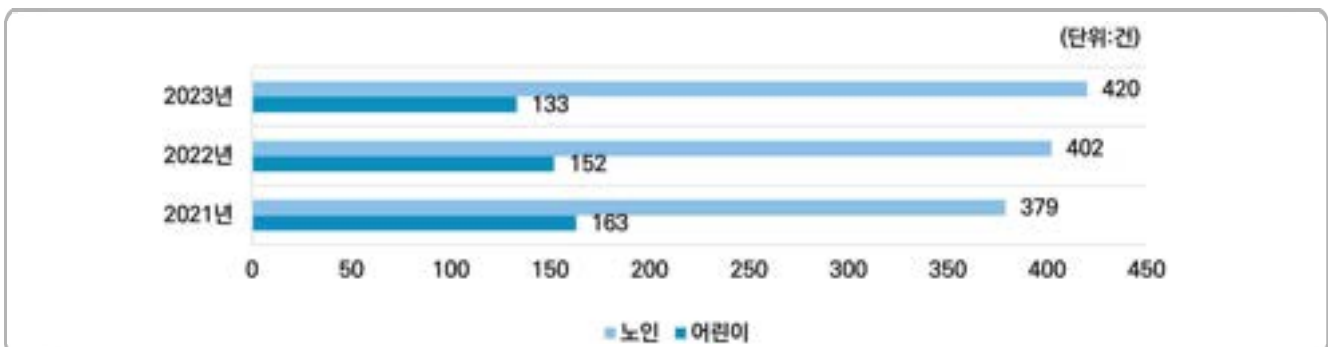
- 평택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5% 증가율을 보임

〈표 2-58〉 평택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63	152	133	-0.10
	사망자수	1	1	1	0.00
	부상자수	201	181	168	-0.09
노인	사고건수	379	402	420	0.05
	사망자수	9	13	13	0.20
	부상자수	410	435	475	0.08

〈그림 2-46〉 평택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안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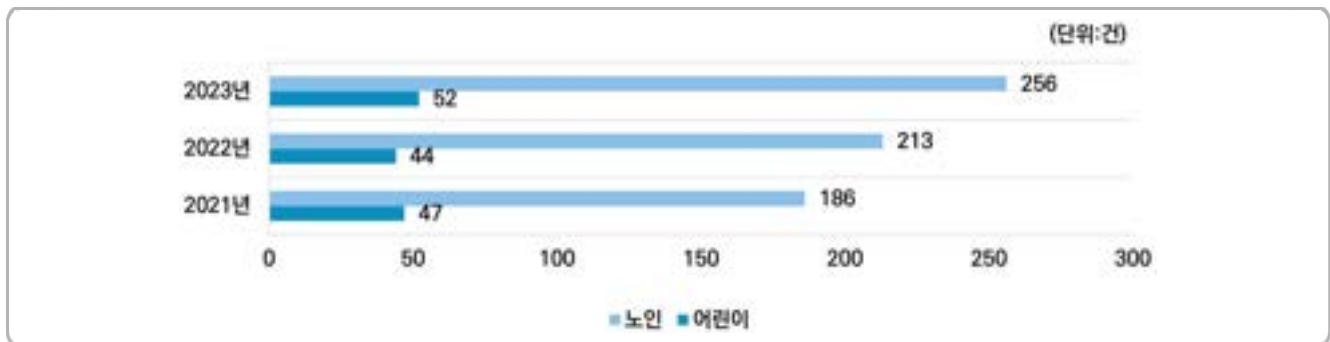
- 안양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5%,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7% 증가율을 보임

〈표 2-59〉 안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47	44	52	0.05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56	57	60	0.04
노인	사고건수	186	213	256	0.17
	사망자수	4	5	11	0.66
	부상자수	190	234	267	0.19

〈그림 2-47〉 안양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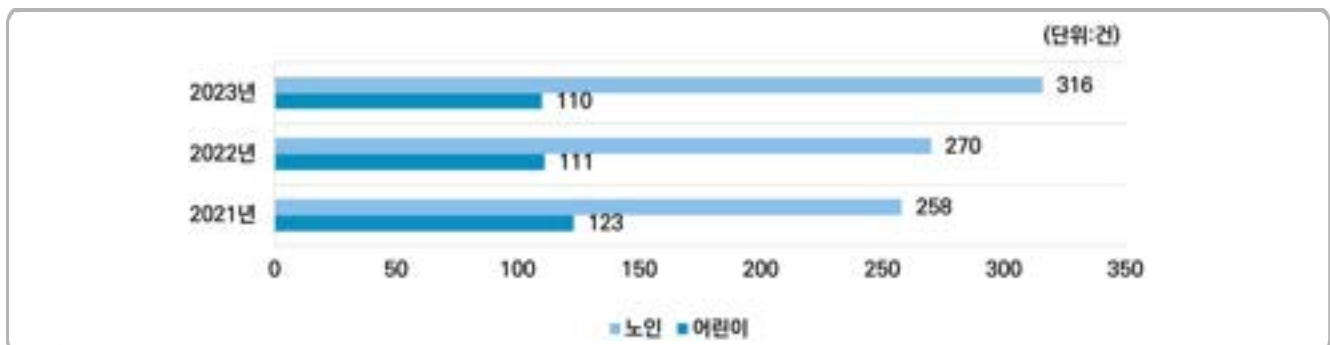
- 시흥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5%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1% 증가율을 보임

〈표 2-60〉 시흥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23	111	110	-0.05
	사망자수	2	0	0	-1.00
	부상자수	163	136	149	-0.04
노인	사고건수	258	270	316	0.11
	사망자수	13	5	9	-0.17
	부상자수	273	299	344	0.12

〈그림 2-48〉 시흥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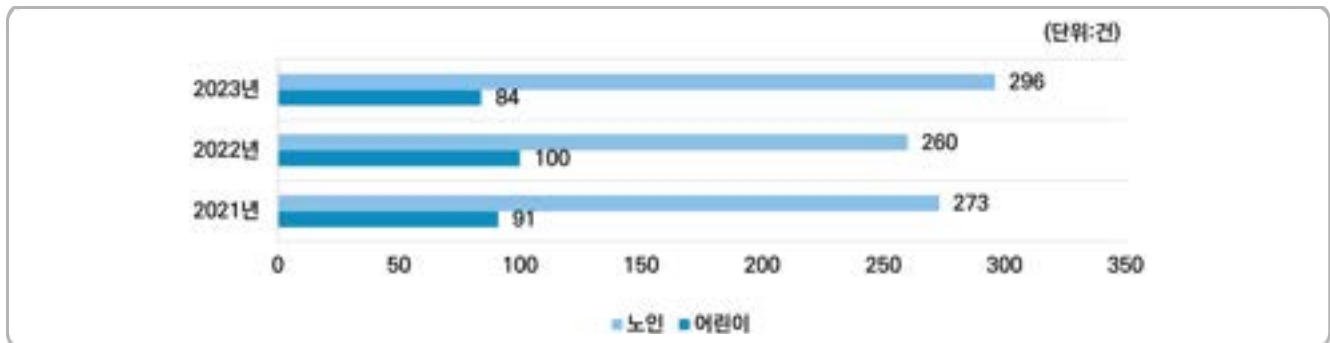
- 파주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4%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4% 증가율을 보임

〈표 2-61〉 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91	100	84	-0.04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08	135	99	-0.04
노인	사고건수	273	260	296	0.04
	사망자수	11	7	8	-0.15
	부상자수	298	299	336	0.06

〈그림 2-49〉 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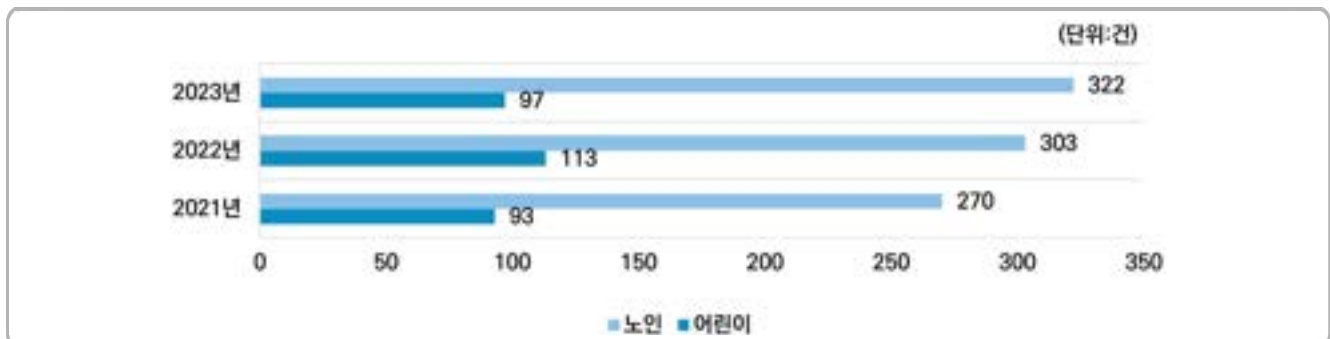
- 김포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2%,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9% 증가율을 보임

〈표 2-62〉 김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93	113	97	0.02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10	141	128	0.08
노인	사고건수	270	303	322	0.09
	사망자수	7	3	3	-0.35
	부상자수	298	344	365	0.11

〈그림 2-50〉 김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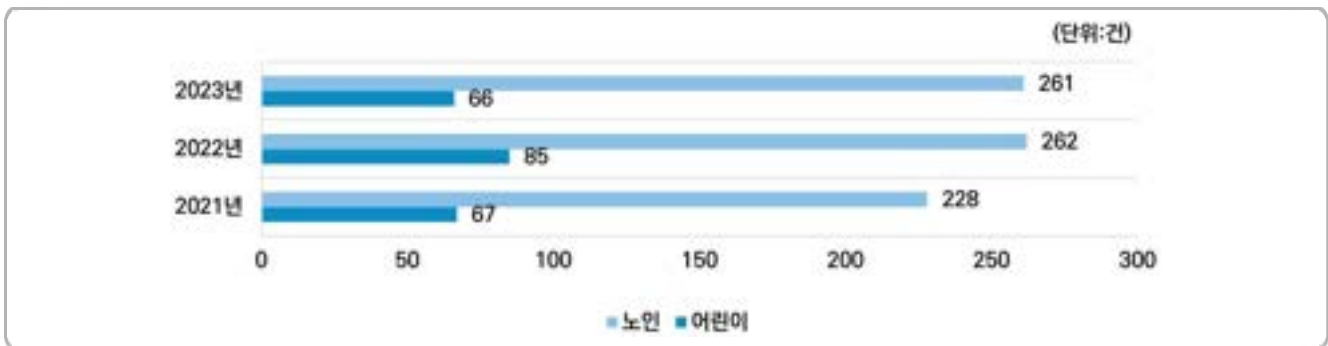
- 의정부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1%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7% 증가율을 보임

〈표 2-63〉 의정부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67	85	66	-0.01
	사망자수	2	0	0	-1.00
	부상자수	80	99	81	0.01
노인	사고건수	228	262	261	0.07
	사망자수	8	4	6	-0.13
	부상자수	244	291	285	0.08

〈그림 2-51〉 의정부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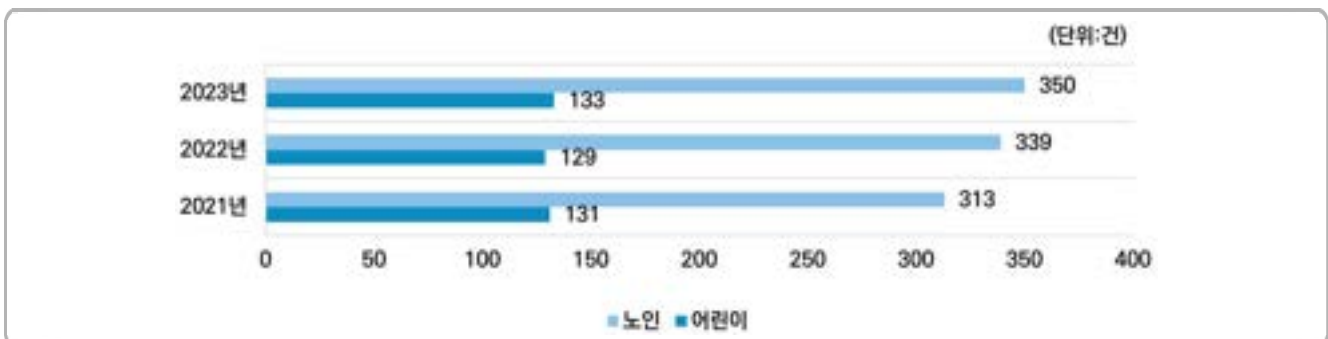
-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1%,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6% 증가율을 보임

〈표 2-64〉 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31	129	133	0.01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75	182	179	0.01
노인	사고건수	313	339	350	0.06
	사망자수	7	1	7	0.00
	부상자수	369	366	413	0.06

〈그림 2-52〉 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하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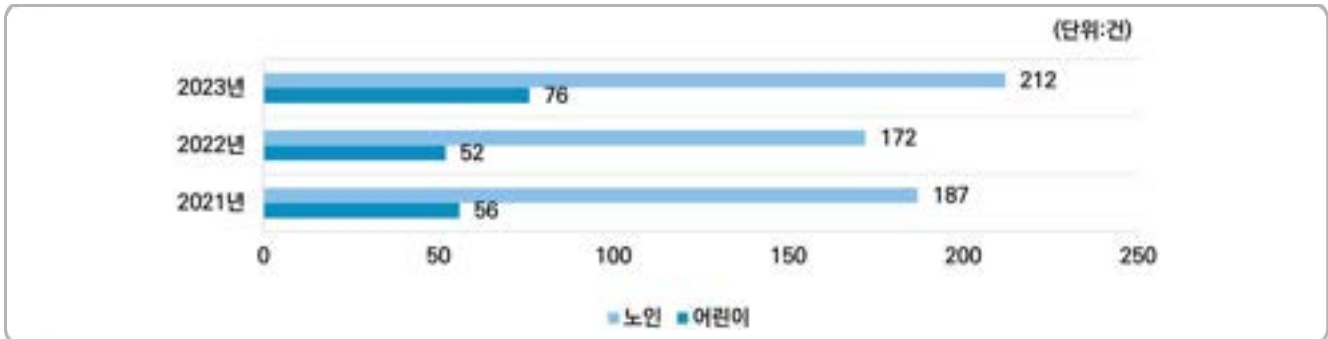
- 하남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6%,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6% 증가율을 보임

〈표 2-65〉 하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56	52	76	0.1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69	70	85	0.11
노인	사고건수	187	172	212	0.06
	사망자수	2	2	3	0.22
	부상자수	208	190	247	0.09

〈그림 2-53〉 하남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광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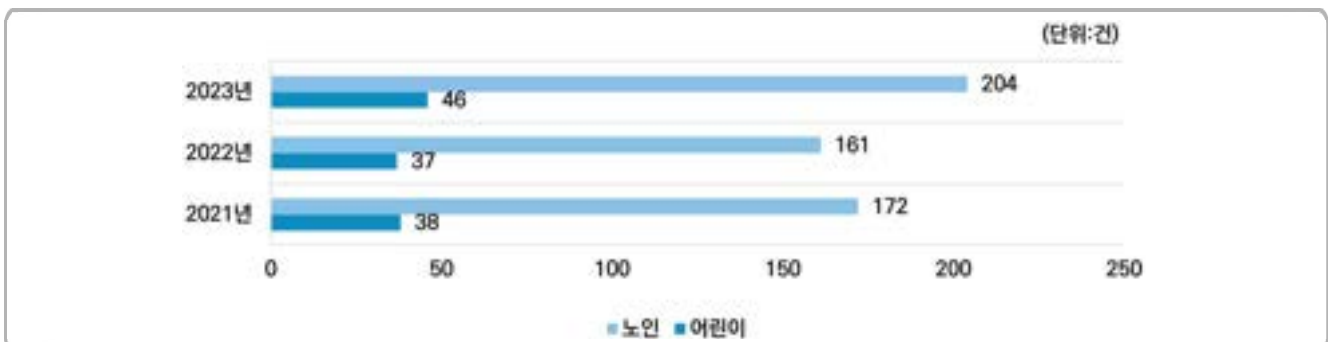
- 광명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9% 증가율을 보임

〈표 2-66〉 광명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38	37	46	0.10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42	42	62	0.21
노인	사고건수	172	161	204	0.09
	사망자수	4	3	5	0.12
	부상자수	180	176	220	0.11

〈그림 2-54〉 광명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군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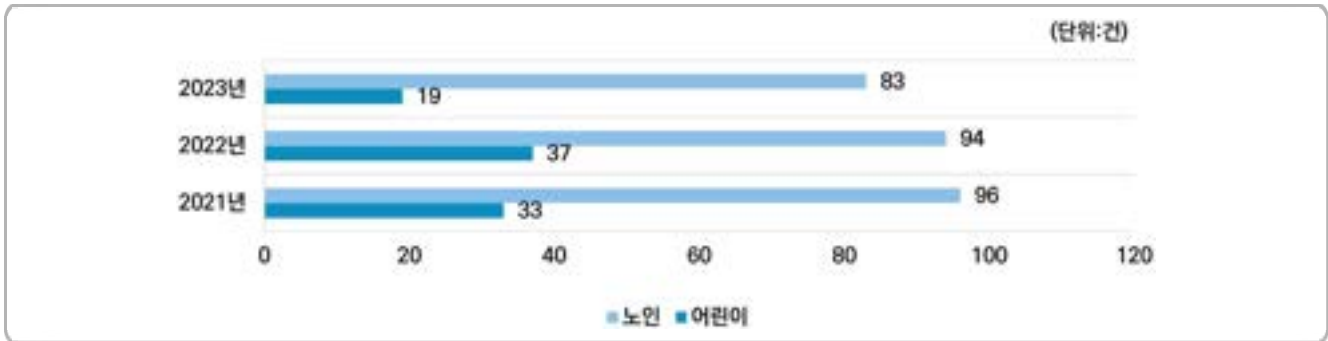
- 군포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24%,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7% 감소율을 보임

〈표 2-67〉 군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33	37	19	-0.24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38	39	21	-0.26
노인	사고건수	96	94	83	-0.07
	사망자수	4	4	3	-0.13
	부상자수	102	101	90	-0.06

〈그림 2-55〉 군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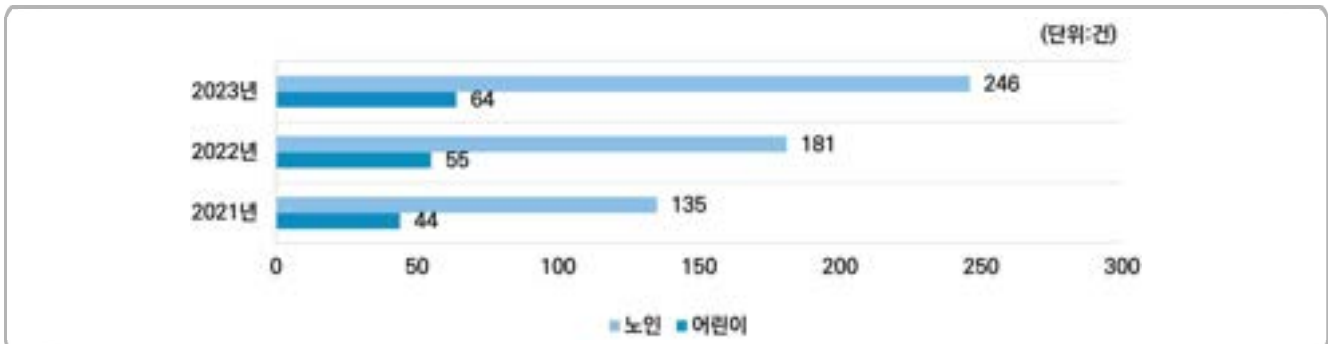
- 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21%,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35% 증가율을 보임

〈표 2-68〉 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44	55	64	0.21
	사망자수	0	1	0	-
	부상자수	59	71	75	0.13
노인	사고건수	135	181	246	0.35
	사망자수	0	6	5	-
	부상자수	152	207	277	0.35

〈그림 2-56〉 양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오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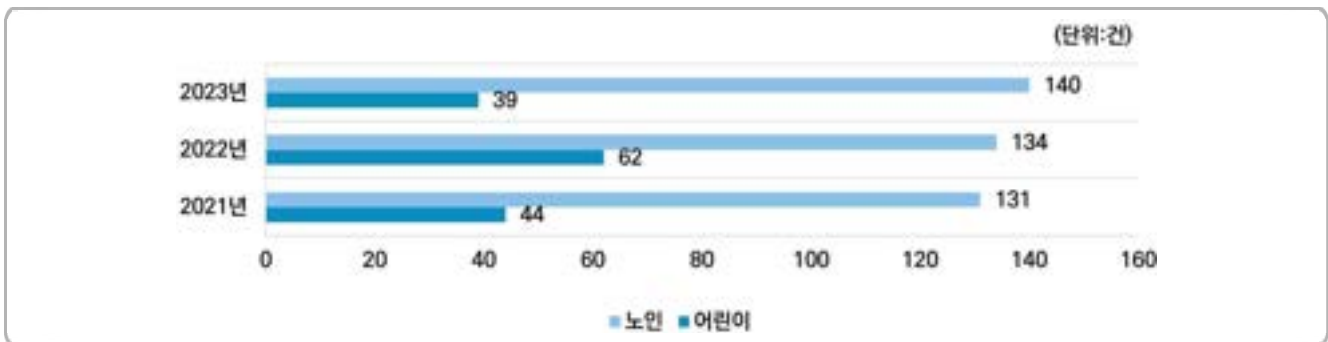
- 오산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6%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3% 증가율을 보임

〈표 2-69〉 오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44	62	39	-0.0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50	73	53	0.03
노인	사고건수	131	134	140	0.03
	사망자수	2	2	1	-0.29
	부상자수	146	150	155	0.03

〈그림 2-57〉 오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이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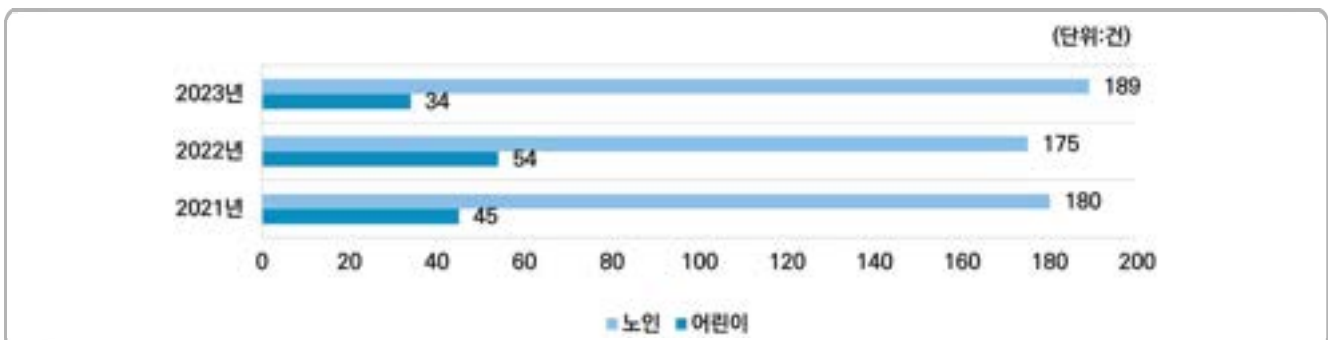
- 이천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3%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2% 증가율을 보임

〈표 2-70〉 이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45	54	34	-0.13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59	91	49	-0.09
노인	사고건수	180	175	189	0.02
	사망자수	5	5	12	0.55
	부상자수	216	195	213	-0.01

〈그림 2-58〉 이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안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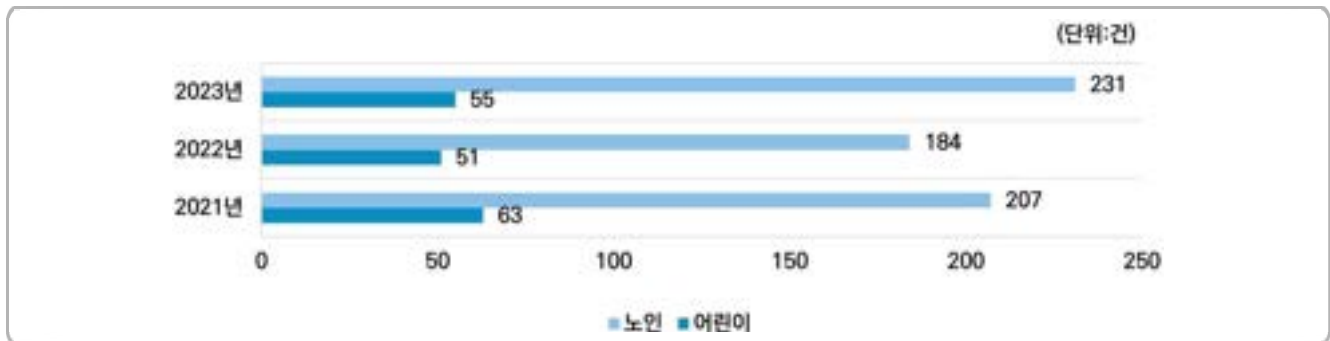
• 안성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7%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6% 증가율을 보임

〈표 2-71〉 안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63	51	55	-0.07
	사망자수	0	0	1	-
	부상자수	87	64	62	-0.16
노인	사고건수	207	184	231	0.06
	사망자수	4	6	7	0.32
	부상자수	232	209	266	0.07

〈그림 2-59〉 안성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구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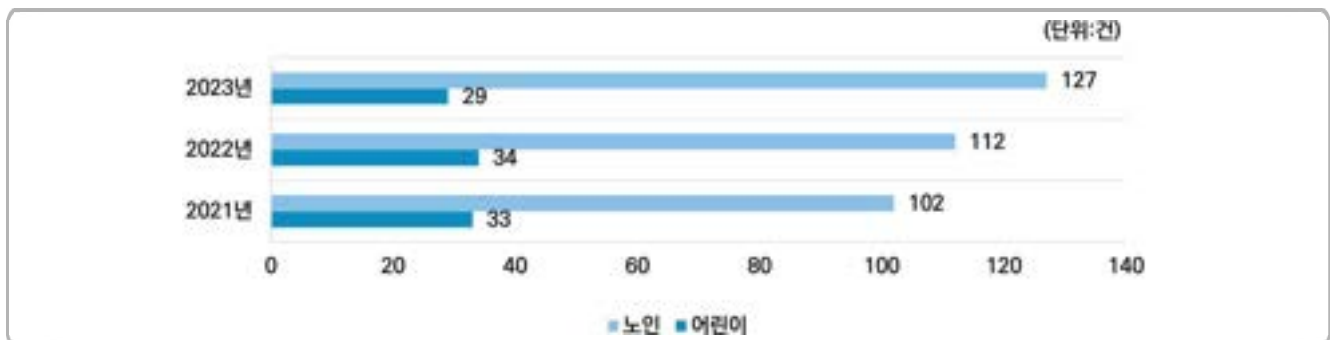
• 구리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6%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2% 증가율을 보임

〈표 2-72〉 구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33	34	29	-0.0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41	50	36	-0.06
노인	사고건수	102	112	127	0.12
	사망자수	1	1	4	1.00
	부상자수	118	129	131	0.05

〈그림 2-60〉 구리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의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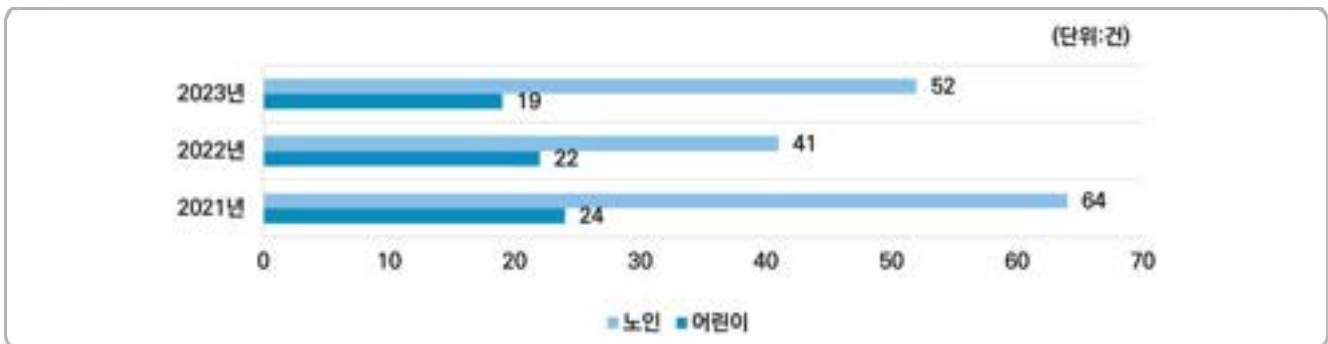
- 의왕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1%,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 감소율을 보임

〈표 2-73〉 의왕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24	22	19	-0.11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28	30	28	0.00
노인	사고건수	64	41	52	-0.10
	사망자수	1	4	3	0.73
	부상자수	68	44	55	-0.10

〈그림 2-61〉 의왕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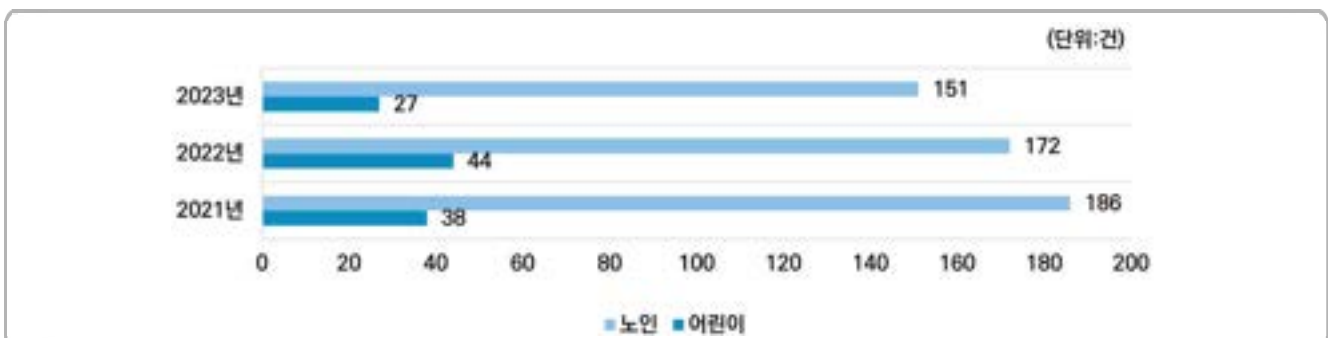
포천시

- 포천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6%,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 감소율을 보임

〈표 2-74〉 포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38	44	27	-0.1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48	55	35	-0.15
노인	사고건수	186	172	151	-0.10
	사망자수	7	3	4	-0.24
	부상자수	206	222	181	-0.06

〈그림 2-62〉 포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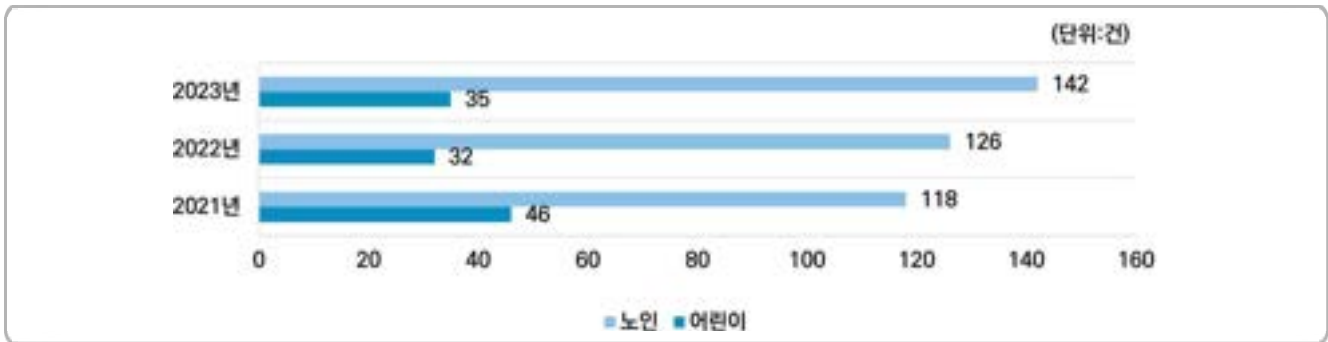
양평군

- 양평군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3%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 증가율을 보임

〈표 2-75〉 양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46	32	35	-0.13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74	44	49	-0.19
노인	사고건수	118	126	142	0.10
	사망자수	7	8	4	-0.24
	부상자수	142	140	178	0.12

〈그림 2-63〉 양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여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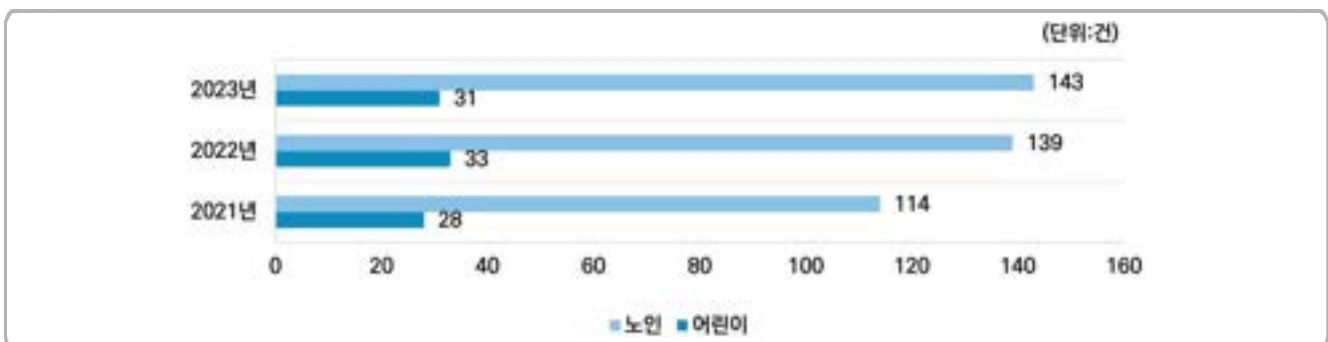
- 여주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5%,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12% 증가율을 보임

〈표 2-76〉 여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28	33	31	0.05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36	51	45	0.12
노인	사고건수	114	139	143	0.12
	사망자수	6	10	7	0.08
	부상자수	135	159	158	0.08

〈그림 2-64〉 여주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동두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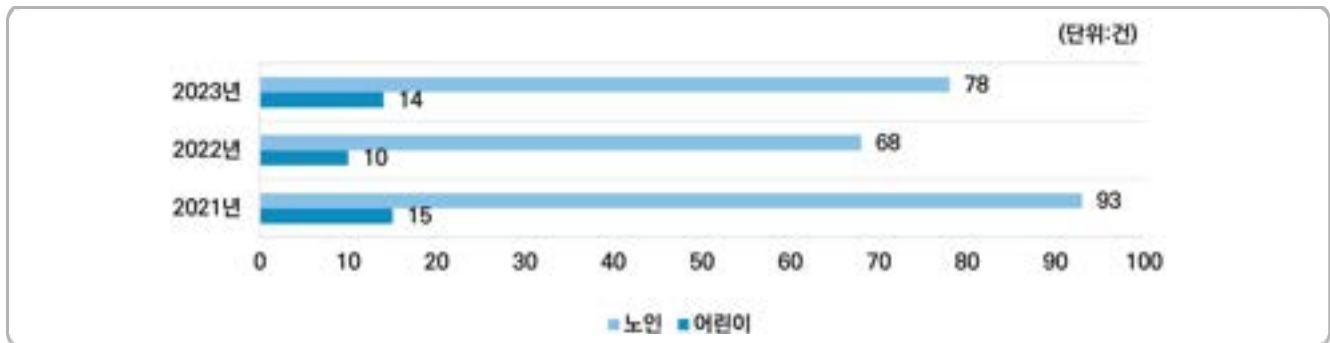
- 동두천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03%,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8% 감소율을 보임

〈표 2-77〉 동두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5	10	14	-0.03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20	11	19	-0.03
노인	사고건수	93	68	78	-0.08
	사망자수	1	2	1	0.00
	부상자수	94	77	87	-0.04

〈그림 2-65〉 동두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과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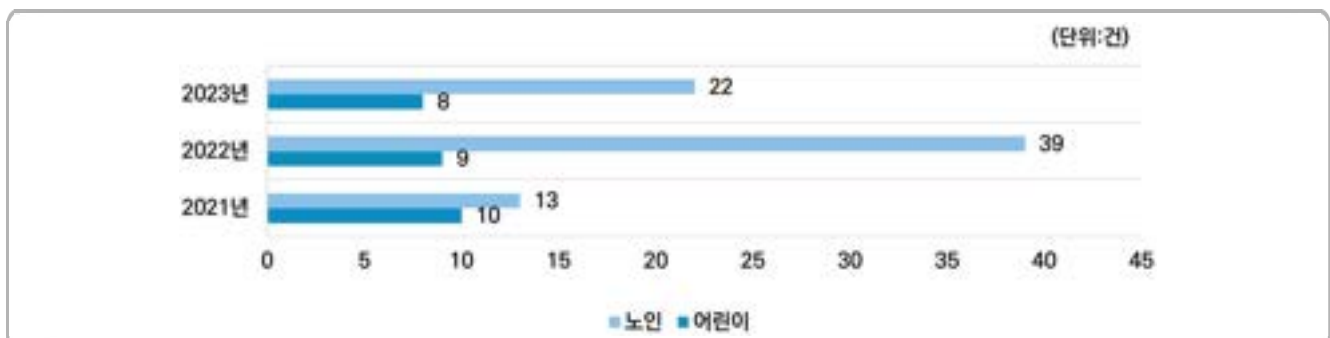
- 과천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1% 감소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3% 증가율을 보임

〈표 2-78〉 과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0	9	8	-0.11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1	14	8	-0.15
노인	사고건수	13	39	22	0.30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5	42	22	0.21

〈그림 2-66〉 과천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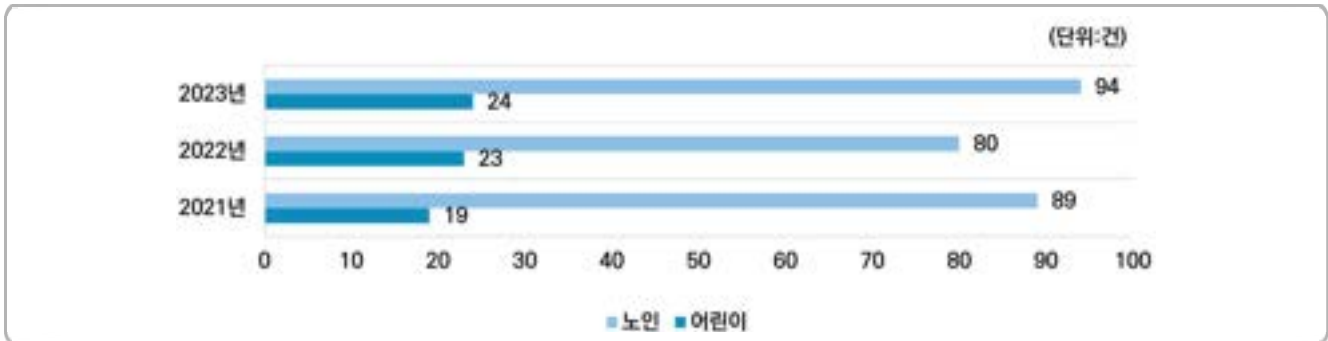
- 가평군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0.12%,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3% 증가율을 보임

〈표 2-79〉 가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9	23	24	0.12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31	33	32	0.02
노인	사고건수	89	80	94	0.03
	사망자수	4	2	8	0.41
	부상자수	105	98	105	0.00

〈그림 2-67〉 가평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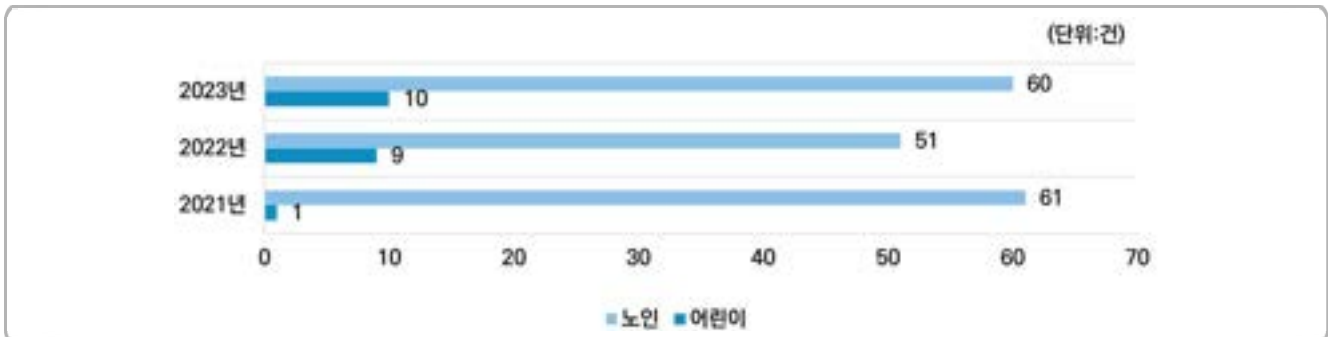
- 연천군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2.16% 증가하였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는 0.01% 감소율을 보임

〈표 2-80〉 연천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어린이	사고건수	1	9	10	2.16
	사망자수	0	0	0	-
	부상자수	1	11	10	2.16
노인	사고건수	61	51	60	-0.01
	사망자수	5	5	5	0.00
	부상자수	66	66	67	0.01

〈그림 2-68〉 연천군 교통약자 교통사고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 어린이 교통사고 종합

〈표 2-81〉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경기도	2,605	5	3,207	2,663	2	3,345	2,517	6	3,150
수원시	217	0	253	218	0	264	211	2	257
용인시	144	0	176	156	0	192	148	0	181
고양시	67	2	80	85	0	99	66	0	81
화성시	47	0	56	44	0	57	52	0	60
성남시	149	0	168	160	0	186	138	1	157
부천시	143	0	177	154	0	193	178	1	226
남양주시	163	1	201	152	1	181	133	1	168
안산시	38	0	42	37	0	42	46	0	62
평택시	33	0	41	34	0	50	29	0	36
안양시	44	0	59	55	1	71	64	0	75
시흥시	28	0	36	33	0	51	31	0	45
파주시	177	0	222	175	0	206	157	0	205
김포시	123	2	163	111	0	136	110	0	149
의정부시	91	0	108	100	0	135	84	0	99
광주시	180	0	211	186	0	216	179	0	215
하남시	131	0	175	129	0	182	133	0	179
광명시	1	0	1	9	0	11	10	0	10
군포시	38	0	48	44	0	55	27	0	35
양주시	19	0	31	23	0	33	24	0	32
오산시	46	0	74	32	0	44	35	0	49
이천시	45	0	59	54	0	91	34	0	49
안성시	219	0	266	193	0	255	187	0	231
구리시	63	0	87	51	0	64	55	1	62
의왕시	93	0	110	113	0	141	97	0	128
포천시	15	0	20	10	0	11	14	0	19
양평군	10	0	11	9	0	14	8	0	8
여주시	33	0	38	37	0	39	19	0	21
동두천시	124	0	147	123	0	153	114	0	145
과천시	44	0	50	62	0	73	39	0	53
가평군	24	0	28	22	0	30	19	0	28
연천군	56	0	69	52	0	70	76	0	85

〈표 2-82〉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경기도	651	0	682	740	2	755	678	6	702
수원시	49	0	49	69	0	72	52	2	54
용인시	34	0	36	47	0	47	41	0	41
고양시	22	0	24	36	0	37	20	0	21
화성시	13	0	14	11	0	11	16	0	18
성남시	56	0	57	52	0	53	55	1	55
부천시	40	0	44	50	0	51	61	1	64
남양주시	41	0	41	38	1	39	33	1	34
안산시	13	0	13	7	0	7	9	0	9
평택시	10	0	11	8	0	8	8	0	8
안양시	6	0	6	17	1	16	13	0	15
시흥시	4	0	4	3	0	3	3	0	3
파주시	50	0	54	51	0	53	38	0	38
김포시	31	0	33	29	0	29	27	0	28
의정부시	25	0	27	34	0	34	31	0	32
광주시	51	0	53	40	0	41	48	0	48
하남시	29	0	32	32	0	32	36	0	38
광명시	1	0	1	1	0	1	3	0	3
군포시	7	0	7	9	0	9	5	0	5
양주시	4	0	4	5	0	5	6	0	9
오산시	2	0	2	9	0	9	8	0	8
이천시	12	0	14	19	0	19	8	0	8
안성시	38	0	38	40	0	40	50	0	50
구리시	7	0	8	15	0	15	5	1	5
의왕시	15	0	15	32	0	33	17	0	19
포천시	3	0	3	4	0	4	3	0	3
양평군	1	0	1	2	0	2	2	0	2
여주시	5	0	5	9	0	9	5	0	5
동두천시	46	0	47	44	0	46	40	0	43
과천시	16	0	17	16	0	18	8	0	9
가평군	7	0	9	1	0	1	5	0	5
연천군	13	0	13	10	0	11	22	0	22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4) 노인 교통사고 종합

〈표 2-83〉 경기도 시·군별 노인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경기도	7,412	180	8,116	7,924	186	8,726	8,693	204	9,757
수원시	592	8	641	647	11	693	722	13	791
용인시	444	5	482	526	6	562	619	4	742
고양시	228	8	244	262	4	291	261	6	285
화성시	186	4	190	213	5	234	256	11	267
성남시	482	7	509	543	7	567	647	8	676
부천시	406	8	426	437	10	470	443	6	486
남양주시	379	9	410	402	13	435	420	13	475
안산시	172	4	180	161	3	176	204	5	220
평택시	102	1	118	112	1	129	127	4	131
안양시	135	0	152	181	6	207	246	5	277
시흥시	114	6	135	139	10	159	143	7	158
파주시	330	7	382	396	12	433	446	10	503
김포시	258	13	273	270	5	299	316	9	344
의정부시	273	11	298	260	7	299	296	8	336
광주시	490	17	520	566	16	605	585	15	640
하남시	313	7	369	339	1	366	350	7	413
광명시	61	5	66	51	5	66	60	5	67
군포시	186	7	206	172	3	222	151	4	181
양주시	89	4	105	80	2	98	94	8	105
오산시	118	7	142	126	8	140	142	4	178
이천시	180	5	216	175	5	195	189	12	213
안성시	471	9	511	470	12	532	532	10	645
구리시	207	4	232	184	6	209	231	7	266
의왕시	270	7	298	303	3	344	322	3	365
포천시	93	1	94	68	2	77	78	1	87
양평군	13	0	15	39	0	42	22	0	22
여주시	96	4	102	94	4	101	83	3	90
동두천시	342	7	378	361	11	391	304	9	337
과천시	131	2	146	134	2	150	140	1	155
가평군	64	1	68	41	4	44	52	3	55
연천군	187	2	208	172	2	190	212	3	247

〈표 2-84〉 경기도 시·군별 노인 보행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경기도	2,033	91	1,970	2,179	92	2,121	2,206	97	2,146
수원시	168	3	168	206	6	203	225	10	219
용인시	154	2	153	156	4	153	146	3	148
고양시	87	6	84	87	3	85	71	4	68
화성시	48	4	44	69	2	67	76	7	70
성남시	179	5	174	202	6	197	222	5	221
부천시	113	5	109	110	2	111	113	3	111
남양주시	97	4	95	109	8	104	117	5	112
안산시	48	2	46	51	1	53	55	4	51
평택시	29	1	30	33	0	34	38	3	35
안양시	26	0	27	46	3	46	44	3	41
시흥시	13	2	11	28	2	27	32	1	31
파주시	67	4	63	92	6	88	90	3	89
김포시	60	7	54	44	2	42	61	3	58
의정부시	91	6	86	71	4	70	73	3	70
광주시	151	8	143	173	9	167	150	7	144
하남시	76	6	72	91	1	90	80	3	84
광명시	14	2	12	8	2	6	12	1	11
군포시	34	3	35	35	2	33	26	0	27
양주시	20	2	19	18	0	18	18	1	17
오산시	29	2	27	35	6	29	25	3	22
이천시	40	1	39	33	2	31	32	5	27
안성시	115	4	111	105	8	98	119	6	118
구리시	47	2	46	42	0	43	50	2	49
의왕시	55	4	52	53	1	53	84	1	84
포천시	33	0	33	16	0	16	21	0	21
양평군	2	0	2	9	0	9	4	0	4
여주시	35	2	34	35	2	34	31	2	30
동두천시	100	3	98	136	7	130	93	6	87
과천시	36	0	36	40	1	40	37	1	37
가평군	22	0	23	10	2	8	23	1	22
연천군	44	1	44	36	0	36	38	1	38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2. 관련법규 검토

2.1. 관련법규 총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법규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2-85〉 관련법규 총괄

관련법규	주요 관련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023. 8. 16 일부개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제15조(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제16조(특별교통수단)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24. 3. 19 일부개정)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24. 1. 19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 7, 18 일부개정)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저상버스 지원 등)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3. 3. 28 일부개정)	법 제2조 (정의) 시행령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시행령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시행령 제7조의 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개정)	법 제1조 (목적) 법 제4조 (차별행위) 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4. 7. 31 일부개정)	2조(정의) 3조(보호구역의 지정) 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7조(도로부속물의 설치)

2.2. 관련법규 내용

1) 교통약자 관련법

〈표 2-8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구분	주요 관련 사항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p>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p> <p>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p>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p>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p>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3. 9. 14.〉</p> <p>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4.〉 [시행일 2024. 9. 15]</p>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p>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2.〉</p> <p>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p>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p>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계속〉

구분	주요 관련 사항
<p>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p> <p>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2. 21., 2020. 10. 20.></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p> <p>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p> <p>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 18.></p> <p>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p>
<p>제15조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p>	<p>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p> <p>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표 계속〉

구분	주요 관련 사항
<p>제16조 (특별교통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시행일 2024. 9. 15]
<p>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23.>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2-8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구분	주요 관련 사항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p>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p>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9.></p> <p>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p>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 1.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표 2-8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구분	주요 관련 사항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p>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3. 7. 20.></p>

〈표 계속〉

구분	주요 관련 사항
<p>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p>	<p>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p> <p>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p>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2023. 7. 20., 2024. 1. 19.〉</p>
<p>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p>	<p>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p> <p>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p> <p>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접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2.〉</p> <p>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 3. 12., 2024. 1. 19.〉</p>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2-8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구분	주요 관련 사항
<p>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방안 2.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5.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6.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또는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8.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 노후 특별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사항 1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차량 연계 방안 [신설 2024.7.18.] 1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 (저상버스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시설개량 등의 사업 추진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p>제9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차 2.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4.7.18.> 3.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4.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 연계 지원 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장애인 관련법

〈표 2-9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 관련 사항
<p>법 제2조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p>시행령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p>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p>
<p>시행령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p>	<p>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4.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p>시행령 제7조의 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p>	<p>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2. 12., 2012. 8. 22.,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2-9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 관련 사항
법 제1조 (목적)	<p>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제4조 (차별행위)	<p>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p>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p>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호구역 관련법

〈표 2-9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구분	주요 관련 사항
2조(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停車場)을 말한다.
3조(보호구역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 2022. 4. 20.>

0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표 계속〉

구분	주요 관련 사항
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p>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p>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p>③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거나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7.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5.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p>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p> <p>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7조(도로부속물의 설치)	<p>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p>③ 시장등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3. 관련계획 검토

3.1 제4차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2022, 국토교통부)

1)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2)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 계획 마련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 경우('21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투자 규모 산정
- ※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항 이행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투자 근거 및 기준 마련

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 안 소재하는 군 제외)을 포함한 161개 지방자치단체

▶ 시간적 범위 : 2022~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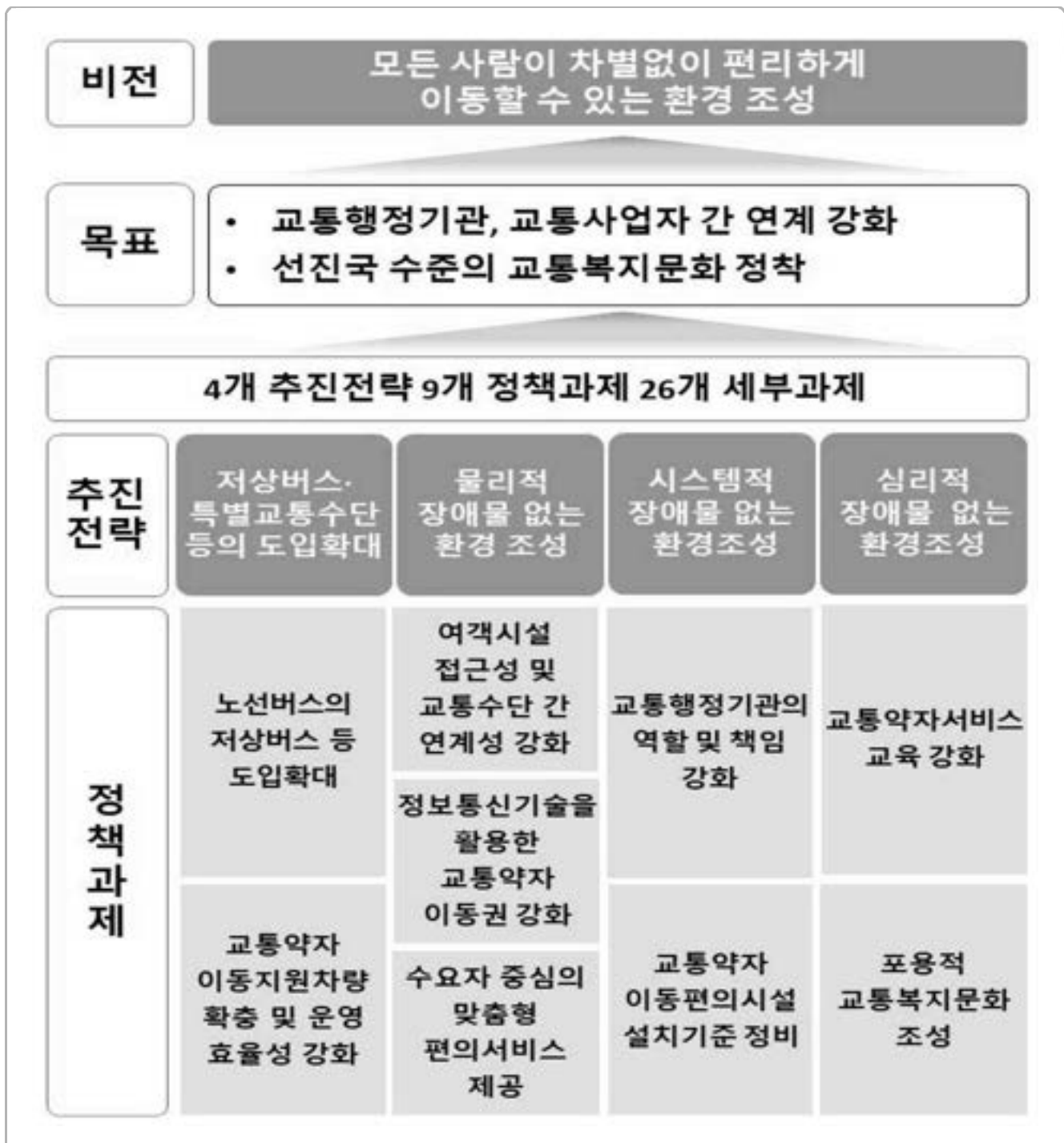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법」 제6조2항에 의한 사항

-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4) 비전 및 목표

- ▶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을 비전으로 설정
-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추진



5) 2026년 우리나라 교통복지 미래상

교통수단 도입률			
	운영수단	21년	26년
 저상버스	시내버스	30.6%	62%
	농어촌버스	1.4%	42%
	마을버스	3.9%	49%
	좌석버스	0%	차량개발(~'25년) 시범운영('26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86.0%	100%
	통합서비스	지역별 다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시간 운영 · 시도 간 운영 · 통합예약서비스

기준적합 설치율			
	운영수단	21년	26년
 시내버스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88.0%	96%
	버스 정류장	45.4%	66%
	버스 터미널	65.0%	73%
 보행환경	보행환경	77.6%	83%
	도시철도(차량)	96%	98%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89%	93%
	철도(차량)	98.9%	99%
 철도(역사)	철도(역사)	82.5%	90%
	여객선	37.8%	52%
 여객선 항만	항만	82.2%	92%
	항공기	73.7%	90%
 항공기 공항	공항	86.8%	92%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3, 보건복지부)

1) 정책방향

▶ 기본방향

- (약자복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지원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등 맞춤형 돌봄·소득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 확대 및 고도화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 구현 추진
 - 기존 돌봄 제도를 정교화하고 주택·주거지원 확대,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평등,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필요
 - ※ 장애인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으로 '06년 UN 채택 후 182개국 비준
(주요주제) 자립생활, 건강·재활, 교육, 소득, 근로, 정보접근성, 문화·체육, 이동·접근, 안전, 인식개선 등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마련

- (비전)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설정
- (약자복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분야(9개)를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건강, 이동편의, 디지털·미디어 등 새롭게 부각
- 각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대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성과지표 등 제시

2)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②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보건 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 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⑦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⑨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 계획의 기대효과(안)

분야	주요 성과	'23년	➔	'27년	비고
복지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	본사업('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연구	➔	서비스 시행 ('24.6)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명	➔	17만명	연 8천명 규모 ↑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명	➔	10만명	연령상향(6→9세) 검토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	61.4%	57.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본사업('25)	3차 시범사업('21.9~)
보육·교육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53개	➔	100개	32개('22)
경제활동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 빈곤율	39.0%	➔	37.0%	39.6%('20)
	장애인 고용률	50.6%	➔	51.9%	50.3%('22)
체육·관광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생활체육 참여율	28%	➔	34%	26.6%('22)
	열린관광지 조성	132개소	➔	252개소	112개소('22)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예술창작 참여율	1.2%	➔	1.6%	1.1%('2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	83.6%	81.5%('21)
이동편의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	100%	86.0%('21)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이상	➔	50㎡이하	
권익증진 정책기반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	98%	92.8%('21)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3.3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2021~2025) (2020,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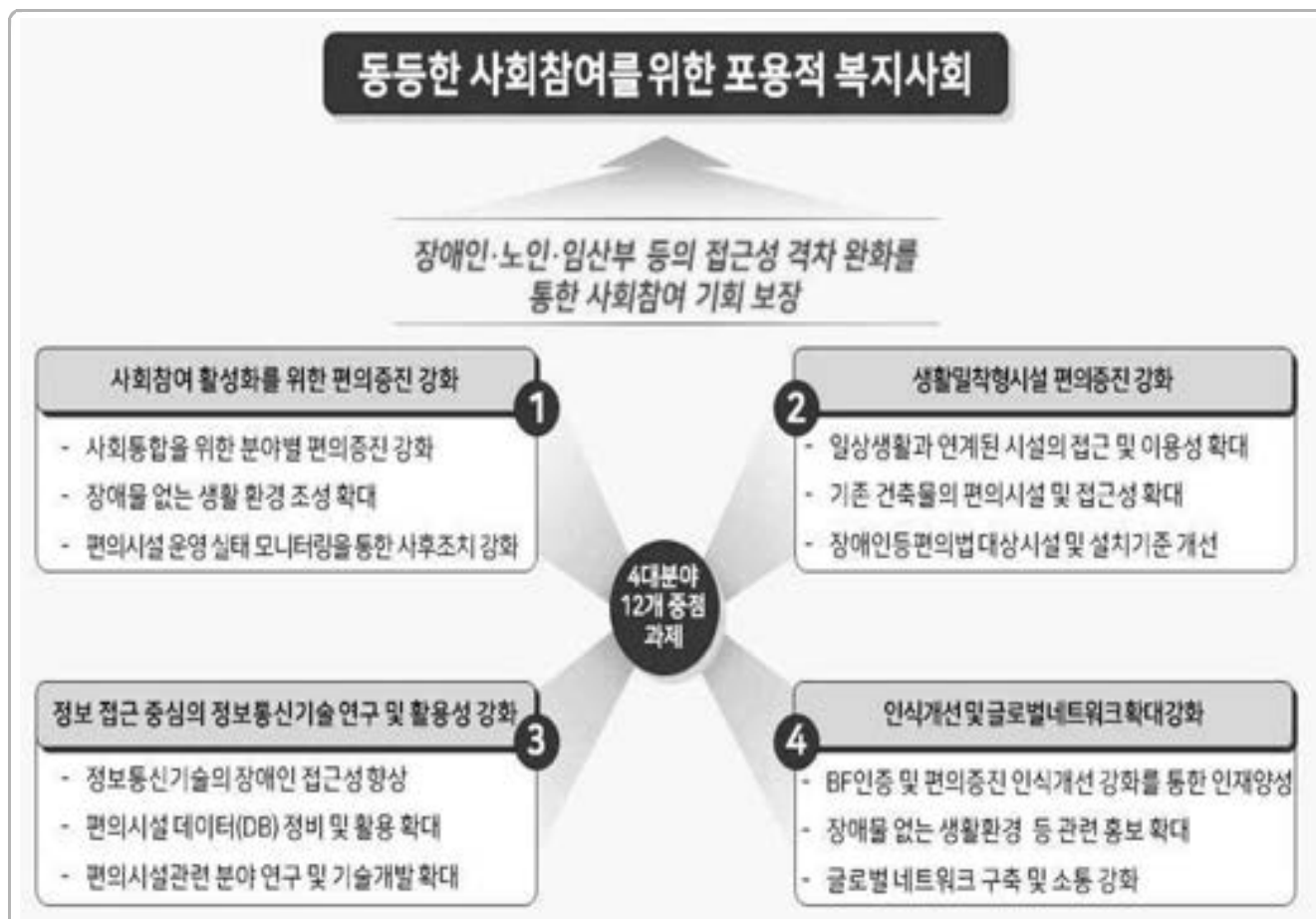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추진배경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5~2019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5차 중장기적 편의증진정책 수립 필요
 - 제5차 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적정설치율 상수를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 제5차 계획 정책 비전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접근성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 강화

▶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편의증진 강화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 통합적 계획 실시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지원
 -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교통이용의 편의증진
 - 작업환경의 편의 향상 및 홍보
 - 교육시설의 편의 향상
 - 문화 및 체육시설의 편의 향상
 - 관광 및 숙박시설의 편의 향상
 - 의료시설의 편의 향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확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률 확대 및 관리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 2023년 전수조사에 대한 적정설치율은 2018년도 전수조사 대비 5.2% 향상을 목표 (설치율 85%, 적정설치율 80%)
-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실시

▶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조치 실시

-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3) 및 표본조사(매년) 실시
- 기존 건축물의 사후조치에 대한 제도적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및 사후조치 강화
 - 기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실시

4) 생활밀착형시설 편의증진 강화

▶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설의 접근 및 이용성 확대

- 소규모 건축물 및 생활밀접 시설 접근 강화 제도 개선
- 중규모 이상 기존 건축물 시설 접근 강화 제도 개선

▶ 기존 건축물의 편의시설 및 접근성 확대

- 인적 서비스 지원
- 매뉴얼 보급

▶ 「장애인등편의법」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개선

- 법·제도 개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 안전 및 피난 관련

5) 정보 접근 중심의 정보통신기술연구 및 활용성 강화

▶ 정보통신기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 정보제공 기술 개발
- 신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

▶ 편의시설 데이터(DB) 정비 및 활용 확대

- 편의시설 정보 DB화 및 공개
- 당사자 의견 수렴 DB반영

▶ 편의시설관련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확대

- ICT 기술 활용 자료제공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6) 인식개선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강화

▶ BF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

- 편의시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시설주 및 건축 관련 종사자 등 교육 확대 및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를 확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관련 홍보 확대

- UD홍보 확대 및 강화
-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UD 활성화 참여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관련 체험 및 홍보관 설치·운영
- 거리, 공원, 마을 등 구역지정 및 확대, 시범운영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 국제세미나 확대 및 강화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 보건복지부)

가. 기본 관점의 전환

▶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

-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
 -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경로를 순조롭고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중점
-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상 설정

▶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천

-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 가족지원 투자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GDP대비 2.4%)까지 확대 노력
 -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사회 각 분야의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의 순조롭고 유연한 이행 지원
 -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시스템 개혁,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등 구조적, 문화적 대책의 추진력 제고
 - ※ 미시적 지원과 거시적 장애요인의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

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를 지향하는 청년층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일·생활 균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일터에서 출산·양육자에 대한 불이익 등 채용·승진·배차·평가 등 고용 전 과정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성차별 해소
 - ※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7.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중 대통령)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확립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포괄적인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예방
 - 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교통 여건 조성 및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통한 고령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통해 전생애에 걸친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

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삶의 기반 강화

-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성인들의 대응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인적 역량 제고
- 청년이 자립·결혼·출산에 이르는 이행기에 주요 생애 이벤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안정 지원, 일자리 진입 지원 등 삶의 기반 강화
- 여성,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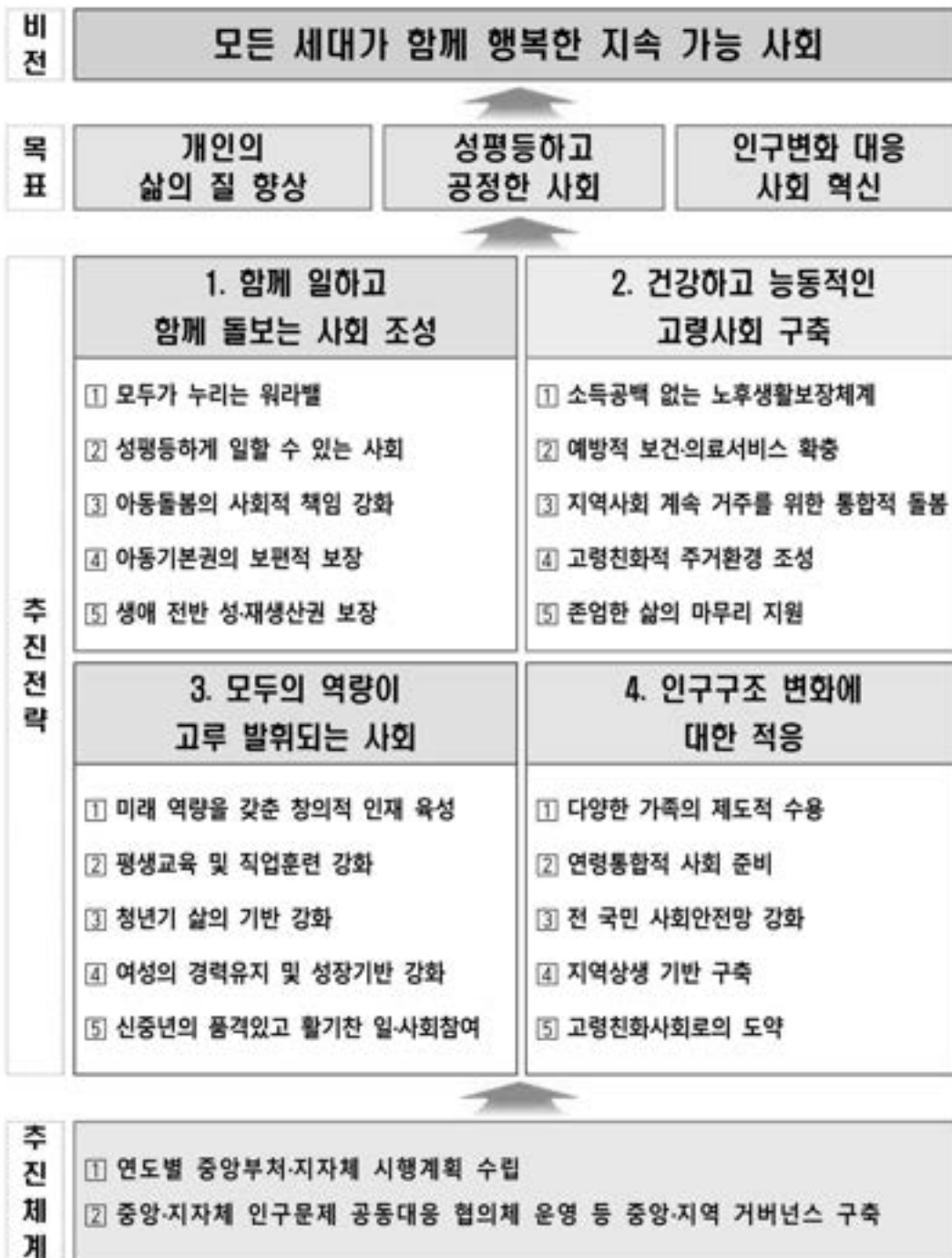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 기대수명 상승,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모든 연령대의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논의 본격화
- 다양한 노동 포용 및 개인단위 소득보장 등을 통한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나친 수도권 과밀(전체의 50.1%)이 경쟁 심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 지역통합 모색
-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 육성, 사회시스템 수급조정 등을 통해 고령친화경제로 도약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라. 비전 및 목표

<<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요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3. 교통약자 이동실태
4. 만족도 조사 결과
5. 저상버스 현황
6.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7. 이동지원센터
8. 경기도 광역지원센터
9. 타지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요

1.1 조사개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실태를 조사함

- 조사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1.2 조사방법

▶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립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태조사 자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경기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3-1〉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구 분	기준년도	목표연도	이동편의시설 조사년도
수원시	2021	2022~2026	2021
용인시	2020	2022~2026	2021, 2022
고양시	2022	2022~2026	2023
화성시	2021	2022~2026	2021
성남시	2021	2022~2026	2021, 2022
부천시	2021	2022~2026	2021, 2022
남양주시	2020	2022~2026	2021
안산시	2021	2022~2026	2021
평택시	2021	2022~2026	2022, 2023
안양시	2021	2022~2026	2021
시흥시	2021	2022~2026	2022
파주시	2021	2022~2026	2021
김포시	2021	2022~2026	2021
의정부시	2021	2022~2026	2021
광주시	2020	2022~2026	2021
하남시	2021	2022~2026	2023
광명시	2021	2022~2026	2021
군포시	2021	2022~2026	2022
양주시	2022	2023~2027	2022
오산시		수립중	
이천시	2023	2023~2027	2023
안성시	2020	2022~2026	2022
구리시	2021	2022~2026	2021
의왕시	2021	2022~2026	2021, 2022
포천시	2021	2022~2026	2023
양평군	2021	2022~2026	2021
여주시	2020	2022~2026	2021
동두천시	2021	2022~2026	2022
과천시	2021	2022~2026	2022
가평군	2021	2022~2026	2021
연천군	2022	2022~2026	2022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2.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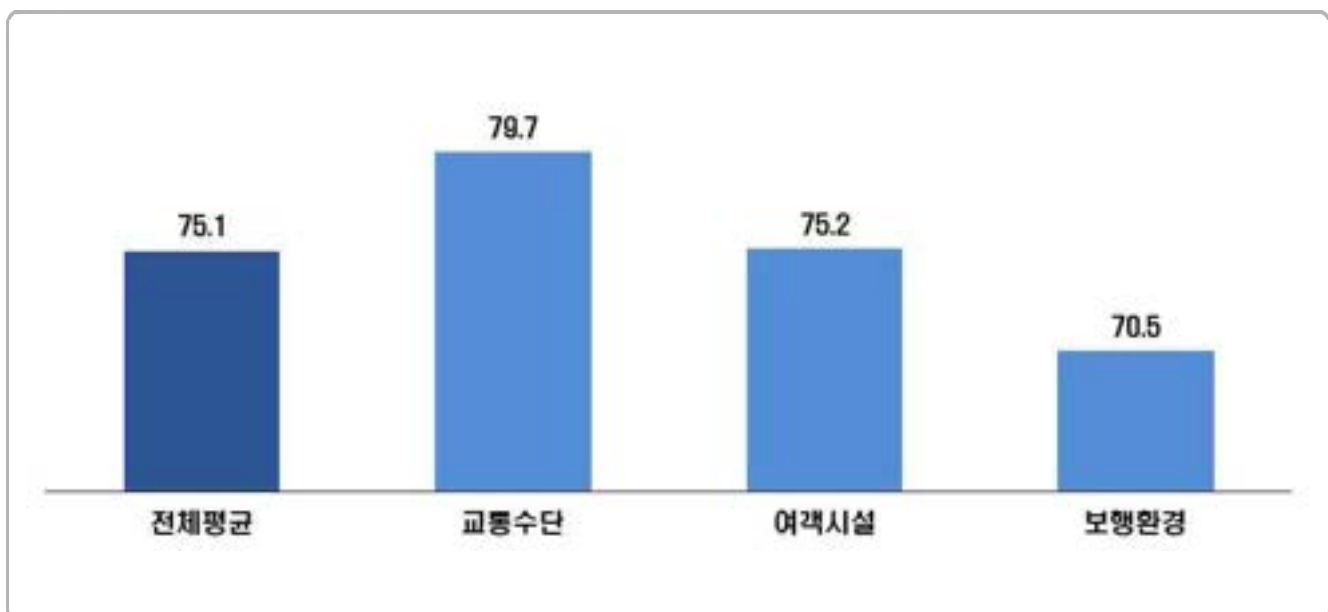
2022년(9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5.1%이며, 교통수단은 79.7%, 여객 시설은 75.2%, 보행환경은 70.5%로 나타났음

〈표 3-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전체 평균	75.1	8.3	16.6	
교통수단	버스차량	87.0	7.2	5.8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차량	97.2	1.2	1.6
	철도차량	99.1	0.9	0.0
	항공기	73.9	0.6	25.5
	여객선	41.2	23.8	35.0
	교통수단 평균	79.7	6.7	13.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8.3	9.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90.7	3.0	6.3
철도역사		83.4	4.7	11.9
공항여객터미널		90.2	3.0	6.8
여객선터미널		82.2	4.9	12.8
버스정류장		36.2	18.0	45.9
여객시설 평균		75.2	7.2	17.6
보행환경	70.5	10.8	18.7	

〈그림 3-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2.2 교통수단

1)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저상), 승강구, 교통약자용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저상) 항목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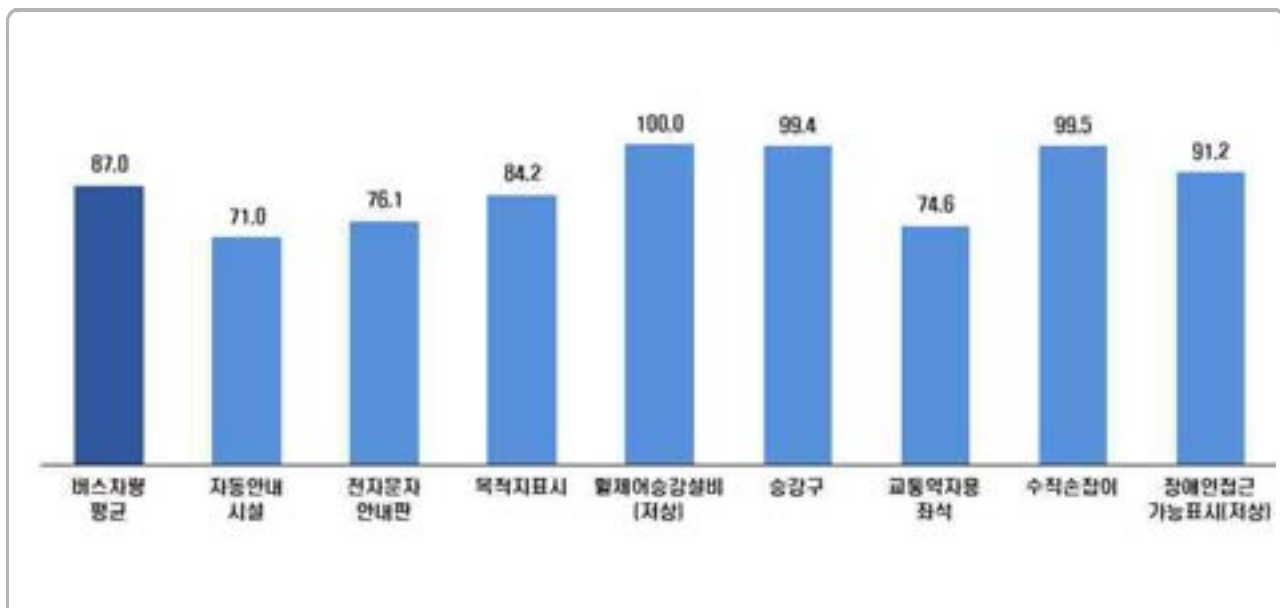
▶ 9개도 버스차량 전체 기준적합 설치율은 87.0%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휠체어승강설비(저상)(100.0%)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고, 자동안내시설(71.0%)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3〉 버스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버스차량 평균	87.0	7.2	5.8
자동안내시설	71.0	24.3	4.7
전자문자안내판	76.1	6.5	17.3
목적지표시	84.2	15.7	0.1
휠체어승강설비(저상)	100.0	0.0	0.0
승강구	99.4	0.6	0.0
교통약자용좌석	74.6	9.8	15.6
수직손잡이	99.5	0.3	0.2
장애인접근가능표시(저상)	91.2	0.3	8.5

〈그림 3-2〉 버스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9개도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경기도가 92.0%로 가장 높으며, 제주(90.8%), 전남(86.0%)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적합률이 92.0%, 기준 미적합이 5.3%, 미설치가 2.7%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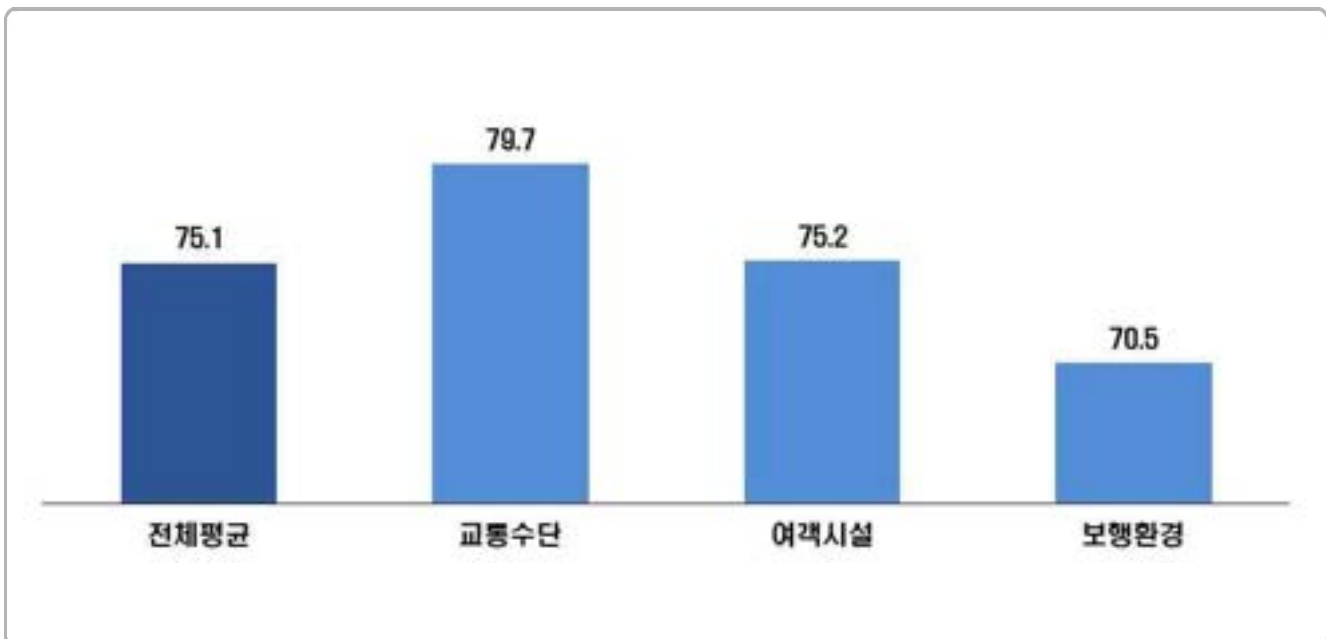
〈표 3-4〉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사례수	기준 적합률	기준 미적합	미설치
전체	3,081	87.0	7.2	5.8
경기도	1,553	92.0	5.3	2.7
강원도	152	82.1	10.3	7.5
충청북도	132	82.0	9.5	8.5
충청남도	202	82.3	8.9	8.8
전라북도	152	82.1	11.8	6.1
전라남도	239	86.0	9.9	4.2
경상북도	232	79.5	7.9	12.6
경상남도	0332	78.6	9.5	11.9
제주특별자치도	87	90.8	1.6	7.6

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2)

〈그림 3-3〉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전국의 도시 및 광역철도 차량(9,920량)을 조사하였으며,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항목을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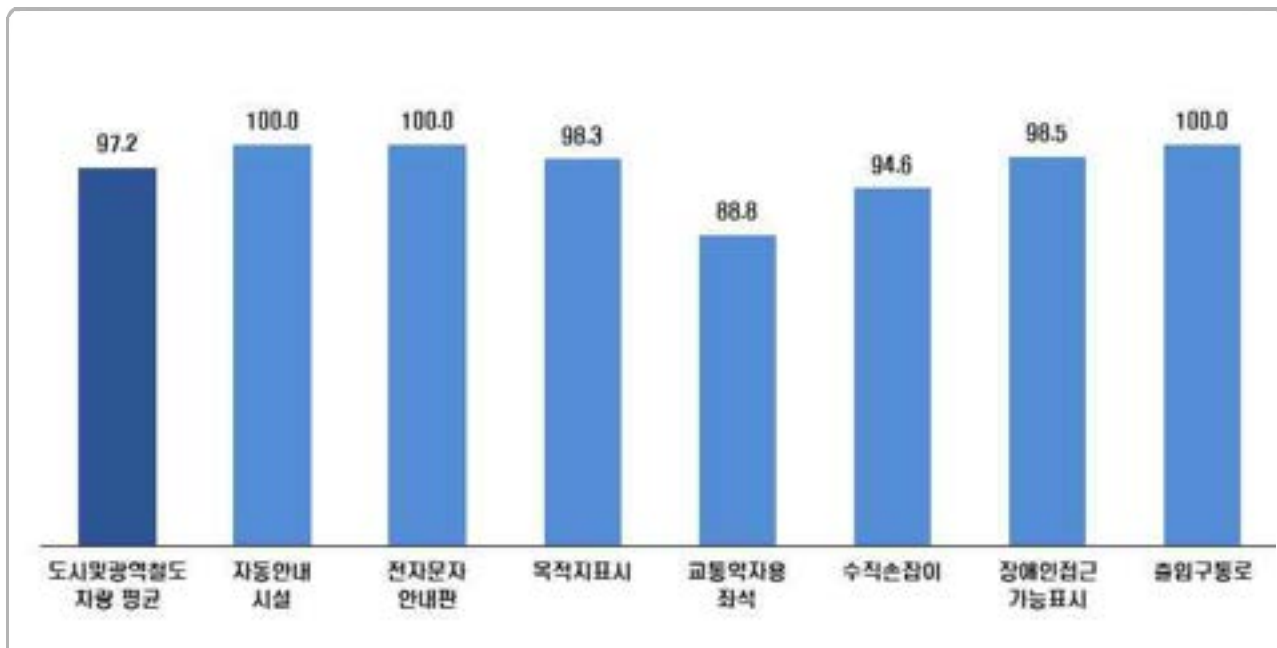
☞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출입구통로는 100.0% 기준적합 설치율을 만족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용좌석(88.8%)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도시 및 광역철도 차량 평균	97.2	1.2	1.6
자동안내시설	100.0	-	-
전자문자안내판	100.0	-	-
목적지표시	98.3	0.3	1.4
교통약자용좌석	88.8	2.9	8.3
수직손잡이	94.6	5.4	-
장애인접근가능표시	98.5	-	1.5
출입구통로	100.0	-	-

〈그림 3-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 ▶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관리주체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은 한국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100.0%로 가장 높고, 로템에스알에스(주)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경기도내에 철도를 운영중인 네오트랜스(주), 의정부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8.4%, 79.5%, 96.4%로 나타남

〈표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관리주체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량, %)

구 분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 미적합	미설치
전국 도시 및 광역철도 차량 평균	9,920	97.2	1.2	1.6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경원선, 동해선, 서해선 등]	2,786	100.0	-	-
서울교통공사 [서울 1~8호선]	4,616	97.4	0.7	1.9
부산교통공사 [부산 1~4호선]	766	89.8	7.8	2.4
대구교통공사 [대구 1~3호선]	468	100.0	-	-
인천교통공사 [인천 1~2호선]	358	97.4	0.7	1.9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 1호선]	92	92.9	-	7.1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 1호선]	84	95.2	4.8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 9호선]	216	98.8	1.2	-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우이신설선]	36	100.0	-	-
네오트랜스(주)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168	88.4	2.5	9.2
공항철도(주) [공항철도선]	168	90.5	7.6	1.9
부산-김해경전철(주) [부산-김해선]	50	97.9	2.1	-
의정부경량전철(주) [의정부경전철]	30	79.5	6.2	14.3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김포도시철도]	46	96.4	3.6	-
로템에스알에스(주) [신림선]	36	70.2	-	29.8

2.3 여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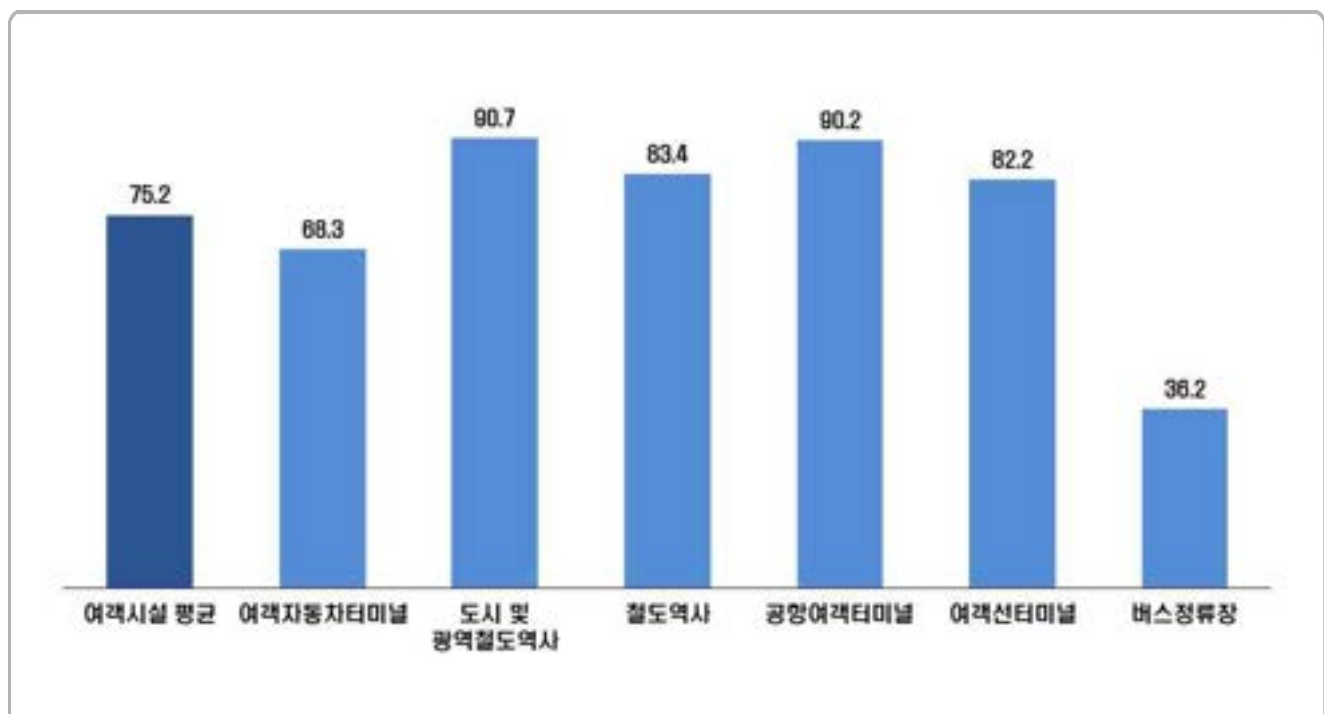
- ▶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9개도 내 여객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나타남
- ▶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90.7%), 공항여객터미널(90.2%), 철도역사(83.4%), 여객선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8.3%), 버스정류장(36.2%) 순으로 나타남

〈표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여객시설 평균	75.2	7.2	17.6
여객자동차터미널	68.3	9.6	22.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90.7	3.0	6.3
철도역사	83.4	4.7	11.9
공항여객터미널	90.2	3.0	6.8
여객선터미널	82.2	4.9	12.8
버스정류장	36.2	18.0	45.9

〈그림 3-5〉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 여객자동차터미널

- ▶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충북지역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지역이 5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충북(74.8%)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소변기(100.0%)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휴게시설(0.0%)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전남(56.0%)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보행접근로(89.1%)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휴게시설(0.0%)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8〉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21	18	11	14	14	22	21	18	1
평균		73.4	66.4	74.8	70.0	63.1	56.0	57.7	66.5	65.5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96.0	79.2	92.9	98.7	96.1	89.1	60.0	84.8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8.1	83.8	92.9	83.7	75.2	84.6	-	-	85.7
평균		87.0	81.5	92.9	91.2	85.6	86.9	60.0	84.8	92.9
내부 시설	출입구(문)	71.6	69.1	66.2	74.5	69.4	70.1	58.2	58.9	80.0
	통로	-	-	-	-	-	-	-	-	-
	경사로	52.8	64.6	75.0	54.2	66.7	50.0	-	-	-
	엘리베이터	81.3	86.7	93.3	-	-	-	-	-	-
	에스컬레이터	85.7	-	-	-	-	-	-	-	-
	계단	73.3	66.7	82.7	67.8	70.0	66.7	-	-	-
	평균	72.9	71.8	79.3	65.5	68.7	62.3	58.2	58.9	80.0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74.1	72.9	88.7	84.4	75.8	68.9	45.5	58.8	66.7
	대변기	70.1	67.9	79.6	75.8	80.3	61.3	73.0	69.6	88.9
	소변기	78.3	71.1	100.0	92.3	92.9	45.5	40.9	85.0	100.0
	세면대	66.9	54.0	60.8	70.9	63.1	62.1	49.7	63.5	40.0
	평균	72.3	66.5	82.3	80.9	78.0	59.4	52.3	69.2	73.9
안내 시설	접자블록	86.2	71.9	87.9	87.4	60.1	40.9	63.0	62.8	0.0
	안내 및 유도시설	23.8	0.0	54.5	17.9	0.0	9.1	2.4	0.0	0.0
	경보피난시설	78.6	61.1	59.1	50.0	57.1	50.0	90.5	94.4	100.0
	평균	62.9	44.3	67.2	51.8	39.1	33.3	51.9	52.4	33.3
기타 시설	매표소	58.5	60.4	73.1	48.9	64.3	55.8	66.4	72.2	75.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65.9	64.3	50.0	53.1	46.2	37.5	44.6	45.1	-
	승강장	83.0	65.6	85.6	78.2	66.7	58.4	71.5	78.1	66.7
	임산부휴게시설	79.0	81.1	0.0	62.9	0.0	0.0	81.9	72.2	0.0
	평균	71.6	67.9	52.2	60.8	44.3	37.9	66.1	66.9	47.2

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2)

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 ▶ 5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경남지역이 92.0%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지역이 88.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경남(92.0%)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안내시설 같은 경우 100.0%의 설치율을 보임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강원(88.0%)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점자블록(100.0%), 보행 접근로(100.0%)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에스컬레이터(66.2%)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기준 사례수		227	6	7	3	17
평균		88.6	88.0	89.2	90.8	92.0
매개(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95.8	100.0	96.2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5.4	94.3	81.6	-	85.7
	평균	90.6	97.1	88.9	100.0	92.9
내부시설	출입구(문)	78.5	75.8	82.9	0.0	87.5
	통로	74.6	75.0	76.0	55.6	91.7
	경사로	81.8	80.6	-	90.3	-
	엘리베이터	90.9	93.6	97.3	79.4	99.9
	에스컬레이터	86.6	66.2	88.3	57.1	78.9
	계단	88.9	89.6	87.5	93.3	93.3
	평균	83.5	80.1	86.4	62.6	90.3
	위생시설	90.0	97.2	83.3	100.0	89.5
위생시설	대변기	90.4	96.3	87.5	86.1	88.9
	소변기	87.1	66.7	100.0	100.0	100.0
	세면대	80.9	87.3	80.0	96.7	54.7
	평균	87.1	86.9	87.7	95.7	83.3
	안내시설	98.8	100.0	100.0	100.0	100.0
안내시설	안내 및 유도시설	86.6	83.3	92.9	100.0	100.0
	경보피난시설	91.4	83.3	85.7	100.0	100.0
	평균	92.3	88.9	92.9	100.0	100.0
	기타시설	78.8	78.6	80.1	88.9	100.0
기타시설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78.8	78.6	80.1	88.9	100.0
	개찰구	94.6	83.3	94.4	100.0	100.0
	승강장	97.0	98.2	94.4	100.0	100.0
	임산부휴게시설	88.2	88.3	91.4	93.3	73.9
	평균	89.6	87.1	90.1	95.6	93.5

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2)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철도역사

- ▶ 8개도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경기지역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지역이 7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경기(89.5%)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보행접근로(100.0%), 점자블록 (100.0%)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경사로(73.8%)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전남(76.2%)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개찰구(100.0%)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소변기(37.0%)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 철도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준 사례수		17	27	20	22	12	26	40	19
평균		89.5	77.2	82.6	86.2	86.1	76.2	80.6	82.7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86.8	96.8	99.1	100.0	99.1	90.2	99.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8.6	82.1	85.7	80.0	70.6	72.2	80.2	74.3
	평균	94.3	84.5	91.2	89.6	85.3	85.6	85.2	86.7
내부 시설	출입구(문)	84.8	81.8	78.8	78.4	79.0	78.0	78.7	73.5
	통로	86.6	80.2	81.5	81.8	78.3	69.1	85.7	73.1
	경사로	73.8	77.4	77.1	76.7	75.0	63.9	64.2	64.6
	엘리베이터	97.7	97.8	98.2	94.4	92.4	91.8	94.0	91.4
	에스컬레이터	74.8	84.2	92.1	84.1	87.4	74.3	77.7	67.2
	계단	89.9	93.6	92.4	90.8	88.6	86.4	90.1	87.7
	평균	84.6	85.8	86.7	84.4	83.5	77.2	81.7	76.2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80.5	74.1	76.8	71.5	82.1	73.7	73.0	80.7
	대변기	96.7	73.9	88.9	94.2	93.8	90.0	84.1	87.1
	소변기	84.5	74.1	56.5	75.0	91.7	37.0	73.8	78.9
	세면대	81.4	73.4	76.2	75.5	76.8	75.1	77.3	74.4
	평균	85.8	73.9	74.6	79.1	86.1	69.0	77.0	80.3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93.6	78.3	95.4	94.4	83.3	94.1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81.3	53.7	65.0	86.4	79.2	50.0	70.0	73.7
	경보피난시설	84.4	37.0	85.0	86.4	79.2	73.1	68.8	94.7
	평균	88.5	61.5	76.1	89.4	84.3	68.8	77.6	89.5
기타 시설	매표소	94.4	91.3	89.5	91.3	91.7	73.3	85.0	86.7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96.0	87.7	96.7	93.9	100.0	93.8	87.9	90.5
	개찰구	99.0	93.1	87.0	92.3	100.0	100.0	86.7	79.6
	승강장	91.8	63.4	68.1	75.3	75.9	65.5	61.8	68.2
	임산부휴게시설	89.9	65.4	79.3	90.9	88.3	67.9	84.5	79.8
	평균	94.2	80.2	84.1	88.7	91.2	80.1	81.2	81.0

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22)

4) 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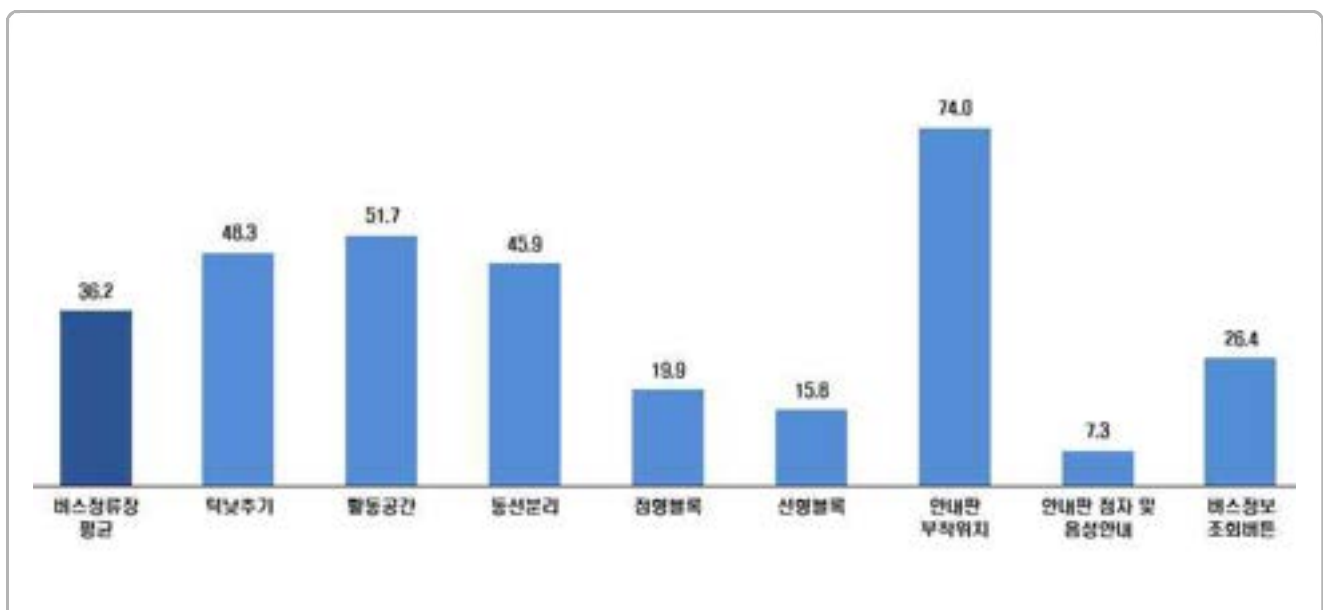
- ▶ 버스정류장은 조사대상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 및 광역철도역사, 공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150m 이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턱낮추기, 활동공간, 동선분리, 점형블록, 선형블록, 안내판 부착위치,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버스정보조회버튼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 9개도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6.2%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안내판부착위치(74.0%)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고,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7.3%), 버스정보조회버튼(26.4%)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버스정류장 평균	36.2	18.0	45.9
턱낮추기	48.3	49.2	2.5
활동공간	51.7	20.4	27.8
동선분리	45.9	0.0	54.1
점형블록	19.9	3.8	76.3
선형블록	15.8	3.1	81.1
안내판부착위치	74.0	12.5	13.5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7.3	44.3	48.4
버스정보조회버튼	26.4	10.4	63.2

〈그림 3-6〉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❶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제주가 50.8%로 가장 높고, 경남이 2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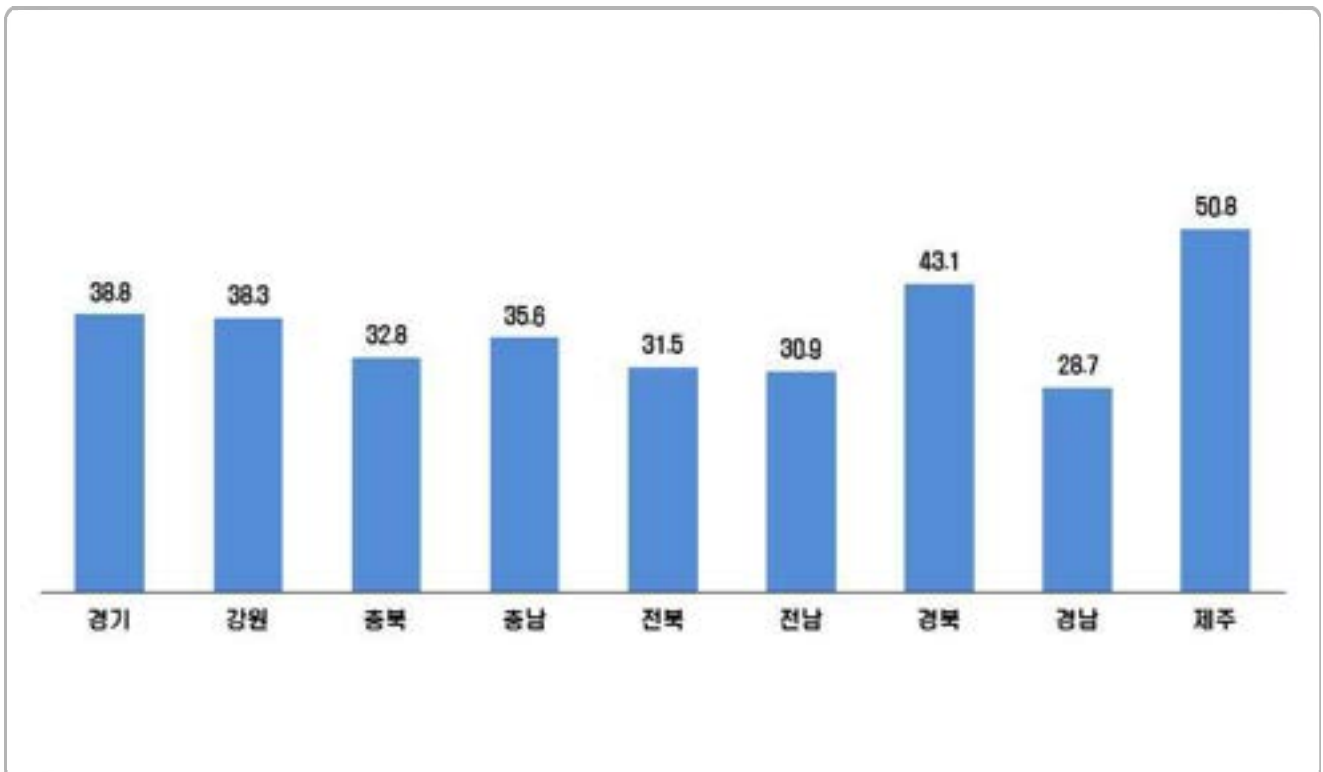
❷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제주(50.8%)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버스정보조회 버튼(75.0%) 항목이 다른지역 기준적합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2〉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152	59	41	50	44	61	69	67	10
평균	38.8	38.3	32.8	35.6	31.5	30.9	43.1	28.7	50.8
턱낮추기	32.9	88.1	36.6	42.0	56.8	59.0	50.7	40.3	60.0
활동공간	58.6	49.2	36.6	58.0	50.0	37.7	62.3	43.3	70.0
동선분리	48.0	40.7	31.7	68.0	45.5	32.8	60.9	32.8	60.0
점형블록	35.5	5.1	12.2	10.0	15.9	14.8	18.8	16.4	30.0
선형블록	21.3	6.1	14.3	10.4	18.4	10.2	20.7	19.2	11.1
안내판부착위치	79.5	81.3	66.7	70.6	46.4	67.9	85.4	59.5	100.0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3.0	10.4	11.1	8.8	7.1	0.0	19.5	8.1	0.0
버스정보조회버튼	31.6	25.8	53.3	16.7	11.5	25.0	26.3	9.7	75.0

〈그림 3-7〉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2.4 보행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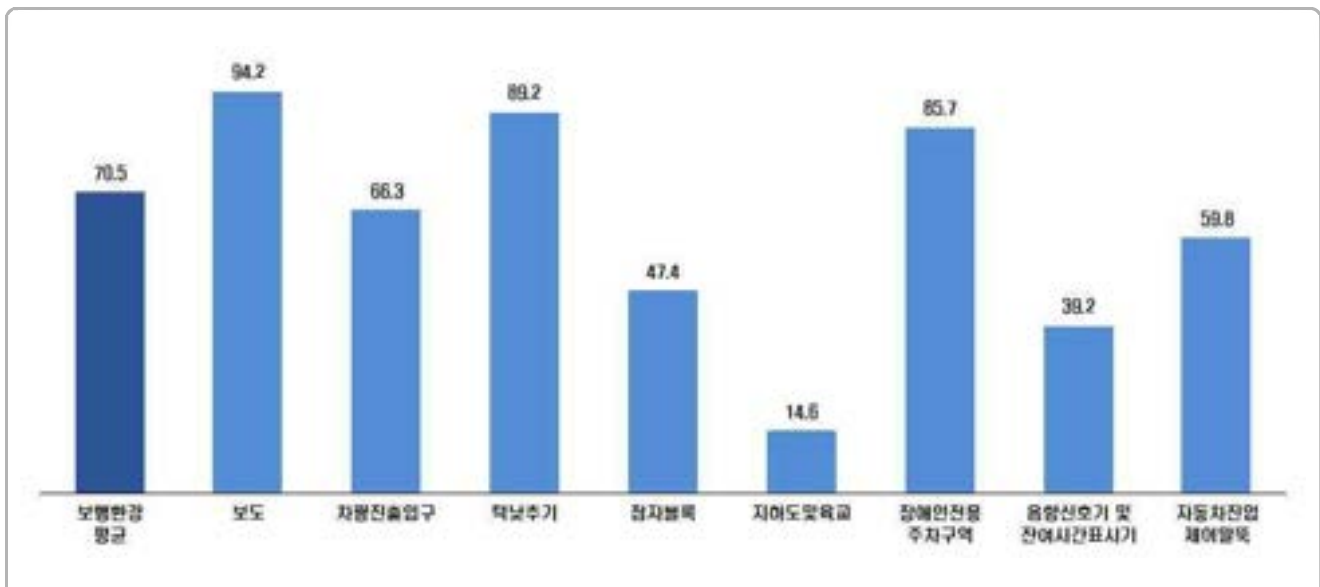
- ▶ 보행환경은 조사대상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 및 광역철도역사, 공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150m 이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까지 및 노상주차장, 교통약자거점 시설까지의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보도,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제어말뚝(볼라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 9개도 보행환경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0.5%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보도(94.2%)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고, 지하도 및 육교(14.6%)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3-13〉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보행환경 평균	70.5	10.8	18.7
보도	94.2	3.1	2.7
차량진출입부	66.3	22.0	11.7
턱낮추기	89.2	8.4	2.3
점자블록	47.4	10.6	42.0
지하도 및 육교	14.6	5.4	79.9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85.7	14.3	0.0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39.2	2.0	58.8
자동차진입제어말뚝(볼라드)	59.8	25.5	14.7

〈그림 3-8〉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제주가 86.4%로 가장 높고 경남이 6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제주(86.4%)의 항목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100.0%)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62.0%)의 항목별 기준적합률을 살펴보면, 차량진출입부(13.1%), 지하도 및 육교(15.0%) 항목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4〉 보행환경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구간,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191	87	59	73	64	93	98	94	12
평균	78.5	65.7	73.8	70.6	62.8	66.6	71.9	62.0	86.4
보도	96.7	91.4	93.6	95.6	93.8	94.0	94.1	91.0	96.3
차량진출입부	92.3	60.2	92.1	76.8	63.3	72.5	67.5	13.1	100.0
턱낮추기	89.8	87.5	93.8	94.4	92.2	89.3	93.8	75.0	100.0
점자블록	62.2	34.1	63.6	57.1	46.6	39.5	42.1	30.5	66.7
지하도 및 육교	21.5	0.0	9.1	7.9	25.0	28.6	0.0	15.0	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100.0	100.0	-	100.0	-	0.0	-	100.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63.6	33.3	42.9	25.0	0.0	36.4	-	-	100.0
자동차진입제어말뚝(블라드)	78.4	50.0	35.7	43.8	0.0	65.3	-	-	75.0

〈그림 3-9〉 보행환경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2.5 전년도 설치율 비교

2021년의 9개도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 기준적합 설치율과 금번 2022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비교함

2022년도(9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5.1%로, 2021년(73.9%)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수단 : 78.7%(2021년) → 79.7%(2021년) ▲ 1.0%p 증가
- 여객시설 : 73.1%(2021년) → 75.2%(2021년) ▲ 2.1%p 증가
- 보행환경 : 69.9%(2021년) → 70.5%(2021년) ▲ 0.6%p 증가

〈표 3-1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20년 / 2021년 / 2022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①)	2022년(②)	비고 (②-①)
전체 평균		72.1	73.9	75.1	▲ 1.2
교통 수단	버스차량	88.4	86.6	87.0	▲ 0.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86.6	96.0	97.2	▲ 1.2
	철도차량	98.6	98.9	99.1	▲ 0.2
	항공기	73.7	73.7	73.9	▲ 0.2
	여객선	35.4	38.4	41.2	▲ 2.8
	교통수단 평균	76.5	78.7	79.7	▲ 1.0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7.1	62.5	68.3	▲ 5.8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87.4	89.9	90.7	▲ 0.8
	철도역사	85.2	82.5	83.4	▲ 0.9
	공항여객터미널	88.3	88.2	90.2	▲ 2.0
	여객선터미널	81.2	80.6	82.2	▲ 1.6
	버스정류장	34.6	34.9	36.2	▲ 1.3
	여객시설 평균	74.0	73.1	75.2	▲ 2.1
보행환경	65.9	69.9	70.5	▲ 0.6	

주 : 2020년 및 2021년 기준적합 설치율은 2022년도 기준에 맞춰 재산정한 수치임

2021년의 9개도를 대상으로 한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과 금번 2022년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비교함

〈표 3-16〉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비교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①)	2022년(②)	비고 (②-①)
버스차량	93.9	91.8	92.0	▲ 0.2
여객자동차터미널	73.1	69.9	73.4	▲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87.4	87.4	88.6	▲ 1.2
철도역사	90.1	86.9	89.5	▲ 2.6
여객선터미널	81.7	81.7	82.6	▲ 0.9
버스정류장	37.3	37.0	38.8	▲ 1.8
보행환경	75.6	75.6	78.5	▲ 2.9

주 : 2020년 및 2021년 기준적합 설치율은 2022년도 기준에 맞춰 재산정한 수치임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교통약자 이동실태

3.1 조사 목적 및 범위

경기도 이동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결과를 인용해 분석함

실태조사 개요

- 시간적 범위 : 2022년
- 공간적 범위 : 도 단위(9개 도)
- 내용적 범위 : 이동실태, 보행환경/교통수단/여객시설 만족도, 종합의견

〈표 3-17〉 조사범위

구분	내용
시간적 범위	2022년
공간적 범위	도 지역(9개 도)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역 내/기초지역 내/지역 간 이동실태 (외출빈도, 주 이용 교통수단, 외출 시간대, 외출 시 소요 시간) • 보행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횡단보도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교통수단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 철도차량,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 대체 수단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여객시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 철도역사,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이동편의 시설, 보행환경, 교통수단, 여객시설 - 정부의 이동편의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 조사대상 : 일주일 동안 버스, 지하철, 철도,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대체 수단 이용 횟수의 총합이 5회 이상인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 현황 :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를 7:3의 비율(교통약자 1,050명, 비교통약자 450명)이며 남성이 43.3%, 여성이 56.7%로 조사되었음

〈표 3-18〉 만족도조사 응답자 현황

구분	사례수	남자	여자	
전체	1,500	43.3	56.7	
교통약자	1,050	39.9	60.1	
비교통약자	450	51.1	48.9	
교통약자	장애인	420	55.2	44.8
	지체	231	60.2	39.8
	시각	102	55.9	44.1
	청각	87	41.4	58.6
	임산부	210	0.0	100.0
	고령자	420	44.5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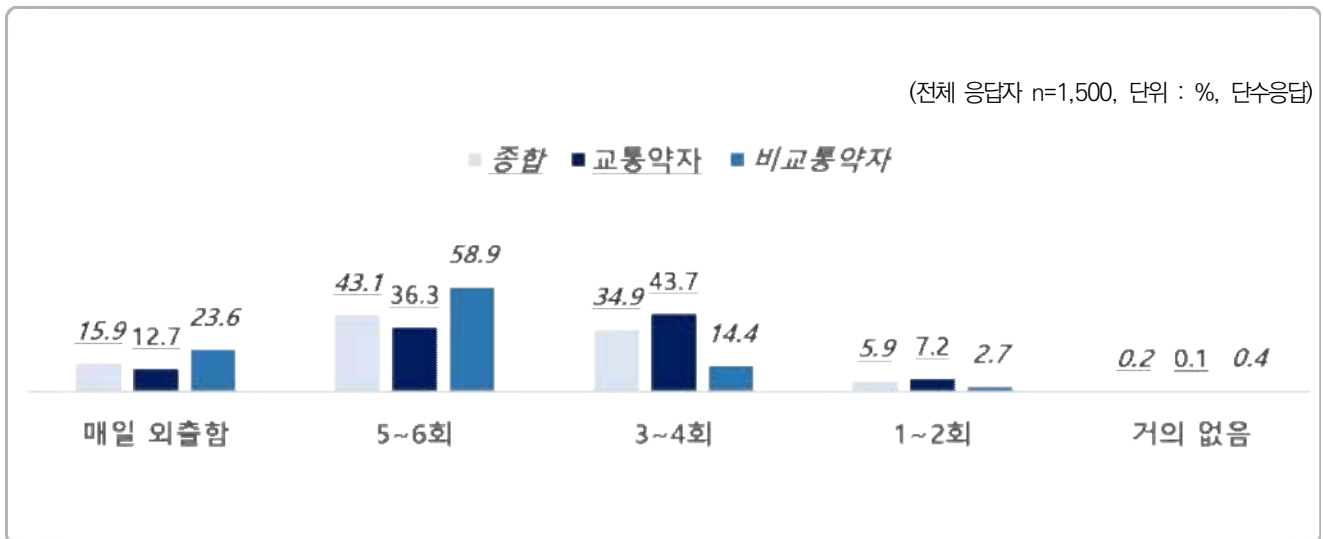
이용자 중심의 희망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항목에 포함 필요

3.2 기초지역내 이동 실태

1) 외출빈도

기초지역 내 외출빈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3~4회' 의 응답 비중이 43.7%로 가장 높았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5~6회' 의 응답 비중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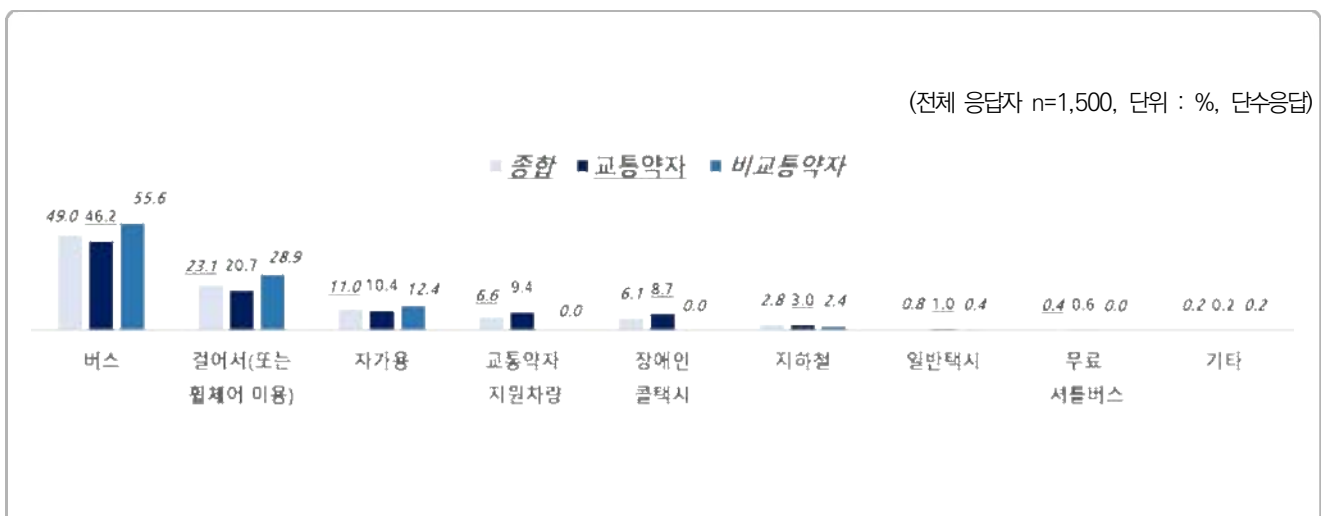
〈그림 3-10〉 기초지역 내 - 외출빈도



2) 주 이용 교통수단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버스' 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 49.0%, 교통약자 46.2%, 비교통약자 55.6%)가 가장 많았음

〈그림 3-11〉 기초지역 내 - 주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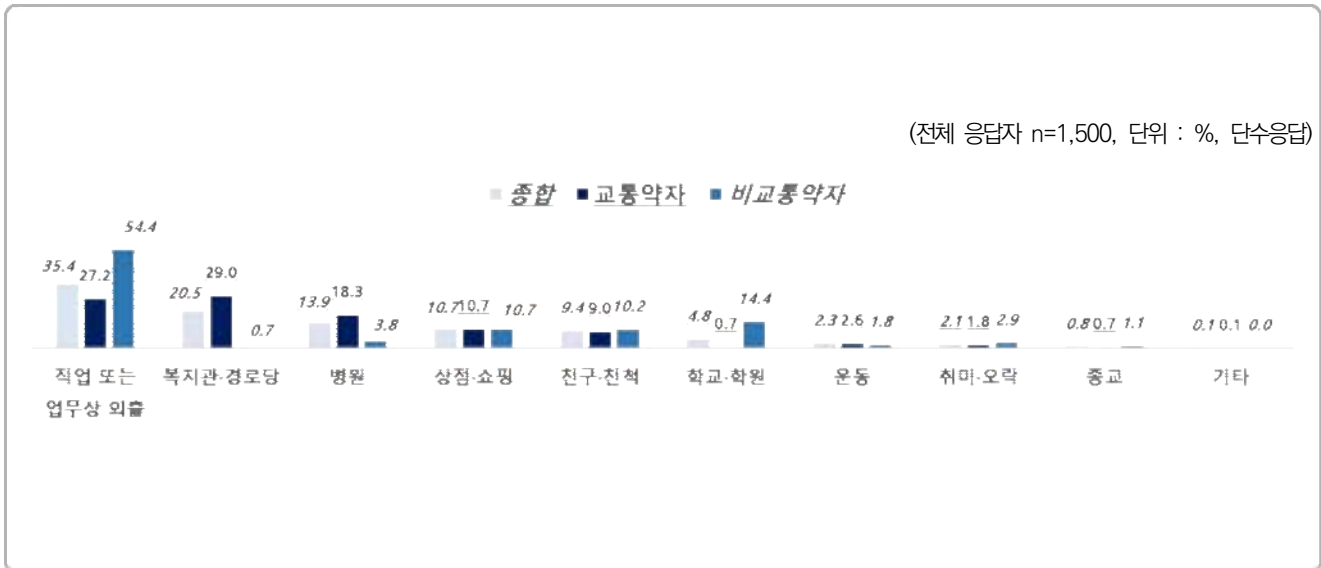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주 외출 목적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외출 목적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복지관·경로당'의 응답 비중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의 응답 비중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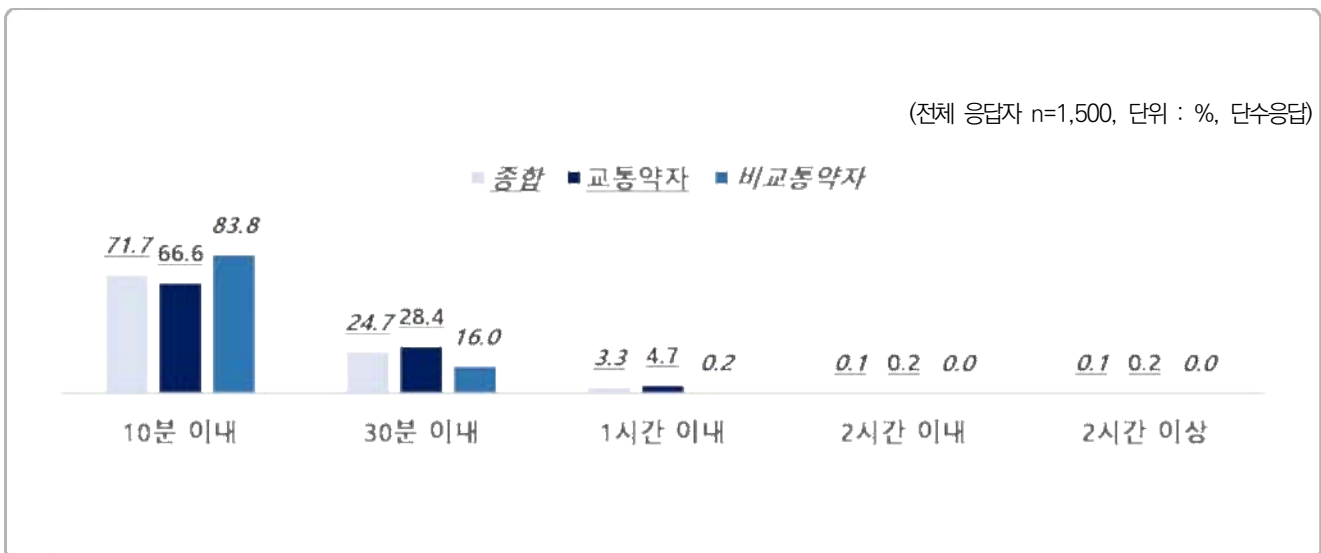
〈그림 3-12〉 기초지역 내 - 주 외출 목적



4)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0분 이내' 이동한다는 경우(전체 71.7%, 교통약자 66.6%, 비교통약자 83.8%)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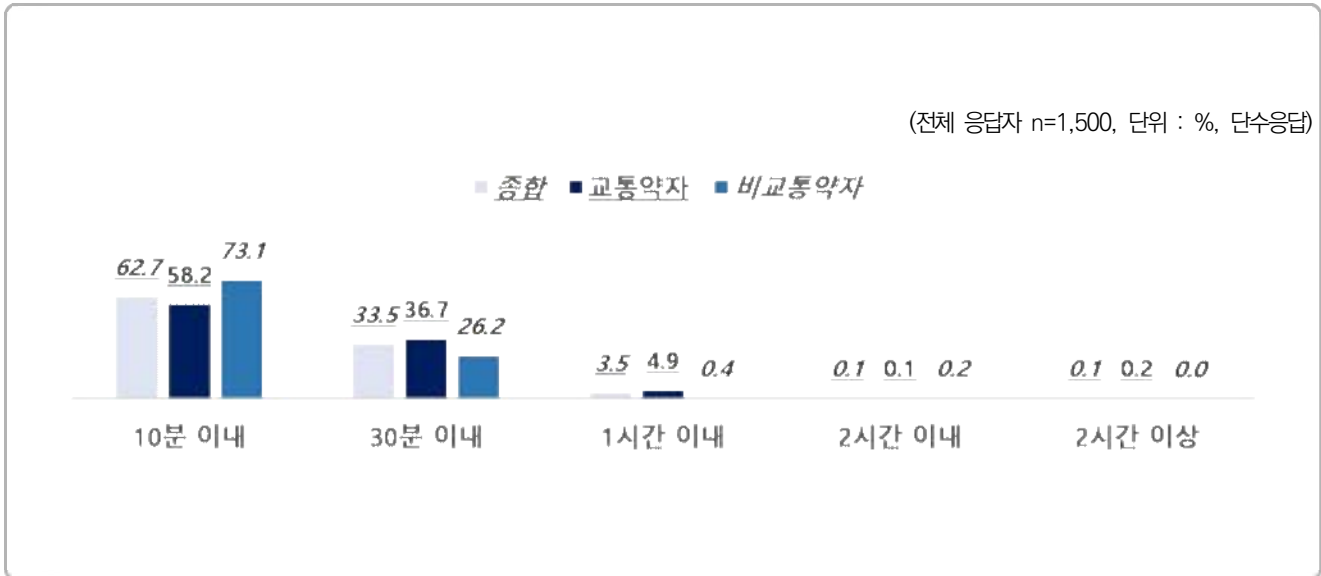
〈그림 3-13〉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5)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0분 이내' 대기한다는 경우(전체 62.7%, 교통약자 58.2%, 비교통약자 73.1%)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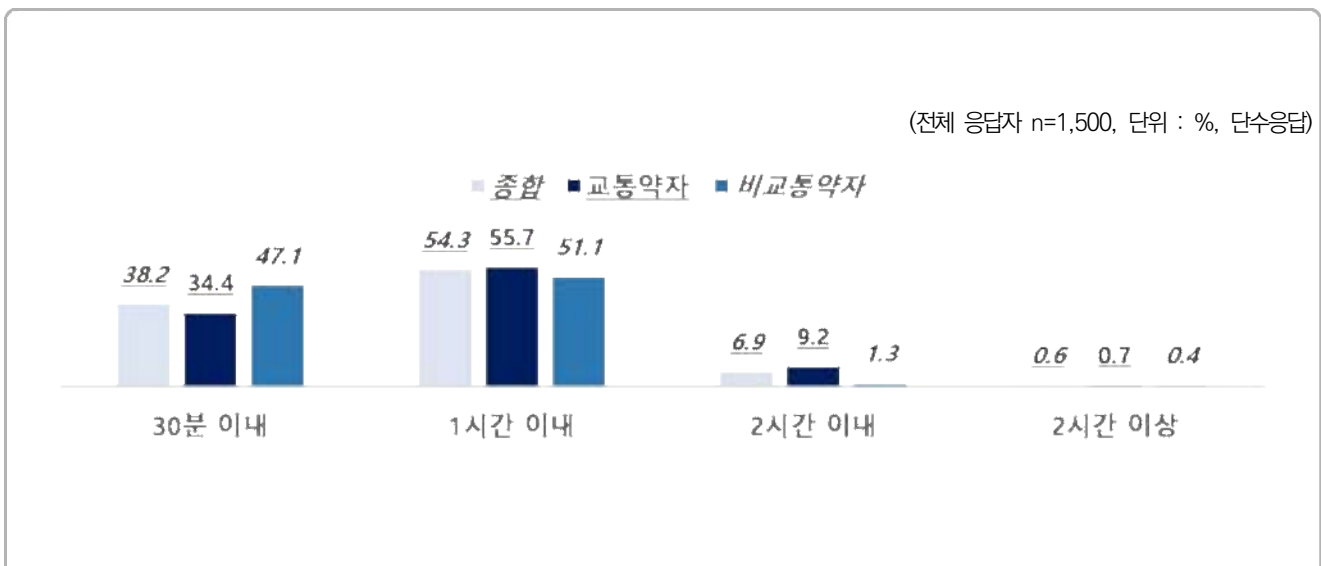
〈그림 3-14〉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6)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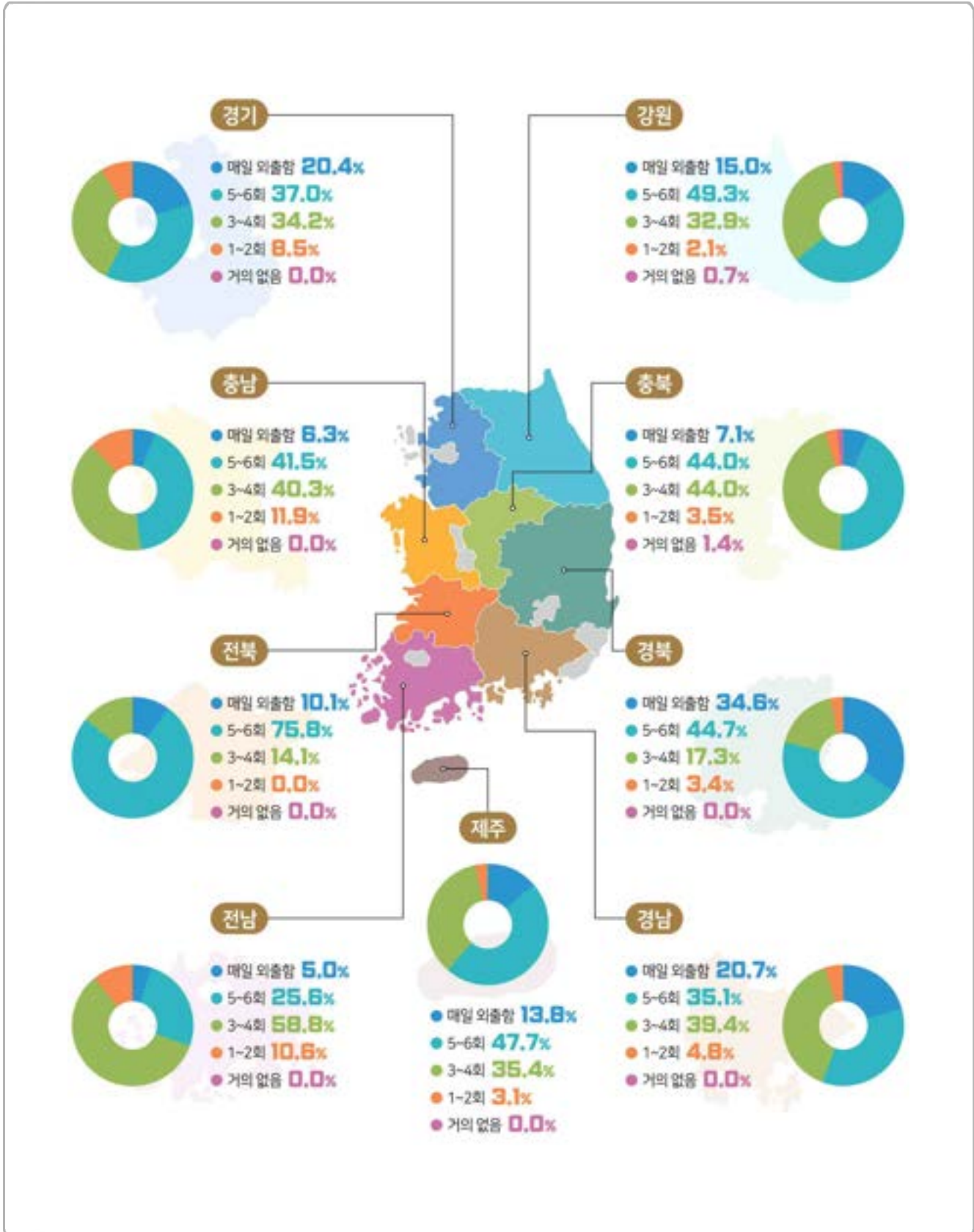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시간 이내' 의 응답 비중(전체 54.3%, 교통약자 55.7%, 비교통약자 5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기초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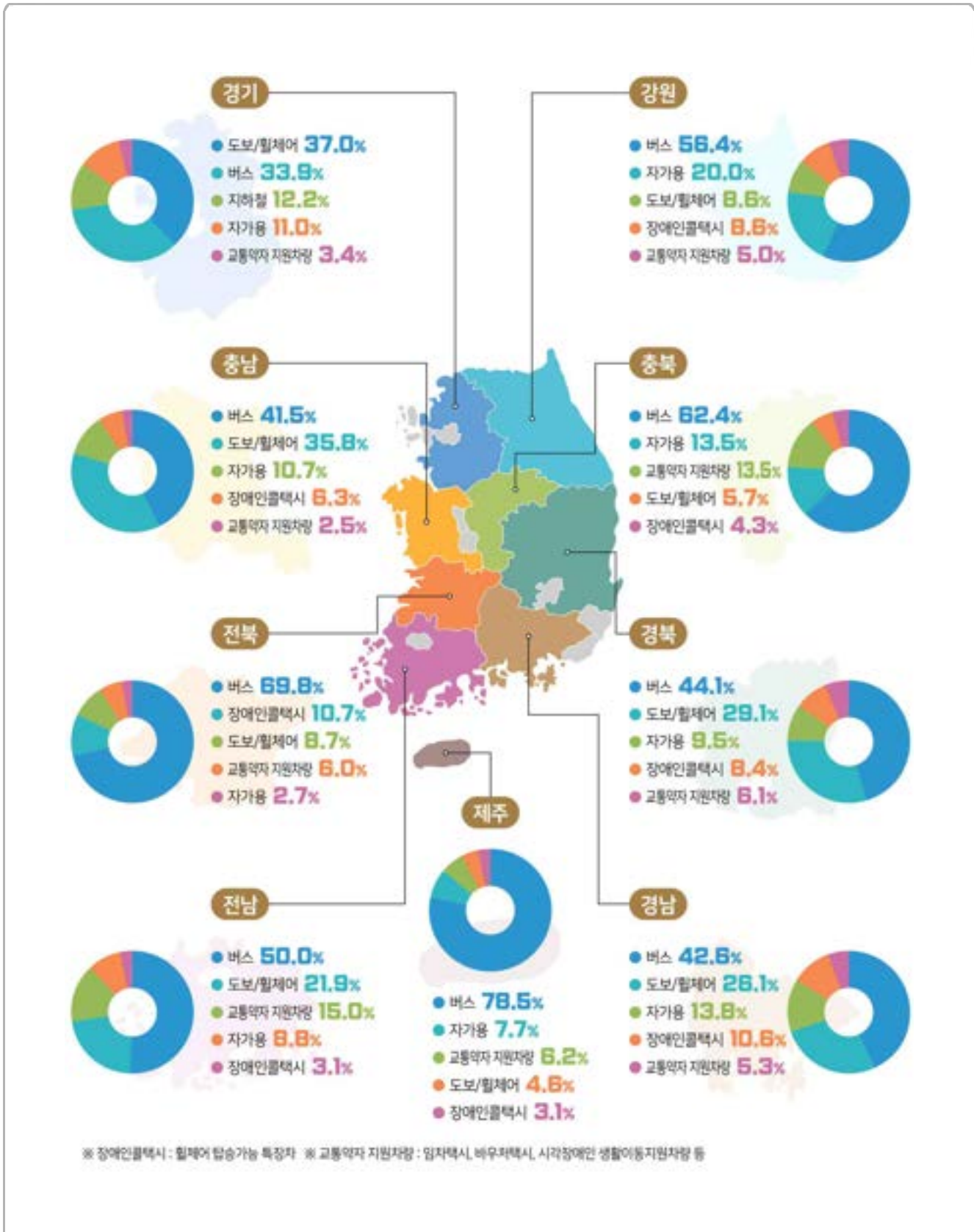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그림 3-16〉 기초지역내 외출 빈도



〈그림 3-17〉 기초지역내 주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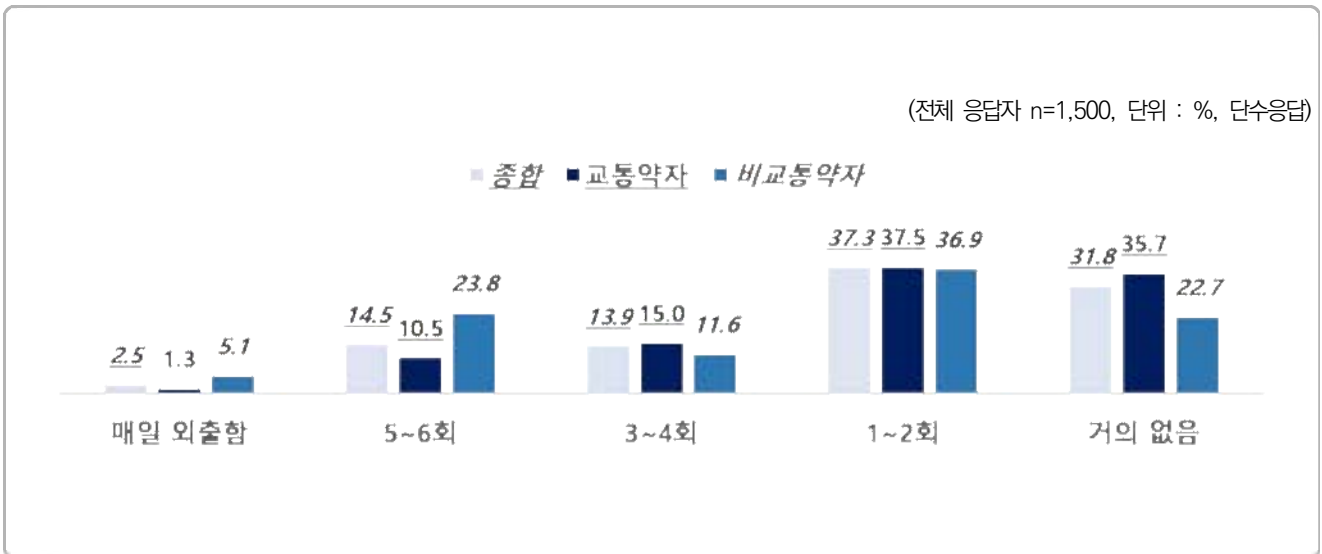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3 광역지역내 이동실태

1) 외출빈도

▶ 광역지역 내 외출빈도를 살펴보면, '1~2회' 가 가장 많았고,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2회' 의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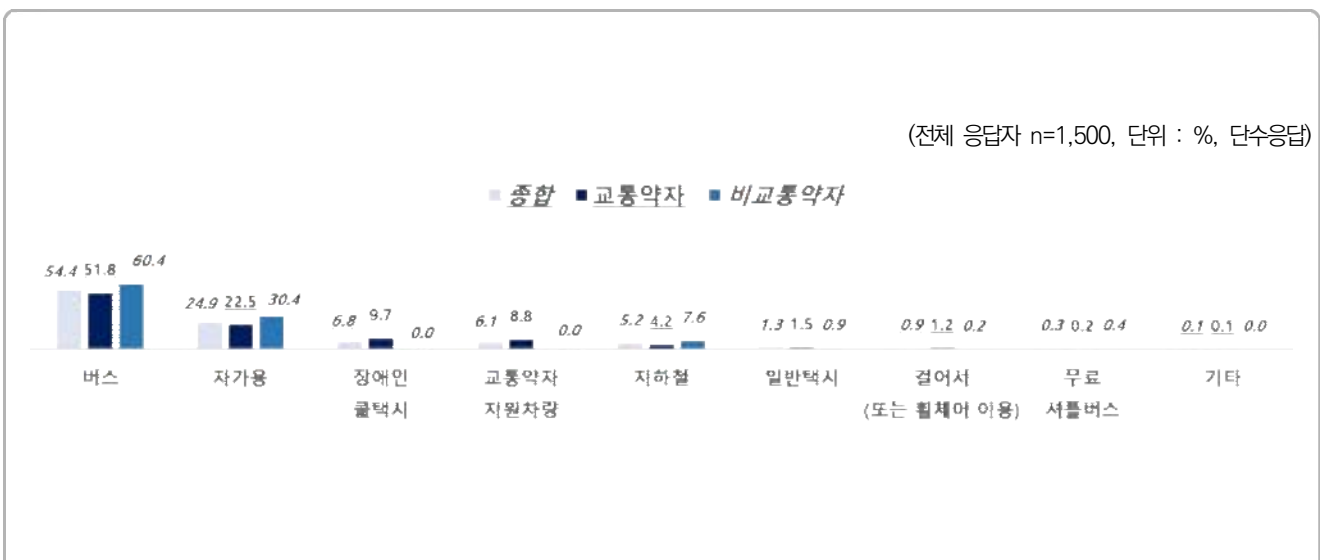
〈그림 3-18〉 광역지역 내 - 외출빈도



2) 주 이용 교통수단

▶ 지역 내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버스' 를 이용하는 비중이 54.4%(교통약자 51.8%, 비교통약자 6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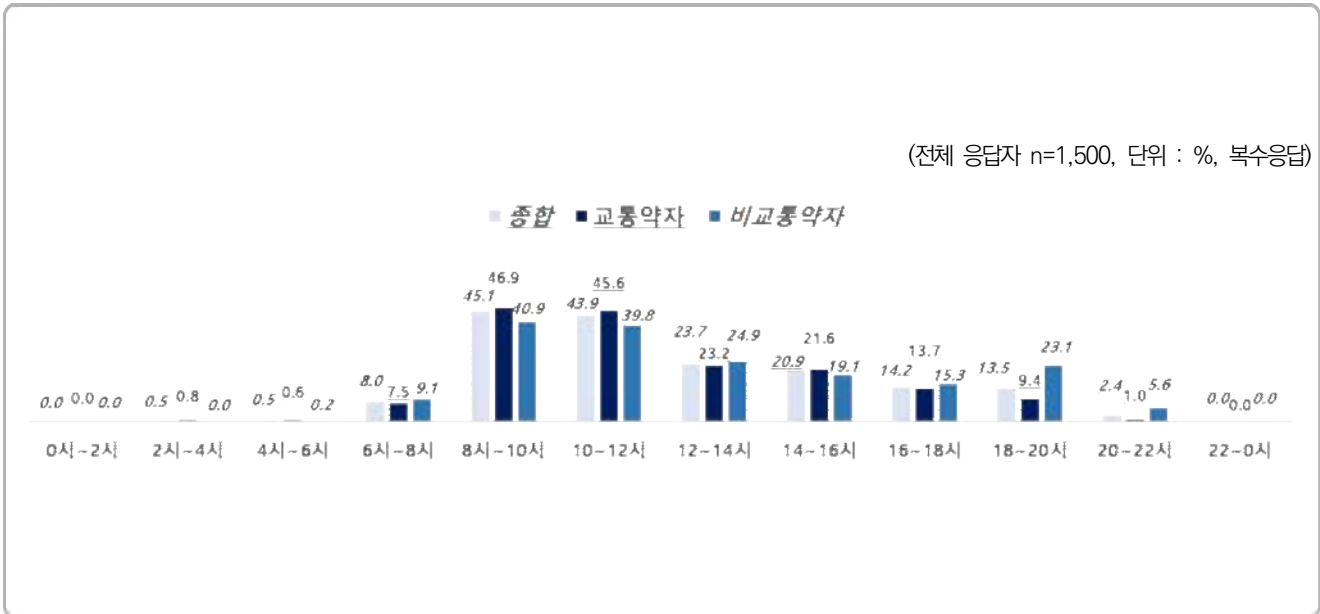
〈그림 3-19〉 광역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



3) 주 외출 시간대

지역 내 주 외출 시간대를 살펴보면, '8시~10시' 의 응답 비중이 45.1%(교통약자 46.9%, 비교통약자 4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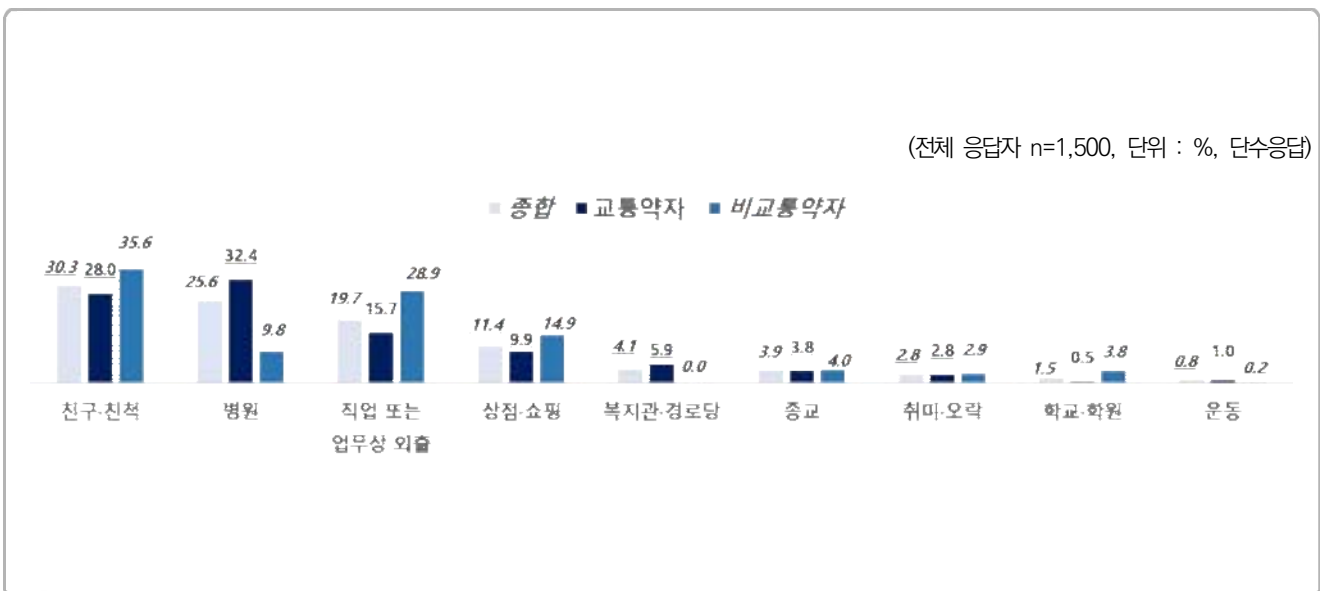
〈그림 3-20〉 광역지역 내 - 주 외출 시간대



4) 주 외출 목적

지역 내 주 외출 목적' 을 살펴보면, '친구·친척' 의 응답 비중이 30.3%(교통약자 28.0%, 비교통약자 3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 광역지역 내 - 외출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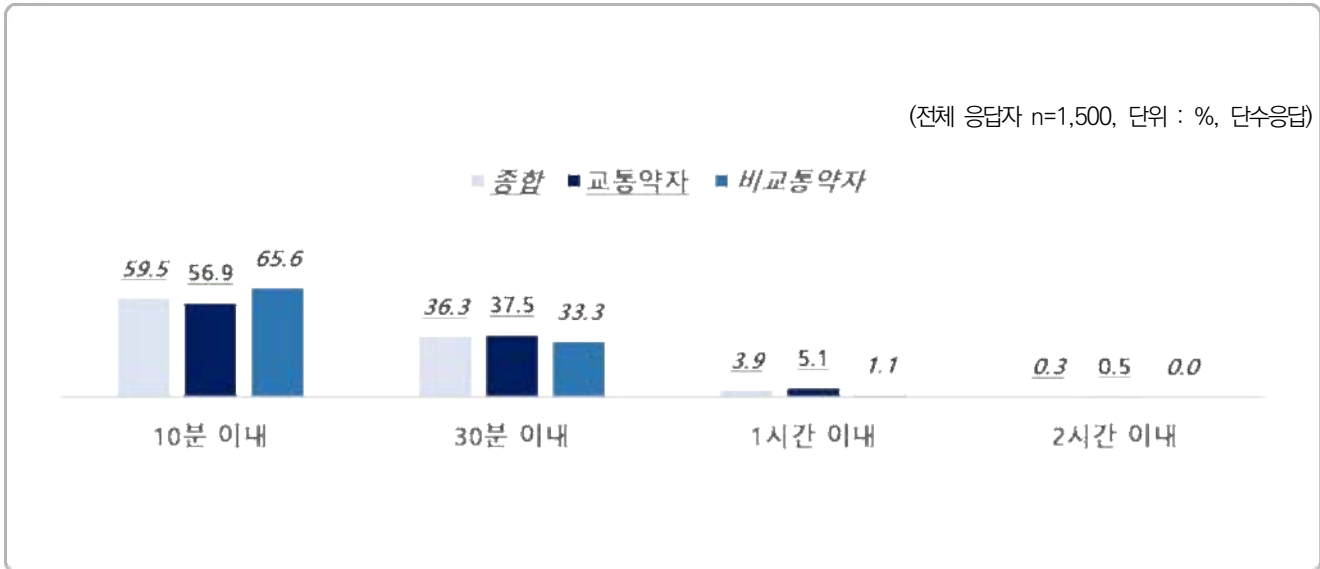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5)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지역 내 외출 시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0분 이내’ 이동하는 경우(전체 59.5%, 교통약자 56.9%, 비교통약자 65.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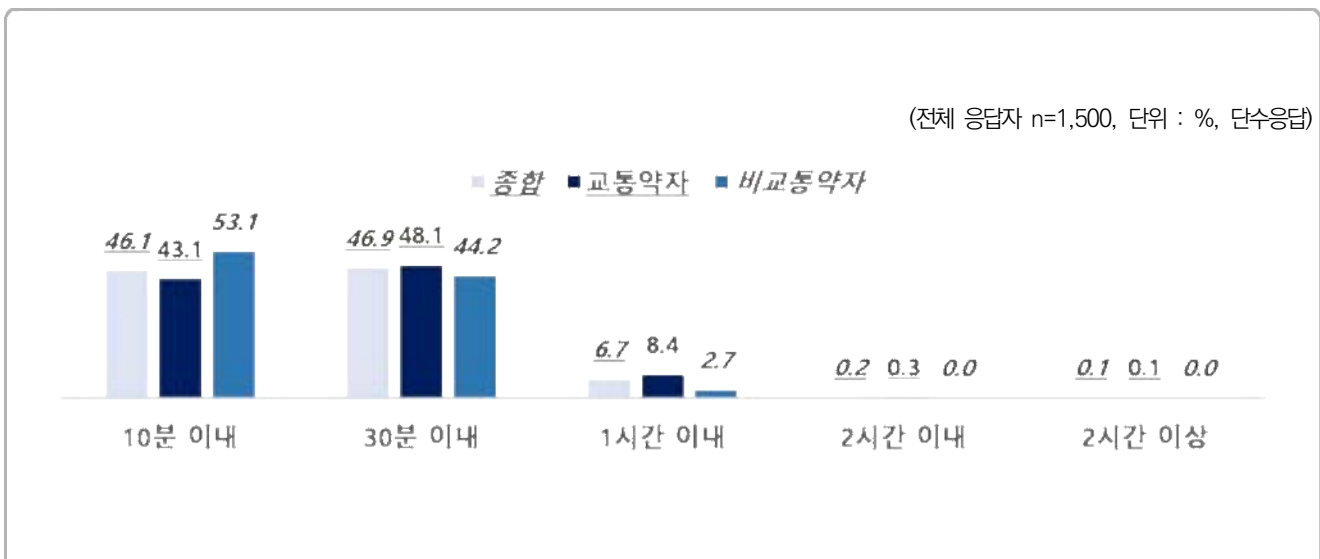
〈그림 3-22〉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6)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지역 내 외출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30분 이내’의 응답 비중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10분 이내’의 비중이 5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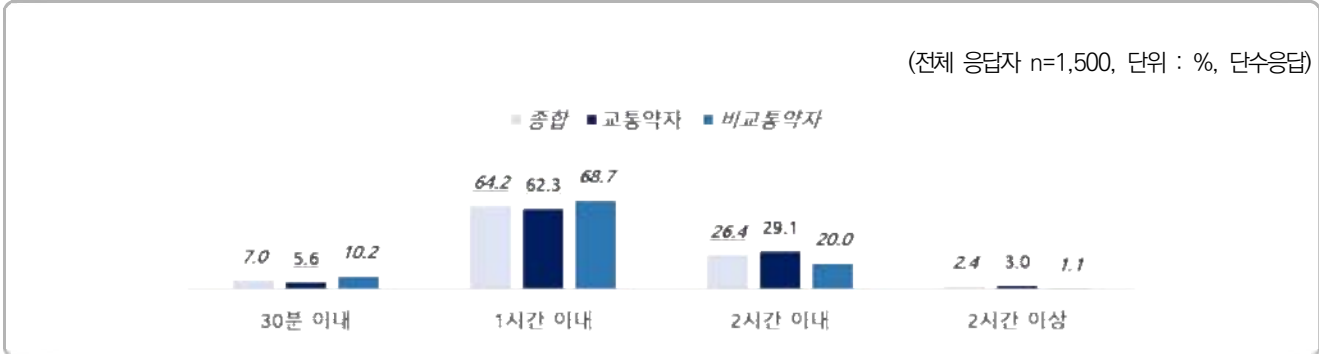
〈그림 3-23〉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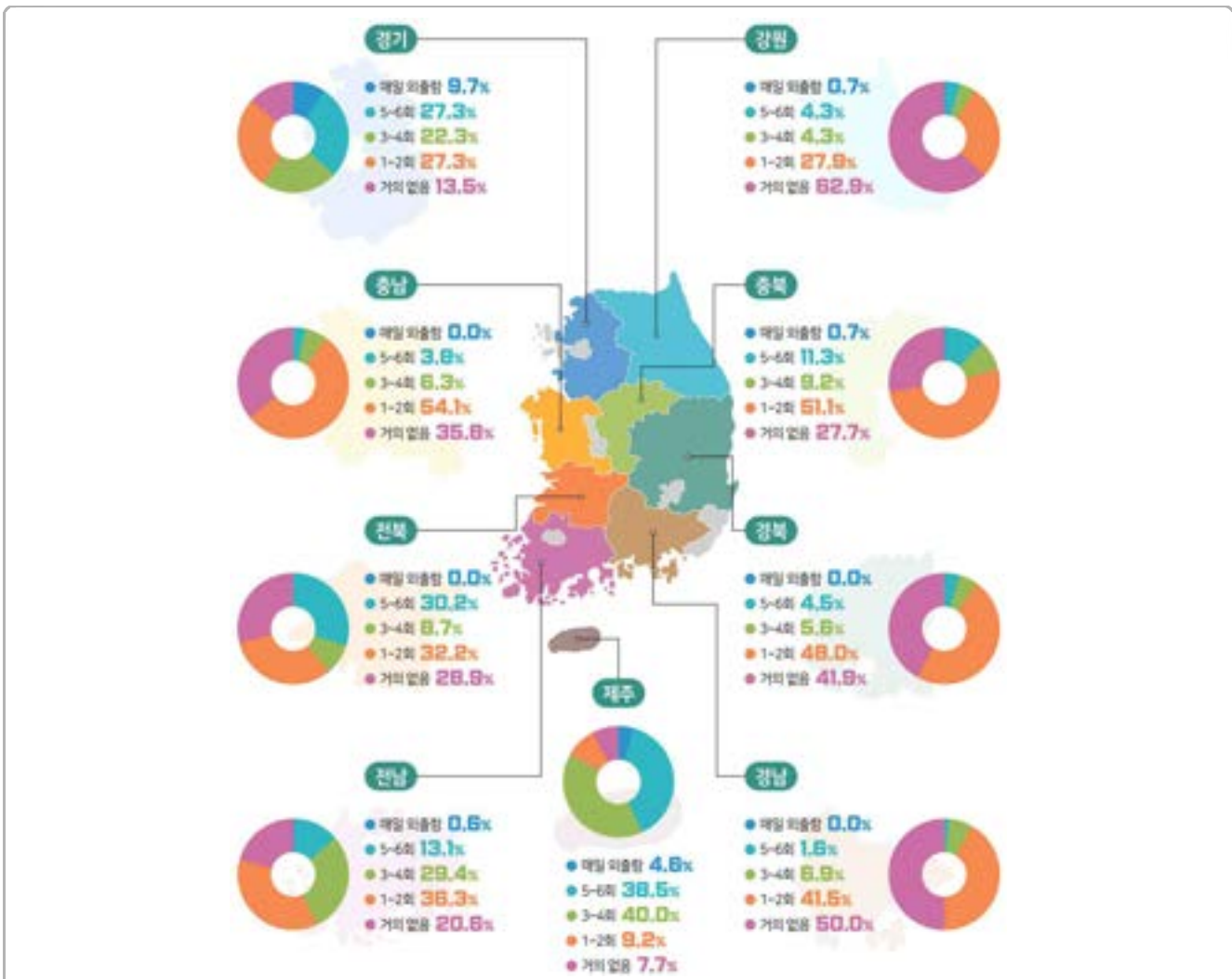
7)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지역 내 외출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시간은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시간 이내’ (전체 64.2%, 교통약자 62.3%, 비교통약자 68.7%)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광역지역 내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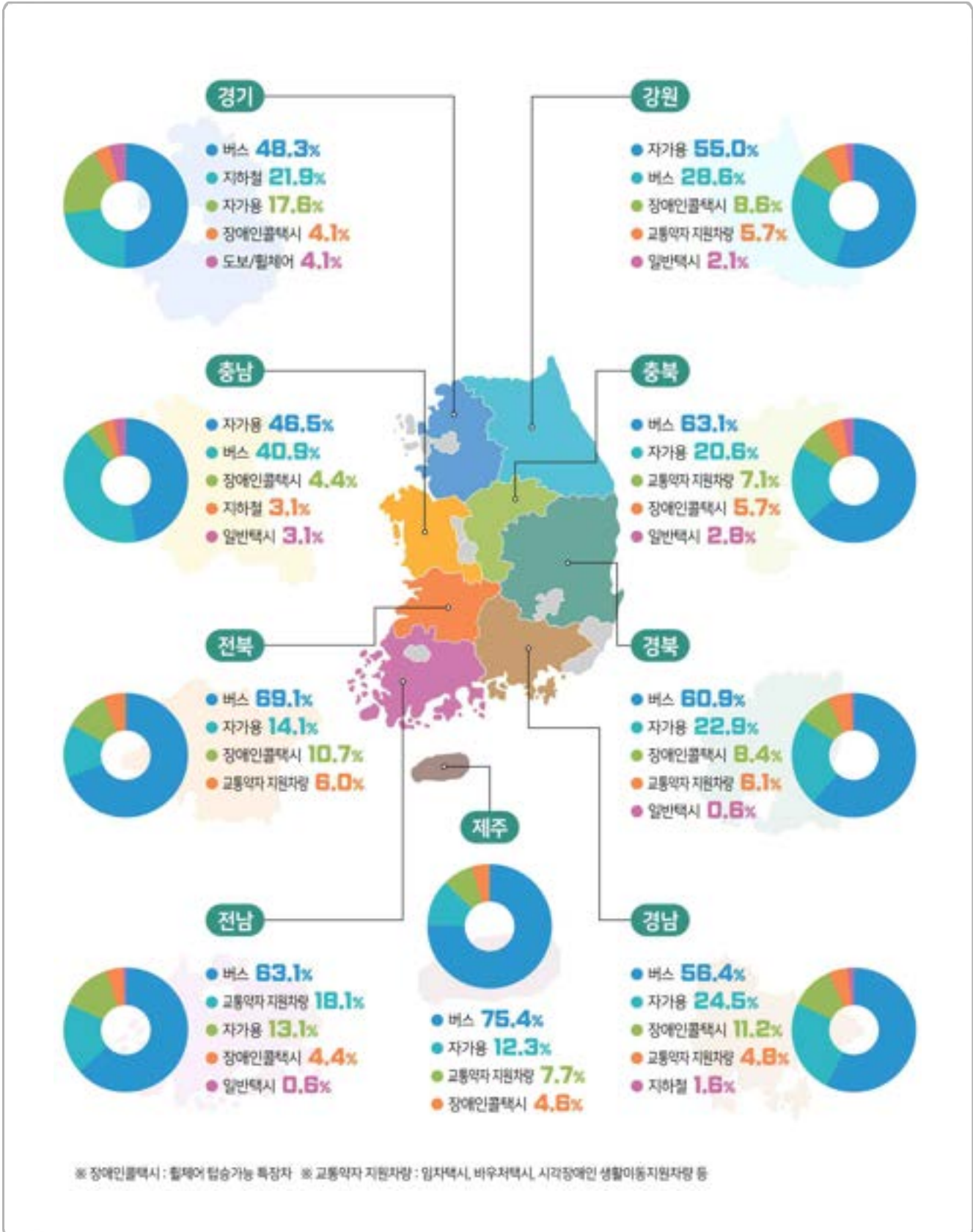


〈그림 3-25〉 광역지역내 외출 빈도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그림 3-26〉 광역지역내 주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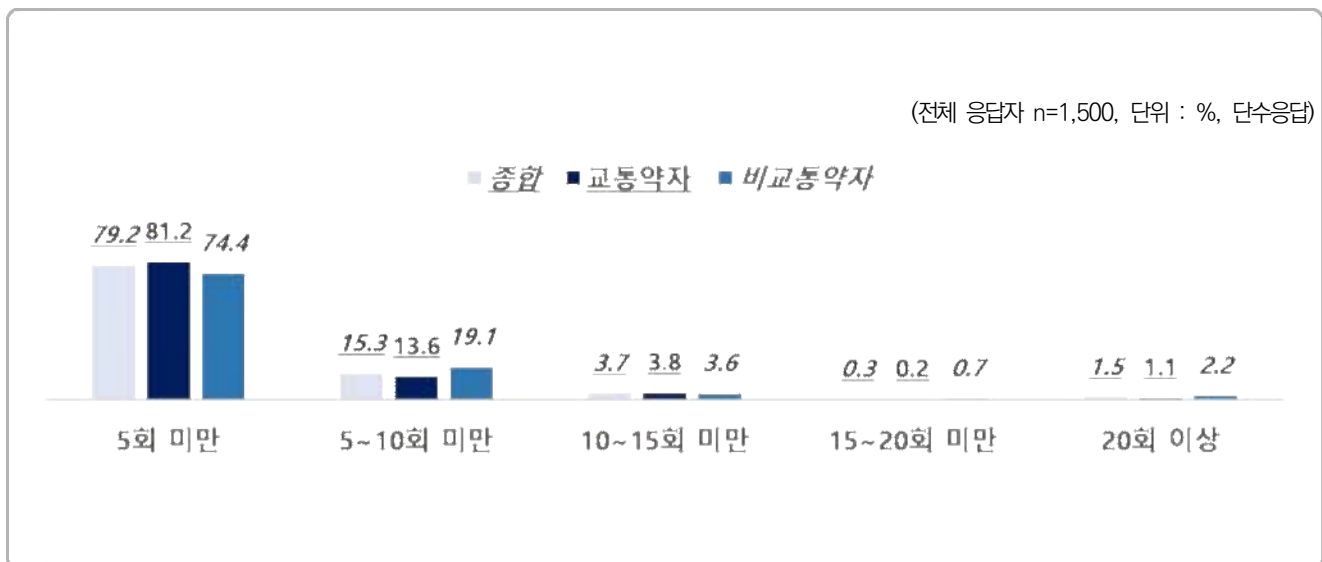


3.4 지역간 이동실태

1) 외출빈도

지역 간 외출빈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5회 미만' 외출한다는 경우가(전체 79.2%, 교통약자 81.2%, 비교통약자 74.4%)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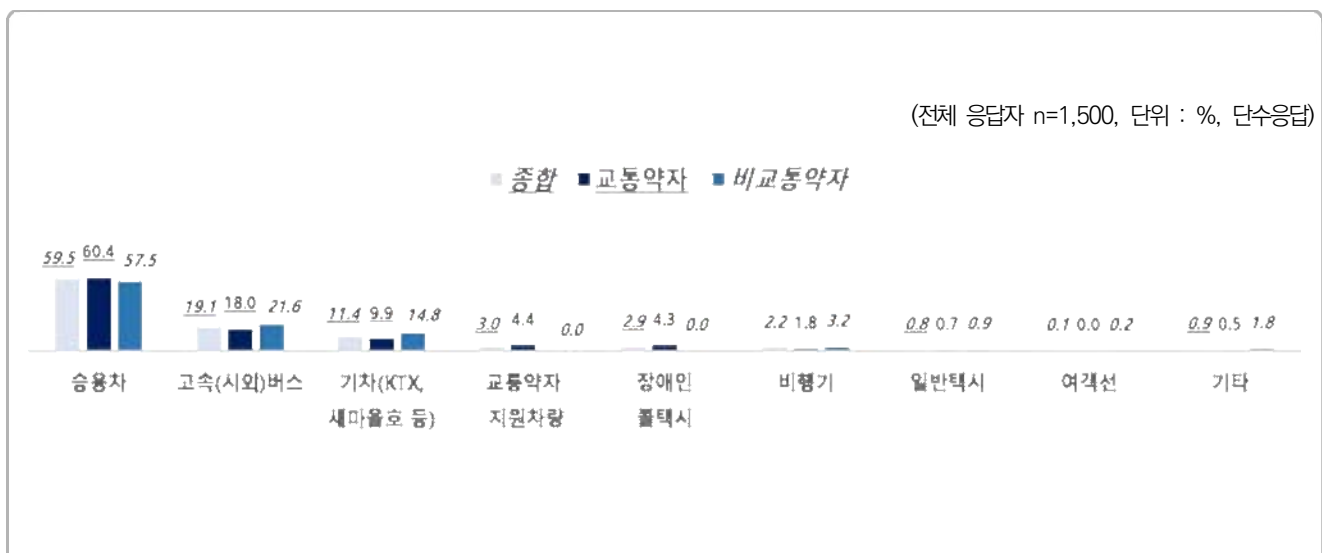
〈그림 3-27〉 지역 간 - 외출빈도



2) 주 이용 교통수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승용차' 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 59.5%, 교통약자 60.4%, 비교통약자 57.5%)가 가장 많았음

〈그림 3-28〉 지역 간 - 주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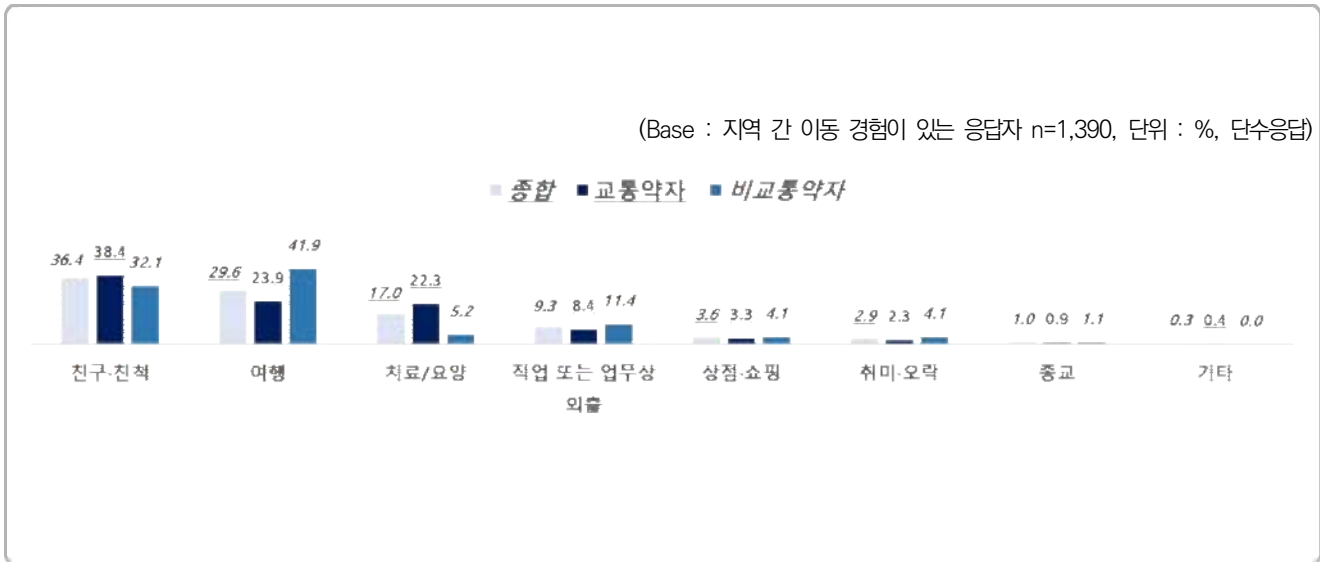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주 외출 목적

지역 간 이동 시 주 외출 목적' 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친구·친척' 의 응답 비중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여행' 의 응답 비중이 41.9%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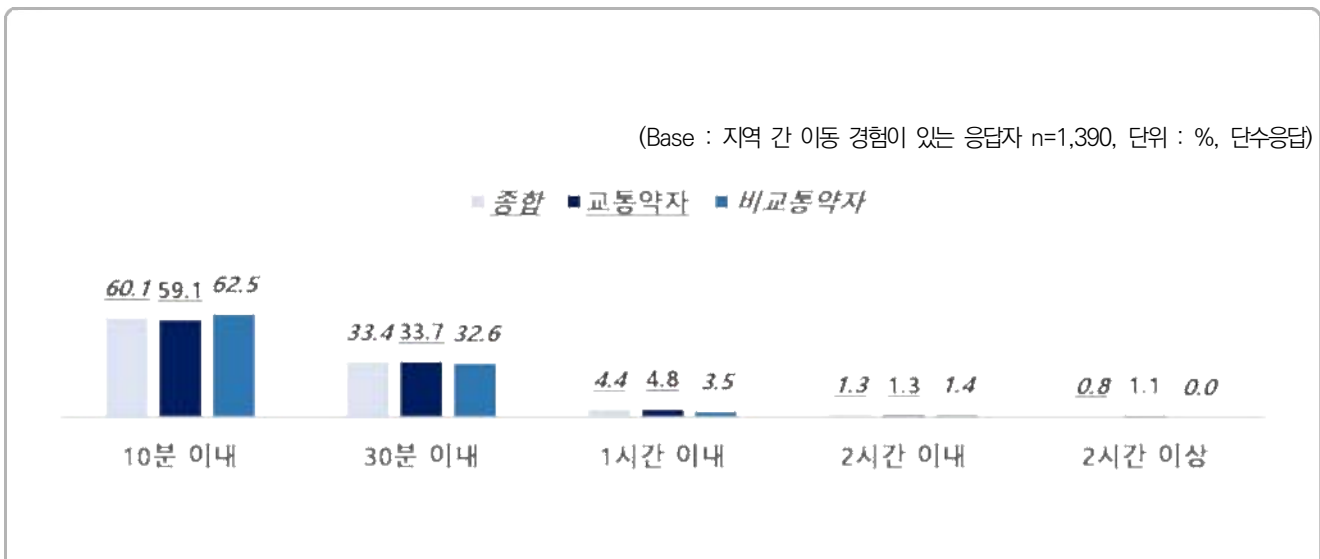
〈그림 3-29〉 지역 간 - 주 외출 목적



4)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기초지역 내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10분 이내' 이동한다는 경우(전체 60.1%, 교통약자 59.1%, 비교통약자 62.5%)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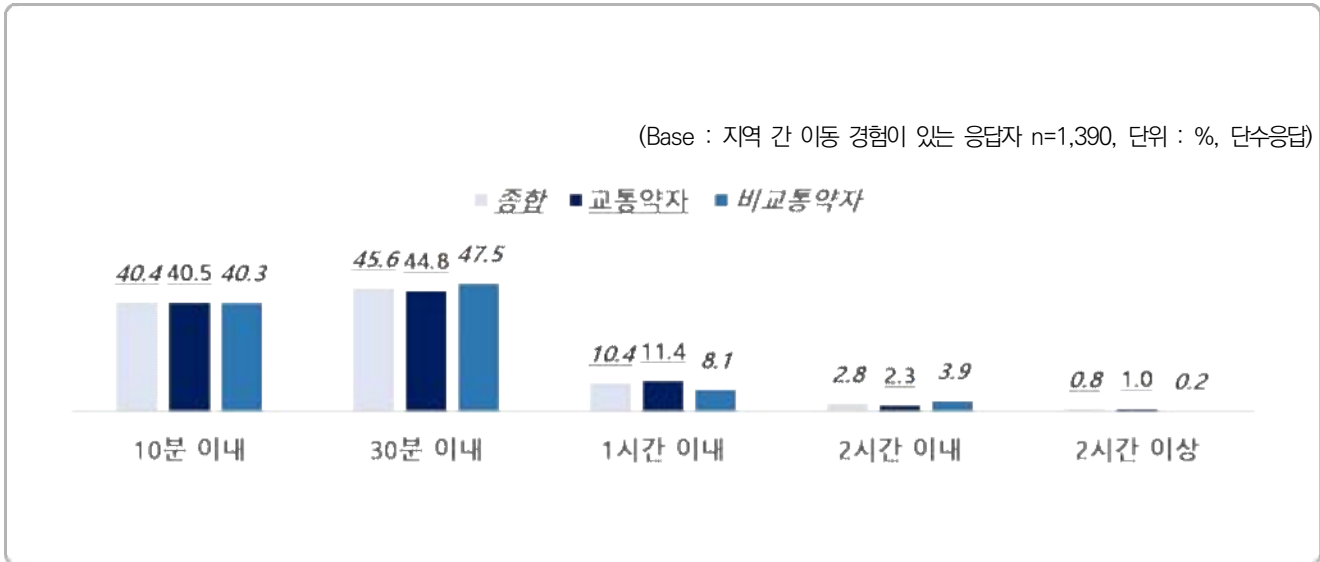
〈그림 3-30〉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평균 도보이동 시간



5)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지역 간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30분 이내' 대기한다는 경우(전체 45.6%, 교통약자 44.8%, 비교통약자 47.5%)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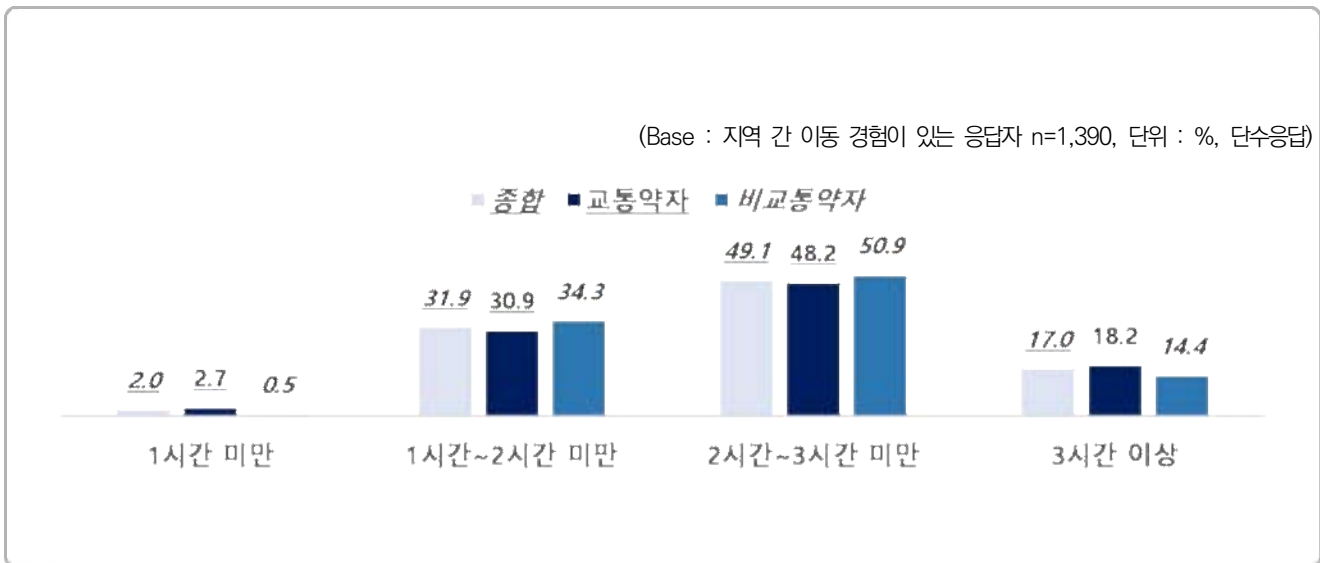
〈그림 3-31〉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6)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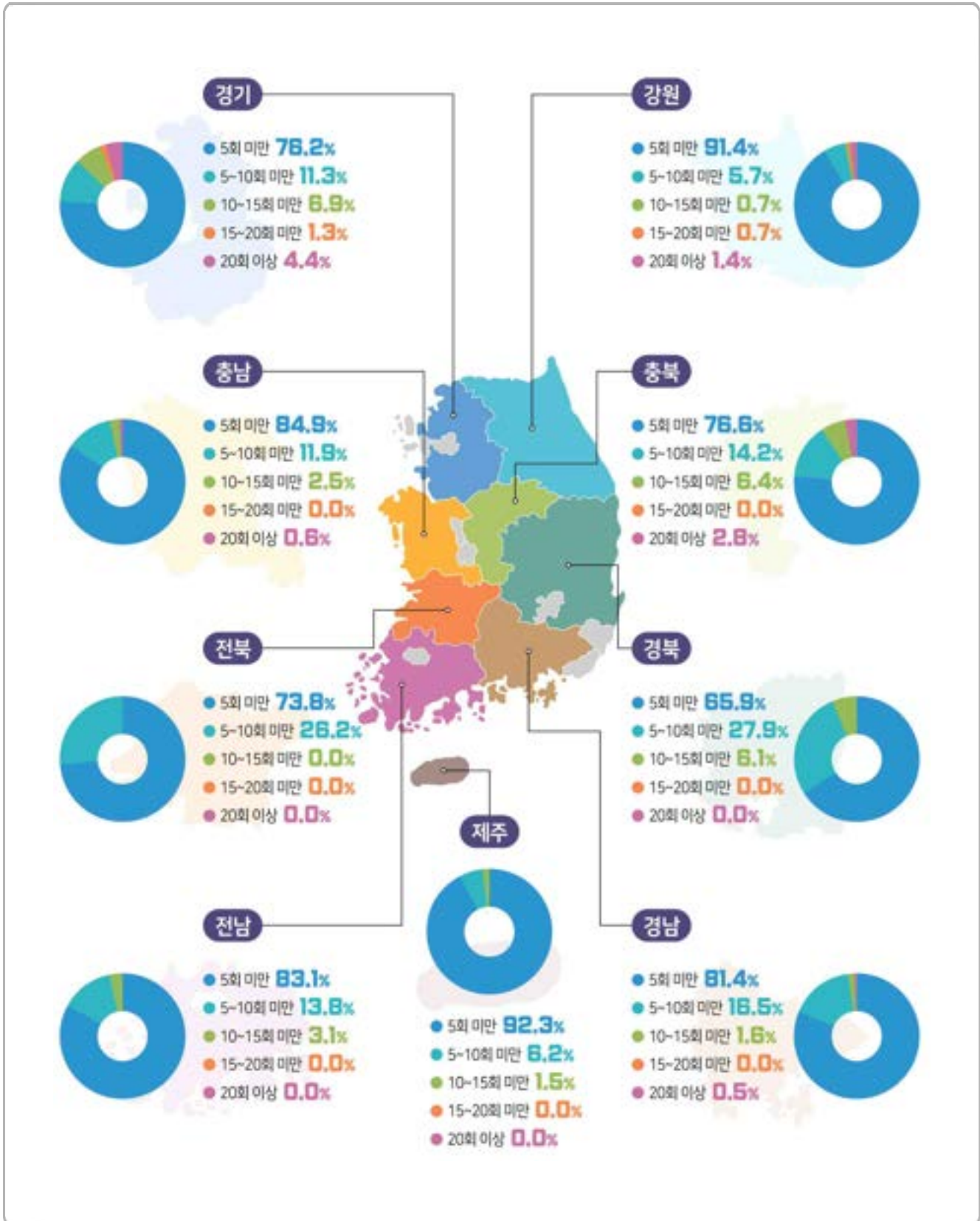
지역 간 이동 시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2시간~3시간 미만'의 응답 비중(전체 49.1%, 교통약자 48.2%, 비교통약자 5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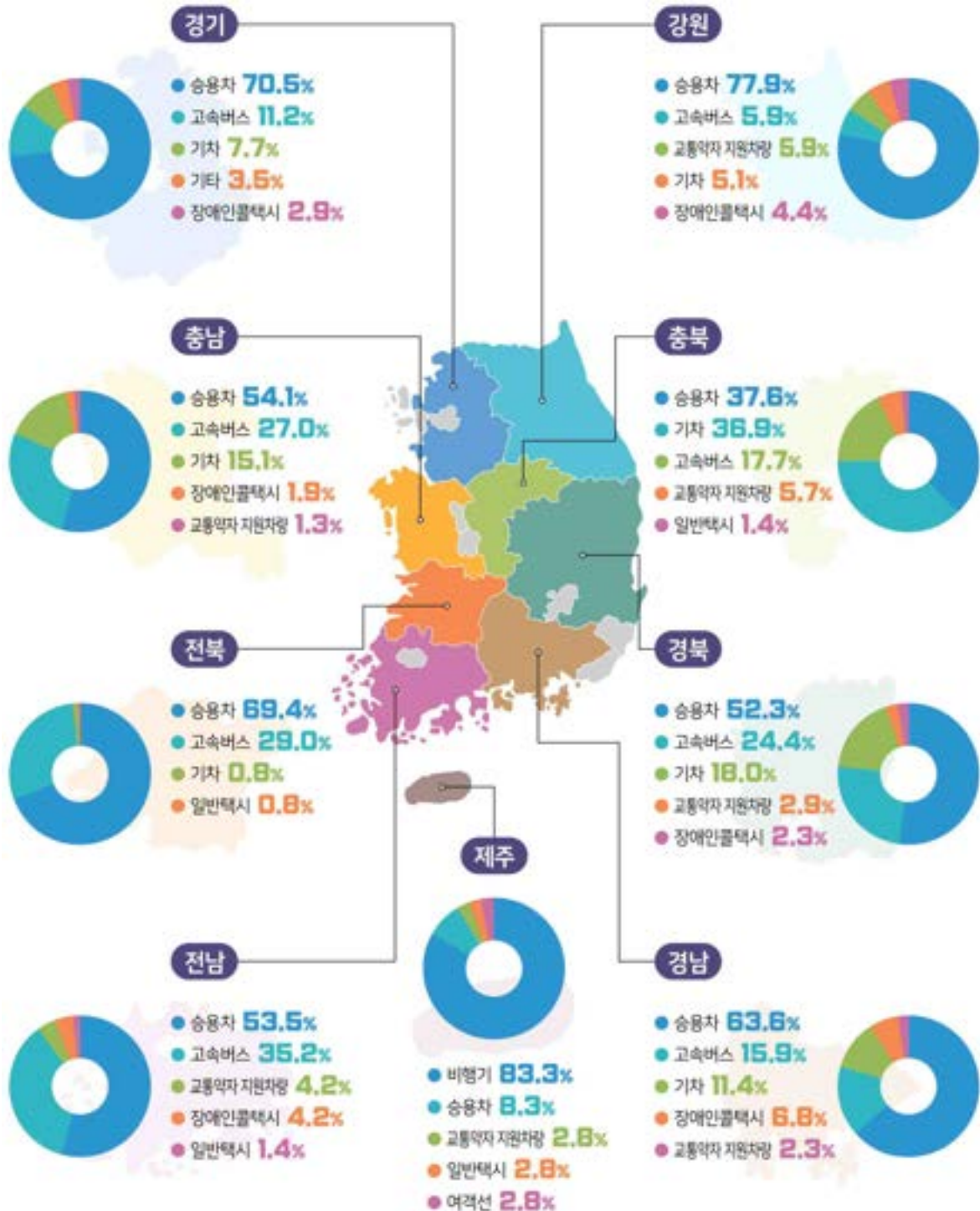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그림 3-33〉 지역간 외출 빈도



〈그림 3-34〉 지역간 주 이용 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탑승가능 특장차 ※ 교통약자 지원차량: 임차택시, 배무차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등 ※ 기차: KTX, 새마을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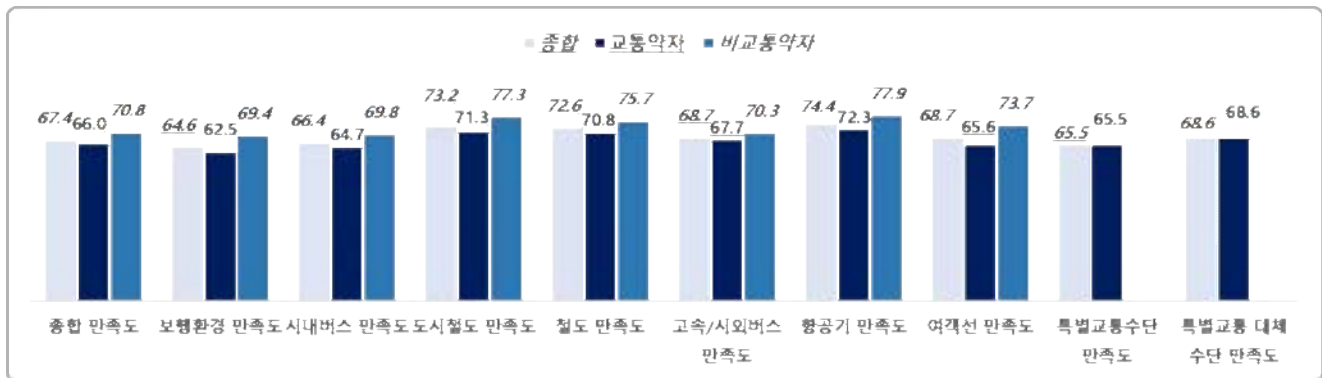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4. 만족도 조사 결과

4.1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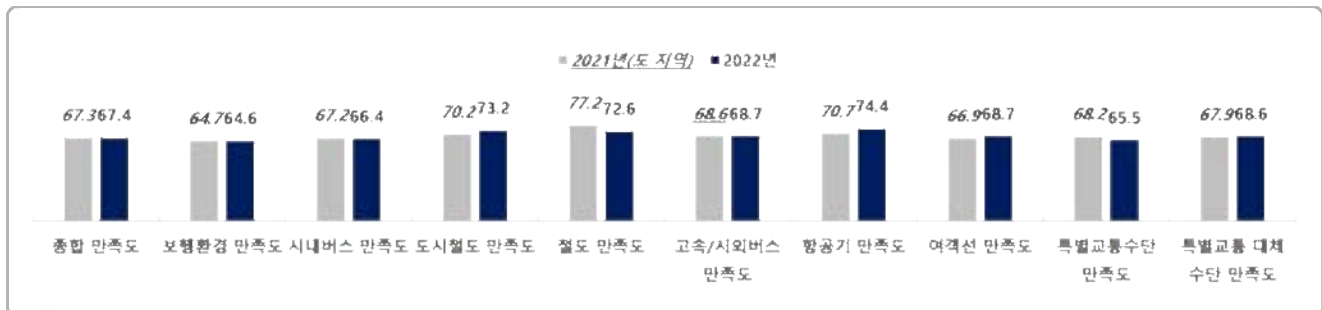
- ▶ 만족도는 전체 67.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약자 66.0점, 비교통약자 70.8점으로, 비교통약자에 비해 교통약자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교통약자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7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 (71.3점), '철도' (70.8점), '고속/시외버스' (67.7점), '여객선' (65.6점), '시내버스' (64.7점), '보행환경' (62.5점)의 순으로 나타남
- ▶ 비교통약자는 '항공기'의 만족도 점수가 7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 (77.3점), '철도' (75.7점), '여객선' (73.7점), '고속/시외버스' (70.3점), '시내버스' (69.8점), '보행환경' (69.4점)의 순으로 나타남
- ▶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 대체 수단의 만족도는 각각 65.5점, 68.6점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35〉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 ▶ 2022년의 종합만족도 점수와 2021년¹⁾의 종합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1년(도 지역) 종합 만족도는 67.3점, 2022년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67.4점으로 약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6〉 지역 간 - 주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이용 평균 시간



10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 비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비교하면, ‘보행환경’ 의 경우 기준적합 설치율(70.5%) 경우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였고, 이용자 만족도(64.6점) 역시 ‘보통~약간 좋음’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통수단’ 의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여객선’ 으로 나타났고, ‘여객시설’ 중에서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 ‘버스정류장’ 이 해당됨

〈표 3-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과 비교

구분	이용자만족도 (100점 만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교통수단	고속/시외버스	70.0	60.3
	시내버스	67.8	93.4
	도시철도	75.1	97.2
	철도차량	73.8	99.1
	항공기	75.7	73.9
	여객선	70.7	41.2
	특별교통수단	65.7	-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68.2	-
교통수단 평균	69.4	79.7	
여객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69.7	68.3
	버스정류장	65.3	36.2
	도시철도역사	74.2	90.7
	철도역사	73.5	83.4
	공항여객터미널	75.7	90.2
	여객선터미널	69.6	82.2
여객시설 평균	68.0	75.2	
보행환경	64.6	70.5	
종합만족도	67.4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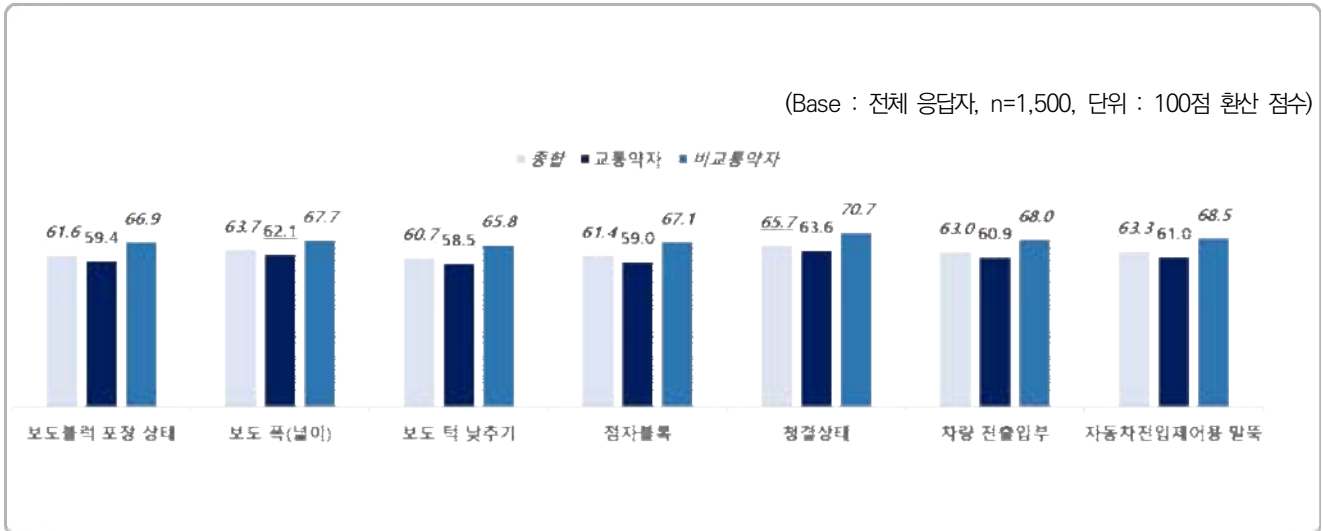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4.2 보행환경

▶ 보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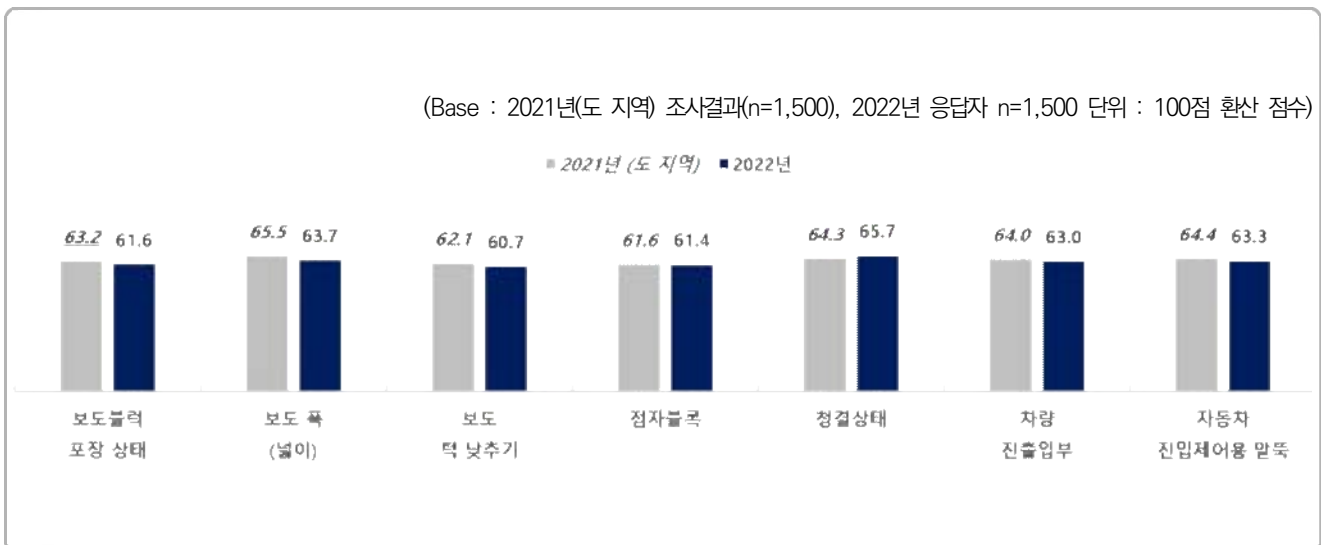
- 보도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각각 63.6점, 7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7〉 보도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청결상태’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만족도 점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보도 폭(넓이)’ 항목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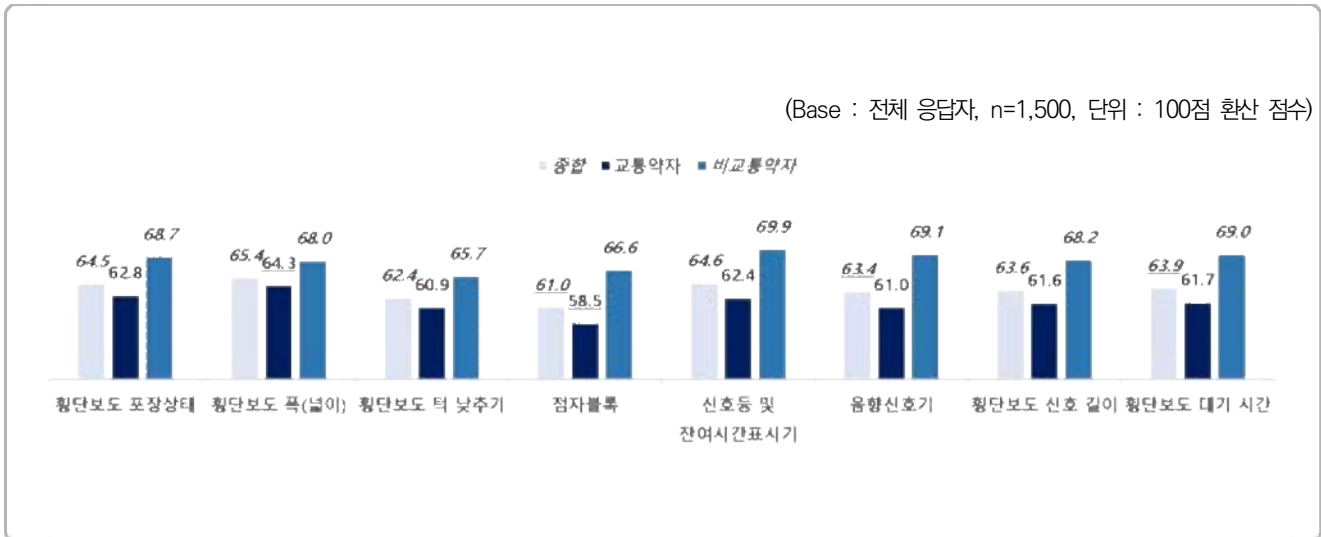
〈그림 3-38〉 보도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01 횡단보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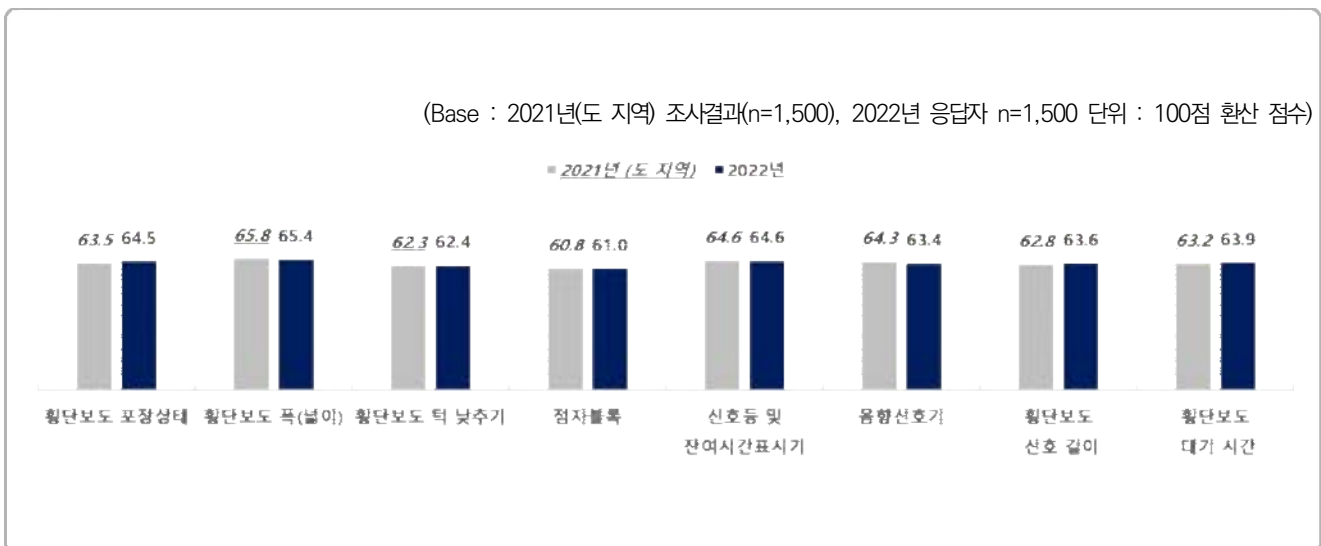
- 횡단보도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는 ‘횡단보도 폭(넓이)’의 만족도 점수가 6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교통약자의 경우 ‘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점수가 69.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3-39〉 횡단보도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횡단보도 포장상태’ 요소의 경우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횡단보도 폭(넓이)’ 과 ‘음향신호기’ 요소의 경우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0〉 횡단보도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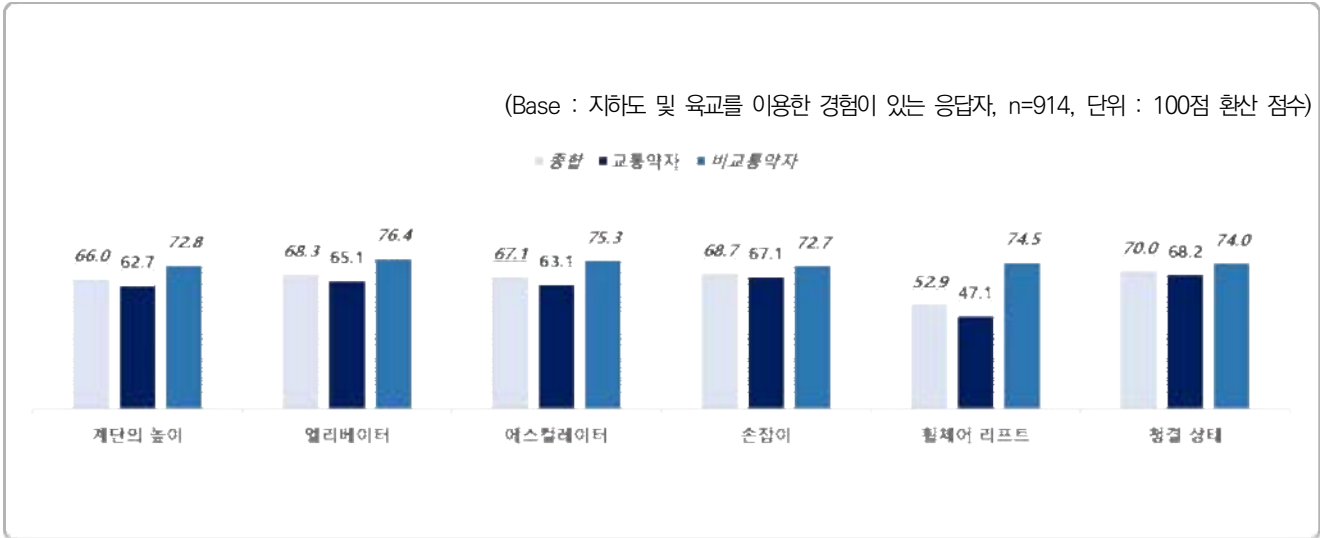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지하도 및 육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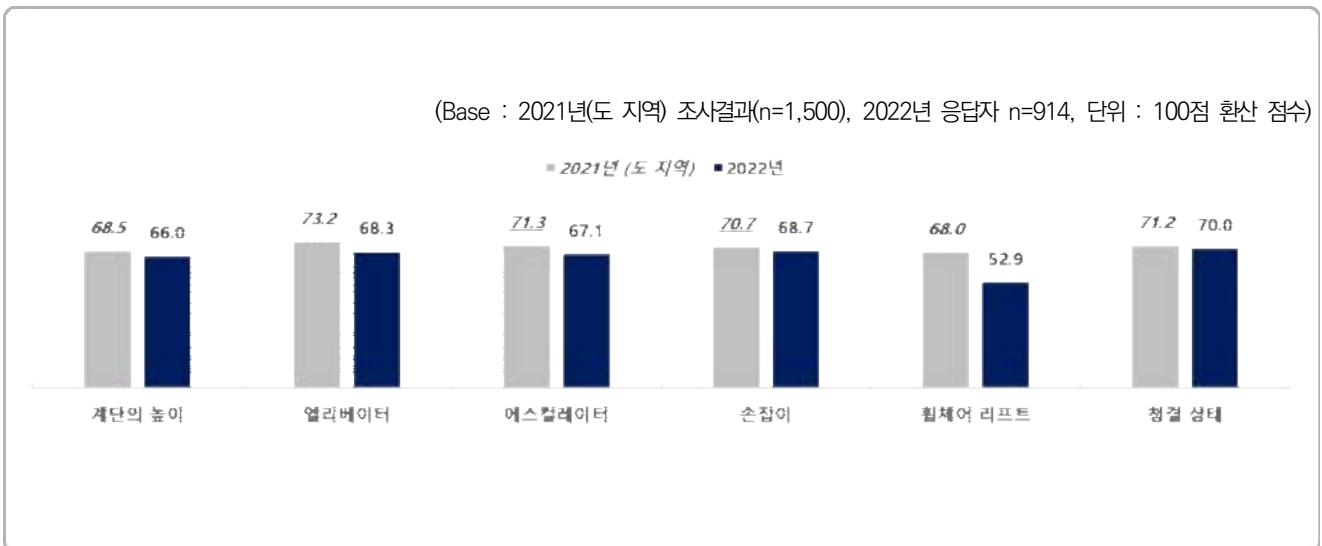
- 지하도 및 육교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청결 상태’의 만족도 점수가 6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만족도 점수가 76.4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3-41〉 지하도 및 육교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하도 및 육교’의 요소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휠체어 리프트’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 지하도 및 육교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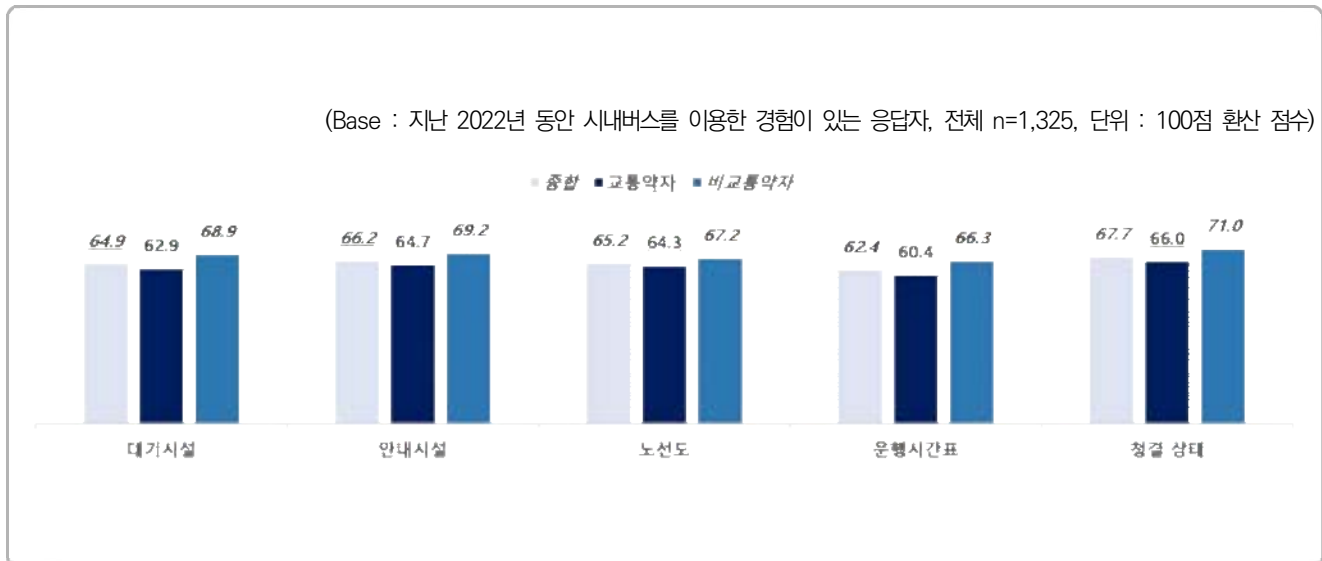


4.3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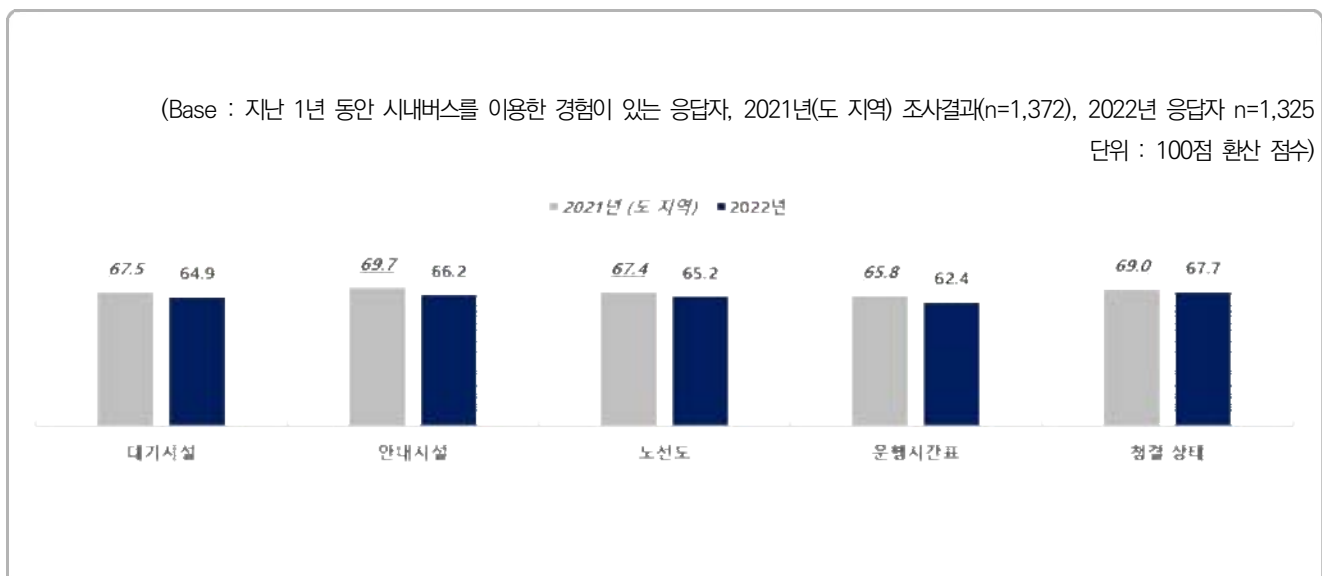
- 버스정류장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66.0점)와 비교통약자(71.0점) 모두 ‘청결 상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음

〈그림 3-43〉 버스정류장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안내시설’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3.5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4〉 버스정류장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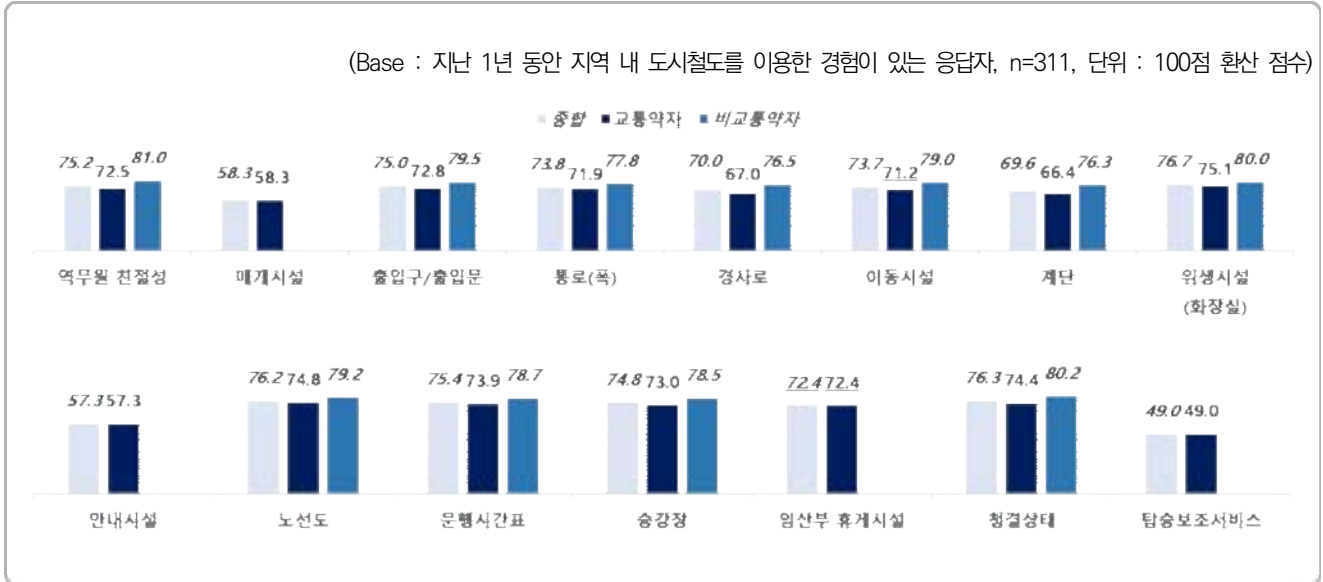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01 도시철도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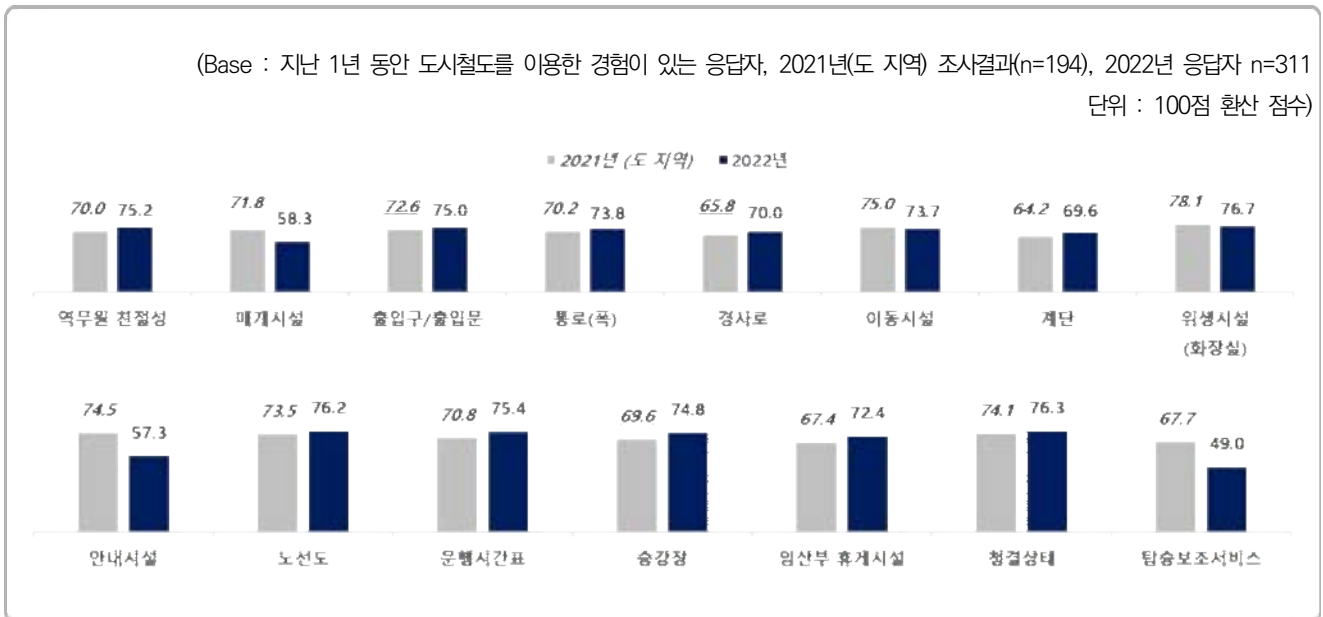
- 도시철도역사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 점수로는 교통약자는 ‘위생시설(화장실)’ 만족도 점수가 75.1점, 비교교통약자의 경우 ‘역무원 친절성’ 만족도 점수가 8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5〉 도시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매개시설’, ‘안내시설’, ‘탐승보조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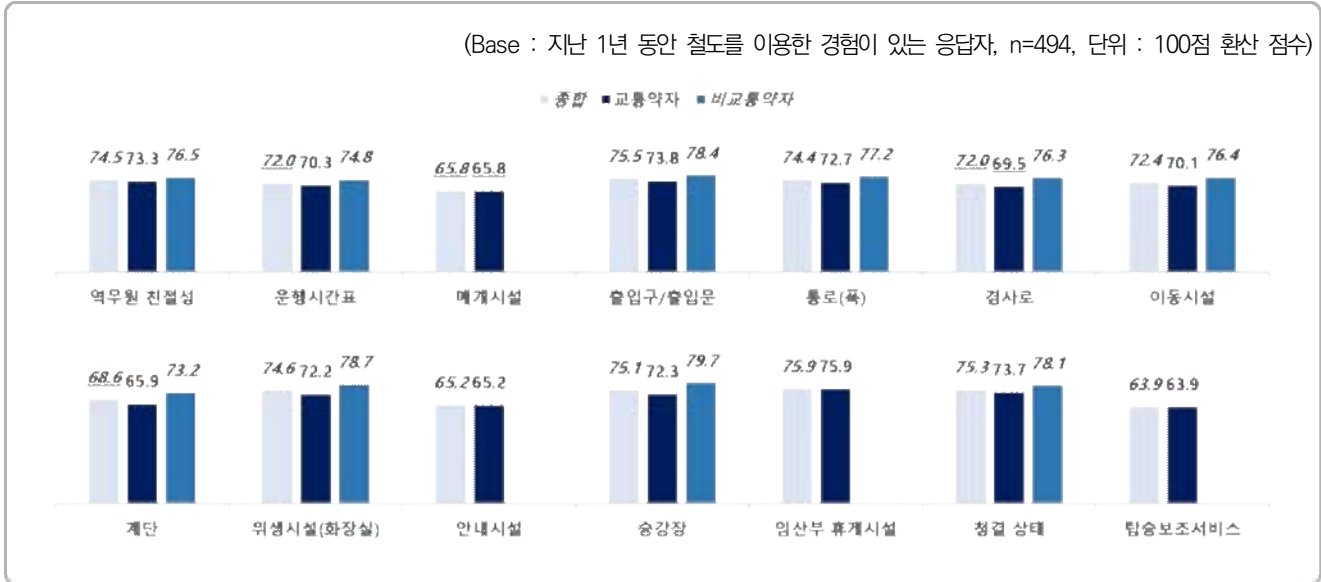
〈그림 3-46〉 도시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10 철도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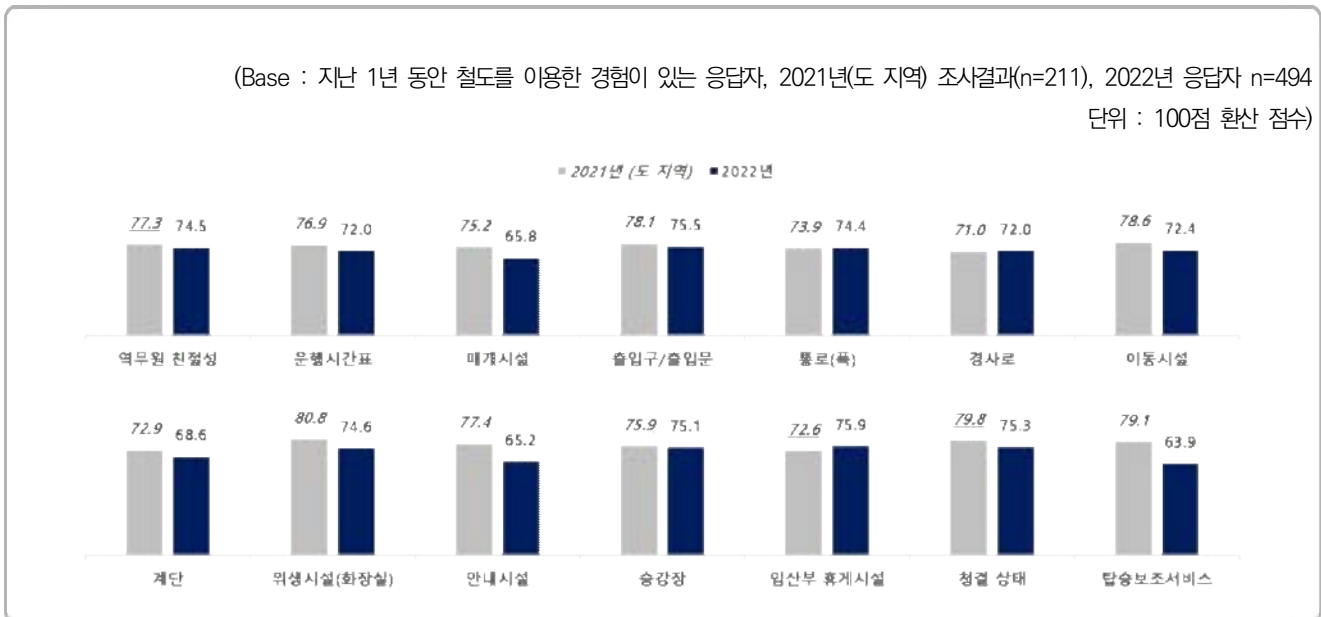
- 철도역사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경우 ‘임산부휴게실’ 항목이 75.9점, 비교통약자의 경우 ‘승강장’ 항목 만족도 점수가 7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7〉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통로(폭)’, ‘경사로’, ‘임산부 휴게시설’ 항목의 경우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8〉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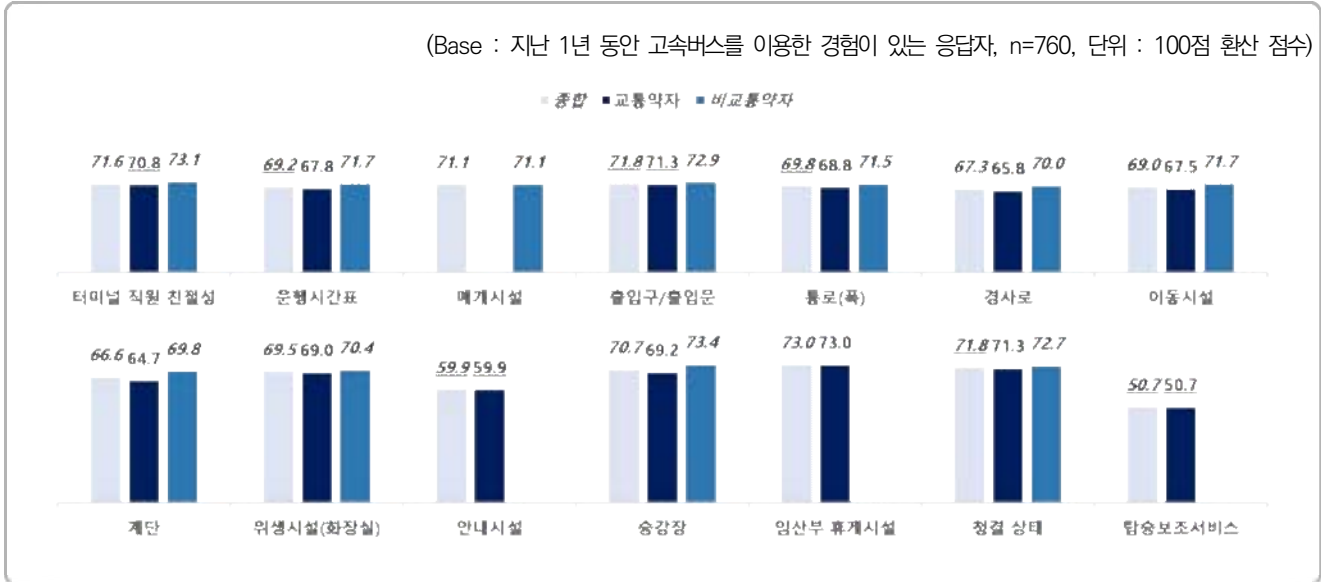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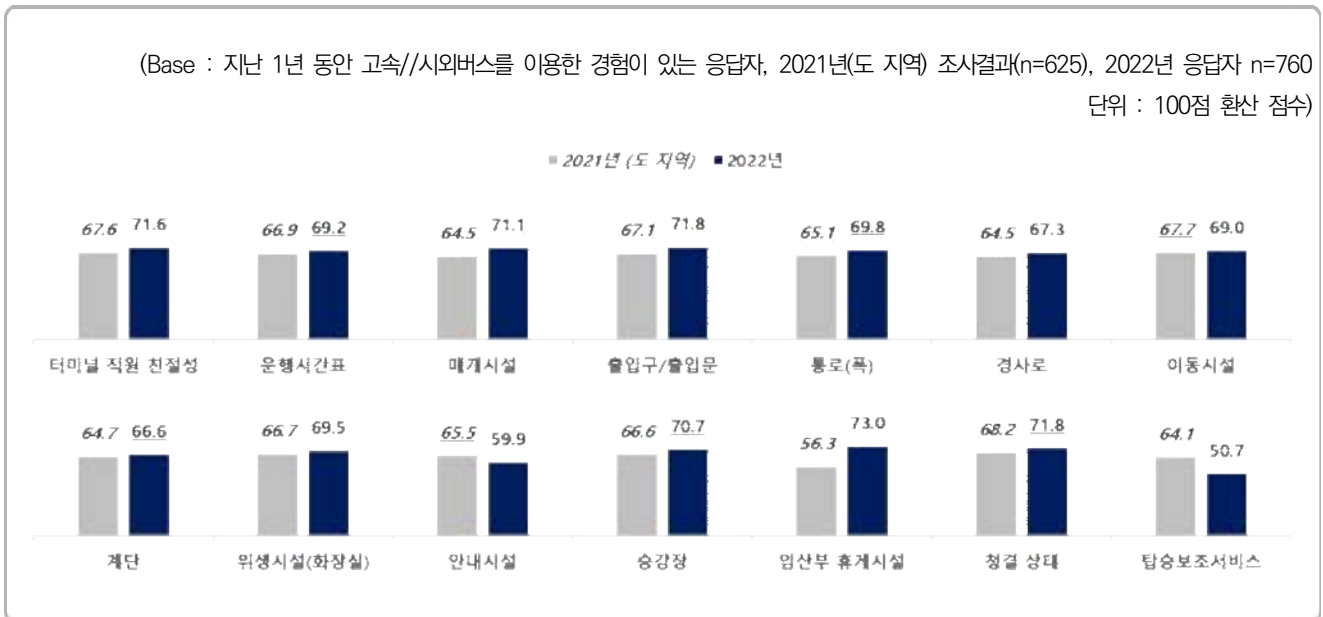
-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요소별 만족도로는 교통약자의 경우 '임산부휴게시설' 의 만족도 점수가 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교통약자의 경우 '승강장' 만족도 점수가 73.4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3-49〉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안내시설', '탑승보조서비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50〉 철도역사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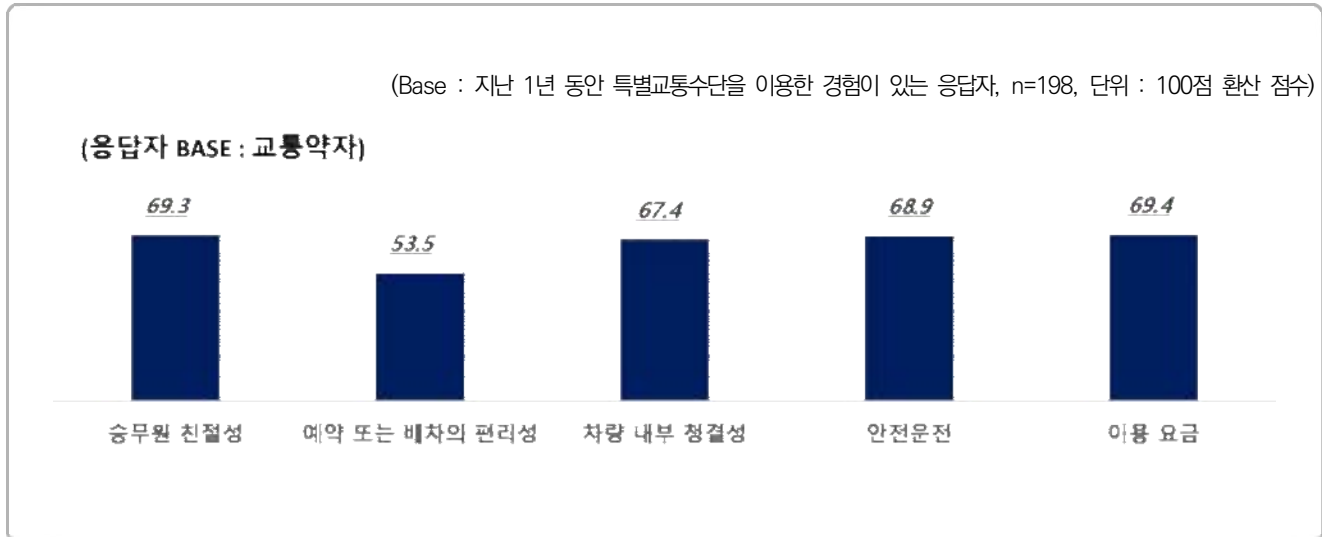


4.4 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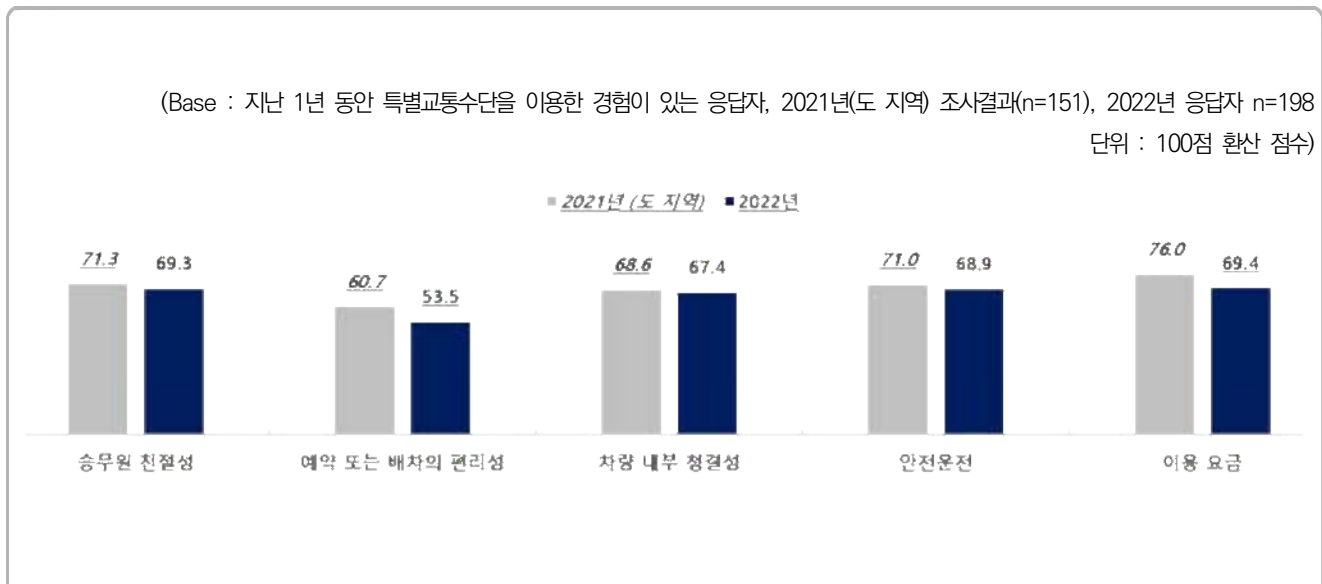
- 특별교통수단의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예약 또는 배차의 편리성’ 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51〉 특별교통수단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요소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2〉 특별교통수단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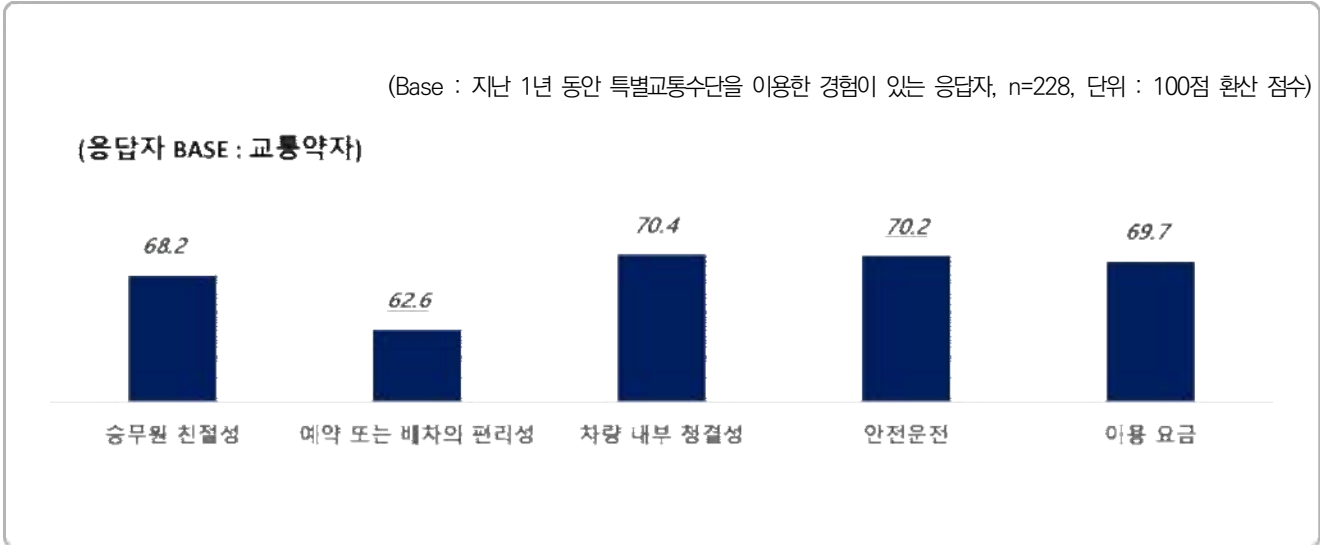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특별교통수단 대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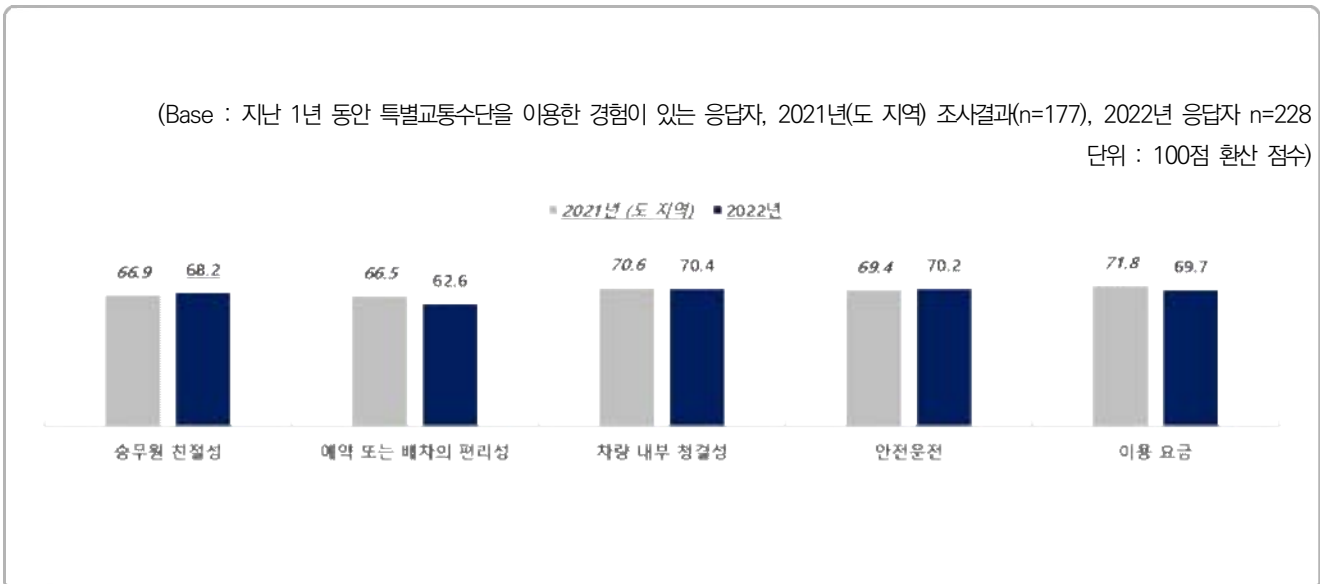
-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의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차량 내부 청결성’ 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예약 또는 배차의 편리성’ 요소 만족도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3〉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의 요소별 만족도



- 2021년 도 지역 조사결과를 올해(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승무원 친절성’ 과 ‘안전운전’ 요소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외 요소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54〉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의 요소별 만족도(전년도 비교)



4.5 시·군별 만족도 조사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는 제4차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시·군별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표 3-20〉 시·군별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자수

(단위 : 인)

구 분	합계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경기도	17,799	11,584	-	-	-	-	-	6,215
수원시	2,201	1,381	988	219	108	59	7	820
용인시	400	287	53	156	37	19	22	113
고양시	646	400	89	244	-	32	35	246
화성시	506	312	168	60	-	12	72	194
성남시	1,188	644	228	214	173	29	-	544
부천시	1,450	-	-	-	-	-	-	-
남양주시	1,800	1,350	221	393	-	83	653	450
안산시	919	383	155	212	-	8	8	536
평택시	278	173	46	127	-	-	-	105
안양시	287	32	-	-	-	-	-	255
시흥시	774	451	73	95	139	54	90	323
파주시	414	278	147	49	-	29	53	136
김포시	505	345	42	177	95	31	-	160
의정부시	577	521	317	56	42	38	68	56
광주시	750	400	113	119	88	80	-	350
하남시	400	320	60	100	100	60	-	-
광명시					-			
군포시	670	369	158	157	-	46	8	301
양주시	300	199	70	77	-	11	41	101
오산시					-			
이천시	400	240	100	100	-	20	20	160
안성시	744	576	58	280	238	-	-	168
구리시	584	584	56	157	168	31	172	-
의왕시	500	400	85	137	110	46	22	100
포천시	497	147	71	57	1	7	11	350
양평군	218	205	133	46	26	-	-	13
여주시	650	503	70	200	142	30	61	147
동두천시	601	362	112	178	5	18	49	239
과천시	435	292	182	71	7	18	14	143
가평군	200	156	58	57	22	14	5	44
연천군	467	306	33	123	57	51	42	161

자료 : 경기도 31개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도 평균은 53.5점이며 포천시가 71.8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원시가 44.5점으로 최저로 조사됨

〈표 3-21〉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교통약자)

(단위 : 점)

구 분	점수			
	합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경기도	53.5	53.2	52.0	50.2
수원시	44.5	46.4	46.8	40.2
용인시	56.4	57.5	52.9	59.0
고양시	47.6	47.3	52.6	42.9
화성시	48.6	47.3	49.8	48.7
성남시	52.8	53.7	52.6	52.2
부천시	53.8	62.1	53.5	45.8
남양주시	46.1	47.4	46.6	44.2
안산시	50.7	52.3	51.5	48.4
평택시	48.5	49.1	48.1	48.2
안양시	45.2	48.5	43.8	43.2
시흥시	59.1	59.7	56.7	61.0
파주시	51.3	49.9	51.7	52.2
김포시	48.8	47.8	47.6	50.9
의정부시	48.2	50.0	47.3	47.3
광주시	50.5	-	-	-
하남시	49.8	52.1	50.0	47.5
광명시		-		
군포시	59.7	62.1	58.9	58.0
양주시	48.5	49.4	48.9	47.2
오산시		-		
이천시	52.9	57.6	51.6	49.6
안성시	59.4	60.2	60.2	57.6
구리시	61.5	61.8	66.5	56.3
의왕시	49.5	47.6	50.6	50.4
포천시	71.8	71.9	71.6	72.0
양평군	58.8	60.8	59.1	56.7
여주시	59.8	61.7	58.6	59.1
동두천시	56.3	58.2	58.5	52.2
과천시	67.3	67.4	66.9	67.7
가평군	44.8	47.5	42.2	44.9
연천군	59.6	65.3	62.3	51.4

자료 : 경기도 31개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주 :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 25점, 매우 불만족을 0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음

5. 저상버스 현황

5.1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2022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서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고,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시내버스 62%(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농어촌버스는 42%, 마을버스는 49%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대수는 11,838대, 도입률은 34.0% 임

- 저상버스 도입률(시내버스) : 2021년 30.0% → 2022년 34.0%
- 경기 시내버스: 11,838대, 도입률 34.0% (4차 증진계획 보급 목표율 62%의 54.8% 목표 달성)
- 농어촌버스: 25대, 도입률 1.2% (4차 증진계획 보급 목표율 42%의 2.9% 목표 달성)
- 마을버스: 417대, 도입률 7.4% (4차 증진계획 보급 목표율 49%의 15.1% 목표 달성)

〈표 3-22〉 저상버스 도입현황(2022년)

(단위 : 대, %)

구 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전국합계	34,860	11,838	34.0	2,064	25	1.2	5,652	417	7.4
서울특별시	7,390	4,711	63.7	-	-	-	1,576	95	6.0
부산광역시	2,517	785	31.2	-	-	-	571	1	0.2
대구광역시	1,561	642	41.1	-	-	-	18	0	0.0
인천광역시	2,204	352	16.0	-	-	-	18	0	0.0
광주광역시	1,044	325	31.1	-	-	-	87	0	0.0
대전광역시	1,039	385	37.1	-	-	-	-	-	-
울산광역시	871	104	11.9	-	-	-	46	0	0.0
세종특별자치시	254	95	37.4	-	-	-	33	0	0.0
경기도	10,623	2,728	25.7	137	6	4.4	2,831	319	11.3
강원도	485	186	38.4	205	9	4.4	142	0	0.0
충청북도	640	163	25.5	206	3	1.5	8	0	0.0
충청남도	903	118	13.1	269	2	0.7	33	0	0.0
전라북도	839	205	24.4	147	0	0.0	52	0	0.0
전라남도	719	134	18.6	588	0	0.0	29	0	0.0
경상북도	1,219	253	20.8	283	0	0.0	53	0	0.0
경상남도	1,723	496	28.8	229	5	2.2	118	2	1.7
제주특별자치도	829	156	18.8	-	-	-	37	0	0.0

자료 : 각 지자체 내부자료(2022년 12월 기준)

주 : 저상버스 보급률은 저상버스 대수를 총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5.2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율

2024년 경기도 시내버스 인가대수는 10,537대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4,306대(일반형 3,499대, 마을버스 807대)로 조사되어,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40.8%로 나타남

〈표 3-23〉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2024년)

구분	합계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	4,306	3,499	807
수원시	539	504	35
용인시	216	131	85
고양시	374	220	154
화성시	110	91	19
성남시	486	350	136
부천시	581	571	10
남양주시	117	81	36
안산시	76	76	-
평택시	157	137	20
안양시	268	228	40
시흥시	26	26	-
파주시	172	142	30
김포시	235	219	16
의정부시	98	98	-
광주시	116	112	4
하남시	79	28	51
광명시	159	134	25
군포시	86	30	56
양주시	79	71	8
오산시	92	79	13
이천시	34	34	-
안성시	45	45	-
구리시	42	18	24
의왕시	41	-	41
포천시	21	21	-
양평군	16	16	-
여주시	14	14	-
동두천시	8	8	-
과천시	16	12	4
가평군	1	1	-
연천군	2	2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6.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6.1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율(2022년)

- ▶ 2022년 기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대수는 11,838대, 도입률은 34.0% 임
-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하고 있음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법정운영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중복이용 가능할 때에는 법정운영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음
- ▶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는 4,268대로 법정대수 4,587대 대비 93.0%의 보급률로 나타남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2021년 86.0% → 2022년 93.0%
- ▶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113.9%), 경기도(114.2%), 경상남도(110.0%), 제주특별자치도(100.0%)등 총 4개 특별광역시도 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임차(바우처)택시 등의 대체수단을 93개 지자체(특별·광역시 : 8개 도시, 기초지자체 : 85개 시·군)에서 총 14,890대를 운영하고 있음
- ▶ 전체 14,890대의 대체 특별교통수단 중 바우처택시가 14,074대로 가장 비중이 크며, 임차택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3개(서울, 광주, 대전) 및 9개 도 중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음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표 3-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2022년)

(단위 : 인, 대, %)

구 분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계	676,188	4,587	4,268	93.0	14,780	406	14,074	256	44
서울	87,440	583	664	113.9	5,597	57	5,382	158	-
부산	47,651	318	187	58.8	4,700	-	4,700	-	-
대구	32,004	214	180	84.1	310	-	310	-	-
인천	38,241	255	193	75.7	300	-	300	-	-
광주	19,098	128	116	90.6	188	88	100	-	-
대전	19,983	134	96	71.6	240	90	150	-	-
울산	13,461	90	80	88.9	257	-	241	13	3
세종	3,235	22	21	95.5	11	-	0	3	8
경기	152,742	1,034	1,181	114.2	441	73	333	18	17
강원	27,434	191	175	91.6	1,731	15	1,716	-	-
충북	26,054	179	136	76.0	95	23	54	13	5
충남	34,226	236	181	76.7	41	-	33	8	-
전북	33,928	234	207	88.5	73	47	-	26	-
전남	35,095	246	184	74.8	232	12	220	-	-
경북	45,454	315	225	71.4	112	1	93	12	6
경남	50,051	340	374	110.0	311	-	301	5	5
제주	10,091	68	68	100.0	141	-	141	-	-

주1)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법정기준대수

- 법정기준대수산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①항의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하였음

- 제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①항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 (정의)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2) : 대체수단 중 “기타” 는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주3)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은 “부록” 참조

자료1) : 보행상의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2년 12월 기준)

자료2) :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행대수는 각 지자체 내부자료(2022년 12월 기준)

6.2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현황

- ▶ 2022년도 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은 총 8,590,519건으로 경기도 2,259,689건, 서울특별시 1,347,759건, 경상남도 678,596건 순으로 나타남
- ▶ 특별교통수단의 대당 이용실적은 1,872.8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4,876.6건), 광주광역시(3,972.7건), 서울특별시(2,311.8건) 순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815.0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현황(2022년)

(단위 : 건, 대, 건/대)

구 분	연 이용실적	보유대수	대당 이용실적
계	8,590,519	4,587	1,872.8
서울특별시	1,347,759	583	2,311.8
부산광역시	298,897	318	939.9
대구광역시	400,215	214	1,870.2
인천광역시	280,935	255	1,101.7
광주광역시	508,510	128	3,972.7
대전광역시	175,942	134	1,313.0
울산광역시	168,678	90	1,874.2
세종특별자치시	39,582	22	1,799.2
경기도	2,259,689	1,034	2,185.4
강원도	370,708	191	1,940.9
충청북도	237,276	179	1,325.6
충청남도	389,223	236	1,649.3
전라북도	354,410	234	1,514.6
전라남도	491,773	246	1,999.1
경상북도	256,718	315	815.0
경상남도	678,596	340	1,995.9
제주특별자치도	331,608	68	4,876.6

자료 : 2023년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23.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도별 운행 실적을 보면 2019년 10,345천건으로 최고로 나타났으며 COVID-19 영향으로 2021년 7,291천건으로 감소하다 2022년 8,590천건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

〈표 3-26〉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단위 : 건/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61,529	10,345,323	9,614,939	7,261,127	8,590,519
서울특별시	1,171,424	1,179,053	972,189	1,068,993	1,347,759
부산광역시	328,417	1,042,932	978,576	258,087	298,897
대구광역시	910,630	1,186,250	1,162,435	411,384	400,215
인천광역시	519,986	614,887	537,537	284,206	280,935
광주광역시	426,225	467,544	399,519	227,157	508,510
대전광역시	436,203	514,268	497,345	180,527	175,942
울산광역시	311,254	347,663	306,933	155,947	168,678
세종특별자치시	22,493	28,012	29,252	34,176	39,582
경기도	1,977,800	2,303,049	2,091,176	1,960,122	2,259,689
강원도	261,438	343,011	317,985	324,620	370,708
충청북도	207,670	226,904	251,559	193,619	237,276
충청남도	357,002	385,085	338,317	360,475	389,223
전라북도	197,367	219,667	293,951	323,075	354,410
전라남도	299,238	335,119	392,028	433,782	491,773
경상북도	184,428	235,418	193,631	236,741	256,718
경상남도	601,509	648,104	578,521	638,745	678,596
제주특별자치도	161,329	268,357	273,985	169,471	331,608

자료 : 연도별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 보고서

6.3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 2024년 9월말 기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1,209대, 법정대수는 1,034대로 조사되어,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116.9%로 나타났고 대체수단은 4,600대로 조사됐으나 성남시가 3,521대로 76%를 차지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지원차량 128대 운영

〈표 3-27〉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현황

(단위 : 인 대, %)

구 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시각장애인* 지원차량
	운영 대수	법정대수		계	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	일반 차량	
		대수	비율					
계	1,209	1,034	116.9	4,600	4,437	112	51	128
수원시	90	80	112.5	49	-	49	-	9
용인시	76	67	113.4	200	200	-	-	5
고양시	78	79	98.7	17	-	17	-	5
화성시	68	50	136.0	180	180	-	-	9
성남시	80	67	119.4	3,521	3,521	-	-	5
부천시	75	67	111.9	100	100	-	-	4
남양주시	59	55	107.3	30	30	-	-	5
안산시	60	57	105.3	80	80	-	-	6
평택시	51	42	121.4	50	50	-	-	5
안양시	42	38	110.5	40	40	-	-	3
시흥시	33	36	91.7	30	30	-	-	3
파주시	36	40	90.0	50	50	-	-	4
김포시	40	32	125.0	6	-	3	3	4
의정부시	45	40	112.5	21	9	12	-	4
광주시	43	30	143.3	5	-	-	5	3
하남시	30	20	150.0	23	19	-	4	5
광명시	32	25	128.0	8	-	6	2	3
군포시	23	20	115.0	12	-	8	4	3
양주시	27	23	117.4	6	-	-	6	5
오산시	15	17	88.2	2	-	-	2	4
이천시	26	21	123.8	0	-	-	-	2
안성시	21	20	105.0	11	-	3	8	3
구리시	22	15	146.7	8	-	-	8	5
의왕시	14	11	127.3	10	10	-	-	4
포천시	28	18	155.6	83	83	-	-	3
양평군	24	16	150.0	28	25	-	3	3
여주시	20	15	133.3	5	-	4	1	3
동두천시	16	12	133.3	10	-	10	-	2
과천시	6	4	150.0	3	-	-	3	3
가평군	16	11	145.5	2	-	-	2	3
연천군	13	6	216.7	10	10	-	-	3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표 3-28〉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단위 : 건, 대, 건/대)

구 분	법정대수 (A)	보유대수			비고 (B/A)
		2022년	2023년	2024년9월말 (B)	
계	1,034	1,178	1,209	1,209	116.9%
수원시	80	90	90	90	112.5%
용인시	67	72	76	76	113.4%
고양시	79	78	78	78	98.7%
화성시	67	80	80	80	119.4%
성남시	50	58	68	68	136.0%
부천시	67	76	76	75	111.9%
남양주시	55	59	59	59	107.3%
안산시	57	60	60	60	105.3%
평택시	42	49	51	51	121.4%
안양시	38	41	42	42	110.5%
시흥시	36	32	33	33	91.7%
파주시	32	40	40	40	125.0%
김포시	40	36	36	36	90.0%
의정부시	40	42	45	45	112.5%
광주시	30	42	43	43	143.3%
하남시	25	32	32	32	128.0%
광명시	20	27	30	30	150.0%
군포시	20	23	23	23	115.0%
양주시	17	15	15	15	88.2%
오산시	23	27	27	27	117.4%
이천시	21	26	26	26	123.8%
안성시	15	18	22	22	146.7%
구리시	20	21	21	21	105.0%
의왕시	11	14	14	14	127.3%
포천시	18	23	28	28	155.6%
양평군	16	24	23	24	150.0%
여주시	15	20	20	20	133.3%
동두천시	12	18	16	16	133.3%
과천시	4	6	6	6	150.0%
가평군	11	16	16	16	145.5%
연천군	6	13	13	13	216.7%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10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

〈표 3-29〉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구 분	이용자격 기준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용인시	<p>[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보행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다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보유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만 65세 이상으로 보행상 장애자가 인정되는 심한 장애인 및 노약자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그 외 일시적인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부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남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준수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표 계속〉

구 분	이용자격 기준
평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안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인 ○ 장기요양 1~5급(휠체어 등 이용자) ○ 보행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깁스 등) ○ 임신부(산모수첩 소지자)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65세 이상 요양등급 1~2급 ○ 임신부(병원목적)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신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동승 가능(이용 대상자없이 탑승 불가)
의정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증명된 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 [별표 1]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 전용차량 이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교통약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사람으로 비휠체어 이용자
광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표 계속〉

구 분	이용자격 기준
하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3급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 ○ 임산부 및 사고,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 요양등급 1등급~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휠체어 이용자
군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출산 후 12개월 까지)
오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 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동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로서 병원진료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휠체어 이용명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조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표 계속〉

구 분	이용자격 기준
구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임산부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로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안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의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천시	<p>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제5호,제6호</p> <p>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대상자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양평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보행이 불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표 계속〉

구 분	이용자격 기준
여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동두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과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2조1항제1호와 관련 [별표1]에 따름 2. 삭제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1에 따름
연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자 현황

· 연간 이용자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월별 18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변화가 크지는 않음

〈표 3-30〉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말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합계	2,216,048	1,896,124	319,924	2,162,009	1,885,126	276,883	1,664,261	1,453,277	210,984
수원시	521,398	515,215	6,183	377,898	374,338	3,560	358,937	348,633	10,304
용인시	118,791	87,095	31,696	124,054	93,980	30,074	89,366	73,416	15,950
고양시	171,477	131,422	40,055	185,007	180,337	4,670	138,309	122,523	15,786
화성시	89,837	83,093	6,744	87,301	81,497	5,804	55,248	53,935	1,313
성남시	220,943	183,037	37,906	240,860	202,439	38,421	165,175	142,651	22,524
부천시	205,777	186,242	19,535	186,011	162,955	23,056	105,782	93,302	12,480
남양주시	65,150	48,511	16,639	77,353	59,936	17,417	62,404	53,431	8,973
안산시	8,923	7,835	1,088	7,533	6,308	1,225	7,827	6,443	1,384
평택시	62,454	58,260	4,194	81,878	77,137	4,741	73,614	68,966	4,648
안양시	70,274	68,168	2,106	82,754	77,762	4,992	55,149	48,386	6,763
시흥시	1,244	935	309	1,247	956	291	1,167	984	183
파주시	76,729	63,730	12,999	58,288	49,513	8,775	27,109	22,832	4,277
김포시	74,598	55,145	19,453	83,576	62,619	20,957	57,318	46,030	11,288
의정부시	58,533	41,451	17,082	62,060	43,638	18,422	46,431	37,512	8,919
광주시	51,043	44,632	6,411	66,047	57,813	8,234	51,925	50,192	1,733
하남시	37,359	21,203	16,156	40,494	24,004	16,490	35,058	21,261	13,797
광명시	50,191	32,567	17,624	57,041	42,259	14,782	41,538	34,933	6,605
군포시	55,181	52,478	2,703	64,758	61,335	3,423	57,450	46,721	10,729
양주시	29,171	16,691	12,480	23,721	13,960	9,761	25,889	18,489	7,400
오산시	19,119	12,017	7,102	20,612	13,561	7,051	16,524	12,169	4,355
이천시	37,568	36,467	1,101	36,086	34,772	1,314	19,238	17,786	1,452
안성시	15,055	10,654	4,401	18,835	14,418	4,417	16,986	14,384	2,602
구리시	29,978	19,422	10,556	28,281	20,758	7,523	25,211	5,497	19,714
의왕시	13,971	13,151	820	14,080	13,357	723	12,983	7,646	5,337
포천시	1,691	1,110	581	2,027	1,356	671	1,547	1,506	41
양평군	30,712	28,335	2,377	38,516	36,650	1,866	33,335	32,251	1,084
여주시	29,232	28,441	791	29,287	28,535	752	27,552	26,589	963
동두천시	23,938	19,130	4,808	22,029	17,787	4,242	24,146	20,850	3,296
과천시	11,593	8,088	3,505	12,398	9,235	3,163	9,177	7,328	1,849
가평군	14,443	3,956	10,487	12,665	4,553	8,112	8,643	4,633	4,010
연천군	19,675	17,643	2,032	19,312	17,358	1,954	13,223	11,998	1,225

6.4 특별교통수단 관련 민원(2023. 1월 ~ 2024. 9월)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차량 배차, 대기시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등) : 60건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장애인 복지택시 광역이동연계 재고 요청	불편사항 청취 및 대체수단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성남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시행시 서울에서의 귀가 불편	해결방안 추진중(인천·경기·서울 협약)	안양시
도 광역 서비스 이후 관내 이동 배차 지연 항의, 차량 광역운행 지정비율 축소 건의	광역서비스 시행 초기로서 개선 예정 안내 광역운행 비율 관련 도 건의 예정 안내	수원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시행으로 인한 배차 지연 불편	해결방안 추진중(바우처택시 도입 등)	안양시
광역통합에 따른 이용접수 불편	불편사항 청취 및 안정화시까지 양해요청	이천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시 배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 발생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4대 추가로 광역이동서비스에 배정	고양시
광역이동 운전원 배차 민원	인사규정에 의한 처분진행	하남시
광역이동지원 통합에 따른 불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중임을 안내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불편	(경기도) 개선 협조 요청 - 서울·인천 즉시콜 이동 -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용인시
광역이동지원 연계 철회 건의	광역이동지원 연계로 대기시간이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계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성남시
광역이동 차량 확대	시·군에 광역이동 차량 확대 요청	경기도
광역통합에 따른 서울 인천 복귀 어려움	불편사항 청취 및 복귀방법 설명, 제도취지 설명	이천시
광역통합에 따른 관내 차량대수 부족	첨두시간(08:00~10:00, 13:00~14:00) 집중배차 실시	이천시
차량 이용불편 서비스 관련	이용불편에 따른 상담원, 운전원 직원교육 진행	광주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차 받기가 너무 어려워 대책 마련 요청	현재 우리 시는 법정대비 100% 이상의 차량을 운행중이나, 더 안정적인 배차를 위해 연차적으로 운전원을 충원해 개선할 예정임을 안내	남양주시
차량 증차 건의	차량 증차계획 및 대체수단 도입계획을 안내	안성시
비중증 및 비휠체어 고객을 위한 임차택시 증차 요청	예산한도 내 에서 추가 임차택시 사업자 상시 모집 추진	여주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퇴근시간대(17~17:30) 증차 요구	조간 출근자 19시까지 연장근로 실시	여주시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요청	임차택시 4대 추가 모집	고양시
오전 6시 운행 차량 증차 요청	차량 증차 예정임을 안내	안성시
차량증차요청	운전은 증원계획 수립으로 서비스 개선예정	안산시
착한수레 차량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중임을 안내	안양시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원 확충 및 운행 차량 다양화 건의	지속적으로 운전원 충원 중이며, 대체수단 이용 불편은 유관부서 및 상급기관과 논의 중임	성남시
주말 운행차량을 늘리거나 8시 차량을 한시간 앞당겨 배차하는 것에 대한 건의	휴일 오전·오후시간대 운행 수요 확인을 통하여 시간대별 운행대수 조정 검토 안내	광명시
차량 내 대화 및 통화 자제 요청 문구 불합리	해당 안내 문구 수정	수원시
휴가기간 배차 지연문제 개선요구	근무표 조정 및 시간외근무를 통한 운전원 추가 확보	여주시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배차대기시간이 오래 걸림	운전원 증원 예정임을 안내	안성시
배차 대기시간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지속 발생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3명 추가 채용	고양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요청	차량 증차 및 운전원 확대 등 시·군과 협의할 사항	경기도
배차 후 승차 지연	지연 시 고객에 사전 안내 요청	수원시
관외 예약이 어려움	즉시콜 시행 예정임을 안내	안성시
예약시스템의 불편함 토로	자동배차를 통한 즉시콜 서비스 도입을 준비중임을 안내	광명시
도 광역이동 서비스 이후 예약 불가 불만	도 표준지침에 의해 즉시콜 원칙 운영 안내	수원시
도 광역서비스 이후 예약불가, 배차지연 불만	광역서비스 시행 초기로서 개선 예정 안내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파주-서울」 구간 사전예약 시 왕복운행시간 초과 설정으로 인한 오전예약 불가 불편민원	해당 민원을 해결하고자 별도의 운전자를 배정하여 오전예약 및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파주시
광역 배차방식 변경건의 (당일 콜센터 → 예약제)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은 시·군 결정사항 아니므로 조치 어려움	하남시
사전예약 불편	경기도에서 단기적으로는 콜센터 인력증원 및 배차개선, 장기적으로 시스템 안정화와 차량 증차로 노력중임을 안내	부천시
서울만 사전예약으로 불편	인접지역은 즉시콜로 운행하나 광역이동시 병원예약, 재학, 재직등은 서류확인 후 예약 가능하도록 경기도 광역에서 주관함	시흥시
3.9. 3.11. 예약현황, 운영계획 문의	예약현황, 차량 배정계획 안내	오산시
광역이동 사전예약 이용대상자 확대	31개 시·군과 협의를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경기도
치료목적 외 관외운행 요청	관내 목적제한은 없으나, 관외지역은 치료목적 제한으로 향후 효율적 운영 개선 추진	광주시
인접지역 운행 재개 건의	시도간 협약 미체결에 따라 인접지역 운행이 어려움을 안내	안성시
관외 운행차량 증차 요청	이용수요 및 도-시·군 센터 간 협의를 통해 개선 검토	남양주시
시 경계지역 배차 지연	교통소외지역 중점운영 대체수단 2대 구입 운영	부천시
서울 미인접지역의 즉시콜 운영	해당 시·군에서 요청 시 서울 즉시콜 이용접수 예정 안내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23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수원시
차량 배차 체계 불만	자동배차 시스템 안내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를 이전 군 자체 운영 제도로 다시 변경 요청	경기도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불가능함을 안내	용인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건의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초기로 지속적인 개선 예정	화성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24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성남시
전동스쿠터 탑승이용 요청	안전인증 법적기준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완료	이천시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요청	검토 후 조치	안양시
배차지연 불만	임차택시 증차, 파트타임 운전원 채용 계획 등 개선대책 안내	수원시
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 요청	사전예약제 불편함을 개선 즉시콜 확대운영 개선 추진	광주시
전동스쿠터 탑승이용 요청	안전인증 법적기준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완료	이천시
탑승지연 개선요청	차량 증차 등을 통해 해소 중임	성남시
새벽시간 특별교통수단 확대 요청	새벽시간 차량 확대 완료	군포시
바우처 택시 운행시간 변경 건의	관련 기관 협의 및 검토 사항임을 안내	안양시
야간 배차 불편 민원	야간 교대근무 현황 안내	고양시
시·군에서 이용접수·배차 시행	법령 개정에 따라 광역콜센터에서 시행되는 사항 안내	경기도

10 이용대상자 관련 : 34건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탑승 시 복지카드 미확인	운전원 교육	수원시
보호자 동반 요구규정 삭제	경기도 통합운영에 따른 조례 및 지침 개정 시 검토 예정임을 안내	안성시
보호자 없이 장애인만 탑승 할 수 있도록 승차 허용 요청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및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에 따라 보호자 미동승시에는 승차할 수 없다고 안내	광명시
이용신청등록 불가 불만	이용기준 재안내	수원시
이용신청등록 불가 불만	이용기준 재안내	수원시
이용신청등록 불가 불만	이용기준 재안내	수원시
이용신청등록 불가 불만	이용기준 재안내	수원시
국립경찰병원을 서울 17대 병원 의료시설에 등록 요청	관외 배치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광명시
이용신청 구비서류 과다	이용기준 재안내	수원시
3개월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	진단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겠음을 안내	광명시
휠체어 사용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로 재발급 요청 불편	휠체어 사용기간 명시 필수임을 재안내	안양시
이용자 등록 불편(진단서 등)	통합지침으로 31개시·군동일적용, 추후 건의	화성시
진단서 발급 내용에 관한 사항 문의	광역시행에 따라 지침 변경 내용 안내, 첨부서류 관련 홈페이지 업데이트 완료	오산시
병원진단서를 통해 특정 약국에서만 구입가능한 약 구매 시 병원에서 약국 경우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요청	경기도에 “표준지침” 변경 요청	군포시
진단서 요건 완화 요청	향후 인프라 확대 시 요건 완화 가능 안내	부천시
진단서 유효기간 확대건의(80세 이상 고령자의 진단서 유효기간을 2년 이상 인정 필요성)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안내	부천시
요양기관 입소자 진단서 발행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요청(1회)	경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여주시
종합병원(인접시설 제외) 이용자의 진단서 완화	31개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경기도
접수 관련 안내문자 무단삭제 항의, 도시공사와 통신사 간 카르텔 형성 고발, 부조리 적발 위한 내부 정보원 위촉 건의	문자 삭제여부 경찰 및 통신사 문의 안내 카르텔 형성 사실 없음 안내 법적 근거 없는 정보원 위촉 불가 안내	수원시
접수하고 배차가 언제쯤 되는지 안내 서비스 필요성 제시	시스템 개선중임을 안내	광명시
요양시설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등 안내	우편 발송 및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동부지부 방문 설명	여주시
휴대폰 변경에 다른 안내문자 수신거부요청	수신거부 처리 완료	오산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중증장애인 합승 가능 요청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불가	안양시
동사무소에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문을 발급 안해주는데 희망카에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발급이 불가할 시 특별교통수단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	광명시
교통약자 이용자격 범위 확대	중증보행장애인 등 이용기준 안내	화성시
고령 국가유공자 특별교통수단 탑승 건의	중증보행장애인 등 이용기준 안내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2급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2급 대상자에서 빠짐을 안내	광명시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노인, 장애인 이용관련 불편 문의	노약자, 장애인 이용 및 승인절차 안내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안내	광주시
일시적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아 이용 불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경기도 통합지침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함으로 양해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 신청가능 여부	이용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서류 안내	광주시
이용자 기준 축소에 대한 불만	경기도 광역통합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변경안내	이천시
비휠체어 이용자가 타시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타시와 협조 요청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각 시의 조례,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이 상이하함 안내	군포시
타시 임산부도 군포시 임차택시 탑승 가능하도록 이용자 범위 변경요청(직장이 군포)	임산부의 경우 각 시의 조례에따라 운영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등록 가능 안내	군포시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격 개선 요청	중복장애 및 복합장애 이용자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논의하겠음	성남시

운전자, 상담원 불만 : 9건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이용횟수 제한 관련 문의 및 상담원 친절과 배려 건의	2023.03.09. 기준 이용횟수 제한 없음 설명 상담원 친절교육 실시완료	이천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불친절	운전원 교육 실시	고양시
운전원 불친절	운전원 교육 및 주의조치	화성시
상담원 불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수원시
콜센터 불친절	콜센터 직원 교육 실시	부천시
운전원 불친절 민원	운전원 CS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실시 안내	구리시
불친절 서비스 개선 요청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 개선 조치	남양주시
운전원 운동장 내 흡연 불편 민원	흡연부스 이용안내, 교육 실시	오산시
직원 친절 요청	고객서비스 교육 추진	수원시

이용요금 등 기타 : 13건

민원내용	조치사항(답변내용)	비고
잔금내역 표출 건의	임차택시마다 별도 미터기 구매·설치중이며, 향후 계약 시 단말기 관련 확인 예정 안내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유지 및 택시바우처 요금 인하	휠체어 미이용자에게 탑승자격 부여 불가 및 택시바우처 할인한도 및 이용횟수 상향 검토 중	성남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요청 민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을 안내	고양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건의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요금” 외 차량 탑승 중 발생하는 “통행료” 및 “주차료” 는 이용자 부담	광명시
장애인 콜택시 관내 이용요금 개선	경기도 건의요청	화성시
차고지 인근 장애인 복지택시 불법 주정차	내부교육 및 차고지 이전 추진 안내	성남시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 요청	선거법 위반사항임을 안내	안성시
장애인 복지택시로 인한 주차장 이용 혼잡	차고지 이전 추진 안내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편의 시설 설치 확대 필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지속 도입중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 여부 점검중	용인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iOS 모바일 접근성 문제	iOS모바일 접근성 개선	용인시
안전운전 요청	운전 서비스 향상 교육 상시 실시	수원시
주정차 관련 불만	고객 하차를 위한 부득이한 주정차임을 설명	수원시
경로 불만	내부 지침에 의거 운영하는 사항임을 안내	수원시

6.5 특별교통수단 해외운영 사례

1)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 시(City of Houston)

▶ 메트로리프트(Metrolift)

가. 운영지역 및 범위

- 연방 미국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법규에 의해 규정된 특별이동 서비스(Paratransit Services) 운영
- 휴스턴 시의 메트로리프트(Metrolift)는 약 1,200km²를 서비스하며 ADA 의무 서비스 구역(880km²)과 비의무 서비스 구역(320km²)으로 구분

나. 운영주체 및 이용자격 적용범위

- 운영주체는 각 지역의 지자체 및 교통 운영기관 (예: 텍사스 휴스턴의 메트로리프트).
- 운영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포함), ADA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다. 요금

〈표 3-31〉 메트로리프트 요금표

ADA 의무 서비스 구역	1회당 \$1.25 부과
ADA 비의무 서비스 구역	1회당 \$2.50 부과
월정액 패스	\$47.25 (ADA 의무 서비스 구역 전용).
연간 패스	\$418.50 (ADA 의무 서비스 구역 전용).
MSP 프로그램(정규시간 외 택시 보조)	초기 \$1은 이용자 부담, 이후 \$8까지는 메트로리프트 부담, \$9 이상은 이용자 부담.

자료 : 국회의원 장경태,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제언-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2022

라. 운영방식

예약 시스템	최소 1일 전 예약 필수
운영 시간 (ADA 의무 서비스 구역)	주 7일, 오전 3시 25분부터 (휴스턴 전역 1,200km ² 중 880km ²)
운영 시간 (ADA 비의무 서비스 구역)	월~금: 오전 5시 ~ 오후 11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 오전 12시 30분 일요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보조 프로그램 (MSP)	정규 운영 시간 외 이용 가능 메트로리프트와 바우처 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회사를 통해 택시 서비스 제공

자료 : 국회의원 장경태,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제언-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2022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그림 3-55〉 미국의 특별교통수단 (좌 : 뉴욕, 우 : 워싱턴D.C)



출처 : 칼럼니스트 배용호

2) 미국 시카고 시

☑️ 장애인 이동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차량(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WAV)’으로 전환하는 택시운전자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를 제공

가. 운영지역 및 범위

- 미국 시카고 시 전역

나. 운영주체 및 이용자격 적용범위

-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은 전화나 앱으로 WAV 호출서비스를 이용
- WAV 운전자는 호출비로 연간 2,500달러(300만 원)를 중개업체에 지급
- 시는 ‘접근성 기금’으로 호출비를 지원

다. 추진현황

- 시카고는 2012년 WAV 관련 시 조례를 제정해 전체 택시의 5%를 WAV으로 도입토록 하고 택시 면허 수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WAV 도입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이 마련
- 2016년 2018년까지 WAV 택시 수를 400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WAV 택시 전환 비용에 대한 보조금, 차량 유지 및 수리에 대한 연간 보조금 등을 제공기로 함
- 2017년 20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택시회사는 전체 차량의 5%를 WAV로 운영해야 하며, 10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2018년 1월 1일까지 전체 차량의 10%를 도입토록 함
- 2024년 400대 이상을 도입해 2016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중소형 택시회사 규정 강화를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차량의 25%를 WAV으로 운영할 계획임

〈표 3-32〉 시카고 WAV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세부내용
휠체어 택시 호출서비스 비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은 전화나 앱으로 WAV 호출서비스를 이용 · WAV 운전자는 호출비로 연간 2,500달러(300만 원)를 중개업체에 지급 · ‘접근성 기금’ 으로 호출비를 지원
WAV 구입 및 개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V 운전면허소지자가 WAV를 신규로 구입할 때 2만 달러(2,400만 원)를 지원 · 기존 차량을 WAV로 개조할 때 15,000달러(1,800만 원)를 지원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V 호출서비스 비용 면제와 구입· 개조비용 지원은 WAV를 운행하고자 할 때 즉각적이고 의무적으로 지원
얼리버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말까지 WAV를 신규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1만 달러(1,200만 원)의 장려금 제공
바우처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를 WAV로 전환하거나 구매하는 데 초기비용이 발생 · 시는 초기비용의 부담으로 WAV로 전환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장기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인센티브 제공
차량 관리비용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WAV 운전자의 차량 관리를 돕기 위해 매년 최대 5천 달러(600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
연료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V를 임대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연비 문제로 고민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연료비의 일정비용을 상환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 · WAV의 연비는 일반 택시보다 현저히 낮음

자료 : 국회의원 장경태,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제언-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2022

〈그림 3-56〉 WAV 택시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 영국 런던

가. 운영지역 및 범위

- 런던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는 자동적으로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차량(Wheelchair-Accessible Vehicle, WAV)으로 지정됨

나. 운영주체 및 이용자격 적용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접근 가능한 차량(WAV)을 관리하고 지정하며, 개인 영업 차량 (PHV) 및 택시 운전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함
- 휠체어 사용자 및 장애인도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이동 서비스 제공하며, 안내견 및 맹인견 동반 허용됨

다. 요금

〈표 3-33〉 Dual-a-Ride 요금표

거 리	대략적인 여행 시간	월요일~금요일 (05:00-20:00)	월~금 (20:00-22:00) & 토,일 (05:00-22:00)	매일 밤 (22:00-05:00) & 공휴일
1마일	6-13분	7.60파운드 - 11.80파운드	7.60파운드 - 12.00파운드	9.00파운드 - 13.00파운드
2마일	10-20분	11.60파운드 - 18.40파운드	12.20파운드 - 18.60파운드	13.40파운드 - 19.60파운드
4마일	16-30분	20.00파운드 - 29.00파운드	22.00파운드 - 30.00파운드	23.00파운드 - 34.00파운드
6마일	28-40분	31.00파운드 - 39.00파운드	38.00파운드 - 42.00파운드	39.00파운드 - 42.00파운드
히드로 공항과 센트럴 런던 사이	30-60분	61.00파운드 - 114.00파운드	61.00파운드 - 114.00파운드	61.00파운드 - 114.00파운드

라. 운영방식

- Dial-a-Ride는 주 7일 07:00-23:00 운영하며, 버스 운행 시간도 동일함
- 서비스 방식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door-to-door 서비스로,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휠체어를 차량 내부 또는 트렁크에 안전하게 탑재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제공됨
- 신형 택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콤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운전자가 장애인을 수용하지 않거나 안내견 동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며, 규정 위반 시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됨
- 단, 운전자가 의료적 또는 물리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면제 조건이 적용되며, 이를 증명하는 면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그림 3-57〉 런던 Dual-a-Ride 택시



출처 : Dial-a-Ride – Transport for London

4) 일본

❶ 복지택시

- 복지택시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콜택시와 유사함
- 복지택시 장애인 시점, 종점의 위치에 제한이 없으며, 운송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가. 복지택시 운영지역 및 범위

- 운영지역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먼 지역까지 이용하는 이용객은 없음

나. 요금

- 복지택시의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함. 복지택시 이용 시 평균적으로 1시간에 2,000 ~ 3,000 엔의 요금이 발생됨
- 의료시설과 월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야의 이용 요금은 1시간에 6,000~7,000엔 정도임. 일반택시와 달리 대기시간에도 이용요금이 발생됨. 대기 비용은 30분에 3,400엔이며 평균 적인 대기 시간은 2시간 정도임
- 복지 택시가 대기할 경우 대기비용은 미터로 계산됨
- 택시업체에 국토교통성의 직접적인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용자에게 택시권으로 직접보조를 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1통행 당 1,000엔을 보조하나 (대략 운임의 1/3 보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임. 택시권 이용횟수는 제한이 있음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표 3-34〉 복지택시 요금표

항목	복지택시	하이아
이용 요금	일반 택시와 동일 평균 1시간당 2,000~3,000엔	1시간당 6,000~7,000엔
대기 요금	미터로 계산	30분당 3,400엔 평균 대기 시간: 2시간
운영 방식	일반적인 단거리 이용 중심	의료시설과 월 계약 운영
보조금 지원	지자체에서 택시권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 1통행당 평균 1,000엔 지원 (운임의 약 1/3)	없음
택시권 이용 제한	있음	해당 없음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일본 휠체어 이용자의 대중교통 시설 현황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결과보고, 2015.12

다. 운영주체 및 이용자격 적용범위

- 일본의 개호택시와 복지택시는 총 14,000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차량 1대로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업체가 10,000개, 대략 10대를 보유한 업체는 400개 정도임
- 복지택시는 대부분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되지만, 영업용 차량이 커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반 자가용(흰색 번호판)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운영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일반 자가용도 복지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흰색 번호판 차량은 운임이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고,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 조건이 일부 미달할 수 있지만, 운영협의회 심의를 통해 운행 가능하며 자원봉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제공됨
- 이용자 대부분은 1개월 전에 예약하며, 차량 여건에 따라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하루 평균 2명이 이용하며 왕복 시 1일 4통행 정도로 이용됨
- 이동거리가 짧아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그룹 내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적자를 교차 보조하고 있으며, 복지택시는 예약제로 24시간 운행하되(법에 규정), 순항 영업을 금지되어 길에서 손을 흔들어 탑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개호택시

- 개호택시는 개호보험(간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택시이며 개호보험을 적용받는 자만 이용이 가능함
- 장애인 운송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helper라는 자격이 필요하나 필수는 아님
- 개호택시는 시점 또는 종점의 장소가 병원 등 개호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표 3-35〉 일본의 개호택시

개호 택시(침대차량)	개호 택시 내 산소호흡기
	
개호 택시(휠체어차량)	개호 택시 내부 모습
	
개호 택시 휠체어 리프트	개호택시 내 휠체어 안전장치
	

UD(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단과 비슷한 복지택시와 개호택시 등이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지만, UD택시는 일반 택시이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로, 이동식 경사로를 적용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

가. 요금

〈표 3-36〉 UD 택시 요금표

요금 체계	일반 택시와 동일
기본 요금	도쿄 23구 기준으로 1.096km까지 500엔
추가 요금	255m당 추가 요금 부과(80엔~100엔)
할증 요금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 20% 할증 적용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나. 운영주체 및 이용자격 적용범위

- 지역 택시 회사 및 관련 교통 기관이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UD 택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

다. 운영방식

- 일본은 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함
- 교통배리어프리법(2000년 제정)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개량 노력만 요구
- 2006년, 교통 및 건축 관련 법률을 통합한 배리어프리신법이 시행되었고, 택시 전용 표준모델 도입과 UD택시 인증마크 부착이 시작됨
- 보급현황은 2020년 기준, 도쿄 시내 택시의 10% 이상이 UD택시로 교체되었으며 UD택시 보급률 목표는 30%(28,000대)로 설정
- 일본은 일반 차량 택시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신차를 UD택시로 전환 중이며, 내구연한에 도달한 기존 택시들이 자연스럽게 UD택시로 교체될 전망

〈그림 3-58〉 일본의 UD택시



출처 : Toyota 홈페이지

7. 이동지원센터

7.1 전국 이동지원센터 현황

-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콜센터 예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예약, 모바일 예약, 홈페이지 예약 등을 복수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음
-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9개 도 중 충청북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 위탁 운영은 크게 지방공기업(공단, 공사), 교통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등), 단체(장애인협회, 이동지원센터 등)로 구분됨

〈표 3-37〉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접수수단				운영 인력 (인)	
			전화	문자	홈 페이지	어플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서울시설공단	○	○	○	○	868	
부산광역시	위탁운영	부산시설공단	○	×	×	○	208	
대구광역시	위탁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	○	○	216	
인천광역시	위탁운영	인천교통공사	○	○	○	×	228	
광주광역시	위탁운영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	○	140	
대전광역시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	○	○	139	
울산광역시	위탁운영	(사단법인)울산장애인 복지서비스지원협회	○	×	○	○	103	
세종특별자치시	위탁운영	세종도시교통공사	○	○	○	○	34	
광역 센터	경기도	위탁운영	경기교통공사	○	○	○	○	9
	강원도	위탁운영	(주)케이티아이에스	○	○	○	○	19
	충청북도	-	-	-	-	-	-	-
	충청남도	위탁운영	(주)케이티아이에스	○	○	×	○	21
	전라북도	위탁운영	(주)케이티아이에스	○	×	○	○	26
	전라남도	위탁운영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	○	○	26
	경상북도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	○	×	18
	경상남도	위탁운영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	○	×	○	31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	○	104	

자료 : 각 지자체 내부자료(2022년 12월 기준)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7.2 경기도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현황

구 분	인력현황(명)				운영기관
	계	관리자	상담원	운전원	
계	1,758	182	182	1,394	-
경기도	84	9	75	-	경기교통공사
수원시	123	14	7	102	수원도시공사
용인시	107	9	5	93	용인도시공사
고양시	101	9	5	87	고양도시관리공사
화성시	81	8	5	68	화성도시공사
성남시	133	12	5	116	성남시내버스(주) 택시사업부
부천시	105	12	6	87	부천도시공사
남양주시	70	5	2	63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안산시	69	10	8	51	안산도시공사
평택시	88	10	6	72	평택도시공사
안양시	60	7	5	48	안양도시공사
시흥시	43	5	3	35	시흥도시공사
파주시	45	7	3	35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시	57	3	3	51	김포도시관리공사
의정부시	51	5	2	44	의정부도시공사
광주시	80	5	7	68	광주도시관리공사
하남시	36	3	2	31	하남시 장애인연합회
광명시	41	4	3	34	광명도시공사
군포시	35	6	5	24	군포도시공사
양주시	34	3	1	30	양주도시공사
오산시	27	3	3	21	오산도시공사
이천시	31	4	3	24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	28	3	2	2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구리시	30	4	1	25	구리도시공사
의왕시	21	3	1	17	의왕도시공사
포천시	32	3	2	27	포천도시공사
양평군	35	4	5	26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여주시	31	4	2	25	여주도시공사
동두천시	25	3	1	21	동두천시
과천시	13	2	2	9	과천도시공사
가평군	25	1	1	23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	17	2	1	14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0 운영 규정 및 예산(2024년)

구 분	규정(내규)	운영비 예산(천원)
계	-	149,598,226
경기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업무메뉴얼	6,527,135
수원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처리지침	8,451,276
용인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8,888,300
고양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8,364,968
화성시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8,934,561
성남시	취업규칙	11,618,200
부천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9,598,936
남양주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	7,004,450
안산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8,564,768
평택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6,466,000
안양시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4,370,126
시흥시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	4,027,591
파주시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6,652,252
김포시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4,069,095
의정부시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4,031,274
광주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내규	4,340,401
하남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4,292,600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	2,990,335
군포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	3,273,673
양주시	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칙	3,188,161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오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규	1,753,230
이천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지침	2,596,910
안성시	안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2,328,022
구리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및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2,056,175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내규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	1,421,317
포천시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2,983,854
양평군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2,861,998
여주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지침	1,984,521
동두천시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	1,603,000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1,216,287
가평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1,648,853
연천군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1,489,957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8. 경기도 광역지원센터

8.1 개요

- ▶ 경기도는 2016년에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
- ▶ 2022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2023년 7월에 광역콜센터를 구축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함
 - 광역콜센터 구축 : 2023년 7월
 - 경기도 광역이동 즉시콜 시행 : 2023년 10월
 - 수도권 광역이동 사전예약 서비스 개시 : 2023. 12월
 - 경기도 내 광역이동 사전예약 서비스 개시 : 2024년 3월
 - 광역콜센터 AI상담원 운영 : 2024년 7월
 - 전면(광역·관내) 배차 서비스 순차적 실시 : 2024년 7월
- ▶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만들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통일화를 기하고 광역이동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함

〈표 3-38〉 특별교통수단 표준지침 주요 내용

이용대상자	운영시간 및 운영지역	이용신청 및 요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65일, 24시간운영 모든 교통수단은 관내 및 광역, 인접지역으로 구분 인접지역은 광역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	대체수단(바우처 및 임차택시 등) 이용신청은 시·군 조례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 버스요금을 적용하고, 10km 초과시 5km당 100원

- ▶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

구 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접수수단			
			전화	문자	홈페이지	어플
경기도	위탁운영	경기교통공사	0	0	0	0

▶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절차

〈그림 3-59〉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절차



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 222천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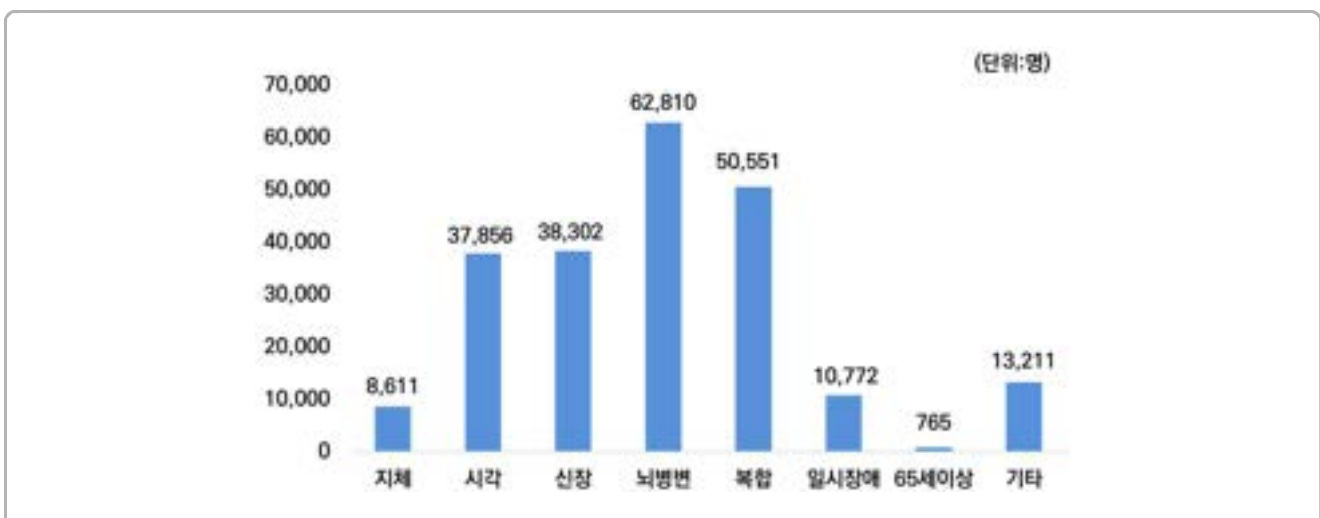
- 기초지역내 이동 및 일부 오류 데이터는 제외하여 분석 시행
- 데이터 조사 기간 : 2023. 10. 3. ~ 2024. 7.22.
- 분석내용 : 월별/요일별/시간별, 이용자 유형 및 목적, 지역간 통행량(O/D) 등

▶ 이용자 유형

〈표 3-39〉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유형

구분	계	지체	시각	신장	뇌병변	복합	일시장애	65세이상	기타
이용자(명)	222,878	8,611	37,856	38,302	62,810	50,551	10,772	765	13,211
비율(%)	100.0	3.9	17.0	17.2	28.2	22.7	4.8	0.3	5.9

〈그림 3-60〉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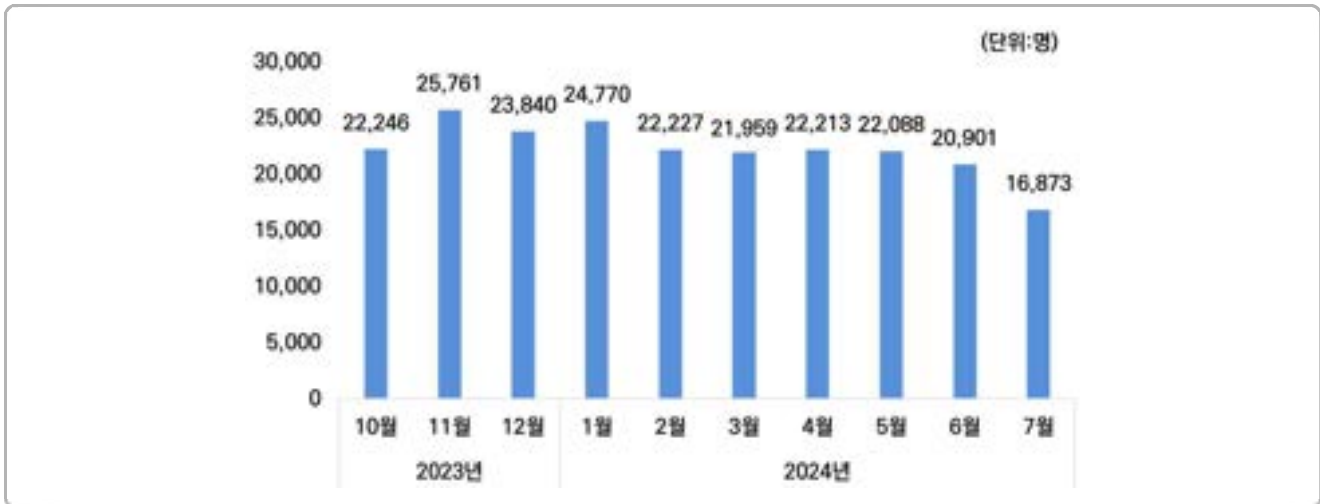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월별 이용자수

〈표 3-40〉 특별교통수단 월별 이용자수

구분	계	2023년			2024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용자(명)	222,878	22,246	25,761	23,840	24,770	22,227	21,959	22,213	22,088	20,901	16,873
비율(%)	100.0	10.0	11.6	10.7	11.1	10.0	9.9	10.0	9.9	9.4	7.6

〈그림 3-61〉 특별교통수단 월별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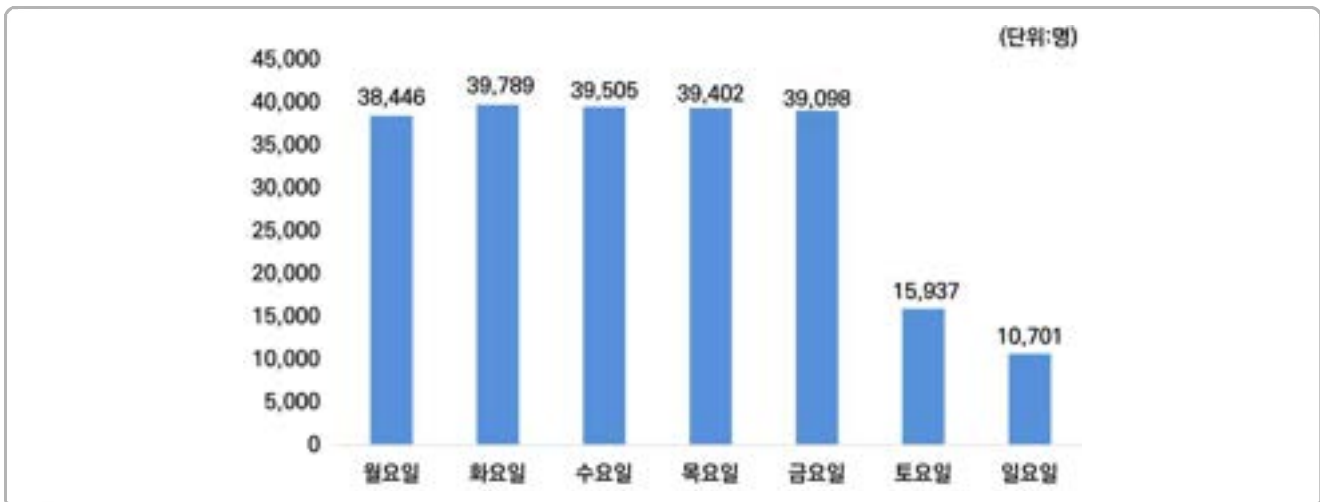


요일별 이용자수

〈표 3-41〉 특별교통수단 요일별 이용자수

구분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명)	222,878	38,446	39,789	39,505	39,402	39,098	15,937	10,701
비율(%)	100	17.2	17.9	17.7	17.7	17.5	7.2	4.8

〈그림 3-62〉 특별교통수단 요일별 이용자수



시간대별 이용자

〈표 3-42〉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

구분	계	7~9시	9시~11시	11시~13시	13시~15시	15시~17시	17시~19시	19시~21시	21시~7시
이용자(명)	222,878	34,133	43,354	34,334	44,220	29,095	11,989	6,533	19,220
비율(%)	100	15.3	19.5	15.4	19.8	13.1	5.4	2.9	8.6

〈그림 3-63〉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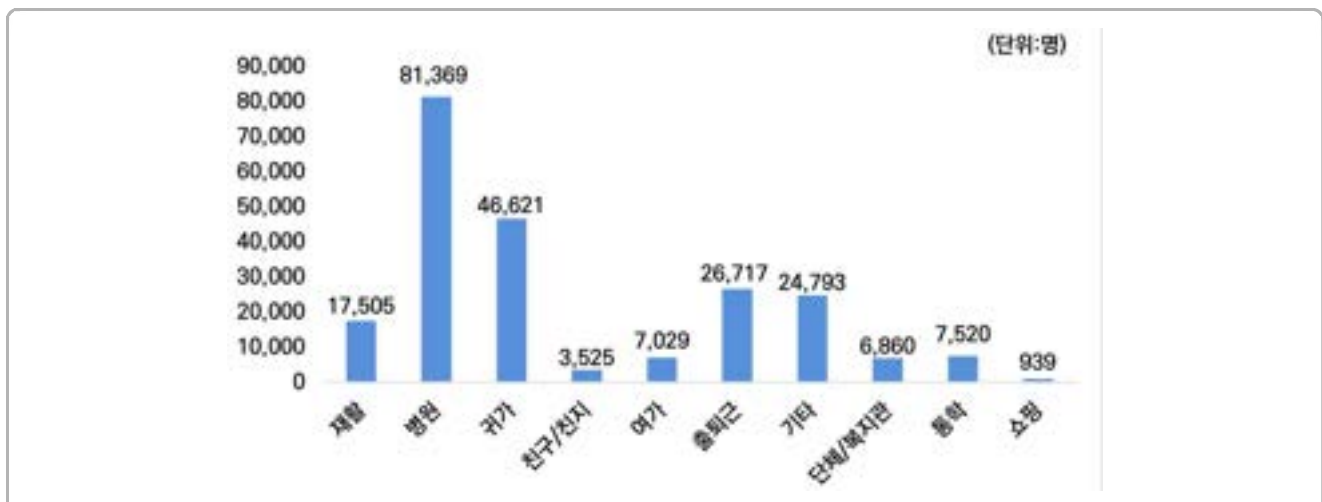


목적별 이용자

〈표 3-43〉 특별교통수단 목적별 이용자

구분	계	재활	병원	귀가	친구/ 친지	여가	출퇴근	기타	단체/ 복지관	통학	쇼핑
이용자(명)	222,878	17,505	81,369	46,621	3,525	7,029	26,717	24,793	6,860	7,520	939
비율(%)	100.0	7.9	36.5	20.9	1.6	3.2	12.0	11.1	3.1	3.4	0.4

〈그림 3-64〉 특별교통수단 목적별 이용자수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출발지/도착지별 이용자

〈표 3-44〉 전체 O/D

출발지	이용자수	도착지	이용자수
성남시	24,855	서울특별시	70,945
용인시	16,430	성남시	15,892
고양시	16,397	수원시	14,553
하남시	13,412	용인시	11,599
수원시	12,841	인천광역시	10,894
남양주시	12,353	안양시	9,693
김포시	11,381	화성시	9,597
부천시	11,345	의정부시	7,571
의정부시	10,052	안산시	6,990
안산시	9,232	고양시	6,531
화성시	8,562	남양주시	5,048
시흥시	8,427	광주시	4,518
광명시	7,123	파주시	4,289
양주시	6,847	시흥시	4,079
군포시	6,047	구리시	3,933
광주시	5,460	평택시	3,896
안양시	5,409	양주시	3,846
구리시	5,289	군포시	3,497
의왕시	5,227	부천시	3,444
평택시	4,836	의왕시	2,718
파주시	3,733	하남시	2,350
포천시	2,554	오산시	2,329
오산시	2,362	광명시	2,241
동두천시	2,103	안성시	1,828
안성시	2,048	김포시	1,775
과천시	1,798	동두천시	1,736
양평군	1,734	포천시	1,718
이천시	1,587	이천시	1,303
여주시	1,016	양평군	1,043
가평군	999	여주시	860
서울특별시	760	과천시	846
연천군	656	가평군	838
인천광역시	3	연천군	478
합계	222,878	합계	222,878

〈표 3-45〉 병원/재활 목적 O/D

출발지	이용자수	도착지	이용자수
성남시	9,668	서울특별시	31,979
용인시	8,671	성남시	9,379
남양주시	6,670	수원시	5,571
고양시	6,264	용인시	5,244
하남시	6,156	안양시	5,156
김포시	4,984	인천광역시	4,308
부천시	4,602	의정부시	4,036
의정부시	4,066	고양시	3,499
화성시	4,021	화성시	3,268
시흥시	3,995	안산시	2,958
수원시	3,902	구리시	2,569
양주시	3,351	남양주시	2,070
광주시	3,262	광주시	2,051
광명시	3,196	평택시	1,634
안산시	3,034	시흥시	1,574
군포시	3,009	파주시	1,561
의왕시	2,584	부천시	1,524
구리시	2,324	군포시	1,401
안양시	2,283	양주시	1,159
파주시	2,003	오산시	923
평택시	1,906	의왕시	885
안성시	1,350	광명시	837
오산시	1,208	하남시	834
양평군	1,050	안성시	734
동두천시	1,048	동두천시	656
과천시	785	이천시	569
포천시	758	김포시	516
가평군	713	포천시	455
이천시	711	가평군	425
여주시	530	양평군	415
서울특별시	480	여주시	348
연천군	289	과천시	198
인천광역시	1	연천군	138
합계	98,874	합계	98,874

〈표 3-46〉 ① 통행목적별(전체) 특별교통수단 이용량

(단위 : 통행/대)

출발지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서울시	인천시	합계
가평군	0	38	0	2	2	21	0	1	757	1	2	15	10	2	1	0	0	3	18	0	0	0	1	0	9	0	27	0	8	11	11	58	1	999
고양시	39	0	2	41	12	16	7	1,218	57	138	181	132	87	19	42	3	67	160	33	1	12	22	38	3	234	12	3,292	29	24	41	46	10,140	249	16,397
과천시	0	1	0	8	0	0	139	1	2	0	10	51	66	37	240	0	613	0	0	1	0	0	8	91	1	3	0	20	0	2	26	471	7	1,798
광명시	0	28	19	0	3	3	88	41	2	0	797	78	30	351	85	8	215	58	2	0	0	2	12	23	6	2	15	2	6	115	16	5,075	41	7,123
광주시	2	8	0	4	0	3	7	5	10	5	17	3,342	111	6	28	4	7	1	29	48	0	1	804	3	14	129	2	11	0	138	27	688	6	5,460
구리시	14	8	2	1	3	0	1	4	2,195	1	9	109	46	5	0	0	1	21	167	0	0	3	32	3	26	2	10	2	29	168	4	2,415	8	5,289
군포시	0	8	121	117	8	0	0	2	2	0	41	165	468	57	396	0	3,415	4	0	2	0	4	26	603	0	0	3	30	2	27	181	337	28	6,047
김포시	1	2,235	2	84	9	36	3	0	50	1	232	37	40	31	13	2	31	69	4	4	1	0	25	3	28	4	203	34	5	6	10	5,401	2,777	11,381
남양주시	647	68	6	2	12	2,761	2	22	0	6	37	148	15	6	23	1	34	137	150	12	6	1	49	6	679	6	25	12	111	476	19	6,857	17	12,353
동두천시	0	189	0	0	3	8	0	2	4	0	1	3	0	0	4	1	0	362	1	0	228	0	2	0	848	0	9	1	87	1	2	347	0	2,103
부천시	0	148	5	414	15	6	26	143	32	2	0	82	79	871	110	22	88	56	11	16	16	5	48	10	67	6	106	52	4	15	70	4,469	4,351	11,345
성남시	17	101	55	89	2,960	133	62	30	116	5	101	0	1,344	64	162	172	370	56	47	119	3	121	5,587	126	94	327	80	239	28	757	452	10,879	159	24,855
수원시	19	65	18	24	85	46	329	35	19	3	94	1,097	0	123	1,037	134	450	18	11	39	0	368	2,983	174	89	26	18	841	7	35	3,659	942	53	12,841
시흥시	1	24	25	505	18	7	28	28	9	0	1,161	62	188	0	2,642	4	263	7	2	3	0	5	23	56	12	9	6	9	1	8	136	695	2,490	8,427
안산시	3	34	170	101	26	0	310	11	19	3	185	255	1,843	2,123	0	9	370	7	4	6	0	21	147	126	32	12	12	322	0	15	1,838	960	268	9,232
안성시	0	2	1	12	4	0	0	1	1	0	9	210	159	2	4	0	2	0	0	0	0	9	38	2	3	16	3	1,381	0	3	25	109	52	2,048
안양시	2	52	277	151	4	1	1,505	5	6	0	91	206	189	105	185	1	0	1	2	4	0	8	57	1,407	2	7	1	14	2	14	55	1,024	31	5,409
양주시	4	157	0	20	1	29	6	38	83	624	13	28	27	10	7	1	2	0	7	0	6	1	9	3	3,636	6	39	9	412	7	1	1,656	5	6,847
양평군	23	38	0	2	18	341	0	0	109	0	6	77	8	3	2	1	3	7	0	184	0	3	8	0	12	63	5	2	2	216	23	575	3	1,734
여주시	0	1	1	0	55	1	2	3	21	0	26	144	45	5	1	0	7	0	177	0	0	1	19	0	1	350	1	4	0	5	13	131	2	1,016
연천군	0	48	0	0	4	0	0	8	3	239	19	17	2	0	1	0	0	6	0	0	0	1	0	0	204	1	11	0	12	1	0	76	3	656
오산시	0	12	1	1	2	1	19	1	3	0	10	96	437	3	38	8	12	1	2	2	1	0	255	14	2	9	1	363	0	3	990	72	3	2,362
용인시	1	29	23	19	730	49	27	15	45	4	70	7,256	4,221	22	148	61	106	8	8	16	0	273	0	25	41	197	32	207	2	61	1,497	1,171	66	16,430
의왕시	0	7	43	29	5	2	697	1	6	0	10	158	362	59	121	1	3,439	3	0	0	0	22	31	0	5	1	0	3	0	1	23	196	2	5,227
의정부시	11	265	0	4	17	133	1	18	590	504	94	63	63	17	19	2	5	2,364	13	2	181	4	40	3	0	42	328	10	935	137	49	4,065	73	10,052
이천시	0	9	5	5	147	8	0	9	8	0	8	356	35	7	12	23	6	6	62	362	0	13	224	1	36	0	1	8	0	25	19	190	2	1,587
파주시	15	2,807	0	13	5	8	3	98	17	8	42	34	11	3	6	2	0	28	0	0	8	0	19	0	134	0	0	15	3	7	7	383	57	3,733
평택시	2	22	32	7	8	2	38	19	13	1	37	225	1,033	11	334	1,320	24	6	2	6	0	587	242	4	11	20	15	0	3	11	348	401	52	4,836
포천시	8	20	0	3	0	1	1	5	270	180	14	28	7	1	0	0	7	440	2	0	7	0	1	0	1,125	0	13	3	0	9	1	404	4	2,554
하남시	16	62	4	114	335	307	41	3	584	7	29	853	61	7	23	5	35	15	221	4	1	2	73	9	178	39	18	15	29	0	36	10,268	18	13,412
화성시	6	45	34	18	10	10	155	8	15	3	97	565	3,533	128	1,306	20	121	2	18	12	0	852	682	23	40	14	12	240	3	34	0	490	66	8,562
서울시	7	0	0	451	16	0	0	0	0	1	1	0	33	1	0	21	0	0	50	17	8	0	116	0	2	0	1	18	3	1	13	0	0	760
인천시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합계	838	6,531	846	2,241	4,518	3,933	3,497	1,775	5,048	1,736	3,444	15,892	14,553	4,079	6,990	1,828	9,693	3,846	1,043	860	478	2,329	11,599	2,718	7,571	1,303	4,289	3,896	1,718	2,350	9,597	70,945	10,894	222,878

〈표 3-47〉 ② 통행목적별(병원+재활치료) 특별교통수단 이용량

(단위 : 통행/대)

출발지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서울시	인천시	합계
가평군	0	3	0	0	0	15	0	0	602	0	2	10	2	0	0	0	0	1	4	0	0	0	1	0	5	0	26	0	5	8	0	29	0	713
고양시	5	0	0	18	1	8	1	391	9	3	49	39	18	7	6	0	46	65	7	0	4	5	15	1	112	2	1,354	7	5	16	16	4,001	53	6,264
과천시	0	0	0	1	0	0	19	0	1	0	0	40	50	1	85	0	349	0	0	0	0	0	4	6	0	1	0	0	0	0	4	222	2	785
광명시	0	13	0	0	2	2	16	4	1	0	220	39	10	108	24	2	82	2	1	0	0	1	4	12	2	1	1	0	3	43	11	2,586	6	3,196
광주시	0	4	0	1	0	1	5	1	4	5	2	2,124	56	3	10	3	3	0	4	23	0	0	525	0	3	41	2	3	0	25	11	400	3	3,262
구리시	9	4	1	1	0	0	0	0	952	0	2	22	2	0	0	0	0	5	100	0	0	0	22	0	16	0	7	1	1	33	0	1,144	2	2,324
군포시	0	1	20	30	1	0	0	0	0	0	25	112	64	18	140	0	2,083	1	0	1	0	0	11	260	0	0	3	2	1	7	26	186	17	3,009
김포시	0	1,463	0	6	4	22	0	0	8	1	85	10	5	2	4	1	3	29	0	0	1	0	8	0	5	1	39	5	1	2	2,057	1,221	4,984	
남양주시	354	10	4	1	6	1,991	1	2	0	1	20	22	7	2	2	0	4	18	26	4	0	1	5	3	327	0	6	7	31	198	2	3,605	10	6,670
동두천시	0	13	0	0	2	0	0	1	0	0	1	2	0	0	4	1	0	87	0	0	37	0	1	0	666	0	7	0	10	0	1	215	0	1,048
부천시	0	42	1	78	2	4	9	41	4	0	0	20	13	353	45	7	37	3	5	0	2	2	31	4	37	4	33	24	0	5	32	2,118	1,646	4,602
성남시	7	25	7	13	1,243	30	22	8	25	2	23	0	324	17	61	24	231	9	20	61	1	55	2,888	67	11	136	19	89	9	265	90	3,858	28	9,668
수원시	2	10	7	9	44	3	44	4	5	1	31	402	0	24	240	32	164	2	5	16	0	138	981	12	11	17	7	231	5	10	1,076	348	21	3,902
시흥시	0	8	4	216	6	0	10	2	2	0	713	22	50	0	1,348	0	124	1	0	0	0	3	9	37	1	7	3	0	0	1	29	340	1,059	3,995
안산시	1	9	11	32	9	0	141	4	1	3	90	121	339	907	0	2	147	3	2	2	0	5	36	16	5	7	0	42	0	10	648	387	54	3,034
안성시	0	0	0	2	3	0	0	0	0	0	7	168	75	1	0	0	1	0	0	0	0	4	27	0	0	1	0	956	0	1	5	84	15	1,350
안양시	0	31	98	81	3	0	706	1	2	0	54	149	82	29	83	0	0	0	1	0	0	5	18	443	0	0	0	5	0	0	13	468	11	2,283
양주시	2	54	0	0	0	7	3	8	24	290	4	10	2	2	1	0	0	0	1	0	1	1	0	0	2,004	6	4	1	72	0	0	853	1	3,351
양평군	4	24	0	1	5	269	0	0	29	0	3	32	7	0	1	0	1	1	0	70	0	0	2	0	6	28	3	0	0	120	4	438	2	1,050
여주시	0	0	0	0	31	1	1	0	11	0	0	85	24	1	0	0	0	0	92	0	0	1	16	0	0	185	1	1	0	2	3	73	2	530
연천군	0	43	0	0	1	0	0	6	1	62	2	3	0	0	1	0	0	1	0	0	0	0	0	0	120	0	8	0	5	0	0	34	2	289
오산시	0	6	0	0	1	0	3	0	0	0	2	69	283	1	2	4	7	1	0	1	0	0	83	0	0	0	0	107	0	0	598	39	1	1,208
용인시	1	6	8	7	441	34	13	6	1	2	43	4,883	1,650	12	31	23	41	1	1	11	0	70	0	15	5	93	0	42	0	17	516	673	25	8,671
의왕시	0	1	18	18	1	0	353	0	2	0	4	102	75	40	52	0	1,787	0	0	0	0	0	19	0	3	0	0	0	0	0	7	101	1	2,584
의정부시	3	152	0	1	8	120	0	4	223	267	50	15	7	3	2	0	1	877	6	0	78	1	3	1	0	14	26	1	296	54	25	1,783	45	4,066
이천시	0	2	2	0	92	0	0	3	3	0	6	154	25	4	5	1	1	2	31	144	0	0	116	0	3	0	1	4	0	3	2	106	1	711
파주시	14	1,513	0	1	2	6	3	27	10	5	16	14	3	0	0	0	0	5	0	0	3	0	0	0	118	0	0	4	1	1	6	223	28	2,003
평택시	0	7	3	2	4	1	1	0	5	0	10	89	442	2	70	613	5	0	0	2	0	183	62	1	7	14	4	0	0	5	128	229	17	1,906
포천시	5	3	0	0	0	1	1	1	40	14	0	9	5	0	0	0	1	42	1	0	3	0	1	0	475	0	2	0	0	4	0	150	0	758
하남시	13	29	0	48	122	49	12	1	104	0	8	463	17	0	7	1	4	2	66	1	0	1	20	0	86	11	4	8	9	0	1	5,054	15	6,156
화성시	0	23	14	11	5	5	37	1	1	0	52	149	1,914	37	734	2	34	1	2	1	0	447	258	7	8	0	0	79	0	4	0	175	20	4,021
서울시	5	0	0	259	12	0	0	0	0	0	0	0	20	0	0	17	0	0	40	11	8	0	78	0	0	0	1	15	1	1	12	0	0	480
인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합계	425	3,499	198	837	2,051	2,569	1,401	516	2,070	656	1,524	9,379	5,571	1,574	2,958	734	5,156	1,159	415	348	138	923	5,244	885	4,036	569	1,561	1,634	455	834	3,268	31,979	4,308	98,874

시·군별 사례

1) 성남시(최대 이용 : 24,855건)

〈 접수타입별 배차,승차,하차까지의 시간 〉

구분	즉시+예약			즉시			예약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시간	2:13:25	0:30:36	0:45:28	1:25:36	0:30:28	0:45:45	7:26:01	0:31:31	0:43:32

〈 접수타입별 월별 이용자수 〉

구분	합계	2023.10	2023.11	2023.12	2024.01	2024.02	2024.03	2024.04	2024.05	2024.06	2024.07
즉시+예약	24,855	2,621	2,849	2,823	2,976	2,615	2,279	2,288	2,379	2,296	1,729
즉시	20,235	2,621	2,849	2,708	2,551	2,224	1,879	1,781	1,821	1,801	1,322
예약	2,891	0	0	115	425	391	400	507	558	495	407

〈 접수타입별 장애유형 〉

구분	합계	65세이상	지체	시각	신장	뇌병변	복합	기타	일시장애
즉시+예약	24,855	25	737	6,007	2,883	7,571	4,511	1,343	1,778
즉시	21,557	19	719	5,109	2,583	6,438	3,940	1,150	1,599
예약	3,298	6	18	898	300	1,133	571	193	179

〈 접수타입별 장애등급 〉

구분	합계	중증	경증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타	없음
즉시+예약	24,855	18,209	257	2,968	245	1,203	194	89	2	300	1,388
즉시	21,557	15,583	243	2,644	234	1,090	190	81	2	276	1,214
예약	3,298	2,626	14	324	11	113	4	8	0	24	174

〈 접수타입별 목적 〉

구분	합계	병원	재활	출퇴근	귀가	통학	단체/ 복지관	쇼핑	친구/ 친지	여가	기타
즉시+예약	24,855	7,575	2,093	2,931	6,924	331	716	55	440	956	2,834
즉시	21,557	6,211	1,925	2,368	6,300	287	624	51	385	809	2,597
예약	3,298	1,364	168	563	624	44	92	4	55	147	237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 연천군(최소 이용 : 656건, 최대의 2.6% 수준)

〈 접수타입별 배차,승차,하차까지의 시간 〉

구분	즉시+예약			즉시			예약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배차까지 시간	승차까지 시간	하차까지 시간
시간	1:27:27	0:17:55	0:51:06	0:24:40	0:16:34	0:47:06	7:42:45	0:25:56	1:14:55

〈 접수타입별 월별 이용자수 〉

구분	합계	2023.10	2023.11	2023.12	2024.01	2024.02	2024.03	2024.04	2024.05	2024.06	2024.07
즉시+예약	656	59	57	53	64	72	78	81	77	59	56
즉시	522	59	57	53	59	67	69	56	60	42	40
예약	78	0	0	0	5	5	9	25	17	17	16

〈 접수타입별 장애유형 〉

구분	합계	65세이상	지체	시각	신장	뇌병변	복합	기타	일시장애
즉시+예약	656	0	2	94	109	251	148	47	5
즉시	562	0	2	59	89	243	120	44	5
예약	94	0	0	35	20	8	28	3	0

〈 접수타입별 장애등급 〉

구분	합계	중증	경증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타	없음
즉시+예약	656	621	0	7	0	1	0	0	0	0	27
즉시	562	530	0	7	0	1	0	0	0	0	24
예약	94	91	0	0	0	0	0	0	0	0	3

〈 접수타입별 목적 〉

구분	합계	병원	재활	출퇴근	귀가	통학	단체/복지관	쇼핑	친구/친지	여가	기타
즉시+예약	656	273	16	22	98	148	6	0	13	7	73
즉시	562	210	16	6	85	148	5	0	13	7	72
예약	94	63	0	16	13	0	1	0	0	0	1

9. 타지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례

9.1 전라북도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의거 운영중

▶ 설립 당시 14개 시·군이 동일한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여 통합적 관리체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음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요금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운행범위와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왕복운행)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역시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보행상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48〉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구 분		거 리	요 금	비 고
권역 내 요금	기본 요금	2km	7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주행 요금	1km당	100원	
권역 외 요금	기본 요금	2km	700원	
	주행 요금	700m당	100원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이용자 부담		
대기료 (권역 내 대기 불가, 용무종료 후 즉시콜)		권역 외	30분당 2,500원 (1시간무료)	
		전라북도 외	30분당 2,500원 (2시간무료)	

출처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련 조례

9.2 강원도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3년 관제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해오던 특별교통수단에 광역 기반의 이용자·차량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였음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콜센터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이용요금

- 강원도 18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용요금의 경우 큰 틀에서의 체계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규정이 상호 간에 다소 상이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관내·외 이용요금 체계는 기본 1,100원/4Km, 초과시 100원/Km의 이용요금과 대기시간 1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의 대기료를 징수

〈표 3-49〉 강원도 18개군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본체계

관내 요금		관외 요금		대기료
기본	초과	기본	초과	
1,100원/4km	100원/km	1,100원/4km	100원/km	1시간 초과시 2,000원/30분

9.3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군간 운행제한과 요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시·군별 관내요금은 상이했으나 최근 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통합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자동배차 시스템(AI) 고도화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표 3-50〉 전라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현황(2022년 10월 기준)

시·군	차량 현황(특장차)	시·군	차량 현황(특장차)
여수	56(22)	보성	10(5)
해남	26(7)	화순	17(7)
목포	23(19)	강진	19(4)
순천	49(22)	무안	16(11)
나주	29(15)	함평	12(4)
광양	33(12)	영광	11(5)
곡성	11(4)	장성	4(4)
구례	11(4)	완도	4(4)
고흥	20(6)	진도	8(3)
장흥	8(8)	신안	7(4)
담양	4(4)	영암	12(6)
계	388대(특장차 180대, 임차 11대, 바우처 197대)		

출처 :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특장차+임차+바우처)

제4장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1. 제2차 지원계획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분석 및 평가
3. 성과분석 종합

제4장 제2차 지원계획 성과분석

1. 제2차 지원계획 개요

1.1.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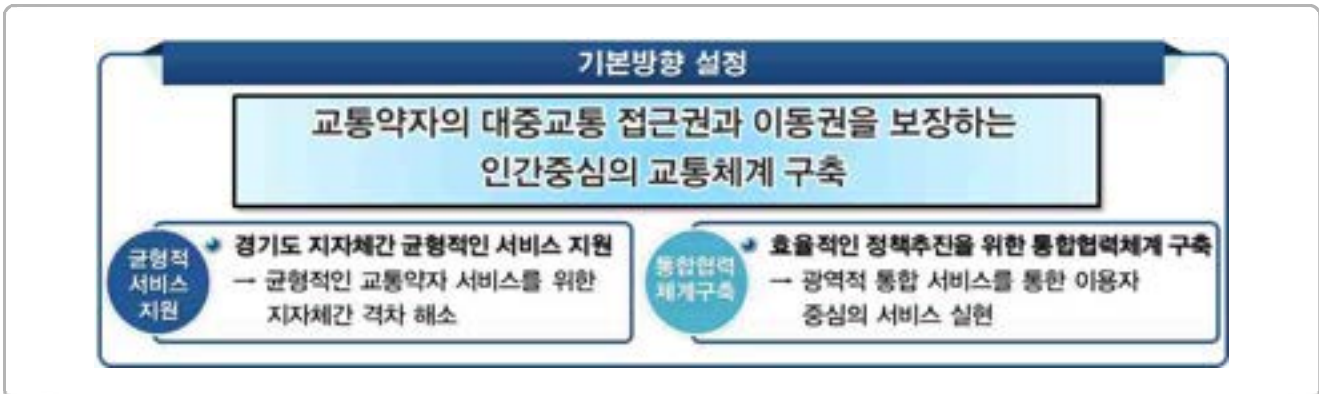
-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 경기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1.2.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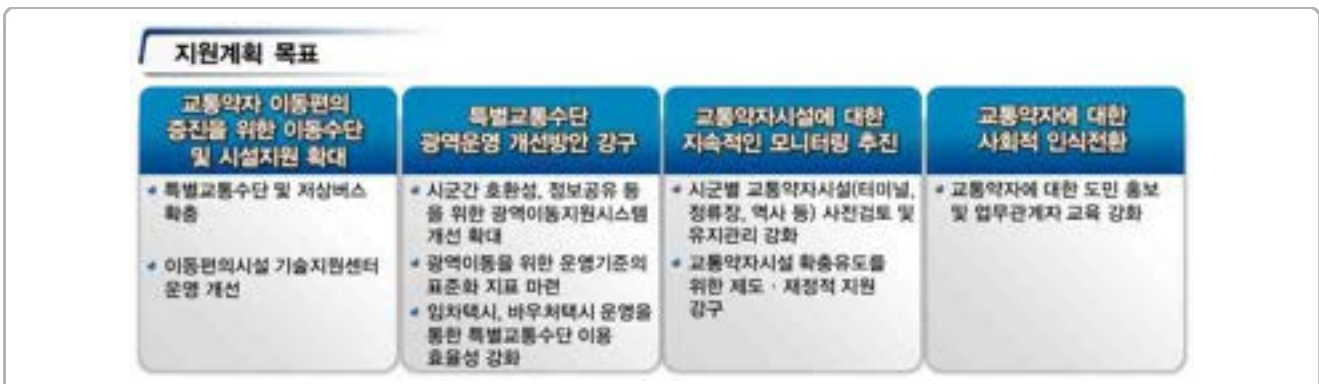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제1차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준용하여 정책적 연속성 확보

<그림 4-1> 기본방향 설정



▶ 목표

<그림 4-2> 목표설정



04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2. 주요 추진과제 분석 및 평가

2.1 특별교통수단 확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2019. 7. 5)에 따라 이용범위는 기존 1·2급 장애인 에서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법정대수는 해당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기준 강화됨에 따라 법정대수 상향 조정됨

〈표 4-1〉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계획

구 분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수	법정대수 (대)	운영대수 (대)	보급률 현황(%)	지자체별 계획 (2020 ~ 2024년)	
					증차계획(대)	대폐차계획(대)
경기도	112,966	753	1,071	142	123	278
수원시	8,676	58	90	155	-	32
용인시	7,231	48	72	150	-	-
고양시	8,858	59	86	146	-	41
화성시	5,331	36	48	133	26	27
성남시	7,869	52	80	154	-	-
부천시	5,649	38	64	168	23	42
남양주시	6,213	41	42	102	15	-
안산시	6,178	41	61	149	-	23
평택시	4,232	28	44	157	5	27
안양시	4,168	28	38	136	-	1
시흥시	3,445	23	32	139	-	24
파주시	4,264	29	36	124	-	-
김포시	4,099	27	32	119	8	4
의정부시	5,221	35	32	91	7	12
광주시	2,890	19	29	153	10	-
하남시	2,064	14	18	129	2	1
광명시	2,737	18	32	178	-	2
군포시	2,340	16	22	138	5	12
양주시	2,863	19	21	111	5	5
오산시	1,651	11	17	155	-	-
이천시	2,590	17	24	141	-	-
안성시	2,163	14	19	136	-	-
구리시	1,742	12	17	142	1	-
의왕시	1,423	9	11	122	-	-
포천시	2,054	14	17	121	5	17
양평군	1,777	12	20	167	4	-
여주시	1,493	10	18	180	7	-
동두천시	1,371	9	14	156	-	6
과천시	467	3	6	200	-	-
가평군	1,217	8	16	200	-	-
연천군	690	5	13	260	-	2

시·군별 증차 및 대폐차 계획을 반영한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는 2020년 1,131대에서 2024년 1,194대로 2019년 기준 법정대수의 150%(1,130대)를 상회토록 계획

〈표 4-2〉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전망(2020~2024년)

(단위 :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대수(법정대수)	1,071 (753)	1,131	1,159	1,170	1,181	1,194
증차대수	-	60	28	11	11	13
대폐차대수	-	58	59	56	45	60
전년대비 증감	-	△60	△28	△11	△11	△13

추진성과 : 2024년 1,209대 운영으로 목표치 1,194대 보다 15대 초과 달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법정 대비 116.9로이나 고양시, 시흥시, 파주시, 오산시는 법정대수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연천군은 법정대비 두배가 넘는 216.7% 도입률을 보이거나 오산시는 88.2%로 편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구 분	운영대수	법정대수	
		대 수	비 율
합계	1,209	1,034	116.9%
수원시	90	80	112.5%
용인시	76	67	113.4%
고양시	78	79	98.7%
화성시	68	50	136.0%
성남시	80	67	119.4%
부천시	75	67	111.9%
남양주시	59	55	107.3%
안산시	60	57	105.3%
평택시	51	42	121.4%
안양시	42	38	110.5%
시흥시	33	36	91.7%
파주시	36	40	90.0%
김포시	40	32	125.0%
의정부시	45	40	112.5%
광주시	43	30	143.3%
하남시	30	20	150.0%
광명시	32	25	128.0%
군포시	23	20	115.0%
양주시	27	23	117.4%
오산시	15	17	88.2%
이천시	26	21	123.8%
안성시	21	20	105.0%
구리시	22	15	146.7%
의왕시	14	11	127.3%
포천시	28	18	155.6%
양평군	24	16	150.0%
여주시	20	15	133.3%
동두천시	16	12	133.3%
과천시	6	4	150.0%
가평군	16	11	145.5%
연천군	13	6	216.7%

04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2.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비의 일부 지원

〈표 4-3〉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법령

항 목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내 시·군이 도입·운영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와 운영비를 각각 지원

- 도입비 지원 : 50% 기준율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운영비 지원 : 기준보조율 10%에 광역이동 기준 만족시 10% 추가 지원

▶ 추진성과

- 도입비 : 2024년 기준 도비 2,199백만원, 국비 2,300백만원 지원
- 운영비 : 도비 30%인 42,379백만원, 국비 11,403백만원 지원

〈표 4-4〉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도입비	국비	4,600	2,300	-	2,300	100대
	도비	3,864	-	2,199	1,665	84대
운영비	국비	11,403	11,403	-	-	-
	도비	141,262	-	42,379	98,883	-

▶ 지원기준

- 도입비 : (도비보조사업) 도비 30~70%, 시·군비 30~70% (차등보조, 기준보조율 50%), (국비보조사업) 국비 50%, 시·군비 50%(정률보조)
- 운영비 : (도비보조사업) 도비 30%, 시·군비 70%, (국비보조사업) 국비 100%(정액보조)

2.3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선

▶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 중으로 이용대상자, 이용시간(접수 및 운영), 접수방식, 운행지역, 이용요금(관내, 관외, 기타) 등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동질의 서비스 제공) 시·군별로 상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을 통일 혹은 간소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이동의 편의 도모
- (운영지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유도
 - 현행 운영비의 10~2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운영비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광고를 활용하여 보전
- (DB 구축 및 활용)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교통약자) 및 현황자료 DB구축으로 통합관리 도모
 - 실시간 배차 및 차량위치 공유로 관외 목적지로 이동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관외 접수 및 승차가 가능토록 하여 운영 효율 증대
 - 출발지 이동지원센터에서 관외이용 발생시 실시간 배차현황을 DB에 등록하여 목적지 이동지원센터로 도착장소 및 시간 등 자동 알림(편도의 경우에만, 왕복은 통보 불필요)
 - 목적지 이동지원센터는 출발지로의 이용수요가 있을 시 출발지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내용을 통보하고 차량 요청
 - 출발지 이동지원센터는 해당 관외운행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목적지에서의 출발시간 및 장소, 도착장소 등을 지시하여 이용수요 처리

▶ 추진성과 : 2023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 설립근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주요사업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 운영
 - 광역 이동지원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 광역 이동지원 효율화 방안 강구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운영매뉴얼 작성·관리 등
- 센터현황 : 관리자 9명, 상담원 75명

04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표 4-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평일 배차				주말 배차			
	새벽	정규	야간	심야	새벽	정규	야간	심야
근무시간	6:00 ~ 10:00	9:00 ~ 18:00	18:00 ~ 22:00	22:00 ~ 7:00	6:00 ~ 10:00	9:00 ~ 18:00	18:00 ~ 22:00	22:00 ~ 7:00
상담인원	65명				10명			

2.4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화

- ▶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표 설정 및 표준화를 통해 각 시군이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기준은 운행대수(법정대수), 이용대상자, 운행지역, 운행시간, 이용요금, 관제시스템, 접수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경기도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이동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표 4-6〉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운행대수	법정대수의 150% 이상 확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용대상자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 기준 준수	거주지에 대한 차별 금지 (최대 1일 4회 이용가능)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 * 수도권외 시·도와 시계를 맞닿은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타시·도 포함	향후 이용목적에 따른 운행지역 제한 불가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기본요금 1,500원/10km 이하 추가요금 100원/5km 이하
이용요금	대중교통요금 이하	-
관제시스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	추후 시·군 관제시스템 교체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활용
접수방식	다양한 접수방식 구축(전화, 온라인, 어플 등)	온라인, 어플 접수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활용

2023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만들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통일화를
기하고 광역이동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함

〈표 4-7〉 표준지침 주요 내용

이용대상자	운영시간 및 운영지역	이용신청 및 요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65일, 24시간운영 모든 교통수단은 관내 및 광역, 인접 지역으로 구분 인접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	대체수단(바우처 및 임차택시 등) 이용신청은 시·군 조례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10km 초과시 5km당 100원

2.5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 및 바우처택시 등) 확대

도입필요성

- 특별교통수단의 비휠체어 이용 점유율 상위 지자체는 연천군(94%), 안성시(89%), 이천시(82%), 화성시(76%), 평택시(74%), 가평군(71%) 순이며 전체적으로 58% 수준임
- 휠체어 탑승이 불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택시를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지원방향 : 도입 필요성은 제시하였으나 도비 지원은 없음

추진성과

- 대체수단(임차·바우처택시, 일반차량 등) 운영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대체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분산 및 대기시간 감소
 - 임차택시 : 택시(운전원 포함)를 임차하여 교통약자전용 이동수단으로 운영
 - 바우처택시 : 일반택시 영업 중 수요 발생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 일반차량 : 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전용 이동수단으로 운영
- 4,600대 도입 운영 : 바우처택시 4437대, 임차택시 112대, 일반차량 51대
- 대체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

04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표 4-8〉 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구 분	계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일반차량
경기도	4,600	4,437	112	51
수원시	49	-	49	-
용인시	200	200	-	-
고양시	17	-	17	-
화성시	180	180	-	-
성남시	3,521	3,521	-	-
부천시	100	100	-	-
남양주시	30	30	-	-
안산시	80	80	-	-
평택시	50	50	-	-
안양시	40	40	-	-
시흥시	30	30	-	-
파주시	50	50	-	-
김포시	6	-	3	3
의정부시	21	9	12	-
광주시	5	-	-	5
하남시	23	19	-	4
광명시	8	-	6	2
군포시	12	-	8	4
양주시	6	-	-	6
오산시	2	-	-	2
이천시	0	-	-	-
안성시	11	-	3	8
구리시	8	-	-	8
의왕시	10	10	-	-
포천시	83	83	-	-
양평군	28	25	-	3
여주시	5	-	4	1
동두천시	10	-	10	-
과천시	3	-	-	3
가평군	2	-	-	2
연천군	10	10	-	-

2.6 저상버스

- 경기도 2019년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대비 저상버스 도입율은 13.4%에 불과
-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 21)」에서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32%로 제시

〈표 4-9〉 장래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구 분	2021 목표	2019 현황	예상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급률(%)	32.0	13.4	21.2	24.6	27.9	31.4	34.9	-
저상버스 대수	-	1,441	2,263	2,632	2,986	3,361	3,737	-

추진성과

-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0.8%로 2차 계획에서 제시한 보급률 34.9%를 5.9% 상회하여 달성

〈표 4-10〉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구 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2024년 현재	달성률
	기준년도(2019년)	목표연도(2024년)		
운행대수	1,441대	3,743	4,306대	563대 증
보급률	13.4%	34.9%	40.8%	5.9% 증

- 이중 일반시내버스 인가대수 7,614대의 46%인 3,499대 저상버스가 운행중이며, 마을버스 인가대수 2,923대중 27.6%인 807대가 저상버스로 운행중에 있음

〈표 4-11〉 경기도 저상버스 운행률

구분	합계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인가대수	저상버스	인가대수	저상버스대수	인가대수	저상버스대수
경기도	10,537	4,306(40.8%)	7,614	3,499(46.0%)	2,923	807(27.6%)

- 또한, 2022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대폐차는 저상버스로 도입토록 규정됨에 따라 2033년에 보급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04 제2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2.7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고도화

- ▶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면검토, 현장기술지원 포함) 시작
-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879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토를 실시함
- ▶ 2차계획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대상의 확대와 심사에 대한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였음
- ▶ 추진성과

•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점검실적의 지속적 증가하여 총 6,614건을 검토함

〈표 4-12〉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적

구 분	15년 (5~12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9월)	합 계
계	348	559	595	643	734	758	842	873	1,262	1,109	6,614
기술상담 (대면, 기타 등)	104	288	349	403	342	452	417	428	619	488	3,402
도면검토 (여객, 도로)	48	43	126	104	149	202	230	188	377	278	1,467
현장점검	171	179	67	87	150	82	83	65	77	80	961
교육, 홍보	25	49	53	49	93	22	112	192	189	263	784

• 센터 인원은 2019년 도센터 4인에서 2024년 현재 11인(도센터 7인, 출장소 4인)으로 증가

〈표 4-13〉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인력현황

구 분	인력 현황	비 고	
도센터(7)	겸직	센터장 1인, 사무처장 1인	직책보조비만 지급
	기술요원	정규직 4인	
	행정요원	정규직 1인	
출장소(4)	화성시, 하남시, 양주시, 평택시	계약직 4인	-

3. 성과분석 종합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교통수단 중 버스와 여객시설 중 철도역사의 기준적합률이 하락하였음
- 버스는 목적지 표시 등 안내시설이 2019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철도역사는 계단 등의 항목에서 하락이 컸음
- 교통약자가 가장 접근이 많은 버스정류장,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표 4-14〉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9년	2022년	증 감
버스	93.9	92.0	-1.9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73.1	73.4	0.3
버스정류장	36.6	38.8	2.2
도시철도역사	85.1	88.6	3.5
철도역사	90.1	89.5	-0.6
도로	74.8	78.5	3.7

▶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저상버스

- 2024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보급률은 116.9%이고,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도 4,600대를 운영
- 또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운영비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운영비도 도비를 지원해 시·군 도입을 유도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화를 위해 표준지침은 만들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해 광역이동 차량에 대한 배차를 실시함
- 저상버스 또한 4,306대로 40.8%로 제3차 국가계획의 목표 32%를 초과 달성하였음

▶ 3차 계획 반영 사항

- 특별교통수단은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므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계획 필요
-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차량 통합배차 및 인접 시·도와 시스템 연계 필요
-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 필요
- 버스정류장, 도로 등의 이동편의시설 개선은 단기에 개선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 필요

제5장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목표설정
3. 세부 정책과제

제5장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1. 추진 방향

- ▶ 국가계획의 연계성과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춰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 구현' 을 비전으로 설정
- ▶ 시·군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고려해 지역간 균형적 자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
- ▶ 제3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항목의 추진 전략과 10개 정책과제 추진

〈그림 5-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추진방향



2. 목표 설정

- ▶ 제3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목표는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에서 설정한 지표를 기초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였음
- ▶ 특별교통수단 : 국가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100%로 설정하였으나 경기도 전체로는 2024년 기준 116.9%로 이미 충족하였으나 100%를 충족하지 못한 4개시는 추가 도입 필요
- ▶ 저상버스 : 2022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버스 폐차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변경토록 규정되어 11년(버스 사용연한 9년 + 추가 2년)후인 2033년에는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목표치 설정
- ▶ 버스/철도차량 등 : 버스, 철도차량 등은 제조사에서 일괄 제작되므로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편의 시설 기준 적합률은 양호하나 안내시설 등 버스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은 개선 필요
- ▶ 버스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 버스정류장 기준적합률은 38.8%로 가장 낮으므로 UD을 적용한 유형별 버스정류장 기준안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철도역사는 점검을 통한 세부 개선항목을 운영기관에 개선토록 유도
- ▶ 도로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신설·개선시 설계단계와 개통단계에서 점검토록 유도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향상

〈표 5-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목표치

(단위 : %)

구 분	현황 (2022년)	목표연도 (2029년)	증감율	비고
특별교통수단	116.9	118.0	0.9	도입율, 기준년도 2024년
저상버스	40.8	74.0	81.4	
버스	92.0	97.0	5.4	기준적합 설치율, 기준년도 2022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73.4	75.0	2.2	
버스정류장	38.8	50.0	28.9	
도시철도역사	88.6	94.0	6.1	
철도역사	89.5	92.0	2.8	
도로	78.5	85.0	8.3	

3. 세부 정책과제

3.1 교통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1) 이동편의시설 현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은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과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의 여객시설 및 보도, 육교 등의 도로로 구분됨

〈그림 5-2〉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주체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의 경우 설치 관리자는 도로관리청, 여객시설은 교통사업자(민간사업자, 유관단체) 등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양한 실정임

〈표 5-2〉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별 관리주체

구 분	도로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설치 관리자	도로관리청 (도, 시·군)	교통사업자 (민간사업자)	교통사업자 (유관단체)	교통사업자 (유관단체)	교통사업자 (유관단체)	교통사업자 (유관단체, 민간사업자)

▶ 또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여러개 부서로 나누어져 각각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부재로 업무의 연계성 부족

〈그림 5-3〉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 이동편의시설을 점검을 위해서는 도면의 검토 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아예 인지 하지 못해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교통약자법에서 기준적합성 심사를 교통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 전문지식 부족과 도로의 경우 검사 대상에 포함이 안됨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 ❶ 이러한 문제로 **교통약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이용하는 보도 및 저상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동권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기초지역내 이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휠체어) 37.0%, 버스 33.9%, 철도 12.2%로 83.1%는 도로를 이용해야 함
 -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은 도로 78.5%, 버스정류장 38.8%로 낮아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표 5-3〉 기초지역 이동 교통수단

구 분	도보	버스	도시/광역철도	특별교통수단	자가용
이용율(%)	37.0	33.9	12.2	3.4	11.0

〈그림 5-4〉 이동편의시설 부적합 사례



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그림 5-5〉 관련 언론보도



자료1) : 중앙일보(24. 1. 2), '수천억 들인 저상버스, 휠체어 장애인은 30분간 타지도 못했다'
 자료2) : 경인일보(23.12.28), '휠체어엔 위험한 승강장...저상버스 있어도 못탄다'

2)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자 교육

▶ 교육실시 기관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 교육주기 : 연 1~2회

▶ 교육대상

- 공무원 : 인사발령(1~3년)이 잦아 업무인지도가 낮음
- 설계자, 공사자, 감리자 :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관련자

나. 이동편의시설 점검 강화

▶ 시·군이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점검 의뢰토록 지속적 유도

▶ 점검시기 : 설계단계(도면검토), 공사단계(현장점검)

〈그림 5-6〉 이동편의시설 설치 절차



다. 버스정류장 등 여객시설 접근성 향상

2033년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운행 예정에 따라 저상버스 출입문에 맞춰 연석높이 개선 필요

접근성, 정보전달, 안전성과 편의성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버스정류장 표준모델 개발

- 승차대 폭원만큼 점형블록 설치
- 점형블록과 연계하여 선형블록 설치
- 버스정류장 내부 휠체어 진출입·회전 등 가능한 공간 확보 및 시각장애인과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 안내판 설치높이 1.5m 안팎(지붕이 있는 정류장만 해당)
- 버스정보 안내방식(점자 or 음성)(지붕이 있는 정류장만 해당)
- 버스정보 조회버튼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
- 정류장 설치 유형 확인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표준모델 도입 및 추진

- 버스정류장 표준모델 디자인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건축정책과
- 사업계획 평가 : 표준모델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 공모
 - 추진의지 :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 적 합 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합한 지역 특성과 환경
 - 필 요 성 :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필요성과 요구도
 - 지 속 성 :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유지 관리 계획
 - 효 과 성 : 사업 시행 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 대상 선정
-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 업 량 : 750개소(150개소×5년)
 - 소요예산 : 15,000백만원(750개소 쉼터 × 20백만원*) ※ 도비 50%, 시군비50%
 - * 기준단가 : 쉼터 1개소(6m×2m 기준)당 20백만원

〈그림 5-7〉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



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 경기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2024년 9월까지 6,614건을 점검을 실시함
- ▶ 주요업무는 상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교육, 매뉴얼 작성 등 교통약자 관련 연구를 실시

〈표 5-4〉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업무현황

구 분	내 용
종합상담센터 민원업무	편의시설 관련 문의 및 민원 제기(시설주, 관계기관, 이용장애인 등) → 법을 근거로 상담, 검토, 확인, 자료제공 등의 업무수행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도로, 여객시설 설계도면에 대한 관련 지침 및 법적 기준 검토 설계도면 적정 반영 및 법적기준 적합 여부 현장점검
교육추진	교통사업자 및 실무자(설계 및 시공감리) 교통약자 이동편의관련 공무원(건설, 복지, 교통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연구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이동편의시설 관련 연구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사전·사후 점검 강화

- 경기도내 이동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설계부터 시공 완료 시까지 기술지원을 받아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속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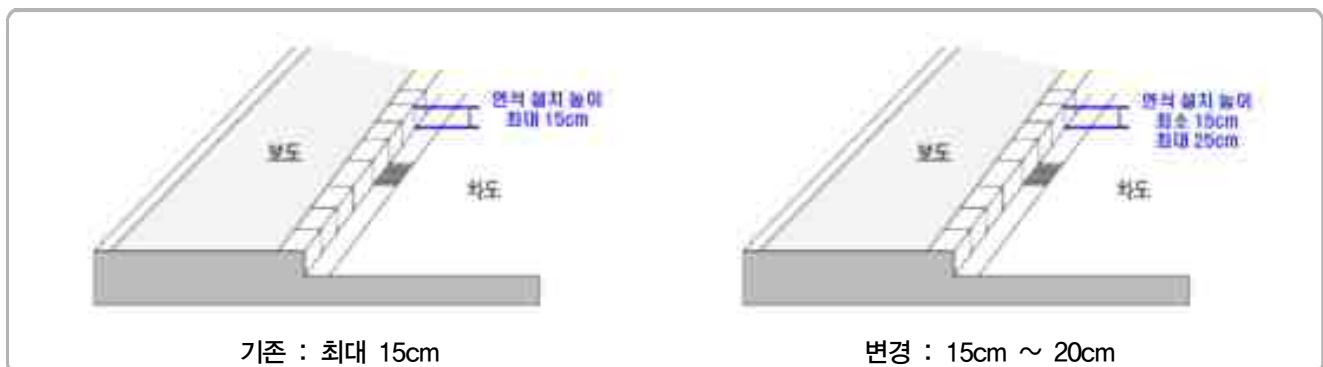
▶ 시·군 지원 확대

-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도 센터에 의뢰해 점검 시행

▶ 관련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기 작성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매뉴얼 수정 필요
 -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변경 : 기존 15cm 이하 → 변경 15cm~ 25cm(국토부 보도자료, '24.12.17)

〈그림 5-8〉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기준



마.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 현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으로 도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표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_기준적합성

현행	개정(안)
<p>제3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3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보도가 포함된 도로를 말함)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보도가 포함된 도로를 말함)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업무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서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설, 여객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 및 시설 준공단계에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필요

〈표 5-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_업무대행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2조의2(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3.2 효율적이고 편안한 이동수단 제공

1) 특별교통수단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200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중에 있으나 4개 시·군은 법정대수에 미달

- 미달 지자체 : 고양시 1대, 시흥시 3대, 파주시 4대, 오산시 2대
- 시·군별 도입률 차이가 큼 : 최대 연천군 217%, 최소 오산시 88%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는 월평균 18만명 수준으로 연간 변화가 많지는 않음

〈표 5-7〉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말	
연간	월평균	연간	월평균	연간	월평균
2,216,048	184,670	2,162,009	180,167	1,664,261	184,917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분석결과 재활/병원 목적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이 많은 시간대는 13시~15시가 19.8%, 09시~11시가 19.5% 순임

〈표 5-8〉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이용자 비율

구 분	계	7~9시	9시~11시	11시~13시	13시~15시	15시~17시	17시~19시	19시~21시	21시~7시
'비율(%)	100	15.3	19.5	15.4	19.8	13.1	5.4	2.9	8.6

추진방향

- 법정대수 미달 지자체는 2025년에 도입토록 유도하고 내용년수 9년임을 고려해 연도별 대폐차를 산출해 소요비용을 계산함

〈표 5-9〉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및 대폐차 시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도입대수	88	98	125	60	136	9	24	31
대폐차 시기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5개년간 237.8억원 소요

〈표 5-10〉 특별교통수단 도입 소요비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비율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입대수	-	166	98	125	60	136	517	
소요 예산	합계	100	8,134	4,789	6,109	2,932	6,646	28,611
	국비	50	2,989	1,760	2,245	1,078	2,443	10,515
	도비	25	1,372	808	1,031	495	1,121	4,827
	시·군 비	25	3,773	2,221	2,833	1,359	3,082	13,269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5개년간 7,507.3억원 소요

〈표 5-11〉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소요비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운영대수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소요 예산	합계	168,134	145,646	150,015	154,515	159,150	777,460
	국비	12,090	12,453	12,827	13,212	13,608	64,190
	도비	46,813	48,217	49,664	51,154	52,689	248,537
	시·군 비	109,231	84,976	87,524	90,149	92,853	464,733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증가 없고 대체수단 운영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연간 3% 증가하는 것으로 운영비 산출
국비는 대당 10백만원 지원, 도비는 전체 운영비의 30% 지원

2)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 필요성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휠체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탑승을 허용하고 있어 예약 및 배차 불만 발생
 - 실태조사 결과 예약 및 배차 항목이 5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시각장애인 등)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수단(대체수단)을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 대체수단 종류 및 운영현황

- 차량종류
 - 임차택시(112대) : 택시(운전원 포함)를 임차하여 교통약자전용 이동수단으로 운영
 - 바우처택시(4,437대) : 일반택시 영업 중 수요 발생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 일반차량(51대) : 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전용 이동수단으로 운영
- 운영기관 : 시·군 이동지원센터(이용접수 및 배차 포함하여 운영 중)
- 이용대상자 : 시·군 조례 또는 지침으로 정함

▶ 추진방안

- 일반차량 도입 시·군은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 및 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 및 운영비용 절감과 탑승 가능한 휠체어 종류의 다양성과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 필요

3)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 ▶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 31개 시·군 128대 운영
-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기술훈련 등

▶ 예산(2025년) : 13,219백만원(도비 10%, 시·군비 90%)

4)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 추진근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협의회 구성 인원 : 14명(당연직 9명, 위촉직 5명)

▶ 회의개최 현황

〈표 5-12〉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개최 현황

구 분	주요안건
2022년 4월	1.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통일화 2.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력 충원 3.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차등지원 요건 추가
2023년 6월	1.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표준지침(안) 2.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도입비 지원(안)
2023년 12월	1.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관련 개선방안 2.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

▶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련 협의사항 발생시 수시로 개최

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5) 저상버스

▣ 버스 현황

- 경기도 버스는 총 28,959대로 전국의 94,414대의 30.67%를 차지함

〈표 5-13〉 버스 현황

(단위 : 개, 대)

구 분	전국	수도권	경기도		
			업체	대수	비율(%)
계	94,414	45,705	1,014	28,959	30.67%
시 내	37,435	19,868	77	9,648	25.77
시 외	6,344	1,788	14	1,788	28.18
마 을	5,871	4,477	146	2,923	49.79
전 세	41,270	18,322	518	13,992	33.90
특 수	3,494	1,250	259	608	17.40

▣ 저상버스 필요성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지속적 확충 필요

▣ 도입실적

- 그간 경기도는 일반저상버스를 2004년부터 총 7,020대를 도입하였으나 대폐차로 2024년 현재 3,499대 운영중이며 연도별 도입 실적은 다음과 같음

〈그림 5-9〉 저상버스



〈저상버스〉

〈중형저상버스〉

〈표 5-14〉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7,020	4	35	77	89	125	200	226	118	175	113
수원시	848	-	7	8	3	19	21	26	16	26	57
용인시	251	-	-	7	-	-	-	-	-	-	-
고양시	580	2	-	2	-	6	21	-	2	12	0
화성시	324	-	-	-	-	2	5	7	3	-	-
성남시	726	2	-	22	10	12	23	18	5	35	9
부천시	826	-	4	6	11	3	14	32	27	4	21
남양주시	258	-	-	-	20	24	5	22	6	-	0
안산시	315	-	-	12	11	14	20	15	15	10	5
평택시	243	-	-	-	-	5	7	11	4	8	1
안양시	490	-	-	-	-	2	10	-	7	5	16
시흥시	97	-	-	-	2	-	7	6	5	0	2
파주시	315	-	-	-	2	3	9	18	15	23	-
김포시	298	-	22	15	13	7	-	2	-	-	0
의정부시	180	-	-	-	4	13	29	25	-	-	-
광주시	210	-	2	5	-	7	3	3	3	50	0
하남시	126	-	-	-	11	3	-	5	-	-	-
광명시	177	-	-	-	-	-	2	-	-	-	-
군포시	111	-	-	-	-	-	-	-	-	-	-
양주시	157	-	-	-	-	2	7	16	4	1	0
오산시	154	-	-	-	1	1	3	3	3	-	-
이천시	41	-	-	-	-	-	-	-	-	-	-
안성시	62	-	-	-	-	-	6	5	-	-	-
구리시	74	-	-	-	-	-	4	10	3	-	-
의왕시	47	-	-	-	-	-	-	-	-	-	-
포천시	31	-	-	-	1	2	2	2	-	-	2
양평군	17	-	-	-	-	-	-	-	-	-	-
여주시	19	-	-	-	-	-	-	-	-	-	-
동두천시	15	-	-	-	-	-	2	-	-	-	-
과천시	24	-	-	-	-	-	-	-	-	-	-
가평군	3	-	-	-	-	-	-	-	-	-	-
연천군	1	-	-	-	-	-	-	-	-	1	-

<표 계속>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예정)
계	91	70	79	157	144	267	328	541	808	1,332	1,794
수원시	21	21	39	26	14	62	84	63	77	85	150
용인시	-	2	5	8	2	5	8	7	24	150	33
고양시	16	6	6	6	15	4	41	98	43	157	127
화성시	2	5	8	9	1	2	-	-	34	44	183
성남시	-	-	-	10	2	37	77	61	82	123	173
부천시	12	19	5	45	13	73	29	98	121	153	87
남양주시	3	-	-	-	7	9	0	4	15	50	91
안산시	5	0	2	1	6	5	0	13	4	34	143
평택시	-	2	-	1	1	4	4	4	40	79	48
안양시	5	-	10	18	4	5	19	40	33	76	217
시흥시	-	-	-	1	4	4	2	5	10	0	42
파주시	2	1	0	2	1	3	11	24	53	33	86
김포시	0	8	0	20	60	27	19	11	15	5	79
의정부시	-	2	1	-	-	7	4	14	33	22	20
광주시	24	-	-	4	1	4	-	-	-	64	40
하남시	-	-	-	-	4	5	3	2	27	22	34
광명시	-	-	-	-	2	-	5	63	60	30	13
군포시	-	-	-	-	-	-	-	5	39	37	27
양주시	1	-	-	5	3	6	12	4	11	30	50
오산시	-	-	-	-	-	2	6	10	30	27	57
이천시	-	-	-	-	-	-	-	-	10	16	16
안성시	-	-	-	-	3	1	1	2	16	20	10
구리시	-	-	-	-	-	-	0	4	5	28	10
의왕시	-	-	-	-	-	-	-	-	19	13	13
포천시	0	4	3	1	1	2	3	3	0	3	4
양평군	-	-	-	-	-	-	-	6	0	4	7
여주시	-	-	-	-	-	-	-	-	5	5	9
동두천시	-	-	-	-	-	-	-	-	-	8	5
과천시	-	-	-	-	-	-	-	-	2	14	8
가평군	-	-	-	-	-	-	-	-	-	0	6
연천군	-	-	-	-	-	-	-	-	-	-	6

추진방안

-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토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향후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저상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2029년까지 저상버스를 74% 도입토록 추진
 - 2029년 도입 목표 : 시내저상버스 6,049대, 79%, 마을저상버스 1,807대 62%

〈표 5-15〉 저상버스 도입계획

구분	인가대수	저상버스 운영대수					2029년 비율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운영 대수	합계	10,537	5,456	6,056	6,656	7,256	7,856	74%
	시내버스	7,614	4,449	4,849	5,249	5,649	6,049	79%
	마을버스	2,923	1,007	1,207	1,407	1,607	1,807	62%
신규도입 대수	합계	-	1,150	600	600	600	600	-
	시내버스	-	950	400	400	400	400	-
	마을버스	-	200	200	200	200	200	-

- 저상버스 지원금은 92백만원부터 600백만원까지 지원

〈표 5-16〉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 현황(202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료별	가격 (예시)	저상버스 지원금(국토부)				친환경버스 지원금(환경부)				기타 보조금
			계	국	도	시·군	계	국	도	시·군	
1층	CNG	220	92 (100%)	46 (50%)	6.9 (7.5%)	39.1 (42.5%)	-	-	-	-	-
	전기	350	92 (100%)	46 (50%)	6.9 (7.5%)	39.1 (42.5%)	112 (100%)	70 (62.6%)	21 (18.7%)	21 (18.7%)	-
	수소	630	92 (100%)	46 (50%)	6.9 (7.5%)	39.1 (42.5%)	300 (100%)	210 (70%)	-	90 (30%)	100 (제조사)
	중형 전기	275	85 (100%)	42.5 (50%)	6.4 (7.5%)	36.1 (42.5%)	80 (100%)	50 (62.6%)	15 (18.7%)	15 (18.7%)	-
2층	전기	800	92 (100%)	46 (50%)	23 (25%)	23 (25%)	190 (100%)	119 (62.6%)	35.5 (18.7%)	35.5 (18.7%)	318 (대광위)

- 본 계획에서는 2025년 변경된 대당지원단가 90백만원을 적용해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음

〈표 5-17〉 저상버스 도입비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소요 예산	합계	102,500	53,000	53,000	53,000	53,000	314,500
	국비	51,250	26,500	26,500	26,500	26,500	157,250
	도비	7,740	4,000	4,000	4,000	4,000	23,740
	시·군비	43,510	22,500	22,500	22,500	22,500	133,510

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3.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고도화

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 증대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요

- 연혁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16. 12월)→ 콜센터 구축(' 23. 7월) → 광역이동 서비스(' 23. 7월) →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23. 12월) → 광역이동 사전 예약 서비스(' 24. 3월)
- 위탁기관 : 경기교통공사
- 인력현황/운영비 : 관리자 9명, 상담원 75명 / 65억원

▶ 콜센터 운영 현황 :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총 4교대로 구분하여 운영(새벽, 정규, 야간, 심야)

〈표 5-18〉 콜센터 운영 인력

구분	평일 배차				주말 배차			
	새벽	정규	야간	심야	새벽	정규	야간	심야
근무시간	6:00~10:00	9:00~18:00	18:00~22:00	22:00~7:00	6:00~10:00	9:00~18:00	18:00~22:00	22:00~7:00
인원	62명				10명			

▶ 광역 운행실적 : 운영개시부터(2023. 10. 3.) 2024. 7.22.까지 223천건 운행

〈표 5-19〉 광역이동 월별 운행 실적

구분	계	2023년			2024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용자(명)	222,878	22,246	25,761	23,840	24,770	22,227	21,959	22,213	22,088	20,901	16,873
비율(%)	100.0	10.0	11.6	10.7	11.1	10.0	9.9	10.0	9.9	9.4	7.6

▶ 운영상 문제점

- 서비스 대기시간이 길고 시·군별 편차가 큼 : 의정부시 3시간 3분, 의왕시 1시각 11분

〈그림 5-10〉 광역이동 평균 서비스시간(즉시배차)



〈표 5-20〉 시·군별 광역이동 서비스 시간

구 분	배차시간	차량대기시간	차량이용시간	합계
경기도	1:04:04	0:27:12	0:39:54	2:11:10
수원시	1:30:22	0:27:40	0:42:25	2:40:28
용인시	1:29:55	0:32:16	0:36:34	2:38:45
고양시	1:12:58	0:29:15	0:47:54	2:30:07
화성시	0:36:56	0:34:59	0:39:15	1:51:10
성남시	1:26:41	0:30:42	0:45:58	2:43:21
부천시	0:59:07	0:24:02	0:42:13	2:05:22
남양주시	0:55:06	0:28:12	0:35:34	1:58:51
안산시	0:48:15	0:20:27	0:40:44	1:49:26
평택시	0:56:05	0:29:10	0:51:37	2:16:53
안양시	1:01:02	0:20:28	0:36:02	1:57:32
시흥시	0:30:40	0:25:54	0:34:40	1:31:15
파주시	0:37:10	0:28:35	0:42:20	1:48:05
김포시	1:41:41	0:27:50	0:48:33	2:58:05
의정부시	1:55:23	0:22:51	0:44:50	3:03:04
광주시	1:00:19	0:30:24	0:37:53	2:08:35
하남시	0:37:00	0:22:06	0:33:18	1:32:23
광명시	1:08:06	0:24:05	0:33:54	2:06:04
군포시	0:50:58	0:18:59	0:26:48	1:36:45
양주시	0:57:33	0:25:40	0:34:31	1:57:44
오산시	0:27:22	0:19:15	0:31:35	1:18:13
이천시	0:35:29	0:26:17	0:50:05	1:51:51
안성시	0:18:29	0:27:56	0:37:03	1:23:28
구리시	0:44:00	0:20:27	0:31:22	1:35:49
의왕시	0:27:41	0:21:08	0:23:19	1:12:07
포천시	0:20:40	0:27:31	0:39:39	1:27:50
양평군	0:35:20	0:26:26	1:00:26	2:02:12
여주시	0:40:51	0:27:12	0:49:29	1:57:31
동두천시	1:01:05	0:22:55	0:32:32	1:56:33
과천시	0:23:29	0:18:08	0:32:24	1:14:01
가평군	0:26:54	0:32:54	0:46:13	1:46:00
연천군	0:24:55	0:16:36	0:47:11	1:28:42

•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4개시에 도착하는 통행량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1〉 특별교통수단 목적지

구분	전체 목적 동행			병원/재활 동행		
	통행량	비율	비고	통행량	비율	비고
총 동행	222,878	100.0%	33개 시·군	98,874	100.0%	33개 시·군
서울특별시	70,945	31.8%	총통행의 50.7%	31,979	32.3%	총통행의 52.8%
성남시	15,892	7.1%		9,379	9.5%	
수원시	14,553	6.5%		5,571	5.6%	
용인시	11,599	5.2%		5,244	5.3%	

• 2024년부터 시·군으로 이동하는 이용객과 차량 간의 거리가 8km 이내인 경우 탑승 후 회차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 필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15명으로 공차 발생으로 효율성 저하
 - 안산시, 파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는 특별교통수단 보다 운전원수가 적음

〈표 5-22〉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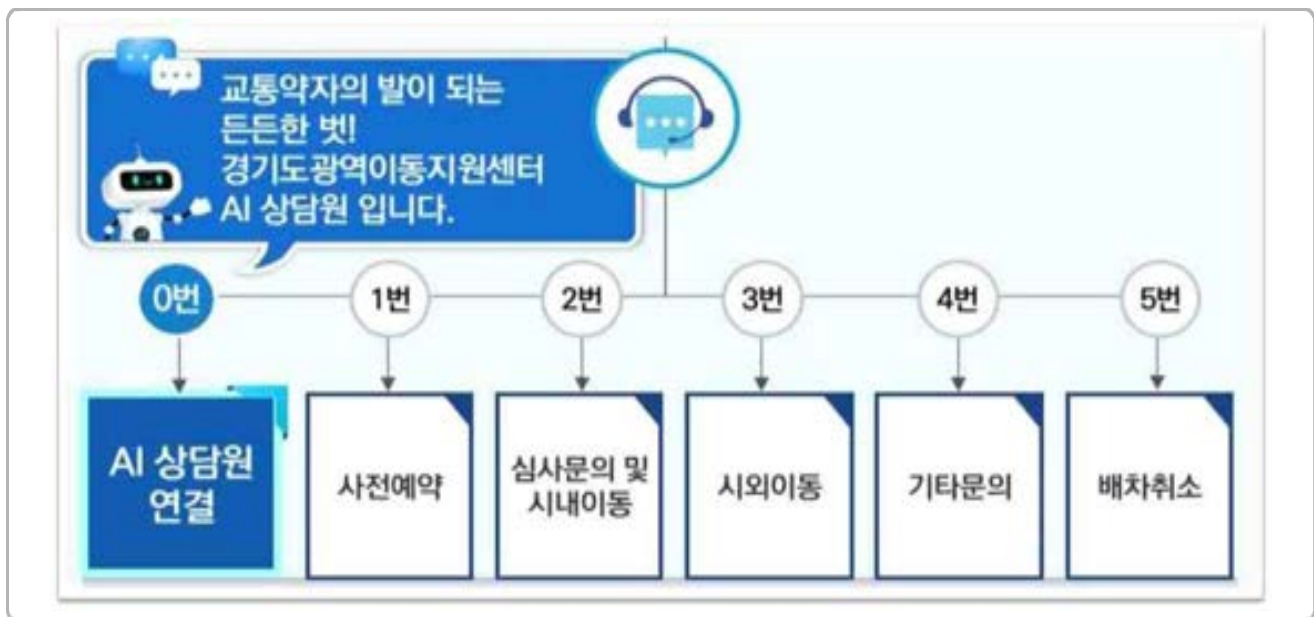
(단위 : 대, 명)

구 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	차량 1대당 운전원수
경기도	1,209	1394	1.15
수원시	90	102	1.13
용인시	76	93	1.22
고양시	78	87	1.12
화성시	68	68	1.00
성남시	80	116	1.45
부천시	75	87	1.16
남양주시	59	63	1.07
안산시	60	51	0.85
평택시	51	72	1.41
안양시	42	48	1.14
시흥시	33	35	1.06
파주시	36	35	0.97
김포시	40	51	1.28
의정부시	45	44	0.98
광주시	43	68	1.58
하남시	30	31	1.03
광명시	32	34	1.06
군포시	23	24	1.04
양주시	27	30	1.11
오산시	15	21	1.40
이천시	26	24	0.92
안성시	21	23	1.10
구리시	22	25	1.14
의왕시	14	17	1.21
포천시	28	27	0.96
양평군	24	26	1.08
여주시	20	25	1.25
동두천시	16	21	1.31
과천시	6	9	1.50
가평군	16	23	1.44
연천군	13	14	1.08

10 개선방안

- 출발지와 특별교통수단 소속 시·군 구분 없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배차
 - 출발지는 해당 시·군 출발이 기준이며, 2024년 6월부터 이용자가 8km 이내 위치할 경우 회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제한 없는 통합 자율배차 필요
 - 교대(퇴근시) 등을 고려한 배차시스템 개선 필요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상담 기능 추가
 - 상담시간 단축 및 이용자별 자주 이용 경로는 자동으로 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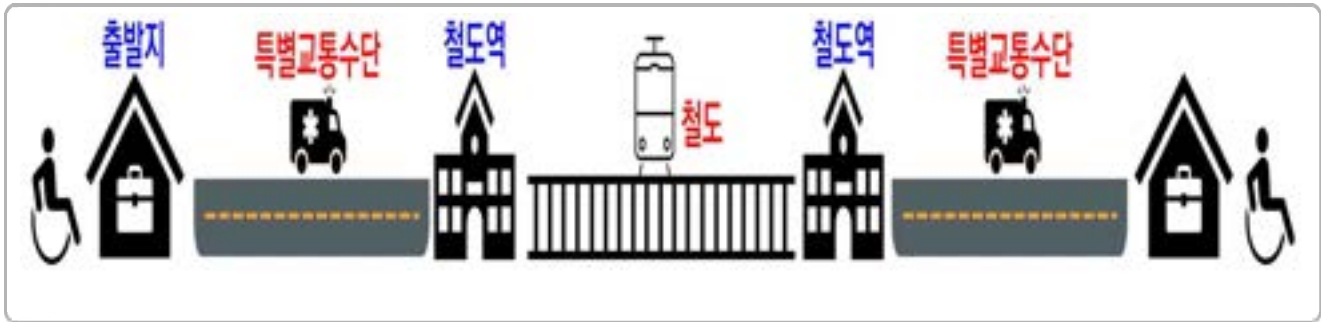
〈그림 5-11〉 자동상담 기능



- 시·군 운영비 차등 지급 고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30% 지원
 - 특별교통수단 차량당 운전원수, 법정대수 운영비율 등 기준을 만족할 경우 추가 운영비 지원 검토
- 철도를 이용 가능한 구간은 철도역까지 연계 서비스 제공 검토
 - 평택시청에서 연천군청 이동시 편도 145km로 왕복 6시간 이상 필요해 차량 이용 효율 저하
 - 따라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철도와 연계하는 통합 환승연계 서비스 제공 필요
 - ① 출발지 → 철도역 구간 : 특별교통수단 배차
 - ② 철도 이용 구간 : 철도차량 이용
 - ③ 도착 철도역 → 목적지 구간 : 철도이용 시간(이동시간,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목적지 역사에 특별교통수단 배차

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그림 5-12〉 철도 연계 서비스 개념도



2) 광역이동서비스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이동 223천중 서울시 도착건수는 71천건, 인천시는 11천건으로 37%를 차지
- 이용자는 각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 2023년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 을 체결하여 광역이동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행지역 등 운영방식 상이로 이용자 불편

〈표 5-23〉 수도권 이용대상 및 요금

(단위 : 대, 명)

구 분	이용대상자	요금
경기도	수도권 전역 및 인접 시·군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100원/5km당
서울시	수도권 전역	기본 5km까지 1,500원, 추가 70원~280원/km당
인천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사부천시시흥시	기본 2km까지 1,200원, 추가 1km당 300원

개선방안 : 수도권 통합 DB 구축 및 실시간 운행정보 연계

-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대상자, 요금 등은 통일 필요
- 이용대상자 DB 공유 및 통합관리
 - 1개 지역 등록시 타 시·도 자동 이용자 등록
- 특별교통수단 정보 공유
 - 특별교통수단 위치 정보 공유로 회차차량 공차 비율 감소

3) 운전자 배치 스케줄(안)

▶ 전제조건

- 총차량수 : 100대
- 운전자수 : 150명(경기도 계획 반영 : 차량당 1.5명)
- 근로기준 : 1인당 주5일, 10시간/일 근무(주당 50시간)

▶ 배치전략

- 고수요 시간대 대응 : 평일 07시~19시 중심으로 집중 투입
- 심야시간 최소 인력만 운영
- 주말 감축 운영
- 운전자 운전 시작시간 분산 : 07시 / 11시 / 19시 / 23시 배치로 수요시간 맞춤 운행 구성
 ※ 평일 07시~11시, 17시~19시에는 시간제 운전자 추가로 운영 효율 증대 필요

▶ 기대효과

- 차량 가동률과 인력 효율 극대화
- 고수요 시간대 집중 대응으로 승객 만족도 향상
- 심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
- 전체 근무일수 준수로 운전자 과로 방지

〈표 5-24〉 운전자 배치 계획표

요 일	07시 시작	11시 시작	19시 시작	23시 시작	총인원
월요일	55명	40명	25명	10명	130명
화요일	55명	40명	25명	10명	130명
수요일	55명	40명	25명	10명	130명
목요일	55명	40명	25명	10명	130명
금요일	55명	40명	25명	10명	130명
토요일	40명	25명	0	5명	70명
일요일	20명	7명	0	3명	30명

3.4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

1)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제고

- ▶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더불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와 영유아동반자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 포함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로 인한 혜택을 나와 가족이 누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 유도

〈표 5-25〉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방안

매체	홍보방법	대상	기간
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포함)	교통약자의 범위와 이동편의 관련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뉴스시간에 홍보	도민	필요시
홈페이지	경기도 및 각지자체(유관기관 포함),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도민	상시
ITS시스템	도로전광표지(VMS), 정류장 안내단말기, 버스내 승객·운전자용 안내단말기에 문자, 그래픽, 안내방송 삽입	도민	상시
동영상	국토교통부 등 국가에서 작성된 홍보영상을 각종행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도민	상시
홍보책자	동사무소, 경찰서, 민간교통사업체 및 관련단체에 비치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내용, 효과, 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공	도민	필요시
세미나 및 행사	교통약자 관련단체와의 정기적 세미나 교통약자 정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자문회의 등	공무원 관련단체	1회/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내용, 효과, 서비스 이용 방법 홍보(홍보책자 비치 및 동영상 활용)	도민	필요시
사회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관련 내용 반영	-	-

2) 교육방안

▶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 2024년 경기도 교통약자는 3,478천명으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고령자 증가율은 6.5%임
-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0명에서 2023년 204명으로 13% 증가

〈표 5-26〉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고령자	7,412	180	8,116	7,924	186	8,726	8,693	204	9,757
어린이	2,605	5	3,207	2,663	2	3,345	2,517	6	3,150

- 경기도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확대 필요
 - 2022년 : 209천명, 7,103회, 431백만원
 - 2023년 : 256천명, 7,127회, 431백만원
 - 2024년(1월~9월) : 219천명, 5,881회, 431백만원

운수종사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자 교육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자 및 교통약자 관련 사업자(시내버스, 특별교통수단,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표 5-27〉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방안

대상수단/시설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주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권 등 교통약자이동 편의시설의 개요 및 정책방향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용을 위한 운영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조례 ○ 보행환경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 ○ 교통약자관련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설치·관리의 문제 및 개선방향 ○ 교통약자관련시설 관련부서간의 협조사항 	경기도
시내버스	버스운전자, 버스회사 배차담당, 버스조합	4회/년 (분기별,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작동법, 배차방법 ○ 교통약자 이동행태 ○ 버스정차문화 ○ 버스운행방법 등 	버스조합에서 교육, 결과서 시에 제출시 확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4회/년 (분기별,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권 ○ 교통약자서비스 	지자체 담당부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담당자	1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행태 ○ 교통약자 이동관련 정책 ○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법 등 	지자체 담당부서

3) 이동편의 정보 제공

▶ 정보제공 필요성

-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
- 교통수단, 도로, 여객시설 전 구간에서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

▶ 이동편의 정보제공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계획에서 2024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계별로 여객시설 이동경로 안내서비스, 저상버스 배차정보 및 경로서비스 제공키로 계획함

▶ 정보 유형별 세분화 제공

- 시각장애인 : 음성 안내 중심
- 청각장애인 : 문자 및 시각적 아이콘 기반
- 휠체어 사용자 : 단차·턱·경사로 정보 제공

▶ 안내시설 개선 및 표준화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안내표지판 확대
- 정류장 및 역사 내 점자지도, 촉지도 설치
- 차량 내 LED 안내 및 음성안내 강화

▶ 교통약자용 정보 전달매체 다양화

- 버스 정류장 전광판 및 음성 안내시스템 설치 강화
- 모바일 알림 서비스 운영

▶ 경기도 방문 교통약자 관광 정보제공

- 접근성 높은 정보 제공 : 경기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에 교통약자 전용 메뉴 제공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접근 가능한 경로 등) 제공
 - 인쇄물은 큰 글씨 안내서, 점자관광안내서, QR코드 활용 등 다양화
- 이동지원 정보 제공
 - 특별교통수단 예약 방법 안내 :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정보와 예약 시스템 안내.
 - 교통수단 접근성 지도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및 탑승 가능 여부 제공.
 - 이동 동선 추천 : 교통약자를 위해 적합한 이동 동선이나 짧고 편리한 경로를 제안.
- 관광지 편의시설 표시 : 휠체어, 유모차 진입 가능 여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 안내판 등의 정보를 포함

제6장

예산 및 투자계획

1. 투자 우선 순위 선정
2. 비용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4. 자원조달 방안

제6장 예산 및 투자계획

1. 투자 우선 순위 선정

- ▶ 각 부문별 개선방안의 투자 우선순위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도) 등의 이동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이용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함
- ▶ 평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22. 9)」에 제시된 항목별 이용 불만족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항목의 이용 만족도에 가중치를 적용
- ▶ 평가 항목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설정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불만족도 점수를 산출함

〈표 6-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가중치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배점	5	4	3	2	1

- ▶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보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이 다음으로 낮아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표 6-2〉 투자우선 순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순위	
보행환경	보도	15.7	41.0	35.0	6.8	2.0	56.2	1
	횡단보도	10.1	40.4	41.1	7.1	1.7	58.2	2
	지하도, 육교	3.4	24.6	26.3	6.8	3.6	63.2	4
교통수단	버스	5.1	19.5	44.5	20.4	2.3	64.1	5
	철도	8.3	25.6	33.7	25.0	6.5	66.4	6
	고속버스	10.2	15.5	30.5	39.0	4.5	70.0	9
여객시설	철도	11.1	21.5	34.7	26.1	16.7	68.6	7
	터미널	6.8	15.9	30.3	36.4	5.7	69.4	8
	버스정류장	6.7	59.1	48.5	5.0	1.5	59.0	3

- ▶ 다만, 보도나 버스정류장의 경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우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

06 예산 및 투자계획

2. 비용 산출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소요비용 산출

▶ 소요비용 산출을 위해 제2차 계획 및 제4차 국가 계획을 기초로 하고 국비/도비/시·군비는 현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 연도별 도입대수를 기준으로 2025년 부담 비율을 적용해 산출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 2025년 법정대비 부족한 시·군은 추가 도입토록 하고 물가상승률(3%)를 적용해 운영비 산출

▶ 저상버스 도입비

· 저상버스 도입비 재원부담 비율은 정액 기준으로 시내저상버스는 국비 45백만원, 도비 6.8백만원, 시·군비 38.2백만원으로 적용하고 마을저상버스는 중형 전기버스 지원 금액 적용

▶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표준모델 도입 및 추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버스정류장 150개소 개선(총 750개소)
· 15,000백만원(750개소 × 2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전액 도비 사업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물가상승률(3%)를 적용

〈표 6-3〉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3	2027	2028	2029	합계
합 계	302,738	228,035	234,372	236,363	245,399	1,246,908
특별교통수단도입	8,134	4,789	6,109	2,932	6,646	28,611
특별교통수단운영	168,134	145,646	150,015	154,515	159,150	777,460
시각장애인 ⁺ 지원센터 운영	13,219	13,616	14,025	14,446	14,879	70,185
저상버스도입	102,500	53,000	53,000	53,000	53,000	314,500
버스정류장개선 표준모델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6,700	6,901	7,108	7,321	7,541	35,571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620	639	658	678	698	3,293
교통약자교통 안전교육	431	444	457	471	485	2,288

3. 연차별 투자계획

▶ 계획 기간 5개년간 총 1조 2,469억원 소요

- 국비 2,320억원, 도비 3,328억원, 시·군비 6,822억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총 7,77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6-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3	2027	2028	2029	합계
합계	계	302,738	228,035	234,372	236,363	245,399	1,246,908
	국비	66,329	40,713	41,572	40,790	42,551	231,955
	도비	66,498	63,871	65,821	67,064	69,522	332,776
	시·군비	169,911	123,451	126,979	128,509	133,326	682,177
특별교통수단도입	소계	8,134	4,789	6,109	2,932	6,646	28,611
	국비	2,989	1,760	2,245	1,078	2,443	10,515
	도비	1,372	808	1,031	495	1,121	4,827
	시·군비	3,773	2,221	2,833	1,359	3,082	13,269
특별교통수단운영	소계	168,134	145,646	150,015	154,515	159,150	777,460
	국비	12,090	12,453	12,827	13,212	13,608	64,190
	도비	46,813	48,217	49,664	51,154	52,689	248,537
	시·군비	109,231	84,976	87,524	90,149	92,853	464,733
시각장애인 + 지원센터 운영	소계	13,219	13,616	14,025	14,446	14,879	70,185
	국비	-	-	-	-	-	-
	도비	1,322	1,362	1,403	1,445	1,488	7,020
저상버스도입	시·군비	11,897	12,254	12,622	13,001	13,391	63,165
	소계	102,500	53,000	53,000	53,000	53,000	314,500
	국비	51,250	26,500	26,500	26,500	26,500	157,250
	도비	7,740	4,000	4,000	4,000	4,000	23,740
버스정류장개선 표준모델	시·군비	43,510	22,500	22,500	22,500	22,500	133,510
	소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국비	-	-	-	-	-	-
	도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군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계	6,700	6,901	7,108	7,321	7,541	35,571
	국비	-	-	-	-	-	-
	도비	6,700	6,901	7,108	7,321	7,541	35,571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시·군비	-	-	-	-	-	-
	소계	620	639	658	678	698	3,293
	국비	-	-	-	-	-	-
	도비	620	639	658	678	698	3,293
교통약자교통 안전교육	시·군비	-	-	-	-	-	-
	소계	431	444	457	471	485	2,288
	국비	-	-	-	-	-	-
	도비	431	444	457	471	485	2,288
교통약자교통 안전교육	시·군비	-	-	-	-	-	-
	소계	431	444	457	471	485	2,288

06 예산 및 투자계획

4. 재원조달 방안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2019년 세입은 28조 9,814억원, 세출은 26조 8,709억원에서 2023년 세입 35조 3,488억원, 세출 34조 202억원으로 연평균 5.1%,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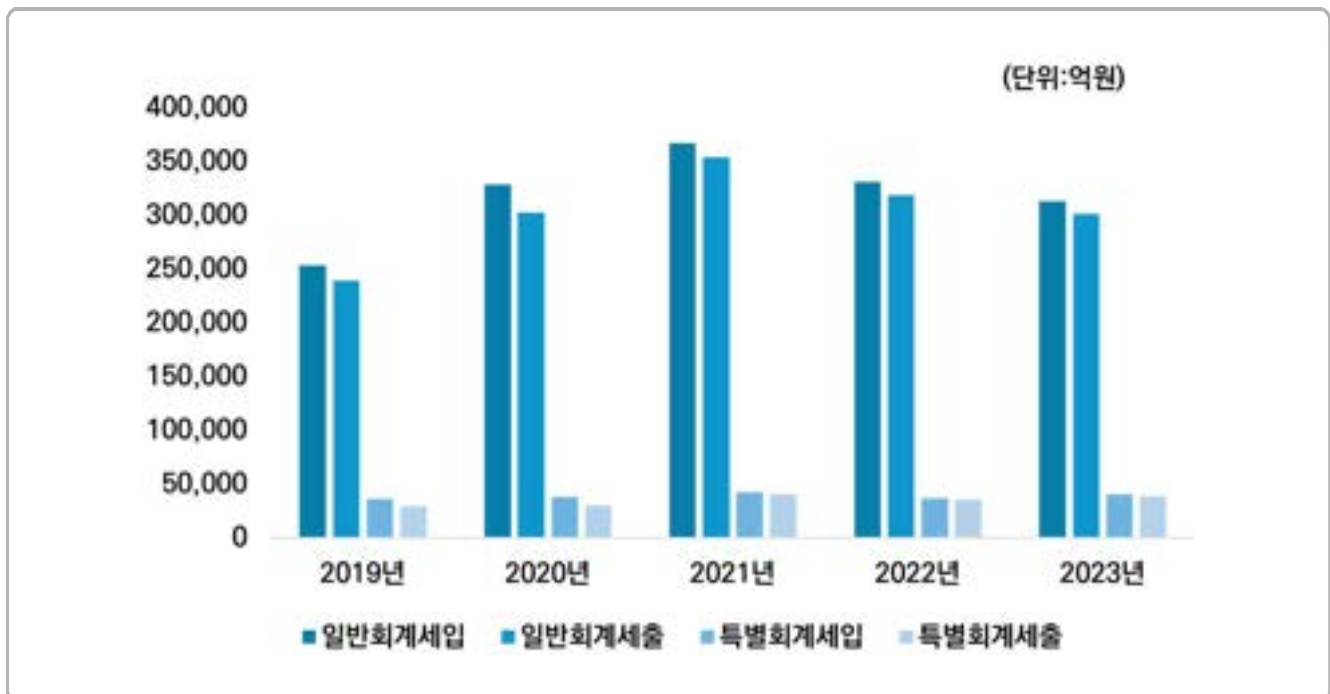
〈표 6-5〉 경기도 연도별 세입/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내 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세입	289,814	366,682	409,048	368,189	353,488	5.1%
	세출	268,709	332,650	394,493	354,234	340,202	6.1%
일반회계	세입	253,470	328,803	366,786	31,351	313,193	5.4%
	세출	239,124	302,659	354,144	318,869	301,553	6.0%
특별회계	세입	36,344	37,879	42,262	36,838	40,295	2.6%
	세출	29,585	29,991	40,349	35,365	38,649	6.9%

자료 : 경기도청(<https://www.gg.go.kr/>), 결산개요
 주 : 재정규모는 해당연도 결산내역을 적용한 값임

〈그림 6-1〉 경기도 재정규모 추이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을 검토한 결과 교통 및 물류 예산액은 2024년 2조 7,682억에서 2028년 3조 8,791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

본 계획에 투입되는 2028년 교통약자 관련 도비는 671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예산액 3조 8,791억원의 1.73%로 자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6-6〉 경기도 분야별 세출

(단위 : 백만원)

분 야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20,465,133	39,337,556	41,359,902	44,120,848	45,796,621	49,850,206	6.1
일반공공행정	40,699,210	7,167,465	7,422,043	8,058,697	8,668,746	9,382,259	7.0
공공질서 및 안전	9,720,190	1,741,493	2,039,166	1,983,931	1,965,284	1,990,316	3.4
교육	15,419,312	2,903,683	3,004,758	3,086,256	3,169,798	3,254,817	2.9
문화 및 관광	5,271,323	1,083,310	1,119,966	1,012,903	1,010,067	1,045,077	△0.9
환경	8,090,897	1,554,987	1,675,025	1,620,285	1,613,202	1,627,398	1.1
사회복지	95,870,208	16,299,838	17,514,427	19,174,046	20,081,029	22,800,868	8.8
보건	4,795,045	1,138,352	917,107	896,857	914,320	928,409	△5.0
농림해양수산	10,071,947	1,872,479	1,910,553	2,029,402	2,063,351	2,196,162	4.1
산업·중소기 업	7,716,334	1,534,598	1,523,580	1,591,968	1,529,696	1,536,492	0.0
교통 및 물류	16,897,310	2,768,214	3,249,083	3,432,177	3,568,705	3,879,131	8.8
국토및지역개발	2,721,248	606,599	599,758	537,726	498,881	478,284	△5.8
과학기술	64,012	11,693	15,409	12,009	12,409	12,492	1.7
예비비	560,510	105,575	108,742	112,004	115,364	118,825	3.0
기타	2,567,587	549,270	260,285	572,587	585,769	599,676	2.2